

연구총서 12-AA-05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 형사사법절차상 사법통역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Judiciary Interpreting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안성훈 · 이지은

■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 박사

■ 이지은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교수

# 발간사

다문화, 다언어, 다인종 사회국가들은 그 필요성을 일찍부터 깨닫고 사법통역인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해왔습니다. 체류 외국인의 수와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 예외가 아닙니다.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서로 생활하고 부딪치다보니 갈등도 생기고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제 사법통역인에 대한 수요증가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정된 사법통역인의 확보는 현재로서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통역인의 선정 및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사법통역제도 관련 근거법률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사법통역의 특성상 요구되는 전문적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법률용어의 이해와 사법통역인의 역할과 윤리에 대한 훈련이 요구되는 사법통역인으로서의 전문성은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효과적인 사법통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법통역인으로서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언어 능력과 함께 소송절차에 조력하는 공적 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과 소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법통역인의 통역능력과 전문가적 자질은 형사소송 법상 증거능력에 관한 법률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재판부, 검사, 피고인, 증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사법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사법정의의 실현과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법통역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통역인이 사법통역 전문가로서 고도의 언어적 능력을 갖추고 사법통역인으로서의 윤리, 행동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능력을 갖춘 사법통역인을 인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최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발효되어 법이 규정하는

국민참여 재판에 대해서는 배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사소송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과 국내체류외국인의 증가로 인하여 형사절차에서의 사법통역인의 필요와 역할의 중요성이 한층 더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법통역인의 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 그리고 통역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언어능력의 검증시스템 마련은 한국 사법제도에서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사법통역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현행 사법통역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선진외국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상세히 고찰하였고, 또한 그 동안 다른 연구에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법통역제도의 입법화와 사법통역인 직업윤리 규범마련, 그리고 사법통역인 인증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작업을, 외국 기관에의 직접 방문을 통한 전문가 자문과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학계 및 실무계의 관심을 고조시킴과 동시에, 사법통역제도 개선의 큰 밑거름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여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소중한 자문과 자료를 제공해 주신 미국 몬트레이 국제통번역대학원의 미켈슨 교수와 캘리포니아주법원 김영순 사법통역인을 비롯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천안동남경찰서 등등의 여러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동연구를 수행한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의 이지은 교수와 본 보고서의 편집 및 교정 등을 맡아 수고해 준 최형심 인턴연구원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본 연구를 맡아 수행한 안성훈 박사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2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 일 슷

# CONTENTS

국문요약	9
<b>제1장 서론(안성훈)</b>	19
제1절 연구의 목적	21
1. 문제상황 및 연구의 필요성	21
2. 지향점 및 연구목적	22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3
1. 연구범위	23
2. 연구방법	24
<b>제2장 외국인 범죄와 사법통역에 대한 일반적 고찰(안성훈)</b>	25
제1절 외국인 범죄의 현황	27
1. 외국인 범죄의 의의	27
2. 외국인 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	28
3. 국가별 통계	29
4. 외국인 관련 범죄의 증가와 사법통역의 수요증대	30
제2절 사법통역제도의 의의	31
1. 사법통역의 정의	31
2. 사법통역의 목적	32
3. 사법통역제도의 운영현황	33
<b>제3장 외국의 사법통역제도 관련 입법례(이지은)</b>	37

제1절 미국	39
1. 사법통역인에 대한 법제	39
2. 사법통역인 제도의 운용	41
3. 사법통역인 운영의 실제-사법통역인에 관한 텍사스 주법을 중심으로	56
제2절 유럽	64
1. 사법통역인에 대한 유럽연합의 법제	64
2. 유럽국가의 사법통역인 제도-덴마크를 중심으로	69
3. 유럽연합의 사법통역제도개선 권고안	73
제3절 호주	89
1. 사법통역인에 대한 법제	89
2. 사법통역인 제도의 운용	98
3. Stern과 Hale의 호주사법통역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	105
제4절 홍콩	108
1. 사법통역인에 대한 법제	108
2. 사법통역인 제도의 운용	109
제5절 소결	114
<b>제4장 형사소송에서의 사법통역을 둘러싼 문제(안성훈)</b>	117
제1절 형사소송에서의 사법통역	119
1. 수사단계	119
2. 수사단계에서의 문제점	121
3. 공판단계	130
3. 공판단계에서의 문제점	136
제2절 사법통역의 법적성격	140
1. 증거방법으로서의 통역	141
2.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의 통역	143
3. 소결	144
제3절 사법통역인의 공정성과 통역의 정확성	147
1. 형소법 제180조의 의의	147

2. 통역인의 적격성 .....	150
3. 통역인의 공정성과 통역의 정확성 .....	153
제4절 소결 .....	164
<b>제5장 사법통역제도의 개선방안(안성훈) .....</b>	<b>165</b>
제1절 사법통역제도의 입법화 .....	168
1. 사법통역인의 법적지위와 역할 .....	170
2. 사법통역인법(The Court Interpreters Act) .....	170
제2절 사법통역인 직업윤리 규범 마련 .....	178
1. 사법통역인의 지위와 윤리 .....	178
2. 미국 사법통역인의 직업윤리 규범 .....	179
제3절 사법통역인 인증제도 마련 .....	195
1. 문제상황 .....	195
2. 외국의 사법통역인 교육 및 인증제도-미국을 중심으로 .....	199
3. 제언 .....	213
제4절 소결 .....	214
<b>참고문헌 .....</b>	<b>217</b>
<b>Abstract .....</b>	<b>235</b>
<b>부록 .....</b>	<b>247</b>

## 표 차례

〈표 2〉 체류 외국인 현황 .....	28
〈표 3〉 외국인 범죄 죄종별 단속현황 .....	29
〈표 4〉 외국인 범죄 국적별 검거현황 .....	30
〈표 5〉 충남지방경찰청 통역요원 DB(관할 15개 경찰서 현황) .....	35
〈표 6〉 충남동남경찰서의 사법통역인 어권별 현황 .....	35
〈표 7〉 서울중앙지검 사법통역인 등록 현황 .....	35
〈표 8〉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통역인 등록 현황 .....	36
〈표 9〉 수화통역인등록협회(RID) 자격 구분 .....	44
〈표 10〉 사법통번역사 시험인증제 도입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	201
〈표 11〉 미국의 연방 및 주의 사법통역인 자격시험 인증제도 비교 .....	201
〈표 12〉 인증시험형태 조사에 대한 설문결과 .....	204

## 그림 차례

〈그림 1〉 사법통역의 적용범위 및 장소 .....	12
〈그림 2〉 사법통역의 적용범위 및 장소 .....	32
〈그림 3〉 경찰-통역요원-피해자 이해흐름도 .....	120

## 1. 연구의 목적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사회는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들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거주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단일 민족 사회가 아닌 다문화, 다언어, 다인종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이에 비례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법원 등의 공공기관을 찾아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의 불법 체류나 무면허 운전, 사기, 방화, 살인, 강도, 불법취업, 위장결혼, 폭력 등의 외국인과 관련한 각종 범죄 사건이 법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있었던 소말리아 해적 사건은 공해상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한 국내재판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자들에 대한 법정소송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의자·피고인조사, 증인신문, 재판에서의 통역, 변호임 선임절차 등의 여러 절차법적 사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판에서의 통역을 의미하는 사법통역은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제대로 이해해야 할 재판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형사사법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절차 하에서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적정절차의 이념은 형사소송의 기본 이념일 것이다. 그런데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전문한 외국인의 경우 통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미흡하게 이루어진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이 침해되고, 무기평등의 원칙이라는 형사절차상의 정의가 구현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때문에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한국어 구사능력이 제한된 외국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진행되는 형사절차의 과정을 위한 효과적인 통역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법통역 서비스 제공이 법제도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국인을 위한 사법통역 제도나 서비스의 현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며, 앞으로 법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더욱이 기존의 선행연구는 사법통역인 인증제도 도입과 사법통역인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판상의 통역(법정통역)에 국한되지 않고, 재판을 포함한 형사소송절차 전반의 진행과정에서의 사법통역제도에 초점을 두고,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이 당해 형사소송절차에 관여하는 사법기관 및 변호사, 기타 소송참여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법에 의해 부여되는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해 본 후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범위와 방법

본보고서는 현행 형사사법절차상의 사법통역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서론 개관 후, 제2장에서는 기초적인 검토로서 외국인 범죄현황과 사법통역 수요의 증가배경을 살펴보고 사법통역제도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외국의 사법통역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현행 형사소송절차상, 즉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에서의 사법통역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통역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현행 사법통역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사법통역제도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문헌자료 검토와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함과 동시에 국내외의 관련기관을 방문 한 후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관련제도 및 운영 실태를 검토·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사법통역제도의 정확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 3. 외국인 관련 범죄의 증가와 사법통역의 수요증대

국내체류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수사 및 조사, 법원에서의 재판 등에 있어서도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외국인 피의자·피고인을 상대로 한 수사와 공판에 있어서는 언어장벽이 큰 장애가 되므로 업무 수행에 많은 곤란과 어려움이 수반된다. 형사소송절차에 부합하는 공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수사·공판을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형사절차에서의 사법통역의 필요와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사법통역의 수요는 한층 더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 4. 사법통역제도의 의의

#### 가. 사법통역의 정의

사법통역(Judiciary Interpreting)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까지 없지만 민사·형사사건을 포함하는 모든 사법절차에서 필요로 하는 통역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관련된 통역을 가리킨다. 즉, 사법절차에서 형사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이 구사 가능한 언어와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정,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 유치장,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사법기능이 실행되는 기관에서 진행되는 형사절차에 제공되는 통역서비스를 말한다. 본 보고서에서 기술되는 사법통역의 의미 또한 위의 정의와 같다.

사법통역이라는 용어 또한 국내외의 문헌을 살펴보면 Judiciary Interpreting(사법통역)과 Court Interpreting(사법통역, 재판통역), Legal Interpreting(법률통역, 법률번역)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판과정에서의 통역을 주목하기 때문인지 국내외적으로 Court Interpreting(사법통역)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

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법통역은 법정이라는 영역의 한계가 주어지고, 법률통역 역시 통역범위가 법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용어사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사법통역은 단순히 법정에서의 통역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수사를 비롯하여 법정에서의 재판과정, 그리고 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영역을 포괄할 수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사법통역이라는 표현이 위의 정의내용에 보다 부합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사법통역의 적용범위 및 장소

#### 나. 사법통역의 목적

사법통역의 기본목적은 피고인(또는 피의자)이 당해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사법기관 및 변호사, 기타 소송참여자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의해 부여되는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형사사법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형사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절차 하에서 국가형벌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적정절차의 이념(due process of law)은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피고인은 소송의 주체로서 독립된 권리를 가지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헌법 제12조도 적정절차의 이념을 반영하는 형사피고인과 피의자의 기본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

다. 또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진술권보장(동법 제268조) 등 적정절차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적정절차의 원칙 하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무기평등의 원칙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각국의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구사력이 제한된 외국인의 경우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와의 의사소통 및 관련 증인의 증언내용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법이 규정한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와 무기평등 원칙의 실현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외국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있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인 효과적인 통역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이다.

## 5. 외국의 사법통역제도 관련 입법례

국제인권규약 B규약 제14조 3항 (a), (f)는 모든 사람은 그 형사상 죄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죄의 성질 및 이유를 통지받고, 법원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거나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절차에서 형벌권 발동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권리의 존재와 내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법정절차 특히 형사절차에 있어서 통역은 사소한 뉘앙스의 차이에서 죄의 성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일이다.

긴 이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일찍이 사법통역제도가 도입되었다. 미국에서 사법통역제도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이민으로 구성된 국가라는 측면도 있지만 영미법이 가지는 특징 때문이기도 하다. 영미법상의 당사자 주의와 구두변론주의 그리고 배심제도가 사법통역제도 확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비법률가인 배심원에게 통역을 통해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판례를 통해 사법통역이 하나의 권리로

인정되었으며, 뒤이어 사법통역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각 주에서 공인사법통역인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엄정하게 자격을 심사하고 있다. 동시에 사법통역인에게 정확하고 고도의 전문가적 윤리규정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민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다문화 국가인 호주의 경우 남호주와 빅토리아 주의 경우는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주는 관습법에 따라 각 법원이 통역여부 제공에 관해서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다. 호주의 경우 연방과 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독립기구인 NAATI가 인증시험을 시행하는 등 통역인과 번역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국제재판소의 선진적인 통역관행을 국내재판에 들여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 내 회원국들은 유럽인권협약을 근거로 사법통역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사법통역과 법률번역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2차에 걸친 그로티우스 프로젝트와 후속 프로젝트인 AGIS를 진행한 바 있다. 유럽 각국은 간단한 면담이나 이력서 체크에서 정규시험까지 상이한 방식으로 통역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특정 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통역인 시험을 거치는 허가받은 통역인과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을 거친 허가받지 않은 통역인 양자를 인정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통역인 채용이 활발해지면서 윤리기준이 제시되었다. 유럽연합은 EU차원에서 사법통역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권고안을 내놓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콩의 경우는 사법통역을 받을 권리가 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있다. 홍콩 사법통역제도의 특징은 외국어 통번역 못지않게 중국어 방언 통역이 활성화 되어있다는 것이다. 홍콩은 공무원임용 시험을 통해서 사법통역인을 선발하고 있으며, 사법통역인들이 기본적인 업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들을 문서화하여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 각국의 사법통역인 제도를 살펴보았다. 많은 나라에서 통역을 받을 권리를 피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거나 혹은 인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많은 국가들이 사법통역인 제도 운용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사법통역인의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격한 자격인증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6. 형사소송에서의 사법통역을 둘러싼 문제

### 가. 수사단계에서의 문제점

수사단계에서 통역 역할의 중요성이 잘 나타나는 부분은 외국인 피의자와 관련한 부분이다. 외국인 피의자는 우리나라 말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검사나 사법경찰관도 해당 외국어를 몰라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에 통역인의 필요성 및 그 역할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는 비록 수사과정 뿐만 아니라 재판과정 그리고 형의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공통되는 문제로서 외국인 범죄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이기도 하다. 더구나 외국인은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 습관,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사절차 및 재판제도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통역을 통하더라도 진술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거나 파악함에 있어서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외국인 피의자에게 우리나라 형사절차의 흐름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그 방어권 행사에 유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 나. 공판단계에서의 문제점

사법통역인의 통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기소장 등본송달 직후에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번역된 내용을 전달하고 공판심리에서 모두절차 및 판결선고를 비롯한 통역을 하여도 그 내용이 정확하게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판결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자유권규약 14조 항 (a) 규정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며 한국어를 이해하는 평균적인 사람이 정당하게 행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제인권법상 해당 피고인에게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게 된다. 또한 공판심에 이러한 사법통역인이 통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 등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유능하고 적정한 통역인 확보가 불가결하다.

#### 다. 사법통역의 법적 성격

사법통역은 증거방법의 의미로서의 통역과 통역을 매개함으로써 소송관계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정한 심리를 담보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도모한다고 하는 의미로서의 통역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판례 및 학설은 법원의 보조자로서의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예를 들어 피고인이 통역을 요구하였을 때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통역을 붙일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례는 형소법 제180조의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해당 유무는 법원이 해당 인물의 「학력, 경력, 직업,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여 통역을 붙일지 여부의 결정은 오로지 법원의 소송지휘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일본 판례에서는 수사단계에서 녹취된 진술조서에 대해서 피고인질문이나 증인신문을 통해서 통역의 정확성을 음미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의 통역인의 부적격성이나 통역의 부정확성의 문제로부터 바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수사단계에 있어서 요구되는 통역능력은 일상 사회생활에 있어서 회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와 견해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하여 법률의 전문지식에 대해서도 「법정에서의 통역인과 달리」, 통상 일반적인 상식정도의 지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여 수사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통역능력 정도를 완화하는 것을 인정하는 판례도 보인다.

그러나 피의자·피고인이 권리의 내용을 이해하고 수사단계를 포함해서 대립당사자인 검찰관이나 수사기관의 주장과 공격내용을 알고 변호인과 방어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피의자·피고인과 수사기관, 사법기관, 변호인과의 사이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보장되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피의자·피고인의 통역을 받을 권리는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와 방어권행사에 있어서 불가결한 전제라고 하는 견해도 유력하다. 또한 이 점에 대해서는 인권B규약 14조 3항(a) 및 (f)가 무료통역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유럽인권규약 6조 3항(e)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사단계를 포함해서 피의자

· 피고인에게는 통역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적정절차보장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라. 사법통역인의 공정성과 통역의 정확성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한국어 구사능력이 제한된 외국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기소 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에 있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적정한 통역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적정절차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이 때의 적정한 통역이란 통역인의 공정성과 통역의 정확성에 다름 아닐 것이다.

### 7. 사법통역제도의 개선방안

다문화, 다언어, 다인종 사회국가들은 그 필요성을 일찍부터 깨닫고 사법통역인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체류 외국인의 수와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 예외가 아니다.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서로 생활하고 부딪치다보니 갈등도 생기고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다. 이에 따라 이제 사법통역인에 대한 수요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정된 사법통역인의 확보는 현재로서는 요원하기만 하다.

이에 따라 최근 통역인의 선정 및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통역인은 몇 %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통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축어적으로 치환할 뿐이거나 혹은 말만 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통역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관계자들 사이에서의 「어떻게든 통역만 되면 상관없다, 일상회화만 가능하면 그것만으로 족하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통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사법통역제도 관련 근거법률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법통역의 특성상 요구되는 전문적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법률용어의 이해와 사법통역인의 역할과 윤리에 대한 훈련이

요구 되는 사법통역인으로서의 전문성은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효과적인 사법통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법통역인으로서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언어 능력과 함께 소송절차에 조력하는 공적 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과 소양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법통역인의 통역능력과 전문가적 자질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에 관한 법률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재판부, 검사, 피고인, 증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사법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사법정의의 실현과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법통역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통역인이 사법통역 전문가로서 고도의 언어적 능력을 갖추고 사법통역인으로서의 윤리, 행동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법통역인을 인정한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하에서 논의할 미국의 사법통역인법과 실무에서 사용하는 규칙 및 윤리행동강령 등은 우리나라의 사법통역제도의 입법화에 있어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최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발효되어 법이 규정하는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서는 배심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형사소송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과 국내체류외국인의 증가로 인하여 형사절차에서의 사법통역인의 필요와 역할의 중요성이 한층 더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법통역인의 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 그리고 통역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언어능력의 검증시스템 마련은 한국 사법제도에서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제1장 서론

안성훈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문제 상황 및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세계화,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여러 국가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증가하는 환경에 놓여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들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거주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단일 민족 사회가 아닌 다문화, 다언어, 다인종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이에 비례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법원 등의 공공기관을 찾아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의 불법 체류나 무면허 운전, 사기, 방화, 살인, 강도, 불법 취업, 위장결혼, 폭력 등의 외국인과 관련한 각종 범죄 사건이 법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있었던 소말리아 해적 사건은 공해상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한 국내재판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자들에 대한 법정소송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의자·피고인 조사, 증인신문, 재판에서의 통역, 변호임 선임절차 등의 여러 절차법적 사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판에서의 통역을 의미하는 사법통역은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제대로 이해해야 할 재판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 헌법은 이러한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지만,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국제인권 B규약)14조 3항(f)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할 수 없거나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는 것”이라고 명문으로 권리를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를 비준하고 있다. 이 규약의 자력 집행력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를 비준하고 있는 이상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어도 형사사법의 운용상에 있어서는 그 취지를 가능한 한 살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사건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그에 대한 예산이나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2. 지향점 및 연구 목적

형사사법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절차 하에서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적정절차의 이념은 형사소송의 기본 이념일 것이다. 그런데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전무한 외국인의 경우 통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미흡하게 이루어진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이 침해되고, 무기평등의 원칙이라는 형사절차상의 정의가 구현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때문에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한국어 구사능력이 제한된 외국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진행되는 형사절차의 과정을 위한 효과적인 통역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법통역 서비스 제공이 법제도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국인을 위한 사법통역 제도나 서비스의 현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며, 앞으로 법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더욱이 기존의 선행연구는 사법통역인 인증제도 도입과 사법통역인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판상의 통역(법정통역)에 국한되지 않고, 재판을 포함한 형사소송절차 전반의 진행과정에서의 사법통역제도에 초점을 두고,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이 당해 형사소송절차에 관여하는 사법기관 및 변호사, 기타 소송참여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법에 의해 부여되는 방어권을 실

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해 본 후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1. 연구범위

본보고서는 현행 형사사법절차상의 사법통역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제2장에서는 기초적인 검토로서 외국인 범죄의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사법통역 수요의 증가배경을 살펴보고 또한 사법통역제도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사법통역제도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의 현행제도와 외국의 제도를 비교하는데 유용한 준거가 될 것이며, 본 보고서가 목적으로 하는 현행 사법통역제도의 개선방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가 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외국의 사법통역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 유럽, 호주 등 선진 각국에서의 사법통역제도의 도입배경과 법적 근거, 그리고 운영현황 등을 개관해 보고, 특히 미국의 형사사법기관과 사법통역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얻은 통계자료와 자문자료를 활용하여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는 우리나라의 사법통역제도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바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현행 형사소송절차상, 즉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에서의 사법통역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통역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을 바탕으로 사법통역제도의 근거와 의의, 그리고 사법통역인의 역할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또한 외국의 판례와 학설을 참고하여 비교법적인 검토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 작업은 현행 사법통역제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가 될 것이다.

제5장에서는 현행 사법통역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현행 사법통역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찍이 사법통역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사법통역제도 중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기초로 하여 현행 사법통역제도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이고 이를 위해 법률적·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았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태조사를 기본적인 방법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위해 사법통역제도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문헌자료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외국의 사법통역제도와 실제에 관한 문헌 등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도 진행하였다. 또한 국내의 사법통역 현황의 분석을 통해 현 사법통역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한 법률적 검토 및 외국의 사법통역제도와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문헌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 검찰, 법원 등을 참관하고 사법통역관련 실무관계자, 정부의 담당공무원, 검사, 통번역대학원 교수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국, 일본 등의 형사사법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외국의 제도 및 운영 실태를 검토·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사법통역제도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2장

# 외국인 범죄와 사법통역에 대한 일반적 고찰

안 성 훈



# 외국인 범죄와 사업통역에 대한 일반적 고찰

## 제1절 외국인 범죄의 현황

### 1. 외국인 범죄의 의의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그 법적지위 및 체류자격이 상이하지만 본고에서 외국인의 범주는 광의로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협의로는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해서 일정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일반 외국인을 말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무국적자 또한 외국인으로 간주되고, 정식의 입국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당시 정해진 체류기간을 넘기고도 계속 국내에 거주하는 것 또는 밀입국한 후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 또한 국내체류 외국인의 개념에 포함된다.

**표 2** 체류 외국인 현황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합법체류자	698,161	842,809	958,377	990,522	1,092,900	1,227,297
불법체류자	211,988	223,464	200,489	177,955	168,515	167,780
체류외국인	910,149	1,066,273	1,158,866	1,168,477	1,261,415	1,395,077

\* 경찰백서 2012

따라서 본고에서 외국인 범죄라 함은 위에서 말한 광의 및 협의의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 구체적으로 범죄의 주체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즉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범죄로써,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sup>1)</sup>

## 2. 외국인 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

외국인 범죄 동향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살인, 강도, 강간, 마약 등 강력범죄의 증가이다. 2011년 발생한 외국인 전체범죄 26,915건 가운데 이들 살인 103건, 강도 157건, 강간 308건 마약 243건으로 3%를 차지하는 811건이다. 최근 들어 높은 증가율을 보여 온 마약류에 대한 범죄는 2011년 대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전년도인 2010년에는 720건에 달하였다. 또한 강력범죄와 더불어 외국인들이 중심이 된 보이스 피싱 같은 생활형 범죄도 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2만6916명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19.4%가 증가한 것이다. 최종별로는 폭력범이 78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능범 3549명, 절도범 1766명, 강간범 308명, 마약류사범 24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1) 일반범죄 : 사기 등 지능범은 2004년 1,965명에서 2008년 7,472명으로 급증했고 2009년 이후 다소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3,549에 이르렀다.

1)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범한 죄를 말하나 형법 제5조에서 정한 내란죄, 외환죄 등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서 범한 경우도 포함된다. 예컨대 한미행정협정에 의하여 체류하는 미군, 군속 및 그 가족들에 의한 범죄, 중국국적의 조선족, 미국시민권이 있는 재미교포, 일본국적의 재일교포에 의한 범죄는 모두 외국인 범죄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은 헌법과 판례상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북한주민에 의한 범죄는 외국인 범죄가 아니다.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는 점점 증가하다가 2010년 약간 감소하였다 2011년 다시 증가했으며 강간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2) 살인범죄 : 외국국적 살인범은 2004년 60명, 2005년 42명, 2006년 72명, 2007년 54, 2008년에는 85명, 2009년에는 103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가 2010년 83명으로 약간 줄어들었으나 2011년 다시 103명을 기록하였다.
- (3) 강간범죄 : 강간범죄도 2004년 52명, 2005년 62명, 2006년 68명, 2007년 114명, 2008년 114명, 2009년 126명, 2010년 156명, 2011년 308명으로 계속 늘었다.
- (4)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저지르는 범죄를 보면 2004년 대비 2011년 살인 71.6%, 강도 0%, 강간 492.3%, 절도 114%, 폭력 223%, 지능범 80.6%, 마약 사범 11.5% 증가하였다.

표 3 외국인 범죄 죄종별 단속현황

(단위: 명)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04	9,103	60	157	52	825	2,424	1,965	218	3,402
05	9,042	42	124	62	821	1,919	3,340	152	2,582
06	12,657	72	107	68	971	2,483	6,229	73	2,654
07	14,524	54	118	114	1,213	3,369	5,685	231	3,740
08	20,623	85	133	114	1,343	4,940	7,472	694	5,842
09	23,344	103	260	126	2,001	5,322	4,792	778	9,962
10	22,543	83	221	156	1,741	5,885	4,487	720	9,250
11	26,915	103	157	308	1,766	7,830	3,549	243	12,959

\* 경찰청 홈페이지 외사통계실 참조(www.police.go.kr)

### 3. 국가별 통계

외국인 범죄 사범 연평균 증가율은 2011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26.1%), 필리핀(25.6%), 일본(22.6%) 순으로 외국인 범죄 연평균 증가율 19.4%를 능가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적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태국, 몽골인의 범죄는 전체 중 약 67.3%다. 이들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많아서 범 죄율이 높은 편이다.<sup>2)</sup>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전년대 비 0.4%(735명) 감소한 16만7780명이었다. 전체 체류외국인(139만5077명)의 12% 수준이다. 국적별로 중국(40%), 베트남(11.3%), 태국(8.4%), 필리핀(7.1%), 몽골(5.8%) 등의 순이다. 불법체류자의 범죄율은 0.92%로 전체 외국인 범죄율 1.93%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국적별로는 전체 체류외국인 중 최다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피의자가 58.2%(1만567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2438명·9.1%), 미국(1788명·6.6%), 몽골(1503명·5.6%), 태국(944명·3.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국가의 피의자가 전체 외국인 피의자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외국인 범죄 국적별 검거현황

(단위: 명)

	계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몽골	기타
2010	22,543	12,428	1,509	106	258	426	1,099	2,324	1,304	3,089
2011	26,915	15,677	1,788	130	227	535	944	2,438	1,503	3,673
증감 (%)	▲19.4	▲26.1	▲18.5	▲22.6	▽12	▲25.6	▽14.1	▲4.9	▲15.3	▲18.9

\* 경찰백서 2012

#### 4. 외국인 관련 범죄의 증가와 사법통역의 수요증대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국내체류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도

2) 반면 소파(SOFA) 사범은 456명으로 2010년에 비해 7.1%가 감소하였다. 2010년 7월2일부터 폐지됐던 통행금지가 미군에 의한 강력사건 발생으로 인해 지난해 10월7일부터 재실시되면서 미군에 의한 범죄가 일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상별로 보면 미군에 의한 범죄(341명)가 전체 소파범죄의 7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과 비교해 군속 등의 범죄는 소폭 증가했으나 야간통행 금지의 적용을 받는 미군에 의한 범죄는 10.3%(39명) 줄어들었다. 『경찰백서 2012』 참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수사 및 조사, 법원에서의 재판 등에 있어서도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는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외국인 피의자·피고인을 상대로 하는 수사와 공판에 있어서는 언어장벽이라는 큰 장애가 존재하므로 업무 수행에 있어서 많은 곤란과 어려움이 수반되지만, 형사소송절차상의 체계에 부합하는 공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수사·공판을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형사절차에서의 사법통역의 필요와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사법통역의 수요는 한층 더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 제2절 사법통역제도의 의의

### 1. 사법통역의 정의

사법통역(Judiciary Interpreting)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까지 없지만 민사·형사사건을 포함하는 모든 사법절차에서 필요<sup>3)</sup>로 하는 통역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형사사건에 관련된 통역을 가리킨다.<sup>4)</sup> 즉, 사법절차에서 형사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이 구사 가능한 언어와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정,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 유치장,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사법기능이 실행되는 기관에서 진행되는 형사절차에 제공되는 통역서비스를 말한다.<sup>5)</sup> 본 보고서에서 기술되는 사법통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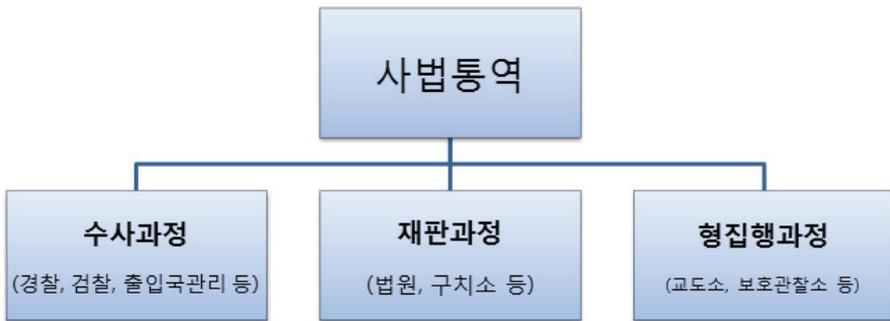
3) 노동쟁의, 교통사고의 합의, 결혼이나 이혼 등의 민사사건에서도 통역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에 따른 고용·임금관련 문제와 국제결혼과 관련된 가정문제가 증가하면서 민사사건 관련 사법통역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4) 조희철 「일본 법정통역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통번역학연구』 제13권 제1호(2009), 187쪽.

5) 최철 「법정통역의 법적 의의와 제도화에 관한 고찰: 미국 판례와 적정절차의 원칙을 중심으로」 한국의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통번역학연구』 제12권 제2호(2009), 260쪽.

의미 또한 위의 정의와 같다.<sup>6)</sup>

사법통역이라는 용어 또한 국내외의 문헌을 살펴보면 Judiciary Interpreting(사법통역)과 Court Interpreting(법정통역, 재판통역), Legal Interpreting(법률통역, 법률번역)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판과정에서의 통역을 주목하기 때문인지 국내외적으로 Court Interpreting(법정통역)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정통역은 법정이라는 공간적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며, 법률통역 역시 통역범위가 법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용어사용가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사법통역은 단순히 법정에서의 통역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수사를 비롯하여 법정에서의 재판과정, 그리고 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영역을 포괄할 수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사법통역이라는 표현이 위의 정의내용에 보다 부합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사법통역의 적용범위 및 장소

## 2. 사법통역의 목적

사법통역의 기본목적은 피고인(또는 피의자)이 당해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사법

6) 본 보고서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사법통역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형사사법절차상 사법통역”이라는 제목을 사용하였다.

기관 및 변호사, 기타 소송참여자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관을 포함한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의해 부여되는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sup>7)</sup>

형사사법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형사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절차 하에서 국가형벌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적정절차의 이념(due process of law)은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이다.<sup>8)</sup> 이러한 원칙에 따라 피고인은 소송의 주체로서 독립된 권리를 가지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헌법 제12조도 적정절차의 이념을 반영하는 형사피고인과 피의자의 기본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진술권보장(동법 제268조) 등 적정절차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적정절차의 원칙 하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무기평등의 원칙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각국의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구사력이 제한된 외국인의 경우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와의 의사소통 및 관련 증인의 증언내용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법이 규정한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와 무기평등 원칙의 실현은 원칙적으로 봉쇄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외국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있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통역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이다.<sup>9)</sup>

### 3. 사법통역제도의 운영현황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서 140만 명

7) 최철 위의 논문, 260쪽

8) 적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원칙은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유래한 것으로, 공정한 법절차에 의하여 사법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원칙을 말한다.

9) 최철 위의 논문, 260쪽

에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제결혼, 동남아 노동인구의 유입 등으로 인한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내 체류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 범죄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사법절차상 통역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할 통역인의 확보는 시급한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형사사법절차상 사법통역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지 현재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은 각각 독자적으로 사법통역요원을 선발하고 이들을 실무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은 큰 틀에서의 전체적인 유의사항만 두고 있을 뿐, 사법통역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사법통역인의 선발 및 관리 또한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형사사법절차상 사법통역제도의 전체적인 운영현황 파악은 어려운 실정으로 다만 실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적인 현황을 통해 단지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방문한 기관과 수집된 부분적인 자료를 검토해 봄으로 경찰, 검찰, 법원에서의 사법통역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경찰(충남지방경찰청)

이 지역의 체류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이들에 대한 다문화 치안활동 및 외국인 범죄 증가에 따른 수사통역 등의 통역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각 관할 경찰서의 외사과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사법통역인을 선발·관리하는 한편 상급기관인 충남지방경찰청 외사국이 마련한 「경찰통역요원 활용 및 개선방안」이라고 하는 지침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정통역요원의 확보·관리 및 통역요원 활용·운영, 그리고 유의사항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통역요원 교양자료를 마련하여 통역요원 준수사항, 13개 국어 미란다 원칙, 그리고 통역요원을 위한 법률용어집 등을 제공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등록되어 있는 사법통역인은 경찰관(17명)과 민간인(168명)을 포함하여 총 185명이 등록되어 있다.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표 5 충남지방경찰청 통역요원 DB (관할 15개 경찰서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계	동남	서북	서산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연기	금산	청양
합 계	185	18	12	25	21	7	7	15	11	6	13	10	12	4	14	10
경찰관	17	1	1	2	2					3	1	3	1		1	2
민간인	168	17	11	23	19	7	7	15	11	3	12	7	11	4	13	8

\*천안동남경찰서 외사과 자료협조

방문한 충남동남경찰서의 사법통역인 어권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표 6 충남동남경찰서의 사법통역인 어권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계	중국어	영어	일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파키스탄어	인도어	우즈베크어	스리랑카어	네팔어	스페인어
합 계	18	2	2	1	2	2	1	1	1	1	1	1	1	1	1
경찰관	1		1												
민간인	17	2	1	1	2	2	1	1	1	1	1	1	1	1	1

\*천안동남경찰서 외사과 자료협조

## 나. 검찰

검찰 또한 전체적인 운영현황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서울중앙지검 사법통역인 등록 현황

(단위: 명)

언어	영어	중국어	일어	몽고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불어	스페인어	기타
인원	19	17	11	5	7	4	2	9	30

\* 2012년 11월 말 현재

다. 법원

외국인이 국내 법정에서 서는 일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에서의 사법통역인에 대한 수요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법원에서는 형사법정 통역인 교육용으로 『사법통역인편람』을 제작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통역인 활용·운영, 그리고 유의사항에 관한 내부 매뉴얼을 작성하여 재판시 사법통역인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외국인 범죄를 다루는 재판에서 통역인이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때문인지 몰라도 경찰이나 검찰에 비해 사법통역 관련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현재 가장 많은 외국인 사건을 다루고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사법통역인은 약 236명 정도이다. 언어별로 사법통역인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통역인 등록 현황

(단위: 명)

언어	인원	언어	인원
영어	31	터키어	1
일본어	44	몽골어	13
중국어	68	파키스탄어	4
스페인어	12	방글라데시어	2
러시아어	14	포르투갈어	2
독일어	9	이란어	4
불어	8	필리핀어	1
베트남어	5	네팔어	1
이탈리아어	1	폴란드어	1
아랍어	4	스웨덴어	1
인도네시아어	4	캄보디아어	1
인도어	1	스리랑카어	1
태국어	3	기타 (수화)	9

\* 2012년 11월 말 현재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3장

# 외국의 사법통역제도 관련 입법례

이 지 은



# 외국의 사법통역제도 관련 입법례

## 제1절 미국

### 1. 사법통역인에 대한 법제

미국법정에서의 사법통역인의 역할은, 영미법계 보통법의 전통 하에 당사자주의<sup>10)</sup>, 구두변론주의와 배심제<sup>11)</sup>의 특성을 갖는 형사법제의 영향을 받게 된다.<sup>12)</sup>

10) 당사자주의(adversarial system)란 소송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를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소송구조를 말하며, 변론주의라고도 한다. 당사자주의에서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에게 증거를 수집, 제출하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증거가 법원에 제출될 수 있고, 법원은 순수한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여 피고인의 자유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제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2010), 40-41쪽.

11) 배심제도는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사실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 법률의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비전문가인 배심원에게 증거가 제시되고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통역에 의한 외국인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내용의 정확하고 생생한 전달이 더욱 중시된다. 위의 책, 83쪽.

12) 일찍이 사법통역제도가 도입된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사법통역인의 법적지위와 역할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영미법 체제에서 형사소송절차가 갖는 기본적 특징인 당사자주의와 배심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영미법체제에서의 당사자주의와 배심제는 후술되는 사법통역인의 법적지위와 역할에 대한 영미법계 법원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법통역인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도 고려해야할

당사자주의에 기초하여 배심원 앞에서 행해지는 변론과정에서 피고인의 적정절차와 관련된 권리 보호를 위해, 미국법원은 형사소송의 진행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참여권을 오래전부터 인정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United States v. Lewis, 1892)<sup>13)</sup>, 재판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참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언어적 참여권(linguistic presence)’라는 개념이 Arizona v. Natividad(1974)<sup>14)</sup> 판례에 의하여 성립되었다.<sup>15)</sup> 더 나아가 1981년 People v. Chavez 사건에서는 이중 언어 변호인만으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sup>16)</sup>. 형사피고인의 참여권의 보장을 통한 적정절차 원칙의 구현과 이를 위한 사법통역의 필요성에 대하여 미국법원은 위의 판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정하여 왔으며, 사법통역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미국은 연방법원 통역에 관한 대대적인 평가 및 점검 이후 1978년 사법통역인법(the Court Interpreters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정부차원에서 사법통역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법으로서 법원행정처장(Director of Administrative Office)이 연방 사법통역인 인증시험(FCICE)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사법통역인 관리를 맡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후 미국에서는 사법통역인법을 수정한 1988년 사법 개선 및 사법 접근법(the Judicial Improvements and Access to Justice Act)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두 가지 법은 민·형사 및 미국정부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 및 절차에 적용된다. 1988년 법 개정 이후 인증제도는 언어별로 확대되었고, 검증과정이 세분화되었다.

---

시사점을 제공한다.

13) United States v. Lewis, 142 U.S. 370 (1892).

14) Arizona v. Natividad, 111 Ariz. 191, 194, 526 P.2d 730, 733 (1974) (requiring interpreter at trial proceedings for non-English-speaking defendants).

15) Mikkelsen, H., "The Court Interpreter as Guarantor of Defendant Rights"(<http://www.acebo.com/papers/guarantr.htm>)

16) People v. Chavez, 124 Cal. App. 3d 215, 177 Cal Rptr. 306 (Cal. App. Dist.1, 1981).

## 2. 사법통역인 제도의 운용

### 가. 사법통역인에게 요구되는 통역기술

법정절차에서의 통역은 일상회화 통역이나 회의에서 요구되는 정확성과는 다른 고도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미연방법원은 사법통역인에게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통역기술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다.<sup>17)</sup>

- 영어와 다른 언어에 능통할 것
- 중립성
- 원래 화자의 의도한 의미를 오도할 수 있는 요소를 첨가하거나 생략함 없이 화자의 언어에서부터 청자의 언어로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 법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동시통역에 능하여야 하며, 순차통역 및 문장구역 기술을 갖추어야 함
- 적절한 속도와 자세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 법정매너와 직업인으로서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

### 나. 사법통역인의 인증 및 관리

#### 1) 사법통역인의 등급

사법통역인 등급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사법통역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인증 통역인(certified interpreter)는 법원의 시험을 통과한 통역인으로서 순차 및 동시통역과 문장구역을 수행할 수 있는 통역인이다. 현재 스페인어와 미국수화 언어만 연방 사법통역인 인증시험이 시행되고 있다.<sup>18)</sup>

17) <http://www.uscourts.gov/FederalCourts/UnderstandingtheFederalCourts/DistrictCourts/CourtInterpreters/InterpreterSkills.aspx>

18) <http://www.uscourts.gov/FederalCourts/UnderstandingtheFederalCourts/DistrictCourts/CourtInterpreters/InterpreterCategories.aspx> 참조

다른 언어 통역인은 각 지역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평가, 심사를 한다. 인증시험이 없는 언어의 경우, 인증 통역인으로 칭하지 않고, 전문 통역인(Professionally qualified interpreter)과 언어숙달 통역인(Language skilled interpreter) 두 그룹으로 나눈다. 전문 통역인은 통역경력과 통역인협회에서 인정받아야 하며, 최소 50 시간 이상 회의통역경험과 평판이 좋은, 동일한 언어 조합의 현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sup>19)</sup> 언어숙달 통역인(임시 통역인)은 법원으로부터 해당하는 언어 통역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인정받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되는 것으로 가장 보수 수준이 낮으며 통역기술도 낮다.<sup>20)</sup>

## 2) 사법통역인 인증시험

사법통역인자격인증시험(Court interpreter certification examination)은 구술, 필기시험으로 구성되며, 합격자는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에 등록하고 신원조회를 거치면 활동 가능하며, 이틀간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 주 사법통역인시험은 주 별로 다르며, 모든 주에 걸친 단일 인증제도는 없다.<sup>21)</sup> 연방차원에서는 법원행정처(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가 사법통역인 시험을 담당하며, 일부 주에서는 연방대법원이 통역인 인증을 감독하며, 법원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주도 있는 한편 전혀 인증요건이나 관리 감독체제가 없는 주도 있다.<sup>22)</sup>

연방 인증통역인시험(스페인어통역)은 80점 이상이 합격점이며, 한국어를 포함하여 아랍어, 북경어, 광둥어,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어, 불어, 아이티 크레올어, 라오스어, 소말리아어, 러시아어, 폴란드어, 터키어, 베트남어 등은 합격점이 70점이다.<sup>23)</sup> 2002년 연방 사법통역인 시험합격률이 22%를 기록하였다. 언어별로 합격률

19) Mathers, C. M., *Sign Language Interpreters in Court: Using Best Practices*, (Bloomington: Authorhouse, 2007), p. 27.

20) Mathers, C. M., *ibid*, p. 27.

21) Helmerich, C., *Court interpreting: The U.S. v EU a brief comparison of our realities*. H. Keijzer-Lambooy and W. J. Gsille (eds.), *Aequilibrium: Instruments for lifting language barriers in intercultural legal settings*, (ITV Hogeschool, 2005), p. 186; 김진아 · 정혜연 · 이상빈 『국내 사법통역 실태조사 및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개선 방향 모색』 서울: 법원행정처, 70쪽.

22) Helmerich, *ibid*, p. 186.

23) Bromberg, J. and Jesionowski, I. *Trends in court interpreter training*.

의 큰 편차가 있어 뉴저지 지역 사법통역인 동시통역 시험의 경우 2%~29%를 기록한다.<sup>24)</sup> 호주도 통역인 자격인증시험 합격률이 20% 미만이다. 이처럼 공통적으로 통역인시험 합격률이 낮은 것은 그만큼 통역기술이 습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족한 통역인 양성을 위해서 그리고 시험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사법통역인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고, 소수언어의 경우 늘 교육기회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국립주법원센터(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가 시험을 실시할 주에서 단기교육형태인 주말 워크샵을 열어서 합격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sup>25)</sup>

캘리포니아는 통역인시험을 최초로 도입한 주로서 시험운영 초창기에는 시험문제와 기준에 문제가 많았지만 차츰 시험제도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법정에서 통역하게 되는 모든 통역인들이 통역하기 전에 자격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역인 자격검증은 언어 및 통역능력검증 기술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사법통역인의 능력을 검증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며 인증시험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미국내 사법통역인 시험문제와 기준이 주 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항상 치밀하고 정교한 시험제도를 갖추어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증을 받은 통역인 집단 내에서 통역기술과 수준이 균일하지 않다고 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sup>26)</sup>

### 3) 수화통역인 인증

수화통역의 경우, 수화통역인등록협회(RID)에서 법정 수화통역 전문가 자격증(SC: I)을 수여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학력, 교육, 경력 등 자격요건에 대한

---

<http://site.interpretereducationonline.com/wp-content/uploads/2010/08/Trends-in-court-interpreter-training.pdf> (2010, p. 36)

24) Bromberg and Jesionowski, *ibid*, p. 36.

25) Mikkelson, H. and Mintz, H., Orientation workshops for interpreters of all languages: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ideal world and reality. Carr, S., Roberts, R., Dufour, A., and Steyn, D. (eds.), *The Critical Link: Interpreters in the community*, (Amsterdam: John Benjamins, 1997), 55-63.

26) Gonzalez R. D., Vasquez, V. and Mikkelson, H. *Fundamentals of court interpretations: Theory, policy and practice*. (Durham: Carolina Academic Press, 1991), p. 541-543.

증빙서류를 심사 받고, 필기시험과 통역수행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2005년 현재 RID에서는 자격을 네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sup>27)</sup>

**표 9** 수화통역인등록협회(RID) 자격 구분

1그룹	RID 회원 전공 불문BA/BS 학사 또는 통역 준학사(AA)과정 이수. RID 인증 후 5년간 일반 통역경험 최소 50시간 사법통역 및 멘토링 경험 증빙. 30시간 법률교육 이수
2그룹	RID 회원 분야 불문 준학사 과정 이수. RID 인증 후 5년간 일반 통역경험 최소 75시간 사법통역 및 멘토링 경험 증빙. 50시간 법률교육 이수
3그룹	RID 회원 RID 인증 후 5년간 일반 통역경험 최소 100시간 사법통역 및 멘토링 경험 증빙. 70시간 법률교육 이수
4그룹	현재 법정 수화통역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재시험이 강제요건은 아니지만 추천사항)

RID 필기시험은 100개 객관식 문제로 구성되며, 사법제도, 법률언어, 팀통역문제와 전문성 등 네 가지 영역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 4) 기타 사법통번역 분야 직업협회가 개발 인증제도

미국 사법통번역 분야에서 직업협회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사법통번역인협회(NAJIT), 미국번역사협회(ATA), 수화통역인 등록협회(RID)가 주요 단체들인데 각 단체별로 시험과 인증제도를 개발하고 있다. NAJIT 인증시험은 영어-스페인어 양방향만 있다. ATA 인증프로그램은 번역에만 국한되며 아랍어, 덴마크어, 화란어, 불어, 독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를 포함한 12 개 언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것과 영어에서 중국어, 덴마크어, 화란어, 불어, 독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12개 언어로 번역하는 시험 두 종류가 있다. 그러나 ATA 번역시험은 사법 분야 전문번역사 시험이 아니라 일반적인 번역기술시험이다. 수화통역인에 대해서는 1972년부터 일반 인증시험을 시행해왔는데 여기에 추가로

27) Mathers, C. M., *ibid*, p. 11-12.

법률기술 자격증을 제정하였다.<sup>28)</sup>

### 5) SCICC

미국에서는 1995년 주 사법통역인 인증을 위한 컨소시엄(SCICC)이 발족되었다. SCICC는 국립주법원센터(NCSC)에서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시험제도를 개발하기 위해 만든 컨소시엄으로서 뉴저지, 워싱턴 등 영어 비사용자 비율이 높은 주들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에서는 인증시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증시험개발을 촉진하고, 시험기준을 확립하며, 시험자료를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여 회원 주 및 회원 기관 간의 의사소통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29)</sup> 2007년 말 현재 40개 주가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화를 제외하고, 한국어를 포함한 16개 언어에 대한 사법통역인 시험이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었다.<sup>30)</sup>

NCSC에서는 사법통역인 및 변호사와 법원관계자 교육에 초석이 될 만한 사법통역인 윤리규정을 공포한 바 있다. 판사들도 통역인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감독하기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행정직원도 통역인 고용을 담당하므로 통역인들이 윤리원칙을 숙지하고 있는지, 이를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있다.<sup>31)</sup> NCSC에서는 법원 규칙 내지 통역인 관련 법규에 통역인의 행동규범에 관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포함할 것과 법정 통역인제도를 관리할 전문통역인직을 두도록 권고하였다.<sup>32)</sup> 실제로 DC지역, 쿡 카운티, 일리노이, 뉴저지, 애리조나, 오리건 등에서는 전임 상근직 사법통역인을 고용하여 통역서비스운영을 맡겼다.<sup>33)</sup>

28) Helmerich, *ibid*, p. 187.

29) 김진아외, 앞의 책, 71쪽.

30) Mathers, *ibid*, p. 34; 김진아외, 앞의 책, 70쪽.

31) Mathers, *ibid*, p. 34.

32) Mathers, *ibid*, p. 34.

33) Mathers, *ibid*, p. 34.

## 6) 사법통역인 현황

2004년 현재, 미국에는 883명의 인증 사법통역인과 1,563명의 전문 통역인 (professionally qualified interpreter)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2004년 현재, 연방법원에서 106개 언어로 220만 건의 통역이 이루어졌다.<sup>34)</sup> 물론 대다수는 스페인어 통역으로 2008년 기준 96.5%를 차지하였다.<sup>35)</sup> 미국 연방법원에 의하면 2009년 전년대비 통역수요는 11% 증가하였으며 주법원 통계자료는 없지만, 미국 내 사법통역수요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sup>36)</sup>

### 다. 통역인 윤리규정과 직업적 책임 규정

사법절차에서 통역인은 판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을 통역하게 되므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아래에서는 미국사법통역인협회와 코네티컷 주 법정 통역인의 윤리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미국사법통역인협회(NAJIT) 윤리규정 및 직업상 책무

- ① 정확성: 원발화의 통사적, 의미적 패턴을 고려하고 출발언어의 언어사용역, 스타일, 톤을 보존하면서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목표언어표현은 자연스러워야 하고, 의미왜곡이나, 설명, 가감부언 없이 정확하게 통역해야 한다. 추측을 피해야 하며, 오류발생 즉시 기록을 위해 정정해야 한다.
- ② 중립성 유지와 이해상충 피하기: 통역인으로 일하는 사건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통역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코멘트를 해서는 안 되며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법원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비밀유지: 통역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비밀을 허가 없이 누설 해서는 안 된다.

34) USAOC 2004, Mathers, *ibid*, p. 28.

35) Bromberg and Jesionowski, *ibid*, p. 35.

36) Bromberg and Jesionowski, *ibid*, p. 35.

- ④ 업무의 제한: 통역인의 업무는 통역에 제한되며 소송관계자나 당사자에게 자문이나 법률조언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
- ⑤ 프로토콜과 태도: 통역인은 법원의 기준과 프로토콜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 진술하는 발화자의 문법을 따라 써야 한다. 통역과정에서 통역이 아닌 발언을 하게 될 경우 통역인 개인의 발언임을 밝혀야 한다.
- ⑥ 기술과 지식 유지 및 향상: 통역인은 통역기술과 지식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⑦ 신분확인: 통역인 자격증 및 교육, 경력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제출해야 한다.
- ⑧ 애로사항: 예를 들어 피곤하거나 들리지 않거나,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유로 본 윤리규정에 부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법원에 알려야 하고, 윤리규정에 부합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면 업무를 거절하거나 사퇴해야 한다.

## 2) 코네티컷 주 사법통역인의 직업적 책임에 관한 규정

통역인을 법원이 선임하고, 법원의 일을 함께 수행하는 (as officers of the court) 사법통역인은 아래와 같은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① 사법통역인은 법원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 ② 사법통역인은 법원관계자들에게 예우를 갖춰 대해야 한다.
- ③ 사법통역인은 법원의 품위를 저해하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 ④ 사법통역인은 통역업무 중 습득한 기밀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⑤ 사법통역인은 사건에 대한 기밀을 유지보호하기 위해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통역인에게 요구되는 제한을 존중해야 하며 사건과 관련되었다거나 사건 당사자들과 관계가 있다면 법원과 당사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 ⑥ 사법통역인은 소송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눈에 띄지 않게 처신해야 한다.
- ⑦ 사법통역인은 어느 한쪽 당사자편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정확하고 충실하게 통역해야 한다.
- ⑧ 사법통역인은 증인, 변호사, 검사,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과 부적절한 접촉을

- 피하고, 배심원과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음으로써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만 통역업무에 필요한 접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⑨ 사법통역인은 재판 절차와 법률문제에 대해 어떠한 조언이나 자문도 해서 안 되며 사건을 피력해서도 안 된다.
  - ⑩ 사법통역인은 적정절차를 담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자신의 통역능력에 비해 어려운 사건을 맡지 말아야 한다. 진술자가 사용하는 언어 수준과 뉘앙스, 애매모호한 표현을 편집 없이 보존해야 하며, 어떠한 통역 오류가 있을 때 정정해야 하며, 애매모호한 진술이나 생소한 단어의 경우,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사법통역인은 통역업무수행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⑪ 사법통역인은 통역업무에 대한 정해진 보수 외에 선물이나 보상 혹은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 ⑫ 사법통역인은 자신의 통역서비스 개시 및 종료시간을 기록해서 보관해야 한다.
  - ⑬ 사법통역인은 법원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여 다른 통역인을 지원해야 한다. 공무를 수행함으로써, 또는 법원기록에 접근함으로써 습득한 지식을 절대 이용해서 안 되며 법원 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⑭ 사법통역인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나 타인이 이 윤리규정을 위반하려고 할 때 이를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라. 법정절차상 통역인과 관련된 문제

#### 1) 법정에서의 통역인 선서 및 자질에 관한 증언

사법통역인은 통역기술과 언어지식을 갖춘 자로서 당해 법원의 공식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 법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은 언어전문가이다.<sup>37)</sup> 전문가로서 사법통역인을 인정하는 근거는 증거규칙, 윤리관습 및 판례법 등에 있다.<sup>38)</sup> 연방 증거법(Federal Rule of

37) Mathers, *ibid.*, p. 73.

38) *State v. Burris*, 643, P.2d 8. 14 (Ariz. App. 1988) & *People v. Braley*, 870 P.2d 410 (Colo.

Evidence) 604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통역인은 전문가로서의 자격과 진실된 통역을 하겠다는 선서집행에 관해 이 규칙조항의 적용을 받는다”.<sup>39)</sup> 법원이 정보가 부족한 분야에 있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법원에 부여한 연방증거법 706도 전문가로서 사법통역인의 역할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있다.<sup>40)</sup> 자신의 능력을 다해 정확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한 통역을 제공하겠다는 통역인 선서는 그만큼 충실한 통역을 통하여 법원기록의 정확성을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통역인에게 부여한다. 따라서 근무환경으로 인해 정확하게 통역하기 힘들거나 선서를 지킬 수 없다면 심각한 문제이다. 통역인이 피로 등의 이유로 선서를 준수할 수 없다고 법정에서 밝혔을 때 법원은 통역인이 근무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만일 이를 법원이 거부한다면 변호사가 항소이유로 이를 적시할 수 있다.<sup>41)</sup>

사법통역인은 자신의 통역기술, 학력 및 자격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sup>42)</sup> 예비신문서서(voir dire) 과정에서 전문가 증인의 경우와 같이 통역인으로서 자격에 대해 진술을 요구 받으며, 이 과정을 마치면, 배심원들은 ‘통역된 증거’를 증거로 받아들여야 한다.<sup>43)</sup> 배심원이 이중언어구사자라서 원진술을 이해한다고 해도 원진술을 무시하고 통역된 진술만을 공식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야 한다.<sup>44)</sup> 물론 이러한 통역의 정확성 추정은 전반적으로 비영어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통역의 낮은 수준을 감안할 때 허구라는 주장도 있다.<sup>45)</sup> 통역인의 기술과 자격을 시비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보호적 장치로 통역인의 자격에 대해 진술하게 하는 것이 좋

App. 1993)

39) Mathers, *ibid.*, p. 73, 연구자 역.

40) Mathers, *ibid.*, p. 73.

41) Mathers, *ibid.*, p. 74, 255. 관련 판례: *United States v. Taren-Palma*, 997 F.2d 525, 532 (9th Cir. 1993), *Denton v. State*, 945 S.W.2d 793 (Tenn. Crim. Appl. 1996), *United States v. Armijo*, 5 F.3d 1229, 1235 (9th Cir. 1993), *People v. Best*, 580 N.Y.S.2d 55 (1992), *State v. Puente-Gomez*, 827 P.2d 715 (Idaho App. 1992), *People v. Carreon*, 198 Cal. Rptr. 843, 854-55 (Ct. App. 1984), *United States v. Perez* 651 F.2d 268 (5th Cir. 1981).

42) *Choi v. State*, 497 S.E.2d 563 (Ga. 1998), *State v. Mendoza*, 891 P.2d 939 (Ariz. App. Div. 1 1995), *People v. Braley*, 879 P.2d 410 (Colo. 1993).

43) Mathers, *ibid.*, p. 75.

44) Mathers, *ibid.*, p. 75.

45) Mathers, *ibid.*, p. 157.

다.<sup>46)</sup> 아래는 통역인 예비신문선서에서 통역인 자격확인 여부용 질문으로 통상 사용되는 질문의 예이다.<sup>47)</sup>

- 통역인 교육을 받은 적 있는가?
- 모국어는?
- 영어를 어떻게 배웠는가?
- 재학시절 최우수 성적은?
-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
- 학교에서 언어 공부를 했는가?
- 법원 통역 횟수는?
- 본 건과 같은 유형의 심리나 재판 통역을 한 적이 있는가?
- 영어와 해당 외국어의 법률용어를 아는가
- 본 사건에 잠재적 증인인가
- 비영어사용자와 말 해본 적이 있는가?
- 의사소통 문제는 없었는가?
- 증인의 어투나 방언의 특징에 익숙한지?
- 동시 통역을 할 수 있는가?
- 순차 통역<sup>48)</sup>을 할 수 있는가?
- 가르친 경험이 있는가?
- 법원 외에서 통역해본 경험이 있는가?
- 본인의 통역기술을 평가 받아본 적 있는가?
- 사법통역을 할 수 있다고 법관의 판단을 받은 적이 있는가?
- 행정소송을 포함하여 법정 통역에서 자격박탈 당한 적 있는가?
- 사법통역인 직업윤리 교육을 받았는가?
- 연방, 주, 카운티, 시 법 및 법규 위반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적 있는가?

---

46) Mathers, *ibid*, p. 75.

47) Mathers, *ibid*, p. 78.

48) 사법통역인법은 비영어사용자 증인의 증언은 순차통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827(k)(1996)).

2)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sup>49)</sup>의 면제

사법통역인법은 여러 단계의 절차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정 통역인법 1827(f)(1)(1996)에 의하면, 소송 대리인과 판사가 협의를 한 후에 판사가 자격을 갖춘 통역인에 의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통역제공 면제의 성격과 영향에 대해 개인에게 설명을 해 준 후에 이를 면제시킬 수 있다.<sup>50)</sup> 대부분의 주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주마다 상세하게 혹은 일반적인 성격을 띤 규정을 통해 통역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통역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만한 질문 유형까지 제시하는 등 매우 상세한 내용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 때문에 더 정확하게 전문가증인을 소환하여 영어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는 암묵적으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sup>51)</sup>

## 3) 법정절차에서의 통역 녹음

사법통역인법에는 소송 일방의 요청에 대비하여 원래 사용한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 법정소송절차의 전자녹음을 사용한다는 조항이 있다. 전자녹음 필요유무 판단 기준은 인증된 통역인인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법에 의하면, 인증시험이 있는 언어임에도 인증된 통역인이 아니라면 오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문과 대조를 위해 녹음을 해야 하며, 인증이 없는 언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의 우려가 있으므로 통역인의 자격과 사법통역경력, 소송의 복잡성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통역인의 자격

49) 연방 사법통역인 법에 의하면, 연방형사사건 또는 정부가 원고인 민사사건에만 통역인을 통한 사법절차의 완전한 참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민사사건의 대다수의 경우, 통역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농아자가 아닌 경우 법원 내부 규정이 없다면 비영어사용자들이 민사소송에서 통역을 제공받도록 하는 법적 장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이 통역할 인증통역인이 없을 경우, 비사법통역인을 허용함으로써 통역품질관리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증통역인을 수배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거나 연방 인증사법통역인을 고용하도록 명시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 (Mathers, *ibid*, p. 30.) 실제로 법원이 통역예산 절감을 위해 비사법통역인을 고용해도 막을 방법이 없고, 인증통역인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50) Mathers, *ibid*, p. 29.

51) Commonwealth Attorney General's Department, *Access to Interpreters in the Australian Legal System*, (Canberra: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1991), p. 57.

을 고려해야 한다.<sup>52)</sup>

### 5) 복수의 사법통역인을 배치하는 문제

사법통역인 2인을 배치하는 것이 통역의 질과 정확성 담보에 도움이 된다. 공판 통역인(proceedings interpreter)과 소송 당사자 통역인(table interpreter)을 포함한 통역인의 자리배치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sup>53)</sup> 특히 공동피고인 사건의 경우 공판 통역과 변호사와 커뮤니케이션 통역을 1인이 할 경우, 또는 피고인과 증인이 모두 영어를 하지 못할 때 통역을 1인이 할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sup>54)</sup> 통역인이 선서를 하고 법원 통역인으로 선정되어 통역을 하는 것이므로 공판통역인의 통역에 대한 이의제기는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라고 보기도 한다.<sup>55)</sup> 통역의 정확성 추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할 때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지적해야 한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통역을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통역의 정확성이 상당히 의심될 경우, 그리고 소송의 성격에 대해 숙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리지 않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신빙성 있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지역법원에서 증거를 다시 조사하지 않았을 경우 적정절차가 거부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56)</sup>

수정헌법 14조의 적정절차와 수정헌법 6조의 참여권에 근거하여, 모니터링 통역인은 공판 통역인이 비영어사용자 증인 통역 시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을 때 이를 변호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sup>57)</sup> 1984년 캘리포니아주 소송에서 피고인 측 통역인이 없는 경우, 비영어사용자 피고인은 증인 통역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의사소통 단절은 증언 통역에 대해 변호인측에서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다.<sup>58)</sup> 통역인의 편향성

52) Mathers, *ibid*, p. 28-29.

53) Mathers, *ibid*, p. 88, 126-127 도면 참조

54) *People v Rioz* 161 Cal. App. 3d 910.

55) Mathers, *ibid*, p. 157.

56) *United States v. Cirrincion*, 780 F.2d 620, 633,634(7<sup>th</sup>Circ.1985).

57) Mathers, *ibid*, p. 142.

58) *People v. Mata Aguilar*, 35 Cal. 3d 785, 787, 793 n.10, 677 P.2d 1198(Cal. 1984).

이 의심된다거나 통역기술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한 가지 대처 방법은 ‘체크 통역인’을 선정해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때 공판 동안 통역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통역문제로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동일 법원이 판시한 바 있다.<sup>59)</sup> 제10 순회법원은 농인 배심원에게 제공되는 통역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경우에 소송당사자는 다른 통역인을 통해 통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60)</sup> 그렇지만 사법통역인법 하에서 체크 통역인을 제공받는 것을 연방법제도 내에서 권리문제로 인정하지 않은 연방법원들도 있다.<sup>61)</sup>

체크 통역인은 모니터링을 통해 오류의 성격을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헌법상 적정절차에 위배될 정도의 통역오류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잠재적으로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심리를 왜곡한 오역이다.<sup>62)</sup> 부정확하게 통역된 단어와 같이 직접 증거가 있거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경우는 오역임을 보여주는 상황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증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통역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표현한다면 이 역시 통역오류를 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sup>63)</sup>

증인통역을 하지 않는 체크 통역인은 통역 오역에 대한 지적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일반 원칙을 활용할 수 있다.<sup>64)</sup>

- 사건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갖추
- 오류가 회복 가능한 것인지 분석함
- 가장 방해가 덜 되는 방법으로 정정함
- 변호사를 통해 재판 개입함
- 배심원이 없는 자리에서 개입함
- 공판통역인이 정정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허용함

59) *People v. Aranda*, 186 Cal. App.3d 230, 236, Cal. Rptr. 498, 501(2d Dist. 1986).

60) *United States v. Dempsey* 830 F.2d 1088(10<sup>th</sup>Circ.1987).

61) Mathers, *ibid*, 143.

62) Mathers, *ibid*, p. 152.

63) Mathers, *ibid*, p. 152.

64) Mathers, *ibid*, p. 153.

- 변호사에게 메모를 전달하여 변호사가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게 함
- 공판통역인과 휴정시간에 통역문제 논의함

복수의 통역인을 배치하는 전통은 뉴렌베르크 전범재판에서 통역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통역팀이 부스에서 통역을 하는 동안 다른 팀이 첫 번째 팀의 통역을 들으면서 용어사용의 일관성과 주제를 익히게 하였다. 동시에 법원 모니터요원이 부스에서 제공되는 동시통역을 임의로 점검하였다. 뉴렌베르크 재판에서 일한 통역인들은 통역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로 동시통역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던 터라 음성기록과 문서기록을 포함하여 다국어 기록 수정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지속적인 확인과정을 통해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확인과정이 가능하였던 것은 재판소에서 완벽한 속기록, 재판 녹음기록과 문서기록의 최종수정판을 통역인에게 제공하였고 법정속기록 번역을 법정에서 사용된 네 개 언어 녹음기록과 대조하였기 때문이다.<sup>65)</sup>

오늘날 국제형사재판소(ICTY) 통역부서도 통역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뉴렌베르크재판의 전례를 따라 복수의 통역팀을 동일 사건에 배정하고 있다. 법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의 디지털 녹음이 제공되고, 녹음기록과 함께 동시속기록 확인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오류확인이 가능하다.<sup>66)</sup> 그러나 한국 뿐 아니라 많은 국가의 국내 법원에서는 오류 확인에 대한 절차가 확립된 바 없다. 이로 인해 소송당사자들이 전술적으로 통역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통역의 정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 법원의 공식 언어로만 재판기록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국내 법원에서 원발화에 비추어 통역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매우 어려우며 어떠한 수순을 밟아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65) Gaiba, F., *The Origins of Simultaneous Interpretation: The Nuremberg trial*, (Ottawa, University of Ottawa Press, 1998), p. 95.

66) LiveNote 사용. Stern, L.(2012), "What can domestic courts learn from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about good practice in interpreting? From the Australian War Crimes Prosecutions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I Review*, Vol. 2. p. 24.

## 6) 통역오류의 법적 효과

통번역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과 같아서 완벽하고 완전한 통역은 어려우며, 같은 내용을 통역하는 방법 역시 동일하지 않다. 통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법원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의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공판을 중단하는 경향이 있다. 통역오류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로 유죄평결을 받은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과 같은 판단을 뒤집는 것은 기피한다.<sup>67)</sup> 사소한 통역오류가 배심원의 증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배심원의 판단을 왜곡할 정도로 영향을 주는 통역오류의 경우에만 하급심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sup>68)</sup> 몽(Hmong)족 성폭행 사건(State v. New Chue Her)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통역인의 자격과 능력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판사가 절차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과 고소인에게 유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부정확한 통역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상소하였다. 검찰이 경험 많고 거만한 남자인 피고인에게 수줍고, 순진한 아시아 여성이 농락당한 것처럼 신문전락을 펼쳤음에도 통역인이 고소인이 사용한 성적비속어를 빼고 통역하는 등 통역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아 반대신문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 결과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sup>69)</sup> 그러나 수백 개에 달하는 통역오류가 원심재판기록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통역오류가 아니며 전반적으로 공정한 재판이었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인정하였다. 사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회 이상의 부정확한 통역이 배심원의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없는 이상, 통역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사료된다. 또한 언뜻 보기에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통역오류지만 횟수가 거듭될 때 사실판단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sup>70)</sup>

67) *State v. Mitjans*, 408 N.W.2d 831, 832 (Minn. 1987).

68) *State v. Her*, 510 N.W.2d 222, 223 (Minn. 1994).

69) Dunnigan, T. and Downing, B. T. *Legal interpreting on trial: A case study*. M. Morris (ed.), *Translation and the Law*,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1995), p. 93.

70) Lee, J., "When linguistic and cultural differences are not disclosed in court interpreting", *Multilingua*, Vol. 28, p. 379.

### 3. 사법통역인 운영의 실제 - 사법통역인에 관한 텍사스 주법을 중심으로

실제로 사법통역인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텍사스 주 사법통역인 법<sup>71)</sup>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sup>72)</sup>

#### 가. 사법통역인 임명

##### Sec.57.002. 통역인 임명

- (a) 민사나 형사 소송 증인이 요청하거나, 일방 당사자가 통역인 선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자격 있는 통역인을 임명해야 한다.
- (b) 법원은 스스로 판단하여 자격 있는 통역인을 임명할 수 있다.
- (b-1) Subsection (a) 또는 (b)에 의거하여 법원이 임명한 사법통역인은 해당 법원에서 통역할 수 있는 허가가 있음을 표시하는 57.043(d)조에 따라 적절한 지정을 포함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 (c) Subsection (e)에 의거하여, 인구 5만명 미만의 카운티에서 법원은 자격증을 소지한 통역인이 아니라도 음성언어 통역인을 임명할 수 있다.
- (d) Subsection (e)에 의거하여, 인구 5만명 이상의 카운티에서 법원은 아래의 경우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음성언어 통역인을 임명할 수 있다.
  - ① 법정에서 필요한 언어가 스페인어 외 언어일 경우
  - ② 법정에서 필요한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통역인이 75마일 이내에 없을 경우
- (e) Subsection (c) 혹은 (d)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은:
  - ① 텍사스 증거법에 의거하여 전문가라고 법원이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 ② 최소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 ③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야 한다.

71) Government Code, Title 2, Subtitle D, Chapter 57, Administered by the Texas Department of Licensing and Regulation

72) <http://www.license.state.tx.us/court/lcilaw090111.pdf>

## 나. 사법통역인 자격인증

텍사스 주 사법통역인 자격증, 시험, 통역인관리를 담당하는 사법통역인 프로그램(The Licensed Court Interpreters Program)에 관한 텍사스 행정법령(Licensed Court Interpreters Administrative Rules) 16의 제80장, § 80.20 및 § 80.80이 2012년 9월 15일 개정되었다.<sup>73)</sup> 텍사스 주에서 통역인 자격증제도를 관장하는 주무부처는 텍사스 허가 및 규제 부서(Texas Department of License and Regulation, 이하 TDLR)이다.

### 80.10. 정의

본 문건에서 사용하는 아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기본 지정(Basic Designation) –치안판사 법원과 행정법원(뮤니시펄 법원)에서 통역할 수 있는 허가 자격
- ② 마스터 지정(Master Designation) –주 내 모든 법원에서 통역할 수 있는 허가 자격
- ③ 부정직(Dishonorable) –정직성 부족, 타인을 기망하거나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거나, 사법통역인 직업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 ④ 비윤리적(Unethical)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법통역인 행동규범에서 벗어난 행위

#### 1) 자격 요건 일반

### 80.20. 자격증 요건-일반

- (a) 사법통역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신청자가 통역하기 원하는 각 언어에 대한 사법통역인 자격증을 부서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

73) <http://www.license.state.tx.us/court/lcirules.htm>

- (b) 사법통역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 ① 신청서 접수 이전에 최소 6시간 부서에서 인증하는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다.
  - ② 부서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 ③ 자격증 신청 접수비는 반환불가하다.
  - ④ § 80.22의 시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 ⑤ 신청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시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c) 2013년 9월 1일까지 기본 지정 자격증 신청하는 날짜로부터 2년 전까지 시험성적만 고려한다.
- (d) 오리엔테이션 과정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신청하는 사람에게 해당한다.

## 2) 자격시험

### 80.22. 자격증 요건-시험

- (a) 모든 신청자는 부서에서 인정하는 언어시험의 전 부분을 합격해야 한다.
- (b) 신청자는 필기시험에서 80점 이상 받아야 한다.
- (c) 신청자는 구술시험 세 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모두 합격해야 한다.
  - ① 구술시험의 각 부문에서 60점 이상 점수를 받으면 기본지정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구술시험의 각 부문에서 70점 이상 받으면 마스터지정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
- (d) 응시자는 텍사스 행정법령 16의 제80장 E조에 따라 시험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e) 시험부정행위는 자격증 발급거부, 정지 및 취소와 행정법칙금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3) 자격 갱신

80.23. 자격증 요건-갱신

- (a) 자격증 만료일 이전에 자격증 갱신 신청서와 함께 신청수수료를 접수하지 않으면 자격증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 (b) 부서에서 자격증 갱신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해서 이 장의 요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 (c) 텍사스 정부법령(Texas Government Code) 제57장에 의하여, 아무나 자격증을 요하는 일을 할 수 없다
- (d) 자격증 만료후 갱신은 본 법령의 § 60.83에 따른다.

다. 사법통역인 연수 및 교육

80.25. 연수 및 교육

- (a) 본 법령 제59장에서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본 단락에서 용어를 사용한다.
- (b) 텍사스 정부법령 제57장 C조에 의하여, 자격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승인하는 교육과정을 8시간(윤리교육 2시간 포함) 이수해야 한다.
- (c) 자격증 갱신기간 내에 갱신하는 경우 자격증 유효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자격증 만료 후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 갱신신청일자 이전 1년의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d) 동일한 교육과정을 1회 이상 수강하는 경우 교육점수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 (e) 교육이수 후 1년 동안 교육이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감사나 조사를 실시할 때 부서에서 자격증 소지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록을 검사할 수 있다.
- (f) 제59장에 의하여 교육이수 승인을 받도록 하기 위해, 교육제공자는 아래와 같은 주제를 하나 혹은 그 이상 제공하는 수업을 해야 한다.
  - (1) 사법통역인의 업무에 관계된 법률지식
  - (2) 윤리

- (3) 실무관련 주제 (에티켓, 어휘, 기술, 전자, 번역, 문법, 음성 훈련 등)
- (4) 비즈니스
- (g) 이 법령 조항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자격증을 갖춘 사법통역인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제공자에게 이 법이 적용된다.
- (h) 이 법령은 텍사스 정부법령 57장 C조에 의해 발급되고 2007년 1월 1일부터 만료되는 모든 자격증에 적용된다.

#### 라. 자격증 소지자의 책임

##### 1) 책임 일반

#### 80.70. 자격증 소지자의 책임-일반

- (a) 자격증 소지자는 다음 통지문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Regulated by The Texas Department of Licensing and Regulation, P.O. Box 12157, Austin, Texas 78711, 1-800-803-9202, 512-463-6599.” 이 통지는 사법통역 서비스 업무 계약서와 송장에 포함되어야 한다.
- (b) 자격증 소지자는 법원관계자거나 법원의 요청에 따라 자격증을 제시해야 한다.
- (c)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소지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문서로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 2) 수수료

#### 80.80. 수수료

- (a) 모든 수수료는 반환불가하다.
- (b) 최초 자격증 신청수수료는 \$75이다.
- (c) 자격증 갱신 수수료는 \$50이다.
- (d) 마스터지정으로 승급신청비는 \$25이다.

- (e) 추가 자격증 신청비는 \$25이다.
- (f) 자격증 사본 신청비는 \$25이다.
- (g) 필기시험 신청비는 \$100이다.
- (h) 구술시험비는 \$300이다.
- (i) 자격증 만료 후 갱신 신청비는 본 법령 § 60.83에 따른다.

### 3) 제재

#### 80.90. 제재-행정 제재 및 벌금

만약 사법통역인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 제재 혹은 벌금 또는 둘 다를 부과할 수 있다.

#### 마. 사법통역인 윤리규정 및 직업적 책임

#### 80.100. 윤리규정과 직업적 책임

##### (a) 전문.

법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비영어사용자이거나 영어구사력이 제한적이다. 통번역을 통해서 가능한 한 언어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이들이 영어사용자와 동등하게 사법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법통역인과 번역인의 역할이다. 사법통역인에게 부여하는 신뢰와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업무수행 시 높은 윤리적 기준과 직업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통역인들은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전문직업인으로서 법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b) 적용성.

이 법령은 사법부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사용을 감독하거나, 행정처리하는 모든 사람들과 기관, 부처 조직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 법령은 사법통역인이 따라야 하는 윤리적 원칙을 제시함과 동시에 통역인들이 윤리적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의미가 있다.

(c) CANON 1: 정확성과 완결성.

통역인들은 말이나 글로 표현된 내용을 바꾸거나, 빼거나 보태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완전하고 정확한 통역 및 시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원천언어의 언어사용역과 스타일 및 톤을 보존해야 한다. 통역 시에 사법통역인은 원래 화자의 문법적 인칭을 사용해야 한다. 추측은 피해야 한다. 통역인 오류는 가능한 한 신속히 정정하여 기록을 바로 잡아야 한다.

(d) CANON 2: 자격 제시.

통역인은 자격과 훈련, 교육, 경력 등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시해야 한다. 사법통역인은 피로, 전문용어 지식 부족, 청취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인해 윤리규정대로 통역할 수 없는 상황이나 조건이 있을 때 재판장에게 알려야 하며, 규정대로 통역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통역업무를 거절해야 한다. 통역인이 사건을 맡은 경우 법률적 상황에 필요한 언어능력을 갖추었다는 의미이다.

(e) CANON 3: 공정성과 이해충돌 회피.

통역인은 중립성을 지녀야 하며, 편견이 없어야 한다. 편견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통역인은 법원과 모든 당사자에게 즉시 고지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통역을 맡은 사건에 대한 코멘트를 삼가야 한다. 변호사이자 통역인인 경우, 판사와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사건에 통역과 변호를 모두 담당할 수 없다.

(f) CANON 4: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태도.

통역인은 법원의 권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처신해야 하며, 가능한 한 불필요한 관심을 받지 않아야 한다.

(g) CANON 5: 비밀유지.

통역인은 법원의 허가나 법에 의하지 않고 통역 준비과정 혹은 통역 업무과정을 통해 습득한 정보나 비공개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h) CANON 6: 업무 범위.

통역인은 통번역 업무만 해야 하며, 법률자문을 제공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해서 안 된다. 또한 통역인으로 업무 수행시 통번역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다른 행위를 해서 안 된다. 통역인은 변호사가 법률서식이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서 법률자문을 제공할 때에만 법률자문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i) CANON 7: 수행에 장애가 되는 문제 평가하기 및 보고하기.

통역을 수행 중인 자는 항상 자신의 통역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만족스럽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유보적이라면, 즉시 이를 판사에게 알려야 한다.

(j) CANON 8: 윤리문제 보고할 의무.

통역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혹은 법률적 요건, 본 법령, 혹은 사법통역에 관한 공식적인 정책의 모든 측면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거나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에 이를 판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른 통역인이 이 법령 조항을 위반하였다면 이를 판사에게, 그리고/또는 자격증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k) CANON 9: 전문성 개발.

통역인은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직업 교육과 연수 등과 같은 활동과 동료 및 전문가들과 교류를 통해 직업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통역인들은 통역업무와 관련된 사법제도 상의 정책과 법원규칙 및 법규 등에 대해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

## 제2절 유럽

### 1. 사법통역인에 대한 유럽연합의 법제

#### 가. 사법통역인에 대한 EU법상의 근거

EU 회원국 내 사법통역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는 유럽인권협약(ECHR: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sup>74)</sup>이며 이는 UN 세계인권선언에 기초를 두고 있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소에서 공정한 재판과 심리를 받을 권리를 명시한 세계인권선언은 권고수준의 효력을 가진다.<sup>75)</sup> 1953년 발효된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2항과 제6조 제3e항<sup>76)</sup>에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통번역에 관한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 5조 [자유와 안보에 대한 권리]

1. 누구나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아무도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단,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 준수 시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피고인은 누구나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체포 이유와 기소에 대한 정보를 즉각 제공받아야 한다.

#### 6조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1. 민사적 권리와 의무 혹은 형사기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합당한 시간 내에 법적으로 설립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소에서 공정하고 공개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형사피고인은 누구나 다음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닌다.
  - (a)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기소의 성격과 이유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즉시 알 권리

74) 정식명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이다. ‘유럽인권조약’, ‘로마조약’이라고도 한다.

75) 광중철 옮김, 『법률통번역 입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2010), 39쪽. (Erik Hertog, 2001. *Aequitas. Access to Justice across Language and Culture in the EU*. Lessius Hogeschool.)

76) <http://conventions.coe.int/treaty/en/treaties/html/005.htm> 참조

(e) 법원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 또는 구사하지 못할 경우 무료 통역 지원을 받을 권리

유럽인권재판소는 무료 통역지원에 대한 권리가 구술진술뿐 아니라 문서자료의 번역에도 적용되며, 피고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 중에도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sup>77)</sup> 유럽인권재판소는 제 6조 3e항이 보장하는 권리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통역인의 임명뿐 아니라 제공된 통역의 질에 대해 평가하는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78)</sup>

1978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각료위원회 결의안 78(8)은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의 법적 권리를 변호하는 데 드는 재판비용을 전액 부담해줄 것과 법률구조 서비스 비용에 통역비용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sup>79)</sup>

공정한 재판과 변호를 받을 권리는 EU 기본권리헌장의 47, 48조, 유럽인권헌장 6장 등에 명문화되어 있다.<sup>80)</sup> EU기본권리헌장(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과 함께 2009년 12월 발효한 리스본 조약에 따라 EU는 형사절차에서 회원국 시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집행위원회(Council of Europe)가 1950년에 채택한 유럽 인권 및 기본 자유의 보호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제6조는 ‘재판이 열릴 때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재판부에 의한 증거청취, 피고인이 이해하는 언어로 죄명과 기소사실을 고지 받아야 하며, 법원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할 때 통역인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는 내용이다.<sup>81)</sup> 언어와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사법분야에서 평등한 접근이 제공되어야 한다. 사법 결정과 법적 판단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77) 곽중철 앞의 책, 42쪽.

78) 곽중철 앞의 책, 43-44쪽.

79) 곽중철 앞의 책, 45쪽.

80)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0-989\\_en.htm?locale=en](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0-989_en.htm?locale=en);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0-746\\_en.htm?locale=en](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0-746_en.htm?locale=en)

81) Jacobs, F. and White, 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xford: Clarendon Press, 1996), p. 122-123.

질에 크게 좌우되므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뢰할만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며, 통역인과 번역사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sup>82)</sup>

## 나. 그로티우스 프로젝트와 AGIS

유럽연합 내에서 사법통역과 법률번역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수차례 국제회의가 개최되었고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1998년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개최된 사법통역과 법률번역에 관한 국제회의(The Fourth International Forum and First European Congress on Court Interpreting and Legal Translation), 2002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법률번역과 사법통역 국제회의(Sixth International Forum on Legal Translation and Court Interpreting) 등이 그 예이다. 사법통역에 관한 그로티우스(Grotius) 프로젝트 98/GR/131과 2001/GRP/015와 후속 프로젝트인 AGIS를 아래에 간단히 소개한다.

### 1) 1차 그로티우스 프로젝트 98/GR/131

1999년 3월 1일 발효한 암스테르담 조약의 실행을 위해 1999년 10월 유럽이사회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유럽이사회는 그 재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진행된 사법통역인 교육, 평가 및 실무 기준에 관한 EU 기준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그로티우스 프로젝트에는 벨기에 앙트워프 레시우스 호게스쿨, 브뤼셀 Institut Libre Marie Haps와 Chambre Belge des Traducteurs, Interpretes et Philologues, 덴마크 아후스 Handelshojskolen, 스페인 말라가 대학과 영국 통역인 인증기관 Institute of Linguists 등 교육기관이 참여하였다. 통역인 평가 및 선발 기준 등 사법통번역 기준, 교육 후보생 선발 기준 등 교과과정 초안과 교육에 관한 제언, 윤리규정과 우수한 운영기준 모델, 통번역인과 법률서비스 제공자 간의 학제간 업무환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결과물은 2001년 *Aequitas: Access to Justice Across Language and Culture in the EU*

---

82) Martinsen, B. and Rasmussen, K. W., Court interpreting in a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Europe. (<http://userpage.fu-berlin.de/elc/bulletin/8/en/martrasm.html>)

로 출판되었다.

## 2) 2차 그로티우스 프로젝트 2001/GRP/015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진행된 2차 프로젝트에는 1차 그로티우스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들인 벨기에, 덴마크, 영국 연구자들과 네덜란드 법무부, 체코공화국 찰즈대학교가 참가하였다. 주요 목적은 법률서비스 제공자와 사법통번역인을 위한 범유럽 다학제적 학술대회를 조직하고,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이었다. 2002년 벨기에 앙트워프 회의에서는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평등한 사법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유럽 국가의 전략과 윤리강령 등을 포함한 사법통번역인 근무환경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로티우스 프로젝트 98/GR/13의 성과, 그 중에서도 특히 통번역인 윤리강령과 포괄적인 협약을 회원국과 후보국가들에 전파하는 것과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도구를 개발하고, 윤리규정과 다학제적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웹사이트와 발표논문집 출판 등을 통해 근본적인 권고안과 가이드라인, 실질적인 수단과 교육자료 등을 모든 회원국과 후보국가들이 공유하도록 한다.<sup>83)</sup>

## 3) AGIS I

1, 2차 그로티우스 프로젝트의 권고안을 받아들인 유럽집행이사회는 후속 프로젝트인 AGIS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시민들에게 자유, 안보, 사법정의에 있어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해주기로 하였다. EU는 그로티우스 프로젝트 권고안 내용을 담은 2003년 유럽연합 전역에서 형사절차 상 피의자와 피고인을 위한 절차적 안전조치에 관한 녹색서(Green Paper on Procedural Safeguards for Suspects and Defendants in Criminal Proceedings throughout the European Union)(Brussels, 19-2-2003)를 발표하였다.<sup>84)</sup> 녹색서에 관해 대체로 인권단체와 변호사, 통번역인들

83) [www.legalintrans.info](http://www.legalintrans.info)

84) Keijzer-Lambooy, H. and Gasille, W. J., Introduction. From Aequitas to Aequalitas to Aequilibrium: Lifting language barriers in intercultural legal proceedings (AGIS project JAI/2003/AGIS/048). H. Keijzer-Lambooy and W. J. Gsille (eds.), *Aequilibrium. Instruments*

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으나 회원국 정부부처에서는 너무 포괄적이고 과감한 내용이라는 반응이 있었고, 일부 회원국에서는 인권 및 기본자유 보호에 관한 헌장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sup>85)</sup> 이후 집행위원회에서는 녹서가 제시한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개인의 권리 보호와 행정적 수단 간의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2004년 4월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내 피의자를 위한 절차적 보장에 관한 이사회 기초 결정과 관련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제안서 내용은 변호사에 의한 법률지원과 대리에 관한 권리, 피의자가 자기의 혐의/기소 사실을 알고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통번역 제공에 대한 권리, 장애로 인해 형사 절차를 듣거나 이해할 수 없는 피의자에게 적절한 보호, 외국인이 구금된 경우 영사적 지원에 대한 권리, 피의자 권리에 대한 서면고지 등으로 요약된다.<sup>86)</sup>

AGIS I 프로젝트는 유트레히트의 통번역 대학과 법정통번역인재단(SIGV)이 주도하는데,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다. 첫째, 자격 있는 통번역인에 대한 권리, 둘째, 정직성, 셋째, 취약한 집단에 대한 보호이다. 첫번째 통번역인에 대한 권리는 1992년 마스트리트 조약 당시 비준한 ECHR이 명시한 바와 같이 형사 피의자/피고인이 혐의/기소 사실과 절차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육, 자격인증 제도 및 사법통번역료 인상을 통해 사법통번역인 인력풀을 확대하고, 인증제도와 기존 통역인 유지보수 교육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통번역인과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 종사자와 법률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회원국 내 부처간 협조를 모색하는 것 등이 집행위원회의 녹서에 포함된 내용이다.<sup>87)</sup>

두번째 주제는 정직성이다. 통번역인 집단도 대체로 새로운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새롭게 속한 사회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정직성과 충성도가 취약할 수 있다. 정확성과 공정성, 청렴성이 요구되는 사법분야에서 일하는 통번역인들에게 직업인으로서 윤리적 행동이 요구되며, 사법당국에서는 통역인 선정의 법률적 근거와 같이 정직성을 담보할 수 있는

*for Lifting Language Barriers in Intercultural Legal Settings*, 9쪽.

85) Keijzer-Lambooy, H. and Gasille, W. J., 앞의 논문, 9-10쪽.

86) Keijzer-Lambooy, H. and Gasille, W. J., 앞의 논문, 10쪽.

87) Keijzer-Lambooy, H. and Gasille, W. J., 앞의 논문, 12쪽.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하며, 단순히 규칙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직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sup>88)</sup>

세번째 주제는 취약한 집단에 대한 적절한 보호이다. 녹서 제 6장에 포함된 바와 같이 수화통역인들의 입장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화통역인도 의사소통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만큼 법률지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법통번역의 발전에 수화통역인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주제에 포함되었다.<sup>89)</sup>

AGIS I 프로젝트에서 기대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sup>90)</sup>

- 통번역인들에 대한 태도와 인식 변화
- 사법분야 통번역인들의 지위 공식화
- 사법절차에서 통번역인 활용에 관한 절차 표준화
- 회의자료 출판 및 온라인 게재
- 교육자료를 담은 핸드북 출판
- 해당 분야의 발전상황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을 커뮤니티가 공유할 수 있도록  
www.legalintrans.info 웹사이트 확대 개편
- EU 내 수화통역인들의 지위에 대한 자료연구
- 법률서비스 제공자와 통번역인이 협력하여 우수한 운영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제간 협약 개발

## 2. 유럽 국가의 사법통역인 제도 - 덴마크를 중심으로

### 가. 사법통역인에 대한 법제

절차적 공정성을 위한 의사소통 문제는 누가, 어떻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가로 귀결된다. 통역교육을 받지 않은 통역인의 경우 사법통역에서 필요한 기술, 예컨대 동시통역을 제대로 구사할 수 없다.<sup>9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통역인 전문

88) Keijzer-Lambooy, H. and Gasille, W. J., 앞의 논문, 12쪽

89) Keijzer-Lambooy, H. and Gasille, W. J., 앞의 논문, 13쪽

90) Keijzer-Lambooy, H. and Gasille, W. J., 앞의 논문, 16쪽

교육 없이는 법률적인 개념이나 용어 이해하기가 어렵고 통역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법원을 포함한 사법당국자들의 인식수준이 낮다. 유럽 내에서도 각국별로 상이하지만 통역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간단한 면담 또는 이력서 체크에서부터 정규시험까지 그 방식은 각국별로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덴마크의 사법통역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1950 유럽인권협약 제5조 및 제6조와 지침 2010/64/EU에 의해 규정되지만 덴마크는 사법과 내무 분야를 예외로 두어 유럽연합 지침의 구속력이 없다.<sup>92)</sup> 덴마크 정부는 EU의 모든 법을 실행할 의무가 없고, 지침의 모든 요건을 이미 충족시켰다는 판단 하에 EU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sup>93)</sup> 덴마크에서 수사 및 민·형사 재판에서 일하는 통역인 활용에 관한 법이 있다. 덴마크 법무행정법(the Danish Administration of Justice Act Retsplejeloven) 제149조 1항에 의하면, 덴마크 법원의 언어는 덴마크어이며 덴마크와 영어를 사용한다. 덴마크어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을 신문할 경우 가능한 한 허가 받은 통역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덴마크 법무행정법에는 항상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명시하지는 않았고 반드시 허가 받은 통역인일 필요가 없으며, 형사절차 가운데 신문만 명시하였으며, 재판 이전 단계나 법정 외부에서 이뤄지는 신문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형사 피의자/피고인이 덴마크어를 숙달한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sup>94)</sup> 법무행정법 149(1)4에 의하면 지방법원이 외국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출 경우 통역인 선정이 불필요하다고 하였지만 해당 사건 판사, 배심원, 변호인 전원이 충분한 외국어지식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예방적 조치로 통역인을 요청한다.<sup>95)</sup> 법원과 경찰

91) Driesen, C., The interpreter's job: a blow-by-blow account. In Picken, C. (ed.), *ITI Conference 2. Interpreters Mean Business*. (London: Aslib London, 1988), pp. 105-117.

92) Jacobsen, B., Pragmatic meaning in court interpreting: An empirical study of additions in consecutively interpreted question-answer dialogues. Aarhus School of Business, Department of English. p. 304. (미출판 박사학위 논문, 2003)

93) 유럽인권협약 5조 및 6조, 그리고 법무행정법 149(1)에 의거하여 모든 비덴마크어 사용자에게 통역인의 조력이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80%이상의 덴마크 사법통역인들이 적절한 교육이나 시험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통역인력임으로 지침이 요구하는 질적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비판한다(Jacobsen, B. 개인이메일 2012).

94) Jacobsen, B., 앞의 논문.

모두 피의자/피고인 또는 증인이 적절한 통역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항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96)</sup>

유럽인권협약(ECHR) 6(3) 역시 덴마크 법원에서 통역인의 조력에 대해 적용되는 국제법이다. ‘형사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자신에 대한 범죄 혐의의 사실에 대해 상세하게 즉각 통지 받을 권리’와 ‘법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거나 구사하지 못할 경우 통역인의 조력을 무료로 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최소한의 권리를 부여한 인권협약 조항과 법무행정법 149(1) 간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지만 법원이 외국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도 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법원이 허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sup>97)</sup>

덴마크 내 형사소송의 경우 누가 통역인을 고용하고 보수를 지불하는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대개 검찰이 고용하여 비용을 부담한다. 민사사건의 경우 일방이라도 통역인을 요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통역인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증인이 구사하는 외국어를 안다고 판단하면 통역인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sup>98)</sup>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이 각자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통역제공 여부도 당사자의 결정에 따르며 통역비용은 증거를 제출하는 쪽에서 부담한다.<sup>99)</sup>

## 나. 사법통역인 제도의 운용

### 1) 사법통역인의 자격

95) Jacobsen, B., Court interpreting in Denmark: A critical perspective.

(<http://pure.au.dk/portal/files/32327758/0001559.pdf>)

96) 사법통역과 관련된 상소심에서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엎은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지방법원에서 전화통역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상소심에서 1996년 덴마크 서부고등법원 상소 재판부는 통역인이 몸짓 제스처, 표정 등을 통역할 수 없으므로 오류와 오해의 위험성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전화통역이 적절한 통역방식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였다(*Vestre Landsrets dom* 1996년 9월 5일, Jacobsen 2003 인용). 1997년 같은 법원에 통역인을 선정하지 않은 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접수되었고 서부고등법원에서는 이를 근본적인 위반으로 간주하고 재심을 명령하였다(*Vestre Landsrets dom* 1997년 8월 26일).

97) Bisgaard, O. and Martinsen, B.R., Tolkebistand i retssager. *Ugeskrift for Retsvæsen* (the Danish weekly law reports), no. 45, 11 November 2000, 577쪽.

98) Jacobsen, B., 앞의 논문. 각주 21.

99) Jacobsen, B., 앞의 논문. 각주 21.

1988년 통합법<sup>100)</sup>에 의하면 인증된 통역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였다. 덴마크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덴마크 국민으로 금치산자이거나 한 정치산자로 인정된 적이 없으며 파산신고를 한 적이 없어야 하고,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였으나 지금은 유럽통합으로 인해 덴마크 국적인과 거주지가 무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통역교육과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 통역인 허가를 받기 쉽다. 덴마크 내에서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과 아후스 비즈니스 스쿨 두 곳에서 LSP(language for specific purposes) 석사학위를 받은 통역인만 시험을 거쳐 허가 받은 통역인이 될 수 있었다. 이 두 학교는 영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만 가르치기 때문에 다른 언어 통역인들은 통역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도 허가 받은 통역인이 될 수 없는 실정이다.

덴마크에는 두 유형의 통역인이 있다.<sup>101)</sup> 외국어와 문화를 전공하고 해당 언어와 문화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덴마크인으로 허가 받은 통역인이거나 허가 받지 않은 통역인이다. 허가 받지 않은 통역인 집단은 크게 두 부류다. 덴마크인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자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덴마크 언어를 숙달하여 정식으로 통역교육을 받거나 시험에 합격한 통역인들과, 교육이나 시험이 없는 언어의 경우 통역인으로 활동할 수 있을 만한 덴마크어실력을 증명한 외국인 통역인들이다.

## 2) 통역교육프로그램

커뮤니티 통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1996년 아후스 비즈니스 스쿨과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2년제 개방대학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첫해에는 의료 및 사회 분야 통역과 번역을 공부한 후 2년째 되는 해에 사법통역, 의료통역, 비즈니스통역 세 개 중에 전공을 선택한다. 1970년부터 간헐적이고 비공식적인 교육이 있었지만 커뮤니티 통역의 기준을 높이기 위한 정식 커뮤니티 통역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최초이다. 두 정규 교육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언어교육이 실제 사법통역에서 수요가 크지 않은 언어임에도 제도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데는 소극적인

100) Consolidation Act(Lovbekendtgørelse), No. 181, 25 March 1988, as amended by Act (Lov) No. 936, 27 December 1991(Jacobsen n.d. 재인용)

101) Jacobsen, 앞의 논문, 각주 18.

편이다. 그나마 1994년 1월 덴마크 경찰청에서는 통역인 채용과 활용방안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였고,<sup>102)</sup> 경찰통역인을 위한 지침을 발간하여 사법통역인과 이들을 고용하는 사법기관에 윤리적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모든 경찰 통역인은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들의 공식 명단을 경찰청에서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법무부와 법원 등 관련 기관에 보내기로 하였다. 경찰 통역인 명단에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통역인들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비밀유지와 공정성을 약속하는 성명서에 서명해야 한다. 허가 받은 통역인은 신청서 접수 후 자동적으로 명단에 등재되나 그렇지 못한 통역인은 인터뷰 형식의 구술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경찰청에서 제시한 윤리적 행동 기준은 보편적인 사법통역 원칙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예, 정확성과 완전성, 공정성, 비밀유지, 이해관계 충돌회피).

### 3) 사법통역인과 법조인 간 연례회의

사법통역에 대한 의식제고를 위해 덴마크에서는 사법통역에 관한 법관 세미나를 열었고, 그로티우스 프로젝트 이후 프로젝트 책임자와 법관, 변호사, 아후스 지방법원 근무 통역인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구성되어 준비서류 제공 등 사법통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사법통역인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고 통역인과 법조인을 포함한 사법기관 종사자들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아후스 지방법원에서는 통역인들과 법조인 간의 연례회의를 정례화하여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며, 지방법원 법관 중에 통역인들의 실무상 어려움을 의논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담당 법관을 지정하였다. 코펜하겐 경찰아카데미, 아후스 지방법원, 아후스 비즈니스 스쿨이 협력하여 통역 영상녹화물을 제작하여 통역인 교육뿐 아니라 경찰관과 법조인 교육에도 활용하기로 하였다.<sup>103)</sup>

## 3. 유럽연합의 사법통역제도 개선 권고안

유럽연합의 지원 하에 사법통역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여러 차례 발행되었다.

102) *Kundgørelse* (Proclamation) I, No. 11 of 12 January 1994(Jacobsen 2003 재인용).

103) Martinsen, B. and Rasmussen, K. W., 앞의 논문.

2001년 Aequitas, 2003년 Aequaltas, 2005sus Aequilibrium, 2008년 Status Quaestionis가 있다. 이 가운데 2008년 Status Quaestionis에 제시한 권고안 내용을 아래에 연구자 번역으로 요약하였다.<sup>104)</sup>

#### 가. Status Quaestionis 권고안

1. 회원국 내 능력을 갖춘 당국자들은 사법통번역과 관련하여 법률요건과 우수한 운영기준(good practice)의 요건에 대해 새로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법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이들에 대한 연수 필요성에 대해 점검하거나 우선 순위 재배정 또는 예산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배포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사법통번역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집 대상이 되는 자료는 Status Quaestionis 부록 IV에 제시한 바와 같다. 회원국들이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방법을 결정해야 하고 국가 차원에서 공통 핵심 문제를 유지하되 지역 단위로 수집할 가능성이 크지만 유럽연합 차원에서 접근법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절차에 있어서 복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확한 의사소통이 개별 기관에서 필요하다. 따라서 사법 통번역인의 수요와 공급 문제는 수사를 포함한 사법절차, 그리고 변론 준비 과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관련 기관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설문지에는 선고 이후 단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법 정의의 관점에서 언어 장벽을 이유로 선고 선택이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교정시설 혹은 교정시설 외부에서 형을 집행하는 방법에서도 필요한 경우 언어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한 지원은 법원에 보고서를 준비하는 보호감찰 등 기타 서비스에도 필요하다. 회원국 내 절차에서뿐 아니라 상호인정협정 아래 보석 및 감찰 명령 등과 관련된 사안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중략)

104) Hertog, E. and van Gucht, J., *Status Questionis: Questionnaire on the provision of legal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in the EU*, (Antwerp/Oxford/Portland: Intersentia, 2008), p. 191-200.

본 프로젝트 그룹은 다음 세 가지에 관한 설문 응답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 절차적 안전장치
- 통번역 직업에 관한 규제
- 품질보장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준수하지만 모든 회원국들은 공히 개선이 필요하다.

#### 1) 절차적 안전장치

이는 인권 및 근본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을 포함한 유럽 법률에 포함되어 있다. 많은 회원국에는 이에 해당하는 국내 법규가 있다. 이러한 요건을 실행하고 보장하기 위한 절차에 통번역인들이 있어야 하는 상황, 통번역인 활용 및 선정 기준 (예, 피고인 언어능력),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점에 관해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정부측 참가자와 통번역인들의 점수가 대체로 일치한다. 벨기에만 정부측 참가자들에 비해 통역인들의 답이 부정적이어서 차이가 있었다. 사이프러스에서는 통번역인들이 안전조치 수준을 높게 평가하지만 정부측 반응이 없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렵다고 답하였다. 아일랜드에서는 새로운 이민자 유입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겪고 있는 국가로서 정부와 통번역인 집단 모두 절차적 안전조치가 열악하다고 보고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중략)

〈권고안〉

회원국들은

- ① ECHR의 기본권리와 절차적 안전조치를 보다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실제 기준을 개선하고 시민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우수한 운영기준을 공유해야 한다.
  - 우수한 운영기준 가이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자격을 갖추고 등록된 사법통번역인을 고용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 ▶ 언어 능력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사법통번역인을 활용해야 한다.
  - ▶ 사법통번역이 신뢰할 만한 의사소통에 필요하다는 점이 확립된다면, 피의자/피고인이 충분히 변호를 준비하고, 피의자/피고인과 증인이 이해하면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느 과정에서 통역인을 반드시 배석시켜야 하는지 밝혀야 한다. 사전 계획과 절차에 걸쳐 이뤄지는 의사소통에 관한 관리가 도움이 되므로 개별 파일에 통역 번역 기록을 편철하는 등 세부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 수사 등 기능의 분리를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통역인이 언제, 어디에 필요한지 고려해야 한다.
  - ▶ 법원 또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관련된 통역비용과 번역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개인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사건의 경우, 언어능력이 되는 사람에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과 농인의 경우 수화통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2) 통번역 직업에 관한 규제

변호사 집단과 같이 형사사법제도 상 다른 직업인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필요한 공식적인 직업인 구조를 위한 국가적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사법통역인의 선발, 교육, 평가뿐 아니라 자격인증과 등록이 포함되어야 하며,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이를 어길 시에 제재조치가 있어야 하며, 우수한 운영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요건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Status Quaestionis 부록 III 참조).

정부측 참가자와 통번역 참가자들의 답에 의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슬로베니아, 체코공화국, 루마니아, 오스트리아가 평균을 약간 상회한다. 벨기에와 아일랜드는 평균 이하로 평가되었다.

#### 〈권고사항〉

개별 회원국은

- ① EU 내 일관성을 위해 전국적인 독립된 전문 사법통역인과 사법번역사 명단을 작성해야 하며, 명단에 등재되기 위해 동일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한정적으로 멤버십을 허가하여 전문기술을 개발하도록 차등적인 회원자격을 두어야 한다. 윤리강령을 공유해야 하며, 제재절차와 함께, 우수한 운영기준에 관한 가이드가 있어야 한다.
- ② 사법통역인과 사법번역사를 위한 교육과정을 학부와 석사과정에서 만들어야 하며, 언어조합이 유사한 경우 회원국간 교환학생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국의 교육부는 이러한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새로운 이민자들의 경우 전문직업코스와 시험 응시료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다양한 언어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공식적인 교육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탄탄한 기초를 닦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법통번역인 교육언어는 세계경제에서 일어나는 산업, 무역, 사회적 교류에 사용되는 다양한 언어 중 국가 차원에서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 ③ 사법통역인과 사법번역사에 대한 학부와 석사 수준 국가 공인평가제를 만들어야 한다(www.cilt.org.uk/standards, Aequitas EU Grotius project 96/GR/131 권고 참조).
- ④ 사법통역인과 사법번역사의 고용 및 근무 조건에 국가적으로 합의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 ⑤ 통번역인과 같이 일하는 것에 관해 법률서비스 종사자들이 연수를 받거나 가이드라인을 제공 받아야 한다.
- ⑥ 각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진전과 발전상황을 쫓아감으로써 기술과 비용재

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품질보장

소수의 회원국만이 통역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녹화하는 곳이 거의 없으며, 녹음도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녹음에 대한 전사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 체코공화국과 영국은 정부와 통번역인 집단의 답변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우수한 편이지만 독일과 아일랜드는 평균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스웨덴의 경우 정부측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통번역인들의 반응으로는 매우 우수한 평가가 나왔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정부측 답변이 없었으며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 〈권고사항〉

회원국들은 형사사법제도를 보호하고, 회원국간의 상호신뢰를 높이며, 자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법통번역에 관하여 실질적인 품질보장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 경찰신문과 법정심리 녹음
- ▶ 경찰신문과 법정심리 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특히, 농인에 대한 경찰신문과 법정심리 영상녹화
- ▶ 독립된 평가자로 활동할 수 있을 만한 경험 많은 통역인과 번역사의 선발과 교육 및 우수한 운영기준 가이드와 접근법에 대한 합의
- ▶ 통번역인과 일하고, 타문화인과 일할 수 있는 동료 사법인과 법조인의 기술을 훈련시키고 평가할 수 있는 고위 법조인과 사법인 선발 및 교육
- ▶ 충분한 품질의 통역과 번역에 대한 사법계와 법조인들의 인식제고와 충분한 품질이 통번역 제공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장치와 수단

## 나. 형사절차상 통번역 권리 보장을 위한 지침

## 1) 유럽과 미국 사법통역제도 비교

유럽인권협약 제6조는 체포시점에서부터 모든 사법절차에 걸쳐 해당국가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격 있는 통역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미국은 통역인에 대한 권리가 피고인이 자신의 고발자에 대항하고, 변호인과 상의하고 자신의 방어에 참여하기 위한 권리에서 출발한다.<sup>105)</sup> 형사분야에서 미국은 사건이 법정에서 다루지기 이전 시점까지 자격을 갖춘 통역인이 개입하는 것이 드물다. 이중언어 검찰직원이나 외부 계약자를 활용하는 샌디에고 검찰과 자체 인증시험이 있는 FBI와 같은 연방조직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다.<sup>106)</sup> 유럽과 미국 간의 사법제도가 상이한 부분도 있지만 사법통역에 있어서 법원과 통역인들이 봉착한 어려움은 비슷한 특성이 있다. 사법통역인으로서 동일한 윤리 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으나 사법통역인에 대한 교육과 사법통역인을 고용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대한 교육이 없다는 면에 있어서는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동일하다. 통역인들이 일하는 사법현장에서 근무환경과 스트레스에 대해 사법인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역인들이 통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를 다 들을 수 있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통역인 개인의 건강과 안정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통역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연방법원에는 동시통역장비가 보편화된 반면 미국 주법원과 유럽 법원에서는 그렇지 못하다.<sup>107)</sup> 또한 통역인들이 피로도를 덜고 정확한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통역인 2인 이상이 업무를 분담하는 팀 통역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도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이 같다.

105) Helmerich, C., Court interpreting: The U.S. v. EU a brief comparison of our realities. H. Keijzer-Lambooy and W. J. Gsille (eds.), *Aequilibrium: Instruments for lifting language barriers in intercultural legal settings*, (ITV Hogeschool, 2005), p. 185.

106) Helmerich, C., 앞의 논문, p. 185-186.

107) Helmerich, C., 앞의 논문, P. 188.

## 2) 형사절차상 통번역 권리 보장을 위한 지침

유럽집행위원회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최소한의 공동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형사절차상 정보에 관한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침(Directive on the right to information in criminal proceedings)을 2010년 7월 발의하여, 2011년 12월 13일 유럽의회에서 표결에 부쳤다. 2012년 4월 27일 유럽 각국 법무장관이 합의한 이 법은 유럽회원국 내에서 유럽구속영장에 해당하거나 체포된 모든 이들이 형사절차상 기본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권리서한(Letter of Rights)을 제공받도록 한다. 이에 앞서 2010년 10월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피의자의 통번역 권리를 부여한 첫 번째 제안(IP/10/1305)을 승인한 바 있다. (해당부분 번역 아래 참조)

유럽 각국은 향후 2년 내에 자국법에 새로운 규칙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유럽 회원국의 약 1/3에 해당하는 오스트리아, 체코공화국,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에서만 권리서한이 제공되고 있다. 평이한 언어로 표현된 정보에 관한 권리서한은 체포 시에도 모든 피의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제공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번역된다. 유럽위원회에서 22개 언어로 번역모델을 제시한 상태이나 회원국이 각자 권리서한의 문구를 결정할 수 있다.<sup>108)</sup>

2012년 9월 12일 유럽의회는 유럽연합 내 범죄 피해자보호와 지원 및 권리에 관한 최저 기준을 설정한 지침을 채택하였다.<sup>109)</sup> 이로 인해 회원국들은 3년 이내에 자국법에 반영해야 한다. 본 지침은 형사법 분야에서 평등과 비차별을 증진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지침 1(1)에 의하면 범죄피해자들이 적절한 정보, 지원, 보호를 받고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범죄 피해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 근거로는 언어, 민족, 배경 및 언어도 포함되어 있다. 이해 및 의사표현 능력 제한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하고 평이한 언어로 의사소통한다(3조)는 내용과 지침에 따른 피해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

108) <http://www.legalaidreform.org/news/item/398-eu-wide-right-to-information-at-arrest-is-now-law>

109) <http://www.legalaidreform.org/news/item/451-legislation-watch-new-directive-on-the-rights-of-victims-of-crime-adopted-by-the-european-parliament>

도록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에 통번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과 조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제4조).

형사절차상 통번역 권리에 관한 2010.10.20.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 지침 2010/64/EU

모두 생략

- (9) 모든 회원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공동 최저수준의 규칙이 세워져서 상호신뢰의 분위기 속에 보다 효율적인 사법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 최저수준의 규칙이 형사절차상 통번역 분야에 정립되어야 한다.
- (10) 2009년 11월 30일, 유럽이사회는 형사 피의자의 절차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 결의안을 채택하였다(OJ C 295, 4.12.2009, p.1). 단계별 접근을 통해 통번역 권리, 권리 및 죄명과 기소 정보에 관한 권리, 법률자문과 지원을 받을 권리, 친척, 고용인, 자국 영사와 의사소통할 권리, 그리고 취약한 피의자에 대한 특별보호에 관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 (11) 2009년 12월 10일 채택한 스톡홀름 프로그램에서 유럽이사회는 로드맵을 환영하고 스톡홀름 프로그램의 일부로 편입시켰다. 유럽이사회는 유럽집행위원회로 하여금 피의자의 최소한의 절차상 권리 요소를 검토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뤄야 할 다른 이슈들이 있는지 평가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로드맵이 완결된 한정적인 성격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 (12) 본 지침은 로드맵 가운데 A조치에 해당하며, 회원국간의 상호신뢰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사절차상 통역번역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동등 원칙을 마련하였다.
- (13) 본 지침은 2009.7.8. 형사절차상 통번역 권리에 관한 위원회 기초결정(Council Framework Decision)을 위한 집행위원회의 제안과 2010년 3월 9일 형사절차상 통번역 권리에 관한 유럽의회의 지침과 위원회 지침을 위한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기초로 한다.

- (14) 유럽인권 재판소 판례법 해석에서와 같이, 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거나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통번역 권리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ECHR) 6조에 포함된다. 본 지침은 이 권리의 실제 적용을 원활하게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본 지침은 피의자와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형사절차에서 통번역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 (15) 본 지침이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유럽 구속영장 집행에도 필요한 조치로써 본 지침이 정한 권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회원국들은 절차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거나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 통번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16) 일부 회원국에서는 형사사법권을 가진 법원 이외의 기관이 경미한 범죄에 관해서 처벌할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면 교통법위반과 같은 사례이다. 이러한 경우, 본 지침 하에서 해당 사법기관에서 모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회원국의 법이 그러한 당국에 의한 처벌을 허용하고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 본 지침은 법원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 (17) 본 지침은 무료로 적절한 언어 지원을 통하여 피의자/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거나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절차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 (18) 피의자/피고인을 위한 통역이 지체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역 전 일정 시간 경과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시간경과 범위 내라고 한다면, 이로 인해 지체 없이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 (19)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간의 의사소통은 본 지침에 의거하여 통역되어야 한다. 피의자/피고인은 자신의 변호인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자신들의 진술로서 설명해줄 수 있어야 하고, 부동의하는 진술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하며, 방어를 위해 제출해야 할 사실에 대해 변호인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 (20)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이 심리 절차나 절차상 신문과 직접 관련되어 변호 준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상소장 제출이나 보석신청 등 다른 절차

상 신청을 위해 하는 의사소통도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통역되어야 한다.

- (21) 회원국들은 피의자/피고인이 형사절차상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통역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능력을 갖춘 당국자들이 피의자/피고인과 협의를 하여 형사절차상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하는지와 통역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함을 암시한다.
- (22) 본 지침 하에서 통번역은 피의자/피고인의 모국어 또는 그들이 구사하는 다른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방어권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절차상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 (23) 본 지침에 포함된 통번역 권리에 대한 존중은 국가법률 하에서 절차적 권리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 (24) 능력을 갖춘 당국자들이 특정 사건을 통보받은 경우 제공하는 통번역의 적절성에 대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5) 유럽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절차에서 해당 국가 국내법에 따른 절차에 의거하여 통역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대해 피의자/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 권리는 회원국들이 이 판단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절차나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며 유럽구속영장 집행에 적용되는 시한에 대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 (26) 통역의 질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능력을 갖춘 당국자들이 선정한 통역인으로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 (27) 공정한 사법집행을 위해 취약한 상태, 특히 의사소통 능력을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가진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주의의 의무가 있다. 경찰, 검찰을 포함한 사법당국은 이러한 피의자/피고인들이 본 지침이 보호하고 있는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성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며 이러한 권리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8) 원격통역을 목적으로 화상회의를 할 때 능력을 갖춘 당국자들이 유럽 e-Justice(예, 화상회의장비와 매뉴얼을 갖춘 법원에 관한 정보)를 위해 개발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29) 본 지침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타당하다면 안전조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 (30) 절차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 문건, 최소한 문건의 해당 문단만이 라도 피의자/피고인을 위해 번역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특정 문건은 항상 필수적이라고 간주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유를 박탈하는 결정, 기소, 판결과 관련된 문건이 이에 해당한다. 회원국 내 능력을 갖춘 당국자들이 발의하여 또는 피의자/피고인 혹은 법정대리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절차상 공정성을 지키기에 필수적인 다른 문건이 무엇인지 결정하여 번역하여야 한다.
- (31) 회원국들은 전국적으로 법률 번역사와 통역인 명단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2008년 11월 27일 2009-2013 e-Justice 실행계획에 정한 바와 같이 e-Justice 포털을 통해 통역인과 번역사가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32) 본 지침은 최소한의 규칙을 세워야 한다. 본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위해 회원국들은 본 지침에서 명시한 권리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권리 보호 수준이 유럽인권법원 또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판례법에서 해석하는 바와 같이 ECHR이나 인권헌장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절대 낮춰져서는 안 된다.
- (33) ECHR 또는 인권헌장이 보장하는 권리에 해당하는 본 지침조항은 유럽인권법원 또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판례법에서 해석하는 바와 같이 일관되게 해석하고 실행해야 한다.
- (34) 지침의 목적이 최소한의 공동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회원국들이 충분히 달성할 수 없으며, 규모나 효과 면에서 유럽 연합 차원에서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조약 제5조에 명시된 보충성(subsidiarity) 원칙에 의거하여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동 5조에 명시된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에 의거하여 본 지침은 목표를 달성하기에 필요

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35)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부속 자유, 안보, 사법 지역에 관한 영국과 아일랜드의 입장에 관한 의정서(No. 21) 제3조에 의거하여 이들 회원국들은 본 지침의 채택과 적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36)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부속 자유, 안보, 사법 지역에 관한 덴마크의 입장에 관한 의정서(No. 22) 제1조와 제2조에 의거하여 덴마크는 본 지침 채택에 참여하지 않으며 이에 구속받지도 않으며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지침을 채택하였다.

## 〈지침 본문〉

### 1조 해당사항과 범위

1. 본 지침은 형사 절차와 유럽구속영장 실행절차에서 통역과 번역 권리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2. 1항에 언급한 권리는 회원국의 능력을 갖춘 당국자에 의해 공식적 통보 등의 방식에 의해 자신이 범죄행위에 대한 혐의를 받거나 기소되었다는 점을 고지 받았을 때부터 필요하다면 신고와 상소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범죄행위에 대한 문제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해당 절차의 완료시점까지 적용되어야 한다.
3. 회원국 법이 형사사법권을 가진 법원 외의 기관이 경미한 범죄에 관해서 사법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다면, 본 지침은 법원에 접수된 이의신청건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4. 본 지침은 형사절차상 모든 단계에서 피의자/피고인의 법률대리인이 배석하는 것과 형사절차 관련 문건에 대한 접근권에 관한 국내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조 통역에 대한 권리

1. 회원국들은 형사절차상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거나 구사하지 못하는 피의자/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이뤄지는 형사 절차 동안 지체 없이 통역을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는 경찰심문, 법정심리, 예비심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
2. 회원국들은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필요한 경우, 심리 절차나 절차상 신문과 직접 관련되어 변호 준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상소장 제출이나 보석신청 등 다른 절차상 신청을 위해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간에 이뤄지는 의사소통에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3. 1항과 2항에 의한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는 청력장애 혹은 언어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대한 적절한 지원에도 해당된다.
4. 회원국들은 피의자/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는지, 통역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5. 통역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에 피의자/피고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와 통역이 제공된 경우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불충분한 수준의 통역의 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국내법에 의한 절차에 맞게 보장해야 한다.
6. 통역인이 물리적으로 동석할 수 없다면 공정한 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화상회의, 전화, 인터넷을 사용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7. 유럽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절차에서 집행 회원국들은 절차에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거나 구사할 수 없는 사람에게 능력을 갖춘 당국자들은 이 조에 의거하여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8.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혐의나 기소내용에 대해 알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조항에 의거하여 제공하는 통역은 절차상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질을 갖추어야 한다.

## 3조 필수 문건 번역에 관한 권리

1. 형사절차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피의자/피고인이 적절한 시간

내에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절차상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문건의 번역문을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2. 필수 문건은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결정, 죄명, 공소, 판결문을 포함한다.
3. 능력을 갖춘 당국에서는 기타 다른 문건이 필수적인지 판단해야 한다. 피의자/피고인 또는 법률상 대리인이 그러한 취지로 문건 번역에 대한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4. 피의자/피고인이 자신과 관련된 형사 사건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목적과 무관한 문건에 대한 번역 요건은 없다.
5. 회원국들은 피의자/피고인이 문건 번역이 불필요하다고 내린 결정과 번역이 제공된 경우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에 불충분한 번역의 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국내법 절차에 맞게 보장해야 한다.
6. 유럽구속영장 집행 절차에서 회원국들은 구속영장이 작성된 언어나 회원국이 발급한 번역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번역문을 제공해야 한다.
7. 1항, 2항, 3항, 6항에 명시된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로, 구술번역 또는 문건 요약통역이 절차상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구술번역 또는 문건 요약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8. 이 조에 언급된 문건의 번역을 제공받을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피의자/피고인이 사전에 법률자문을 제공받았거나 그러한 면제에 따른 결과에 대한 전체 사실을 통보 받았고 포기에 대해 분명하고 자발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였다는 전제요건이 있다.
9. 이 조에 의거한 번역은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알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상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번역이어야 한다.

#### 4조 통역과 번역 비용

회원국들은 절차의 결과와 무관하게 2조와 3조 적용에 따른 통역 및 번역 비용

을 충당해야 한다.

### 5조 통역과 번역의 질

1. 회원국들은 2(8)과 3(9)에서 요구하는 질적인 수준에 맞는 통역과 번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통역과 번역의 적절성과 효율적인 접근을 증진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자격을 갖춘, 독립적인 번역사와 통역인 명단을 작성하는 노력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명단을 만들게 되면 변호인과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 한다.
3. 회원국들은 통역인과 번역사들이 본 지침에서 다루고 있는 통역과 번역에 관한 비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 6조 교육

통역인을 통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사법적 독립과 제도 차이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회원국들은 형사절차와 관련된 판사, 검사, 사법기관 직원들에 대한 교육 책임을 맡은 기관에서 통역인의 조력을 통한 의사소통 시 유의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7조 기록

회원국들은 피의자/피고인이 2조에 의거한 통역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신문 또는 심리를 받았거나, 3(7)에 의거하여 당국자가 배석하는 가운데 문건의 구술번역 혹은 요약통역을 제공하였거나 3(8)에 의거하여 번역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을 경우, 회원국 법에 맞는 기록 절차를 사용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 8조 비회귀(non-regression)

본 지침의 어떠한 것도 인권 및 기본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기타 국제법의 관련 조항 또는 회원국 법이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때 이에 포함된 모든 권리와 절차적 안전조치를 제한하거나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 9조 이행(transposition)

1. 회원국들은 2013년 10월 27일까지 본 지침을 준수하는 데에 필요한 법, 규칙, 행정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2. 회원국들은 그러한 조치의 텍스트를 집행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3. 회원국이 그러한 조치를 채택할 때 본 지침에 대해 언급하거나 공식적인 발표 시 언급해야 한다. 언급에 관한 방법은 회원국이 정한다.

### 10조 보고

집행위원회는 2014년 10월 27일까지 회원국이 본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정도에 관해 법률제안을 필요하다면 첨부하여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11조 효력발생

본 지침은 유럽연합 공식 저널에 발표한 20일후 효력이 발생한다.

### 12조 수신자

본 지침은 조약에 의거하여 회원국을 수신자로 한다.

2010년 10월 20일 스트라스부르크

## 제3절 호주

### 1. 사법통역인에 대한 법제

#### 가. 사법통역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은 형사사법통역 무료제공에 대해 서만 명문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민사소송에도 해당된다고 폭넓게 해

석할 수 있다. 유엔인권위원회(UHRC)가 ICCPR의 첫 번째 optional protocol에 대한 탄원서의 해석을 한 바 있고, UNHRC 해석에 의한 ICCPR 효력은 형사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sup>110)</sup>

‘통역인의 무료 조력(free assistance of an interpreter)’에 대한 해석에도 이견이 존재하지만 유럽인권위원회(The Europe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통역인의 무료 조력이 재판에 국한되지 않으며, 무조건적이고 완전 무료라고 본다. ICCPR의 통역인의 무료 조력 13(3)(f)을 반영한 인권과 근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유럽헌장(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을 예심(committal hearing)과 재판에 사용된 모든 문서 번역에까지 적용되는 권리로 해석하였다.<sup>111)</sup>

그렇지만 이러한 광의의 해석이 호주 사법제도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호주연방최고재판소(The High Court)는 IPCCR 조항실행에 관한 국내법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국내법의 일부가 아닌 것으로 보지만 통역의 부재는 불공정 재판의 한 요인이라고 보았다.<sup>112)</sup> 호주와 같은 연방제 국가에서는 각 주의 사법권에 해당하는 영역에 있어서 호주연방정부가 체결한 국제법적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이다. 형법은 각 주의 사법문제로서 연방정부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므로 개인이 자동적으로 ‘국제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sup>113)</sup> 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모든 국내법적 조치를 다 취한 뒤에야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sup>114)</sup> 그렇지만 실제로 통역을 제공받지 않은 피고인이나 소송당사자가 국제법과 관련된 소송을 할 수 있는 재력을 갖추거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

---

110) *SWM Broeks v Netherlands*, Communication No 172/1984. Laster, K. and Taylor, V., *Interpreters and the Legal System*. (Leichardt: The Federation Press, 1994), p. 76.

111) Laster, K. and Taylor, V., *ibid*, p. 76.

112) *Dietrich v R* (1993) 109 ALR 385, per Mason CJ and McHugh J. Laster, K. and Taylor, V., *ibid*, p. 76.

113) Laster, K. and Taylor, V., *ibid*, p. 77.

114) Laster, K. and Taylor, V., *ibid*, p. 77.

## 나. 사법통역인에 대한 호주 법제

## 1) 관습법 및 판례법

관습법원칙에 의하면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는 소송당사자인지 증인인지에 따라, 그리고 민사인지 형사소송인지에 따라 다르다. 관습법적으로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를 명문화하여 인정하지 않고, 개개인의 판사에게 이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였다.<sup>115)</sup> 법에 따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판사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허용되는데,<sup>116)</sup> 판사 개인의 임의적인 잣대나 사견에 기초해서 재량권을 임의로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sup>117)</sup> 호주 사법제도는 통역제공에 관한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기준을 개발하기보다는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온 편이다.<sup>118)</sup> 공정한 형사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배심원이 증인의 증거를 듣고 이해할 필요와 피고인이 증인의 증거를 듣고 이해할 필요를 법원이 고려해야 한다.<sup>119)</sup>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성에 해당하여 상소이유가 되며 부정확한 통역으로 인한 상소도 가능하다.<sup>120)</sup>

남호주주와 빅토리아주는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규정을 마련했지만 다른 주는 관습법 원칙이 적용되어 각 법원이 통역제공 여부 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한다.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는 증인의 경우 통역이 제공되면 시간을 벌게 되어 반대심문 시 영어를 구사하는 측에 유리하다는 주장이 있다.<sup>121)</sup> 그러나 탁월한 능력의 통역인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우수한 통역인도 원 발화의 대

115) Young 1990: 761, Laster and Taylor 1994: 77 재인용).

116) *Gradidge v Grace Bros Pty Ltd* (1988) 93 FLR 414; *Dairy Farmers Co-operative Milk Company Ltd. v Aquilina* (1963) 109 CR 458.

117) *Gradidge v Grace Bros Pty Ltd* (1988) 93 FLR 414 at 423

118) Laster, K. and Taylor, V., *ibid*, p. 78.

119) *Raymond Keith Johnson* (1986) 25 A Crim R 433 at 435 per Shepherdson J

120)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뉴사우스웨일즈주, 노던테리토리, 퀸즐랜드, 빅토리아, 서호주 지역에서 무능한 통역(incompetent interpreting)이 항소이유였던 50건을 중 매우 심한 오역이 발견된 16%만 항소가 받아들여졌다. Hayes, A. and Hale, S. (2011). “Appeals on incompetent interpreting”, *Journal of Judicial Administration*, Vol. 20, p. 119-130.

121) *Galea v Galea*, The Hon Justice P W Young and M W Young, “Legal Language” 64 ALJ (1990) 761 at 775.

략적 의미를 전달할 뿐 뉘앙스나 강세까지 전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실제 통역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은 매우 불리한 처지라 할 수 있다.<sup>122)</sup> 통역을 하게 되면 통역인이 원래 진술이나 질문에 대한 직역이 아닌 효과만 전달하고, 통역인이 자기 개인의 뜻에 따라 질문을 설명하거나 설명을 유도할 소지가 있는 등 진실을 확인하기 더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통역을 제공하였다고 해서 항상 완전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증거현출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증인이 영어를 조금 이해하지만 통역을 제공할 때 반대신문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sup>123)</sup>

영국 형사항소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에 관한 원칙을 아래와 같이 세웠고,<sup>124)</sup> 이는 호주 형사재판에서도 법적 근거가 된다.

- a. 변호인이 없는 외국인 피고인의 경우, 통역인을 반드시 배정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소송에 대해 내용을 전달시키고, 이에 대해 답변하게 한다.
- b. 변호사가 있는 외국인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통역이 불필요하다는 의사를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통역을 해주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길이다.
- c. 양자 모두의 경우, 이전 선서 증언(deposition)에서 상당히 벗어나거나 추가적인 증거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통역해주어야 한다.
- d.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중대한 오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반드시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R v Lee Kun 1916 1 KB 337은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중국인이 살인사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자신의 재판 동안 증인의 증언에 관해 예비심리에서 증인진술과 유사하는 이유로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이 이해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항소한 건이다. 이 건에서 Lord Reading은 “재판에 피고인이 참석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증거를 들을 수 있고 이에 대해 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

122) Commonwealth Attorney General's Department. *Access to Interpreters in the Australian Legal System*, (Canberra: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1991), p.44. 전반적으로 사법통역의 수준이 낮고 통역인 직업에 대한 규제가 불충분하고 윤리기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통역에 의존하는 비영이구사자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123) Commonwealth Attorney General's Department, *ibid*, p. 39.

124) R v Lee Kun [1916] 1 KB 337

고인의 참석은 신체적 참석뿐 아니라 재판절차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sup>125)</sup>

형사법정에서 증인이 영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 법원이 증거를 충실하고 정확하게,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판사가 통역제공의 필요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다시 말해 통역제공의 필요가 증인의 관점보다는 법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암묵적인 제공여부 판단 기준은 ‘재판절차의 효율성’이라 할 수 있다.<sup>126)</sup> 피고인이 영어를 잘 하는 경우에도 증인의 영어가 부족한 경우 증언을 통역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증인의 영어가 불충분한 가운데 증인신문을 마쳤지만 다시 소환하여 통역인이 배석한 가운데 다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한 항소심이 있다.<sup>127)</sup>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 변호인이 없는 소송 당사자가 통역제공을 받을 권리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sup>128)</sup> 이 경우 판사가 재량권을 갖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sup>129)</sup>

증인에 관해서는 통역인 제공유무의 결정권을 법원이 가지고 있다는 판례가 있다.<sup>130)</sup> 민사소송의 경우 증인 통역도 위 형사소송과 같은 원칙 적용된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가 영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모든 증거를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통역 받을 권리는 없다.<sup>131)</sup> 변호사가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법원에 재량권이 있다.<sup>132)</sup>

영어를 불완전하게 하는 증인의 경우 영어를 사용해서 ‘완전하고 정확하게, 그

125) *R v. Lee Kun* 1916 1 KB at 341

126) Laster, K. and Taylor, V., *ibid*, p.80.

127) *R v. Johnson* 1986 25 ACR 433

128) *Filios v. Morland* (1963) 63 SR (NSW) 331 at 332.

129) *Re Trepsca Mines Limited* [1960] 1 WLR 24. 민사소송의 경우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에 관한 결정은 궁극적으로 판사의 몫이다. (*Dairy Farmers Co-operative Milk Company Ltd. v Acquilina* (1963)) 형사피고인에게 통역제공은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하지만 민사나 형사소송에서 증인의 통역인 필요는 이보다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여겨지고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는 상당히 감소한다는 법적 해석이 존재한다. (Laster, K. and Taylor, V. *ibid*, p.78-79.)

130) *Dairy Farmers Co-operative Milk Co. Ltd. V Acquilina* 1963 109 CLR 458 at 464; *Filios v Morland* 1963 S.R. (NSW) 331.

131) Commonwealth Attorney General’s Department, *ibid*, p. 42.

132) *Trepsca Mines Ltd* 1960 1 WLR 24; Commonwealth Attorney General’s Department, *ibid*, p. 42.

리고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법정에 현출되기 힘들다.<sup>133)</sup> *Gradidge v Grace Bros Pty Ltd* 1988 93 FLR 414의 경우 농인 소송 당사자에게 통역을 제공하기로 법원이 결정을 내린 바 있다.<sup>134)</sup> 뉴사우스웨일즈 항소법원은 통역인에게 법률논쟁 부분을 통역하지 않도록 한 1심법원의 결정에 대해 실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sup>135)</sup>

행정심판소 역시 사법적 공정성이라는 영국-호주 관습법적 전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가 동석하지 못하는 행정심판에서 통역제공 권리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가 있다. 이러한 경우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변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줄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sup>136)</sup> 증인의 표현을 심판소가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행정심판에서 통역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sup>137)</sup> 호주의 각종 행정심판소 설립과 관련된 법규에 통역제공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sup>138)</sup>

## 2) 성문법

1987년 남호주주는 증거법 1929(the Evidence Act 1929)와 경범죄 1953 (the Summary Offences Act 1953)을 개정하였는데 여기에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를 명문화하였다. 개정경범죄 para 4.3.16에 경찰 심문(취조) 받을 때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에 대해 조항이 있다. 증거법 14(1)에 재판과정에서 증인이 통역인을 통해 증언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포함되어 있다.

### 14(1) 아래 경우와 같이

- (a) 소송절차에서 구술증거를 제출할 증인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며
- (b) 증인이 영어에 능통하지 않을 때

133) Commonwealth Attorney General's Department, *ibid*, p. 39.

134) Commonwealth Attorney General's Department, *ibid*, p. 43.

135) Commonwealth Attorney General's Department, *ibid*, p. 43.

136) *Krstic v. Australian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1988) 16 ALD 751, 754 per Woodward J.

137) *Filos v Morland* (1963) SR (NSW) 331 at 334 per ElseMitchelle J.

138) The Migration Act 1958 (Cth) s 132(7), the Defence Force Discipline Act 1982 (Cth) s 101H(6), Social Security Act 1991 (Cth) s 1265(6) 등.

증인은 통역인을 통해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유창함(fluent)”이란 관습법에서 말하는 언어능력보다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 그러나 언어능력이 유창하다고 해도 법정언어를 충분히 이해하고 증거를 제출할 능력이 부족할 수는 있다.<sup>139)</sup> 증인의 언어능력에 대한 판단주체를 법원으로 삼은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영어만 구사하는 판사가 개인의 언어능력을 평가하여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통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만큼 언어장애가 있는지, 개인의 언어능력에 대해 판사들이 의사소통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 주소, 직업, 호주 거주기간 등을 물어보는 경우가 잦은데 이런 단순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영어 구사능력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또한 매우 사소한 증거임에도 증인이 통역인을 통해 증언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통역인을 확보할 때까지 휴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sup>140)</sup> 또 다른 문제점은 법률상 제한적으로는 피고인이나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증인이 될 수 있지만 항상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인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송당사자가 재판 진행상황을 이해하고 변호를 계획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141)</sup> 실제 남호주 법원 행정처(the South Australian Court Service Department)에서는 형사재판의 경우 재판 진행상황에 대해 통역을 제공할 통역인을 배정하고, 민사소송에서는 증인에게만 통역인을 배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당사자들은 각자 통역인을 고용하여 재판 진행을 이행하고 자신의 소송을 준비하게 된다. 남호주법원 행정처에 의하면 이 개정법규는 실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던 사람에게 통역을 제공하던 관행을 공식화한 것으로 실제 법개정 이후 통역제공 건수가 늘지는 않았다고 한다.<sup>142)</sup>

빅토리아주의 각종 법에 모두 사법통역인 제공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sup>143)</sup> 유청소년법 1989(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89)에는 부모나 당사

139) Commonwealth Attorney General's Department, *ibid*, p. 53.

140) Commonwealth Attorney General's Department, *ibid*, p. 53.

141) Commonwealth Attorney General's Department, *ibid*, p. 54.

142) Commonwealth Attorney General's Department, *ibid*, p. 54.

143) The Crimes (Family Violence) Act 1987, Crimes (Custody and Investigation) Act 1988,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89, Magistrates Court Act 1989.

자가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한다. 치안판사법원법 1989(Magistrates Court Act 1989)는 피고인이 재판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영어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며, 증인이나 소송 당사자들의 영어 능력도 법원이 판단한다. 치안판사법원법은 영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법정절차를 이해하고 참가할 수 있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sup>144)</sup>

이민법 1958 제132(7)조는 이민재심재판소에 증언하러 온 사람이 영어를 능숙하게 하지 못할 때 심판관이 통역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게 지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는 통역인의 적절한 활용에 대한 안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케이스를 잘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심판소 관행을 세워가야 할 필요가 있다.

호주 연방 경찰 일반 지침(Australia Federal Police General Instruction 34)은 통역인이 필요한 경우를 ‘인터뷰(신문)시에 영어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말하지 못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할 때 인터뷰 받는 사람의 언어에 능통한 통역인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신문에 참가하는 경찰관 중에 상급자가 자격을 갖춘 통역인을 섭외할 책임이 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형법(the Crimes (Custody and Investigation) Act 1988)이 통과되었다. 체포 시에 지인이나 친척, 그리고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고,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하는 법규를 제정한 것이다. 제464D조의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 (1)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이 신문사항을 이해할 지식이 없다면 수사관은 신문이나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능력을 갖춘 통역인을 배석시켜야 하며, 통역인이 도착할 때까지 신문이나 조사를 연기해야 한다. ...
- (3) 이 조항은 1986 도로안전법(the Road Safety Act 1986) 49(1) (음주운전규정)과 관련된 범법행위에 관한 신문이나 조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44) Commonwealth Attorney General's Department, *ibid*, p. 55.

위 조항을 위배한 상황에서 입수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수 년 동안 빅토리아주 경찰은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 및 문화적 민감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고자 노력해 왔다. 빅토리아주 경찰 신문 시 녹음을 반드시 해야 하며 법원에는 녹음 영어본이 제출된다.<sup>145)</sup>

남호주의 경범죄 개정법(the Summary Offences Act Ammendment Act)은 경찰 수사관이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를 고지하기 전까지 영어에 능통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신문이나 질문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해당 법령 제79조에는 범죄 혐의로 체포한 자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신문 시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83조에는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도 신문 시에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를 고지 받기 전까지 수사관은 신문할 수 없으며,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통역의 조력을 요청하였을 경우 통역인이 도착할 때까지 신문을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1991년 연방범죄조사와 관련된 형법 개정법 No. 59 of 1991 - SECT 3(<http://www.comlaw.gov.au/Details/C2004A04134>)에도 영어로 합리적이라고 할 만한 수준으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을 체포하였을 때 신문하기 전에 반드시 통역인을 배석시켜야 하며, 통역인이 배석할 때까지 질문이나 수사를 연기해야 한다는 조항(23 N)이 있으며, 이는 수사관의 의무조항으로 위반 시 경찰관이 처벌받게 된다.

가족이나 친지에 의한 통역은 비영어구사자의 법적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과거 호주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전문 통역인이 아닌 자신의 미성년 자녀가 통역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불참하거나 소송을 취하한 경우도 있었다.<sup>146)</sup>

145) Commonwealth Attorney General's Department, *ibid*, p. 43.

146) Assafiri and Cimopoulos 1993: 3; *Singh v Minister for Immigration Ethnic Affairs* (1987) 15 FCR 4

## 2. 사법통역인 제도의 운용

### 가. 통역인 자격인증 및 관리

#### 1) 통역인 자격시험 및 관리

호주 통번역인증기구인 NAATI가 통역인과 번역사의 직업표준을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NAATI는 연방 및 주·테리토리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독립기구로서 통역인과 번역사 인증제도를 운영한다.<sup>147)</sup> NAATI의 통역인 자격인증은 준통역인(Paraprofessional Interpreter), 통역인(Interpreter), 회의통역인(Conference Interpreter), 시니어 회의통역인(Senior Conference Interpreter)으로 몇 단계로 나뉘며, 통역인 자격시험이 운영되지 않은 소수언어의 경우 인정(Recognition)을 준다. Paraprofessional Interpreter는 간단한 대화통역 기술시험을 합격해야 자격인정을 받고, Interpreter는 커뮤니티통역과 관련된 대화통역과 순차통역 기술시험을 합격하거나 호주나 해외에서 이에 상응하는 통역인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NAATI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자격을 인정한다. Conference Interpreter는 호주나 해외에서 회의통역인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순차 및 동시통역 기술시험을 합격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자격이며, Conference Interpreter 경력자 중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은 Senior Conference Interpreter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연 2회 실시하는 정기 인증시험을 시행하는 언어는 때에 따라 변동되지만 2012년 현재, 한국어를 포함한 49개 언어의 Interpreter 시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61개 Praprofessional Interpreter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 응시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면 비정기 시험을 신청할 수도 있다.

시험 합격 외에도 NAATI 통·번역사인증을 받기 위한 몇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 우선, NAATI가 승인한 호주교육기관에서 통·번역 교과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것이다. 물론 성공적인 이수는 NAATI 시험수준에 준하는 승인된 교육과정 이수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밖에 호주 이외 국가에서 통번역학으로 학사이상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저명한 국제통번역인협회 회원자격을 갖추었거나,

---

147) [www.naati.com.au](http://www.naati.com.au)

통역이나 번역 부문에서 뛰어난 평판을 얻고 있으면 호주 NAATI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sup>148)</sup> 참고로 통역시험 합격률은 2005-6년도 15.22%, 번역시험 합격률은 18.02%를 기록하였다.<sup>149)</sup>

NAATI 통역인인증제도는 사법통역전문가인증제도가 아니므로 사법통역인에게 필요한 기술을 테스트하기에 한계가 있어 부적절하다.<sup>150)</sup> 사법통역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역인 자격인 Interpreter는 양방향 순차통역과 대화통역 시험만 거치므로 순차통역 기술은 있으나 사법통역, 특히 사법통역 시에 필요한 동시통역기술은 검증 받지 못한 통역인들이다. 사법통역에는 동시통역기술도 필요하므로 Conference Interpreter 이상의 자격이 필요하다.<sup>151)</sup> 원칙상 Interpreter 자격 이상자만 사법통역을 하도록 하지만 실제로 통역인 부족으로 Paraprofessional Interpreter도 사법통역을 하기도 한다. 또한 Interpreter 자격을 받는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Interpreter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들의 통역기술과 수준은 편차가 크다.<sup>152)</sup> 이와 같이 통역교육을 받지 않거나 전문통역인이 아닌 사람들이 사법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상 품질관리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2) 사법통역인 활용 가이드라인

1986년 연방, 주 및 지역 검찰 상임위원회에서는 사법통역인 활용에 관한 다음 가이드라인을 모든 사법관할권에서 채택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sup>153)</sup>

### 호주 사법제도 통역인 활용 가이드라인<sup>154)</sup>

148) <http://www.naati.com.au/booklets.html>

149) Turner, B., Lai, M., and Huang, N., "Error deduction and descriptors - A comparison of two methods of translation test assessment", *Translation & Interpreting*, Vol. 2 No. 1, p. 14.

150) Hale, S., *Interpreter Policies, Practices, and Protocols in Australian Courts and Tribunals: National Survey*, (Melbourne: The Australian Institute of Judicial Administration Inc., 2011), p. 11.

151) Hale, S., *ibid*, p. 11.

152) Hale, S., *ibid*, p. 13.

153) Commonwealth Attorney General's Department, *ibid*, p. 21.

- (a) 자격을 갖춘 독립적인 통역인들이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적절히 배치되도록 해서 형사피의자/피고인들이 무료로 통역 받을 수 있게 한다.
- (b) 통역인들은
  - 언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해당 민족 언어 커뮤니티 문화와 관습을 숙지해야 한다.
  - 호주 사법 절차와 법률 용어에 대해 알아야 하며, 가능하다면 해당 외국어의 문화를 알아야 한다.
  - 중립성과 기밀성을 포함한 사법통역인의 역할을 알아야 한다.
  - 소송인과 독립되어야 한다.
- (c) 사법인들은 사법통역 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지식을 갖추어서
  - 통역이 필요한 경우 사법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통역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경우 통역을 제공하도록 해야 하며,
  - 통역이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 한편, 통역인을 불필요하게 활용하는 경우를 줄이고,
  - 통역과정에 관계된 기술적인 어려움과 호주 사법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이 겪을 어려움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여야 한다.
- (d) 사법통역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고 민족 커뮤니티에서 배포되는 자료에 포함시켜야 한다.
- (e) 가능한 한 자격 없는 통역인보다 자격을 갖춘 통역인에 의한 통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f)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을 통역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 3) 사법통역의 방식

사법통역방식에 관해서는 법이나 관습법 원칙으로 확립된 것이 없다. 비영어사 용자에게 절차의 어느 정도 내용까지 통역해주며, 어떤 통역방식으로 통역을 제공하는지에 관해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전술한 R v Lee Kun은 ‘증거와 재

---

154) Commonwealth Attorney General's Department, *ibid*, p.175-176.

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소송 내용을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을 정도' 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였다.<sup>155)</sup> 빅토리아주 치안판사법원법 1989 역시 피고인이 이해하고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sup>156)</sup>

비영어사용자가 증거를 제출하거나 형사소송에서 반대신문을 받을 때 모든 진술 하나 하나가 정확하게 통역되어야 하기 때문에 순차통역을 동시통역보다 선호하며, 요약 통역은 부적절하다.<sup>157)</sup> 그렇지만 공판내용을 통역해주는 것은 동시통역이나 요약통역을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과거에 미국 연방법원은 동시통역을 허용하지 않은 판사의 결정을 사법적 재량권 행사로 인정한 바 있지만<sup>158)</sup> 현재 미국 사법통역 지침상 요약통역을 금하고 있다.<sup>159)</sup> 캐나다의 경우에도 다른 증인의 증언을 피고인에게 100% 통역해주지 않는 것을 근본적인 권리 침해라고 간주한다.<sup>160)</sup> 그렇지만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든 내용을 항상 100% 통역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재량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sup>161)</sup>

복수의 피고인이 증언을 할 때는 각기 개인별로 다른 통역인이 통역해야 한다.<sup>162)</sup> 하지만 호주법정 통역시 공판내용은 복수의 피고인이 헤드셋을 사용하고 통역인 1인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형식으로 통역되고 있다. 피고인이 다수일 때 소수의 통역인 배석으로 인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Arifin v Ostle* 사건과 같이 이러한 방식이 문제가 없지 않으므로 국제재판소 관행을 따를 수 있으면 좋겠다.<sup>163)</sup>

155) *R v Lee Kun* [1916] 1 KB 343

156) Laster, K. and Taylor, V., *ibid*, p. 94.

157) Laster, K. and Taylor, V., *ibid*, p. 94.

158) *Tejeda-Mata v Immigration and Naturalisation Service* 626 F 2d 721 (1980)

159) Hewitt, W., *Court interpretation: Model guides for policy and practice in the state courts*, (Williamsburg, VA: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1995).

160) *R v Reale* (1973), *Weber and Minister for Manpower and Immigration* (1976) 69 DLR (3d) 473.

161) *Brar v Canada (Solicitor General)* (1990) 43 ALR 44

162) *United States v Polanco-Gomez* 841 F 2d 235 (1988)

163) Laster, K. and Taylor, V., *ibid*, p. 95-96.

#### 4) 보수체계

2012년 7월 1일 현재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다문화위원회(CRC) 기준 통역요율은 아래와 같다.<sup>164)</sup> 통역인들이 받는 통역료는 여기에서 커미션과 세금 등을 제외한 보수다.

기본 근무시간 요율 (월-금: 7.30am to 6.00pm 호주달러(AUD) 기준)

수시 예약:

기본 2 시간 \$250.00

추가 15분마다 \$ 29.00

계약을 통한 예약:

3 시간 \$250.00

추가 15분마다 \$ 29.00

기본 근무시간 이외 요율

기본 2 시간 \$387.00

추가 15분마다 \$ 49.00

기본 근무시간 전일 요율

7 시간 기준 전일 \$580.00

추가 15분마다 \$ 29.00

주말 및 공휴일 요율

7 시간 기준 전일 \$1025.00

추가 15분마다 \$ 49.00

---

164) [http://www.crc.nsw.gov.au/\\_data/assets/pdf\\_file/0018/10575/Schedule\\_of\\_fees\\_12.pdf](http://www.crc.nsw.gov.au/_data/assets/pdf_file/0018/10575/Schedule_of_fees_12.pdf)

농어촌지역 출장시 여비와 행정수수료 추가 발생

취소료

예약시간 전 24시간 이내 취소 시 \$232.00

예약시간 전 48시간 이내 취소 시 \$77.00

연방정부 부처인 이민다문화원주민성(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nd Indigenous Affairs)에서 운영하는 TIS의 통역서비스요율은 전화 통역과 면대면통역이 다르다.<sup>165)</sup> 실제 통역인들이 받는 요율에 대해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간당 81달러(AUD) 이상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7.3%, 66-80달러(AUD)를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42.8%, 50달러(AUD) 이하를 받는 응답자가 57.5%를 차지했으며, 주별로 편차가 존재하였다.<sup>166)</sup> 프리랜스 통역인의 시간당 보수는 에이전시에 따라 시급이나 반일(half-day) 기준 요율에 차이가 있지만 대개 최저 시급 35-80달러 선의 통역료를 받고 있다. 이는 통역인의 자격이나 경력과 무관한 보수체계이며 통역인들의 가장 큰 불만요소이다.<sup>167)</sup>

나. 각 주의 사법통역인 운영 실태- 뉴사우스웨일즈와 퀸즈랜드를 중심으로

퀸즈랜드 주의 경우 호주에서도 가장 선진적인 통역정책을 실시하는 주로 평가 받는다. 2004년에 수립된 퀸즈랜드 주 다문화정책이 근간이 된 2009년 주법무부 및 검찰의 언어서비스정책은 사법분야에서 전문기술을 갖춘 통역인을 고용할 것을 권고한다.<sup>168)</sup> 통역인 자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가장 좋은 자격은 갖춘

165) [http://www.immi.gov.au/living-in-australia/help-with-english/help\\_with\\_translating/service-charges.htm](http://www.immi.gov.au/living-in-australia/help-with-english/help_with_translating/service-charges.htm)

166) Hale, S., *ibid*, p. 37.

167) Hale, S. and Stern, L.(2011), "Interpreter quality and working conditions: comparing Australian and international courts of justice", *Judicial Officers' Bulletin*, Vol. 23 No. 9, p. 11.

168) Queensland Government, *Multicultural Queensland: Making a world of difference policy (incorporating language services policy)*, (2004), p. 10.

통역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추천하면서 위급상황이나 Interpreter 자격증을 소유한 통역인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Interpreter 자격인증을 가진 통역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sup>169)</sup> 이 원칙은 퀸즈랜드 주 대법원 평등처 우 법관자료집에 다음과 같이 인용되어 있다.<sup>170)</sup>

일반 통역에 비해 사법통역은 전문화된 분야이다. 주 다민족국과 주 법무부는 사법통역인의 자격능력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 호주 사법제도에 관한 포괄적 지식
- ▶ 법률가와 사법기관 종사자의 역할에 대한 충실한 이해
- ▶ 법문화에 대한 민감성
- ▶ 법률용어 구사력
- ▶ 호주 법률제도 및 해당 외국어 사용국가의 법률제도에 관한 이해
- ▶ 대학이상 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
- ▶ 순차통역과 동시통역 능력
- ▶ 사법통역 윤리원칙 준수
- ▶ 법률가의 기대를 이해하고 이들과 전문적으로 같이 일하는 능력

인구센서스를 통해 주민구의 20% 정도가 영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후 연방정부 부처에서(당시 The Commonwealth Department of Immigration, Local Government and Ethnic Affairs) 전화통역서비스(TIS)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현재에는 경찰, 출입국 등 다양한 커뮤니티 통역부문에서 전화통역뿐 아니라 면대면 현장 통역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도 커뮤니티통역 중 상당 부분의 전화통역은 TIS가 맡고 있으며, 현장통역은 TIS 외에도 각 주별 정부단체, 커뮤니티단체, 민간 업체 등이 제공한다. TIS는 계약 통역인 풀을 갖추어 운영하며, 자격인증(NAATI Interpreter)을 갖춘 통역인에게 우선적으로 통역업무

---

([http://www.multicultural.qld.gov.au/media/maq\\_making\\_world\\_difference\\_policy.pdf](http://www.multicultural.qld.gov.au/media/maq_making_world_difference_policy.pdf))

169) Queensland Government, *ibid*, p. 10.

170) Supreme Court of Queensland. *Equal treatment benchbook*, (2005), p. 66.

([http://www.courts.qld.gov.au/The\\_Equal\\_Treatment\\_Bench\\_Book/S-ETBB.pdf](http://www.courts.qld.gov.au/The_Equal_Treatment_Bench_Book/S-ETBB.pdf))

를 배당한다. 응급상황이나 복지관련 문제를 제외하고는 유료서비스가 기본이며, 의료종사자나 기관, 비정부단체 및 기관 등은 무료 통역을 제공 받을 수 있다. TIS 통역인은 윤리규정과 보수에 관한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업무를 맡게 되며 통역인들에 대한 보수교육은 전혀 없다.

뉴사우스웨일주에는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for a Multicultural NSW(이하 CRC)가 사법통역서비스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총 104 개 언어에 대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원경찰에서도 우선적으로 CRC에 연락하여 통역인을 배정받는다.<sup>171)</sup> CRC(구 Ethnic Affairs Commission)는 통역인 풀을 두고 형사법정, 경찰, 주정부 재판소와 위원회에 통역서비스 제공한다. 그밖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민사 소송인에게 통역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뉴사우스웨일즈 주 내 법률센터에도 통역을 제공한다. 형사재판의 경우 대개 주검찰청(DPP)에서 CRC에 전화해서 피고인 통역이 필요하다고 알린다. 피고인 변호인은 증인신분보호를 위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CRC에 연락을 취해 통역인을 배정받는다.<sup>172)</sup> 신규 계약 CRC 통역인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 교육은 하루 정도의 길이가 전부이며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나 유지보수 교육이 정례화되지 않았다. 호주가 사법통역 전문통역인 자격증이 없는 상황이라 통역 전문가들은 사법통역인들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과 전문사법통역인인증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sup>173)</sup>

### 3. Stern과 Hale의 호주사법통역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

Stern(2012)은 선진적 제도를 확립한 국제재판소의 통역관행을 국내 법원에도 도입할 것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sup>174)</sup> 첫째, 재판준비 과

171) [http://www.crc.nsw.gov.au/services/language\\_services](http://www.crc.nsw.gov.au/services/language_services)

172) Commonwealth Attorney General's Department, *ibid*, p. 23.

173) Hale, S., *The Discourse of Court Interpreting*,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2004); Hale, S., Court interpreting: The need to raise the bar: Court interpreters as specialized experts. In M. Coulthard and A. Johnson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Forensic Linguistics*, (London/New York: Routledge, 2010), p. 440-454; Lee, J., "Interpreting inexplicit language during courtroom examination", *Applied Linguistics*, Vol. 30 No. 1, p. 93-114.

정에서 통역인에게 필요한 준비자료를 제공하고, 브리핑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근무조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휴식시간과 통역인 좌석을 제공하는 등 물리적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법원 내에 통역인들이 준비작업을 하거나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통역인에게 휴대용 통역기기를 제공하면 통역 시 듣거나 말하기가 수월해질 뿐 아니라 피고인석에 앉지 않아도 되며 법정 내 이동이 가능해진다. 다섯째, 통역서비스 사용자들이 좀더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고, 길고 장황하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통역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통역에 대한 법관과 변호사 대상 교육도 다문화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장기적으로 두 시간 이상 지속되는 심리의 경우 당사자 별로 한 명 이상의 통역인을 배정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호주 전국의 법원과 재판소의 통역관련 정책과 지침을 연구한 결과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일관된 기준과 정책이 결여되어 있고, 이로 인해 법원관계자들과 사법인, 통역인들과 비영어사용자들 사이에 혼란과 혼선이 드러났다.<sup>175)</sup> 일부 언어의 경우 사법관계자들이 질 낮은 통역서비스에 불만을 토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용시점에서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 위주로 고용하지 않는 점이 드러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족, 지인, 동료 수감사, 심지어 여행자들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관행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sup>176)</sup> 사법기관이 적은 보수를 지급해도 되는 수준 낮은 통역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관행으로 인해 사법통역교육을 받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통역인들은 불만을 토로하였다.<sup>177)</sup>

다음은 Hale(2011)이 제시한 16가지 권고사항으로,<sup>178)</sup> 이는 오랫동안 통역연구와 문헌, 실무자들이 요구해온 사항과 일치한다.

174) Stern, L., *ibid.*, p. 27-28.

175) Hale, S., *ibid.* p. 55.

176) Hale, S., *ibid.* p. xiv.

177) Hale, S., *ibid.* p. xiv.

178) Hale, S., *ibid.* p. xiv.

1. 모든 법원과 재판소는 최고 수준의 자격을 갖춘 통역인에게 항상 우선권을 준다.
2. 모든 통역인들이 공판이나 절차의 시작 단계에 자신의 자격에 대해 진술한다.
3. 법원과 재판소에서 일하는 모든 통역인들은 공식적인 사법통역인 교육을 받는다.
4. 전문 사법통역인 교육 장학제도를 설립한다.
5. NAATI는 전문사법통역인 인증제를 도입한다.
6. 자격을 갖춘 사법통역인의 전국적인 등록명부를 작성한다.
7.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들이 통역인과 효과적으로 일하는 법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는다.
8. 적절한 사법통역인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9. 가능한 한 배경자료와 정보를 통역인에게 사전에 제공하여 업무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10. 장시간 재판에서는 통역인 2인 1조로 팀 통역을 하게 한다.
11. 통역인 자격에 따라 통역요율 차등 적용한다.
12. 실제 소송지속 시간과 관계없이 법정 통역은 전일 예약제를 기본으로, 재판소는 최소한 반일 예약제를 기본으로 한다.
13. 보다 투명한 통역 계약제를 시행한다.
14. 법조인과 통역인들에게 보다 나은 피드백 시스템을 만든다.
15. 통역 전문가 전국 명단을 만든다.
16. 법원이나 재판소에서 통역과 관련된 국가적인 절차(프로토콜)를 수립한다.

Hale(2011)의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절차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sup>179)</sup>

1. 최우수 통역인을 선정하기
2. 사전에 사건 관련 정보를 통역인에게 제공하기
3. 통역인들이 대기하고 통역업무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법원이나 재판소에

---

179) Hale, S., *ibid.* 55

마련하여 브리핑 및 디브리핑 공간으로 활용하기

4. 통역인 소개하기
5. 통역인에게 이름과 자격을 밝히게 하고 신분증 제시하게 하기
6. 통역인에게 확인하거나, 반복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하기 위해 소송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는 점 통보하기
7. 독립적인 전문가로서 통역인을 법정이나 재판정에서 소개하기
8. 통역인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기
9. 통역인이 문화적 문제에 대해 언제, 어떻게 재판관계자에게 밝힐 것인지 명확히 하기
10. 1인칭, 2인칭 화법 사용하여 통역하기
11. 상황에 따라 적절한 통역방식 사용하기
12. 통역할 수 있도록 공판 흐름 조절하기
13.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통역인에게 적절한 근무환경 제공하기(일하는 공간, 식수, 헤드폰, 마이크,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14. 통역인에 대한 불만 처리하기
15. 통역 능력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구하기

## 제4절 홍콩

### 1. 사법통역인에 대한 법제

#### 가. 사법통역을 받을 권리

형사피의자/피고인이 사법통역을 제공 받을 권리가 Hong Kong Bill of Right Ordinance, Cap 383, Laws of Hong Kong에 명시되어 있다. Section 8의 제11조 (Article 11) (2)에 열거된 권리는 다음과 같다.<sup>180)</sup>

---

180) <http://www.legislation.gov.hk/eng/home.htm> 참조

- (2) 형사 기소를 결정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보장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 (a) 기소 당한 원인과 기소 내용과 성격에 대해 본인이 이해하는 언어로 자세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받는다.
  - (b) 자기 방어 준비를 위해 적절한 시간과 시설을 제공받아야 하며 본인이 선택한 대리인과 의사소통한다.
  - (c) 부적절한 지체 없이 재판을 받는다.
  - (d)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직접 스스로 변호하거나 본인이 선택한 변호인을 통해 변호 받으며, 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이 권리에 대해 통지 받으며, 사법정의상 필요한 모든 경우에 본인에게 배정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며, 재정적 수단이 없는 경우 변호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 (e)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을 신문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신문하는 한편 본인에게 유리한 증인을 반대 증인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출석하게 하여 신문하게 한다.
  - (f) 법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구사하지 못할 경우 통역인의 조력을 무료로 받는다.
  - (g)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증언을 강요당하거나 자백하지 않는다.

## 2 사법통역인 제도의 운영

### 가. 사법통역인 현황

홍콩 법원에서는 상근직(full time) 및 파트타임 통역인을 고용하고 있다. 2004년 기준, 사법부에서 163명의 상근직 통역인을 고용하고 있다(수석 사법통역인 2명, 39명의 선임 사법통역인, 1급 사법통역인 61명, 2급 사법통역인 61명).<sup>181)</sup> 이

181) LC Paper No. CB(2)1592/03-04(01) Panel on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Legal Services Performance of Court Interpreters, p. 2.  
(<http://www.legco.gov.hk/yr03-04/english/panels/ajls/papers/aj0322cb2-1592-1e.pdf>)

들 상근직 통역인들은 사법부에서 영어-광둥어 번역과 번역 및 공증 업무를 담당하며, 이 가운데 138명은 북경어 통역인, 20명은 치우차우어, 6명은 상하이어, 6명은 하카어, 4명은 아모이어, 4명은 호클로어, 2명은 토이산어, 1명은 하이난어, 1명은 푸초우어 통역인들이다.<sup>182)</sup> 파트타임통역인들은 36개 언어와 17개 중국어 방언 통번역 업무를 제공하며, 총 402명이 등록되어 있다. 이들은 상근직 통역인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어나 중국어 방언으로 법정에서 통역을 하며, 시간당 요율은 홍콩달러기준 \$204이다.<sup>183)</sup>

#### 나. 자격요건과 임용선발절차

사법통역인 선발은 공무원 임용선발 절차를 따른다.<sup>184)</sup> 모든 응시자는 행정부 (Civil Services Bureau)에서 실시하는 번역과 통역시험을 치른 후 면접시험을 본다. 대개 임용되는 통역인들은 모집 공고에 명시한 기본 요건을 상회하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다. 홍콩법원의 파트타임 통역인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 사법부에서는 정해진 영자 신문과 중국어 신문에 모집공고를 신는다. 해당 외국어가 능숙해야 하는 것 외에도 대학 학사 학위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영어 또는 중국어에 능해야 한다. 중국어 방언 통역인은 이보다 학력이 낮아도 된다.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하고, 중국어와 해당 방언에 능해야 한다. 해당 외국어를 사용하는 영사를 시험관으로 초청하거나 기존의 외국어 통역인이 시험관으로 채점을 맡는다. 중국어 방언 통역인 선발의 경우 5년 이상 등록된 파트타임 통역인 중 시험관으로 일하며, 파트타임 통역인 팀의 팀장인 선임 사법통역인이 구술시험 감독을 하게 된다. 상근직 사법통역인 중 가장 낮은 직급이 2급 사법통역직으로 아래 모집공고에 업무내용과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 사법통역인 2급 모집 공고 (2010년 4월 일자)<sup>185)</sup>

182) LC Paper No. CB(2)1592/03-04(01), *ibid.*

183) LC Paper No. CB(2)1592/03-04(01), *ibid.*

184) LC Paper No. CB(2)1592/03-04(01), *ibid.*

185) 2010년 4월 Recruit Online Hong Kong 모집공고; Ng 2012 개인서신

〈업무내용〉

- (a) 치안판사법원과 재판소 통역
- (b) 법원 문건 공증
- (c) 법원문건과 부서 문건 번역

〈요건〉

- (a) 홍콩 소재 대학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
  - (b) 영어와 중국어 최상 능력 ‘Level 2’ 및 CRE 적성검사 합격 또는 이에 준하는 판정
  - (c) 중국어 구어(광둥어 & 북경어 (2002년부터 북경어 시험합격조건))와 영어 구어 IELTS 6.5이상
  - (d) 기본법률지식 시험 합격 (모든 공무원에 해당)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능력을 고려하여 채용함.

〈임용조건〉

3년간 수습기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이후 3년간 공무원 계약 체결함. 3년 계약직을 성실하게 완료하였을 때 공무원 정년보장. 공무원 보수 16포인트-27포인트 (월 \$21,880- \$36,740)

다. 연수 프로그램

상근직 사법통역인들의 지식과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신입통역인을 위한 법원 별 연수 프로그램 외에도 대학을 포함한 다른 연수 기관과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 하기도 한다. 2003년의 경우 지식관리 워크샵, 사법통역인을 위한 직업영어, 사법 통역인의 전문성에 관한 세미나, 북경사법대학 직업북경어 강좌, 북경어와 상하이 어 간담회, 관리기술과 스트레스 관리법 워크샵 등을 제공한 바 있다.<sup>186)</sup>

파트타임 통역인들도 새로 임용되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법원조직과 절차, 근

186) LC Paper No. CB(2)1592/03-04(01), *ibid.*

무원칙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홍콩 법원조직, 통역인과 증인선서문, 죄명과 변론서 샘플, 신고유형, 자주 사용하는 법률용어, 노동 재판소 용어집, 그리고 통역인 기본편람 1부를 교부 받는다(아래 주요 내용 참조)

파트타임 통역인을 위한 기본 편람 (2004년 2월 개정판)<sup>187)</sup>

지위:

파트타임 통역인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혜택을 누리지 않으며 공무원 규정 준수의 의무는 없다. 업무를 수행할 동안에는 정부의 대리인 자격을 가지며, 뇌물수수금지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보수:

파트타임 통역요율은 정부가 정하며, 합리적인 시점에서 재조정된다. 번역은 목표언어 100단어 기준으로, 통역의 경우 시간당 요율을 적용 받는다. 최소 2시간 기본요율이 \$204이며, 2003년 4월부터 2시간 이후 통역은 30분 단위로 요율 적용을 한다. 번역료는 통상적인 문건의 경우 100단어당 \$74, 기술적인 문건은 100단어당 \$101로 정해져 있다. 100단어 미만도 100단어로 간주된다. 구두점과 여백은 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라. 사법통역인 업무지침

홍콩 사법통역인들은 기본적인 업무 태도에 대해 문서로 된 지침을 받는다.<sup>188)</sup> 통역인은 법정에서 한 모든 말을 보태거나 빠뜨리지 않고 충실하게 통역해야 한다. 증인의 말이 불분명하거나 논리적이지 않을 때 직접 증인에게 묻지 않아야 한다. 말이 되지 않더라도 통역하고, 확인은 법관이나 법률가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공소사항과 이에 대한 답변을 완전하게 전부 통역해주어야 하며, 1인칭 직접화

187) LC Paper No. CB(2)1592/03-04(01), *ibid.*

188) LC Paper No. CB(2)1592/03-04(01), *ibid.*

법으로 통역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답변에서 간접적으로 통역인이 추론하여서 ‘유죄 답변’, ‘무죄 답변’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치안판사법령 19(1)은 피고인이 유죄답변을 한 경우 최대한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기록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통역인은 분명하고, 적절한 목소리로 법정해서 통역해야 하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피고인과 민사소송에서 법정대리인이 없는 소송당사자의 경우 법정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을 알 권리가 있으므로 변론을 동시통역해주어야 한다. 별다른 지시가 없는 한 판결문을 문장별로 순차통역 해주어야 한다.

이해관계 충돌이 있거나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통역인은 이를 법원에 알려야 한다. 경우에 따라 해당 사건의 통역에 관심이 없으며, 관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에 서명해야 할 수도 있다.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증인이나 소송 당사자와 아는 사이이거나, ②소송 결과에 통역인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③공판 이전에 동일 사건의 다른 사법절차에 통역인으로 참여했을 경우이다.

통역상 어려움이 있다면 법원에 즉시 알려야 하며, 변호사나, 증인, 소송 당사자, 배심원 등과 법정 안팎에서 대화를 나누어서 안 된다.

번역 시 원문에 포함되지 않은 단어이지만 원문의 충실한 의미를 번역하기 위해 추가하였다면 반드시 괄호로 표시해야 한다. 반대로 번역상 불필요하여 생략한 단어가 있다면 괄호 안에 삭제라고 표시해야 한다. 원문에 알아볼 수 없는 단어가 있다면 ‘해독불가’라고 표기해야 한다.

파트타임 통역인은 동료, 친구, 다른 어떠한 사람과도 자신의 업무를 이전하거나, 재배당하거나, 하청계약을 하는 개인적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등록된 파트타임 통역인의 통상적인 퇴직 연령은 62세이다. 대부분 통역인 명부에서 62세가 되며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우수한 실력의 통역인이나 통역인 수급상황에 따라 유지될 수도 있다.

업무수행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파트타임 통역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파트타임 통역인 명부에서 삭제된다. 통역인은 14일 이내 이에 대한 취소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절 소 결

이상에서 각국의 사법통역관련 법제와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다. 국제인권규약 B 규약 제14조 3항 (a), (f)는 모든 사람은 그 형사상 죄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죄의 성질 및 이유를 통지받고, 법원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거나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절차에서 형벌권 발동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권리의 존재와 내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법정절차 특히 형사절차에 있어서 통역은 사소한 뉘앙스의 차이에서 죄의 성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일이다.

긴 이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일찍이 사법통역제도가 도입되었다. 미국에서 사법통역제도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이민으로 구성된 국가라는 측면도 있지만 영미법이 가지는 특징 때문이기도 하다. 영미법상의 당사자 주의와 구두변론주의 그리고 배심제도가 사법통역제도 확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비법률가인 배심원에게 통역을 통해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판례를 통해 사법통역이 하나의 권리로 인정되었으며, 뒤이어 사법통역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각 주에서 공인사법통역인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엄정하게 자격을 심사하고 있다. 동시에 사법통역인에게 정확하고 고도의 전문가적 윤리규정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민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다문화 국가인 호주의 경우 남호주와 빅토리아 주의 경우는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주는 관습법에 따라 각 법원이 통역여부 제공에 관해서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다. 호주의 경우 연방과 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독립기구인 NAATI가 인증시험을 시행하는 등 통역인과 번역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국제재판소의 선진적인 통역관행을 국내재판에 들여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 내 회원국들은 유럽인권협약을 근거로 사법통역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사법통역과 법률번역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2차에 걸친 그로티우스 프

로젝트와 후속 프로젝트인 AGIS를 진행한 바 있다. 유럽 각국은 간단한 면담이나 이력서 체크에서 정규시험까지 상이한 방식으로 통역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특정 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통역인 시험을 거치는 허가받은 통역인과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을 거친 허가받지 않은 통역인 양자를 인정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통역인 채용이 활발해지면서 윤리기준이 제시되었다. 유럽연합은 EU차원에서 사법통역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권고안을 내놓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콩의 경우는 사법통역을 받을 권리가 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있다. 홍콩 사법통역제도의 특징은 외국어 통번역 못지않게 중국어 방언 통역이 활성화 되어있다는 것이다. 홍콩은 공무원임용 시험을 통해서 사법통역인을 선발하고 있으며, 사법통역인들이 기본적인 업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들을 문서화하여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 각국의 사법통역인 제도를 살펴보았다. 많은 나라에서 통역을 받을 권리를 피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거나 혹은 인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많은 국가들이 사법통역인 제도 운용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사법통역인의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격한 자격인증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4장

형사소송에서의 사법통역을  
둘러싼 문제

안 성 훈



# 형사소송에서의 사법통역을 둘러싼 문제

## 제1절 형사소송에서의 사법통역

### 1. 수사단계

〈사례〉

“성폭행 피해에 합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통역해줘요.”(경찰)

“합의서를 써 주고 합의금을 받아도 처벌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네요.”(통역)  
 영터리 통역 때문에 성폭행 피의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뻔했지만 법원이 피해자 의사를 정확히 파악해 실형을 선고하였다.

(생략), 재판부와 경찰에 따르면 해외로 입양된 뒤 최근 귀국하였다 성폭행을 당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줄곧 ‘피의자를 처벌해 달라’ 고 하였다. 한국어를 못 하는 A씨는 자신이 알고 지내던 이에게 통역을 부탁하였다. 통역 요원은 해당 언어 사용 국가 거주 경험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경찰청에 등록한 뒤 자원봉사 형식으로 활동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경찰은 A씨의 의사를 반영해 통역 요원의 도움을 받도록 하였다.

고 씨는 합의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원만히 합의했으므

로 차후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통역 요원에게 보여줬다. 법률상 ‘합의’ 내용도 설명한 뒤 A씨 의사를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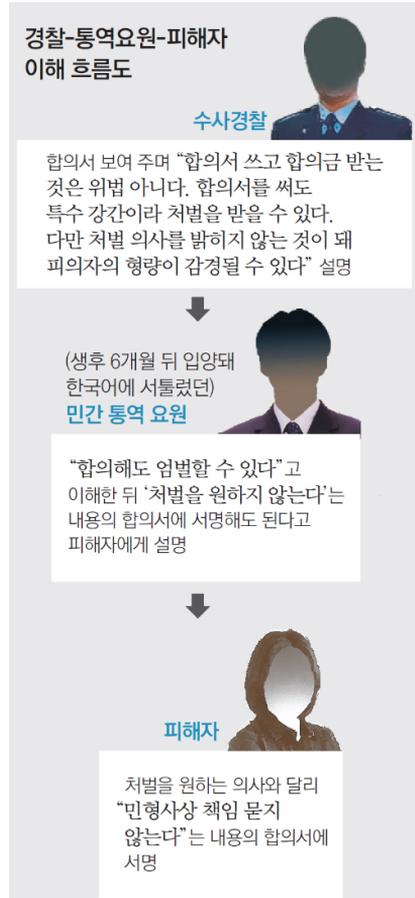
하지만 통역 요원도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외국으로 입양됐다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한국어로는 일상 대화만 가능하였다. 법률용어나 한국어 독해에 서툴렀던 통역 요원은 ‘합의서를 써 주고 합의를 받아도 처벌에는 영향이 없다’고 잘못 설명하였다. 이 설명을 들은 A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합의는 했지만 특수강간죄가 적용된 고씨는 재판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합의서를 근거로 “600만 원에 피해자가 합의했으니 법에 따라 형량을 줄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판과 경찰 조사에서 ‘엄벌을 원한다’고 한 점으로 미뤄 합의서는 잘못된 통역으로 인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고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아일보 기사)<sup>189)</sup>

위 사례는 외국인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사법통역의 문제이긴 하지만 외국인 관련 사건에 있어서 사법통역의 공정성·정확성과 사법통역인의 역할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수사단계에서 통역 역할의 중요성이 잘 나타나는 부분은 외국인 피의자와 관련한 부분이다. 외국인 피의자는 우리나라 말

〈그림 3〉 경찰-통역요원-피해자 이해흐름도



189) <http://news.donga.com/3/all/20120416/45547928/1>

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검사나 사법경찰관도 해당 외국어를 몰라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에 통역인의 필요성 및 그 역할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는 비록 수사과정 뿐만 아니라 재판과정 그리고 형의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공통되는 문제로서 외국인 범죄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이기도 하다. 더구나 외국인은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 습관,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사절차 및 재판제도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통역을 통하더라도 진술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거나 파악함에 있어서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외국인 피의자에게 우리나라 형사절차의 흐름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그 방어권 행사에 유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수사단계에서의 통역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통역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수사단계에서의 문제점

일반 외국인 범죄자의 체포절차는 영사기관에의 통보 등을 제외하면 내국인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수사의 각 단계에서 통역이 필요하다. 외국인을 체포·구속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고지사항 외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 ① 해당 영사기관에 신병체포·구속사실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한국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교통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의자가 통보 및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주한 외국공관에 ①피의자의 국적·성명·생년월일, ②체포일시, ③유치·구금장소, ④죄명·피의사실의 요지, ⑤수사관서 및 수사담당자의 직책·성명 등을 팩스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 면담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sup>190) 191)</sup>

가. 피의자의 체포·구속시의 문제점

1) 구속영장의 제시 또는 이유고지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피의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을 완료한 후에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동 제3항, 제4항),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제200조의3).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제200조의 5, 제72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속영장은 국어로 기재되어 있고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외국어로 이유고지를 하기 어려우므로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 구속영장제시 또는 이유고지가 피의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와 제72조에서 말하는 본래적 의미의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외국인 피의자를 체포할 때 구속영장의 죄명, 법조, 범죄사실의 요지는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재된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거나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의 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sup>192)</sup>

190) 경찰 수사시 이를 누락하였다면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의사를 확인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의 영사협약”(1992. 7. 19. 발효, 조약 제1099호) 제39조 제1항,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러시아 영사관에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

191) 한편 영사관은 한국 법령의 범위 내에서 체포·구금된 자국민 피의자를 방문하고 면담하거나 변호인을 알선할 권리가 있다.

192) 『국제형사법』 사법연수원(2011), 306-307쪽 참조. 일본판례는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심문시 묵비권, 변호인선임권 등의 고지가 불충분하며 심문방법에 있어서도 부당한 점이 있었다고 하여 자백의 임의성을 부인한 사례가 있다.(1990. 10. 12. 浦和地裁 昭和63(ホ)707호, 782호) 「본건 피고인과 같이 문화적 배경과 사회규범, 법률제도가 전적으로 다른 외국에서 일본에 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하고 지적 수준이나 교육정도도 낮고 심지어 모국어(우루두어)조차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외국인은 우리 나라의 법률제도와 재판의 구조에 관해 무지하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묵비권과 변호인선임권)를 알 턱도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피의자를 심문함에 있어서는 묵비권, 변호인선임권 등을 피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고지하고 그 권리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건을 수사함에 있어 경찰관과 검사는 그와 같

그러나 실제 구속영장의 번역문을 첨부하는 것은 시간 및 인적 제약상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가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재된 것이라야 한다거나 피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구속영장의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실무에서는 처리하고 있다.<sup>193)</sup> 하지만 실명 또는 문명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읽어 들려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서 외국인 피의자에 대하여도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지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604호) 제240조는 경찰관은 외국인의 조사와 체포·구속에 있어서는 언어, 풍속과 습관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제245조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그 밖의 영장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도 구속영장의 내용을 사법경찰관 또는 통역인에 의하여 외국어로 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94)</sup>

## 2)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을 선임

---

은 문제의식을 결여한 채 이러한 권리를 일본어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통역인을 개입시켜 단순히 형식적으로 고지하여 그쳐서 피고인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던 점 등의 이유로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

193) 김운곤 「외국인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 『법학논집』 (2001), 295쪽.

194) 긴급체포의 이유고지도 마찬가지로 생각되지만 긴급체포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체포당시에 반드시 피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불가능할 수 있다. 물론 보통 긴급체포를 할 때는 직무질문이나 사정청취가 선행하고 그것에 의하여 체포의 요건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는 언어가 통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가 통하지 아니할 때는 통역인을 확보하기까지 직무질문을 계속하고 통역인이 확보됨에 따라 그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지한 다음에 체포하고 있다. 그러나 직무질문 등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반드시 판명되는 것도 아니고 설사 그것이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통역인을 즉시 확보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체포단계에서는 우선 국어로 이유를 명백히 고지하고 체포후 빠른 시간 내에 피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유를 고지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유를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현행법체포에 관하여도 긴급체포와 같이 체포당시에는 피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유를 고지하는 것이 어렵지만 체포 후 근접한 시간 내에 피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유를 고지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유를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위의 논문, 295-296쪽) 외국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압수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동법 제245조).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한 뒤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 또한 B규약 제9조 2항은 체포된 자는 자기에 대한 피의사실을 속히 고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약 제14조 3항은 모든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빠르고 상세히 그 죄의 성질 및 이유를 고지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치된 후에도 피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판명할 수 없거나 그것이 판명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통역인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체포된 외국인 피의자가 구속영장 기재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인지 조사하여 빠른 시간 내에 그 언어로 구속영장의 죄명, 법조,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선임권 등이 고지되어야 하고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체포 후 빠른 시간 내에 피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죄명, 적용법조,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선임권 등이 고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sup>195)</sup>

실무상으로는 위와 같은 고지절차를 거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통역인의 적절한 수배를 행하지 않는 등 위 절차를 게을리 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가 사용하는 언어가 판명되고 통역인을 확보한 뒤 지체 없이 위와 같은 고지를 하면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피의자가 사용하는 언어가 불명이라거나 통역인을 즉시 확보할 수 없어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는 것을 기재한 뒤에 가능한 한 빨리 통역인을 확보하여 다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있다.<sup>196)</sup>

그러나 위 고지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체포 또는 인치 한 후 즉시 행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sup>197)</sup> 따라서 통역인을 즉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변호인선임권, 피의사실의 죄명, 법조 등 어느 정도 정형적인 문구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은 소수언어를 포함한 각국

195) 사법연수원 앞의 책, 306-307쪽. 관련 일본판례 1990. 10. 12. 浦和地裁 昭和63(ワ)707호, 782호 구체적 내용은 앞의 주 192 참조

196) 일본 판례는 구속영장 집행당일에는 피의자가 사용하는 언어의 통역인을 확보할 수 없어서 우선 의뢰한 통역인으로 하여금 전화상으로 피의자에게 범죄사실 및 변호인선임권을 설명하게 하고 다음날 통역인이 경찰서에 출두하여 정식으로 범죄사실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한 뒤에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안에 대하여 그런 사정 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로 인정하고 있다.

197) 김운곤 위의 논문, 297쪽.

의 언어로 사전에 고지문을 준비해 두는 것이 실무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sup>198)</sup>

## 나. 피의자 조사시의 문제점

### 1)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미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진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형소법 제200조). 그러나 외국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통역인을 통하여 이를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통역인이 진술거부권의 의미를 몰라서 통역을 생략하거나 정확히 통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정확히 통역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 자신이 자국과의 법제도의 차이나 낮은 교육수준 등으로 인하여 진술거부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변호인선임권은 물론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형식적으로 행하여지면 족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충분히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고지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sup>199)</sup>

이에 대해서 일본판례에서는 불법채류중인 파키스탄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불을 지른 사안에서 ① 변호인선임권과 묵비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 ② 병중에 심문이 행해진 점 ③ 별건 구속 중에 자백이 이루어진 점 ④ 수사관이 자백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면담하게 하고 압력을 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자백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 중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선임권 등의 고지와 관련한 판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건 피고인과 같이 문화적 배경과 사회규범, 법률제도가 전적으로 다른 외국에서 일본에 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하고 지적 수준이나 교육정도도 낮고 심지어 모국어(우루두어)조차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외국인은 우리 나라의 법률제도와 재판의 구조에 관해 무지하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묵비권과 변호인선임권)를 알 턱도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피의자를 심문함에 있어서는 묵비권, 변호인선

198)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에 의하여 천차만별이므로 그 요지에 대하여 사전에 외국어로 된 고지문을 준비해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199) 이재상, 앞의 책, 119쪽 이하 참조

임권 등을 피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고지하고 그 권리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건을 수사함에 있어 경찰관과 검사는 그와 같은 문제의식을 결여한 채 이러한 권리를 일본어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통역인을 개입시켜 단순히 형식적으로 고지하데 그쳐서 피고인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던 점 등의 이유로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sup>200)</sup>

또한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를 어느 정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한가는 피의자가 이들 권리의 존재,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또한 고지내용을 이해할 능력이 있는가,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수사기관으로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고지와 설명을 해야 하는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법제도에 대하여도 지식이 부족한 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과 비교하여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하겠지만 피의자가 권리를 고지한 문언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고지하면 적법한 고지를 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sup>201)</sup>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선임권고지 또는 형사절차에 관한 설명 등 정형적인 설명문을 각종언어로 작성하여 통역인과 피의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sup>202)</sup>

## 2) 진술조서의 작성

### 가) 작성방법 및 첨부

현행법은 통역에 관하여 「국어에 통하지 않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할 뿐(제180조) 통역의 정확성 보장을 위한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sup>203)</sup>

200) 浦和地裁 1990.10.12. 判例時報1376号, 24쪽.

201) 東京高判 1992.4.8. 判例時報1434号, 140쪽.

202) 김운곤 위의 논문, 300쪽.

203) 외국인을 조사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피의자의 모국어나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만으로 작성하는 것 둘째 피의자의 모국어나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로 작성하고 함께 국어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것 셋째 국어로 작성하고 그 조서에 대한 외국어 번역문을 첨부하는 것 넷째

현재 실무에서는 외국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외국어의 종류도 급증하고 있어, 해당외국어에 능숙한 수사관을 전부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수사관이 외국어로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전체로서의 수사방침을 세우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바로 조서내용을 읽을 수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등의 이유로 범죄수사규칙 제217조에 외국인의 피의자나 기타 관계자가 국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역인을 통하여 국어의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국어만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있다.<sup>204)</sup>

그러나 범죄수사규칙 제217조는 위와 같이 국어만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도 특히 필요한 경우에 외국어의 진술서를 제출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sup>205)</sup> 따라서 진술자 자신이 스스로 진술서의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진술자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중요사건의 피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진술을 얻은 경우 등 진술자에게 진술서를 제출시키는 것은 수사운영상의 문제이지만 진술의 임의성, 통역의 정확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으로 보아 진술서제출의 필요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sup>206)</sup>

#### 나) 통역인의 서명·날인

조사를 보조하는 통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유무가 증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sup>207)</sup> 그러나 범죄수사규칙 제24

---

국어로만 작성하는 것 등 4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수사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위의 논문, 301쪽)

204) 위의 논문, 304쪽.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일본판례로서 浦和地裁 1990.10.12. 判例時報1376号, 24쪽 참조

205) 일본판례는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피의자를 통역인을 개입시켜 조사, 작성한 심문조서는 외국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증거 능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고하여 (1983.1.28. 大判地裁 昭和57, 5460호, 5952호), 국어로 된 심문조서에 번역문이 없어도 사후에 음미, 검토하여 그 작성시 통역의 정확성에 의문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한 형사소송법 규정된 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206) 위의 논문, 304쪽.

207) 일본판례는 「외국인인 피고인이 검사에 대하여 영어로 진술한 것을 통역을 통하여 검사가 녹취한 서면에는 피고인의 서명이 없어도 그 영역조서에 서명이 있고 더구나 양조서 모두에 통역인의 서명이 있다면 유효한 심문조서이다」 고 판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1957.10.29. 最高裁 昭和32, 1195호)

조 제1항은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학식 경험있는 자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통역을 위촉하여 그 협조를 얻어서 조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그 취지와 통역을 통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통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역인의 기명날인은 조서작성에 관여한 통역인이 누구이며 조서의 기재내용을 피의자에게 정확하게 통역하여 그 진술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으므로, 공판에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다룰 것에 대비하여 위 규정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sup>208)</sup>

### 3) 조사시 사용 언어

국어를 이해할 수 없는 외국인을 조사할 때 실무상 진술조서는 국어로 작성한다는 전제하에 수사관이 사용하는 언어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문제된다.<sup>209)</sup>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수사관이 국어로 조사하고 통역인 통역하는 방법이다.<sup>210)</sup> 이것은 가장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지만 통역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역인을 공판정에서 신문하여 통역능력과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을 증거능력의 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sup>211)</sup>

208) 사법연수원 위의 책, 303-304쪽 참조

209) 이에 수사관이 국어로 조사하는 것 수사관이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조사하는 것 수사관은 국어로 조사하고 통역인이 통역하는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김운곤 위의 논문, 305-306쪽)

210)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외국어 능통자를 자체적으로 채용하여 수사관이 통역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수사관은 원래 통역을 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역능력이 일반적으로 높다고 볼 수 없고, 수사관의 입장에 치우친 의도적인 통역을 할 위험이 있어 과연 외국인의 진술을 정확히 국어로 번역하여 조서를 작성한 것인지 또한 이를 읽어 들려줄 때 정확히 외국어로 번역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때가 많으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의 인정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위법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법정에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다룰 이유는 충분히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러한 방법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김운곤, 위의 논문, 305쪽)

211) 이에 대하여는 통역인, 수사관, 진술자 등을 신문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통역의 정확성을 음미할 수 있으므로 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일본판례가 있다. 「수사단계에서 불공정 부적격한 통역인을 개입시켜 극히 불완전한 의사소통상태로 심문이 행하여져서 피고인의 진의가 조서에 충분히 표출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작성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한 원판결은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언어적 due process에 위반하여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

또한 국어를 이해할 수 없는 외국인을 조사할 때 그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언어에 따라서는 적당한 통역인을 확보할 수 없고 외국인이 모국어 가 아닌 다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B 규약 제14조 3항은 모든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권리의 고지 및 통역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인지 문제된다.<sup>212)</sup>

#### 다. 압수수색

헌법 제12조는 어떤 사람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발부되고 또한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을 명시한 영장이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을 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래서 압수수색을 받는 측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법률해석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만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고 실무상으로도 번역문을 첨부하거나 통역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권보호측면에서 외국인이 영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설명하거나 통역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sup>213)</sup>

인 중 2명이 파키스탄의 편잡어권 출신인데도 우루두어로 심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판결은 「통역인이 원심증언과 심문조서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바, 통역인의 적격성, 공정·정확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상의 방어권이 보장되었는지 여부는 형사절차의 각 단계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수사단계의 심문에 있어서 통역의 적합성 문제가 바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공판단계에서 적절한 통역인이 붙여진 이상 수사단계에서 녹취된 심문조서에 대한 통역의 정확성을 음미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 되어졌다고 할 것이고 그것에 기하여 조서의 임의성과 신용성을 판단하였다면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문제는 원칙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한다」(1992. 4. 7. 東京高裁 942호)

- 212) 이에 관하여 일본판례는 「피고인의 모국어는 페르시아어인데 사법경찰관이 모두 영어 통역인을 개입시켜 심문하고 조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상 무효이고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결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3항 (a), (f)에 의한 요청은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에 의하여 행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모국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릇 이와 같은 규정은 법원에서의 심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소제기전의 피의자 심문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통역인을 개입시켜 “그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영어로 심문을 받았고 임의로 이에 응하여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심문에 어떤 위법은 없고 이에 의하여 작성된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이해할 수 있는 언어란 반드시 모국어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1992.4.8. 東京高裁 1340호)

### 3. 공판단계

#### 가. 법정에서의 구체적 절차

법정에서의 사법통역이 진행되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sup>214)</sup>

##### ① 판사의 입장

판사가 입정한 경우에는 기립을 한다.

##### ② 통역인의 선서 등

우선 재판장이 통역인이 본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절차(인정신문)를 실시한다. 이 때 통역인은 증언대 앞에 서서 판사 쪽을 향해서 대답한다. 이어서 선서를 하는데 선서문을 손에 들고 소리를 내서 읽는다. 통역인이 선서할 때 성명, 주소 등 인적 사항을 말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사무관에게 그 취지를 전달하면 재판장이 판단하여 처리한다.

##### ③ 피고인에 대한 선서절차 등 설명

당해 사건 재판에서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통역인이 법원으로부터 통역을 명받았다는 것, 그리고 성실하게 통역할 것을 선서하였다는 취지를 알려준다. 그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착석할 때까지 안내 통역을 해 주어도 지장이 없다.

##### ④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

213) 일본판례(東京地判 1997.3.21. 判タ969号, 279쪽)는 이란인의 거실에 대해 수색차압허가장에 의한 수색차압을 실시함에 있어서 검사가 통역인과 동행하지 않고 이를 실시한 사실에 대해 위법성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해당 수색차압의 절차에서 피고인들에게 통역인이 매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나 일본의 법제도상 수색차압단계에서 통역인의 매개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통역인이 상기 절차에 매개가 되지 않아도 이것이 곧 위법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실제로 통역가능한 조사관이 확보되어 있거나 기타 통역인이 확보가 가능하고 용이한 경우인데 통역인을 동반하지 않은 사실은 외국인 권리보호에 어긋나며 정정절차 이념에 위반한다는 관점에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을 받는 자의 사용언어가 판명되지 않거나 또는 판명되어도 통역인을 확보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설명 통역인을 통하지 않고 영장을 제시하여 수색차압을 실시하여도 법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入江猛 「捜査官が通訳人を同行せず外国人の居宅に対して捜索差押手続を行ったことにつき、違法はないとされた事例」 研修601号(1998年), 27쪽.)

214) 『법정통역인 편람』 법원행정처(2012) 참조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해서 성명, 생년월일, 국적, 한국에 있어서의 주소, 직업을 묻는다.

⑤ 기소요지 진술

검사가 공소장 기재의 죄명,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할 경우가 있다.

⑥ 진술거부권 고지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법원, 검사,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불리한 것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고지한다.

⑦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진술

재판장이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부인 여부를 묻고, 부인한다면 어느 점을 부인하는지 묻게 되는데, 피고인은 그 질문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답변하게 된다.

⑧ 변호인의 의견진술

재판장이 공소사실에 관해서 변호인에게 의견을 구하고 변호인은 이에 답변한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착석하게 된다.

⑨ 피고인신문

통역은 한국어의 질문 - 통역 - 피고인의 답변 - 통역의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의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통역인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는 이중통역을 하게 된다. 즉 예컨대, 힌두어 통역인이 없는 경우 힌두어와 영어를 할 수 있는 통역인과 영어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통역인을 선정하여 한국어를 영어 - 힌두어로, 힌두어를 영어 - 한국어 순으로 상호 통역한다. 피고인이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통역인의 판단으로 피고인에게 설명하지 말고 재판장에게 그런 사정을 말한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말을 걸어오는 경우에 이에 응하지 말고 몸짓 등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표시해 준다. 실제로 말을 걸어온 경우에 그 내용을 판사에게 전해 준다. 그러면 재판장이 적절히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게 된다.

⑩ 증거조사절차

- 검찰의 증거신청

검사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어떤 입증을 위하여 신청한다고 진술하면서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증거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한다. 통역인은 검사의 증거신청 내용을 통역한다.

- 검사의 증거신청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

검사의 증거신청에 대해서 변호인의 동의, 부동의 등의 의견을 진술한다. 동의, 부동의라고 하는 언어는 통상의 국어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경우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임의성, 신빙성이 없다든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럴 때에는 이를 메모해서 통역해야 한다.

- 법원의 증거 채부(증거를 채용할까 아니면 기각, 각하할까)의 결정

법원의 증거 채부 결정이란 증거를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증거로서 채택을 거부할 것인지를 정하는 결정이다. 재판장이 증거 채택을 부정하면 그 증거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변호인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증거서류에 관해서 증거조사를 할 수 없다. 법원은 변호인이 동의한 증거서류에 관해서는 증거로서 조사할 것을 결정한다. 변호인이 부동의한 증거에 관해서는 그것에 대체해서 증인신문 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 채용된 증거서류의 조사

· 증거서류의 지시설명

증거목록 가운데 채용된 증거서류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검사가 개별적으로 그 내용을 지시설명하므로 그 순서에 따라 그 내용을 통역한다. 다만 자백사건의 경우 판사가 증거서류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 증거서류에 대한 요지의 고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서류일 경우 검사의 서류내용에 대한 지시설명이 끝나면 재판장은 검사의 설명내용이 거짓 없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는 의미에서 재판장이 그 서류의 내용에 관하여 요지를 고지한다.

- 채용된 증거물의 조사

증거물은 신청 당사자인 검사나 변호인이 이를 법정에서 제시하는 방법으

로 증거조사를 한다. 검사가 증거물을 법정에서 제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피고인은 이 물건을 기억합니까, 이것이 피고인의 물건입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한다.

- 증인신문

- 증인의 선서 및 허위증언에 대한 주의

증인이 선서한 후에 재판장은 증인에게 허위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는 취지를 고지한다.

- 통역방법

A. 외국어를 사용하는 증인의 경우

- 피고인과 같은 언어의 경우

한국어의 신문-통역-증인의 진술-통역의 순으로 통역을 한다.

- 피고인과 다른 언어의(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① 한국어 신문 - 증인의 진술 - 한국어로의 통역 - 피고인을 위한 진술의 통역 순으로 통역을 하는 방법

② 한국어 신문 - 증인에 대한 신문의 통역 - 증인의 진술 - 한국어로의 통역 - 피고인을 위한 신문과 진술에 대한 통역 순으로 통역하는 방법이 경우 ①의 방법이 원칙이지만, 이 방법에 있어서 통역 사이에 증인이 질문의 내용을 잊어버리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것을 같음해서 ②의 방법을 취하는 일도 있다.

B. 한국어를 사용하는 증인의 경우(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① 한국어 신문 - 통역 - 증인진술 - 통역 순으로 통역하는 방법

② 한국어 신문 - 증인의 진술 - 신문과 진술에 대한 통역 순으로 통역하는 방법

이 경우 ①의 방법이 원칙이지만, 위에서 본 이유로 ②의 방법을 취하는 일도 많이 있는 것 같다.

C. 정상증인의 경우

어느 정도 신문과 진술을 계속한 후에 재판장이 통역인에게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고 정리해서 통역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① 차회기일의 지정

재판장이 차회 속행기일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차회기일과 차회기일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을 통역한다. 속행기일을 지정할 때에는 통역인과 조정해서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계속해서 개정하는 경우에는 통역인과의 관계에서 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의 사정을 몇 개월 앞까지 정확하게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⑫ 논고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최후적으로 의견을 말한다. 검사로부터 사전에 논고 요지(다만 구형부분을 공란으로 한 것)라는 제목의 서면이 교부되는 일도 있다. 검사의 논고서면을 교부받은 상태라면 검사의 의견진술 후에 그 서면에 기해 통역하면 된다. 또한 이 경우에는 무선통역시스템을 이용하는 일이 많다. 피고인이 구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보충설명을 하는 일이 있고 그 경우에는 그것을 통역하게 된다.

구형은 어디까지나 검사의 의견에 불과한데,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오해하는 피고인도 많다. 통역인 쪽에도 이 점에 관해서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⑬ 변호인의 최후변론

변호인이 사건에 관해서 최후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변호인이 작성한 변론요지 또는 변론메모라는 제목의 서면이 통역인에게 교부되고, 그 내용대로 최후변론을 하면 통역은 그 서면에 기해서 하면 된다. 그러나 변호인이 그 서면 내용과 일부라도 다른 변론을 하는 경우 실제 변론한 것을 통역한다.

변론요지서 등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고 그 내용이 긴 경우에는 무선통역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인이 변론요지서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지 않는 때에는 변호인은 통역이 가능하도록 적당한 범위 내에서 잘라서 변론을 하고 통역인은 순차통역을 하는 방식을 취한다.

무선통역시스템을 사용하는 검사의 논고나 변호인의 최후변론절차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변명내용에 대응해서 사전에 교부한 논고 요지서면의 내용을 일부 정정, 추가한다든가 또는 변호인이 검사의 논고내용에 대응해서 변론요지 내용을 같은 방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검사 또는 변호인이 정정, 추가한 부분을 통역인에게 알려주므로 그에 기해서 통역하면 된다.

## ⑭ 피고인의 최후진술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해서 ‘이것으로 심리를 마친다’고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이 때 피고인은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는데 그 내용을 통역하면 된다.

## ⑮ 판결선고절차

판결서의 내용은 사전에 외부에 새나가면 곤란하므로 선고당일까지는 볼 수 없다. 다만 법원에 따라서는 판결을 정확하게 통역할 수 있도록 통역 인용 판결요지서, 판결사본을 작성해서 이것을 판결선고기일에 개정 10분 내지 30분 정도전에 통역인에게 건네주고 사전에 한번 훑어보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판결요지서 등을 교부한 후에는 통역인을 참여사무관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법원이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두면 좋을 것이다.

또한 판결요지서 등이 없어 통역이 불안한 경우 사전에 참여사무관에게 그 취지를 말해두면 좋을 것이다. 어쨌든 판결선고기일에는 적어도 여유를 가지고 법원에 오는 것이 좋다.

판결선고절차에서는 무선통역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

판결선고기일 공판에 필요한 시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재판장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비워두면 좋을까 확인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자백사건보다도 부인하고 있는 사건이 선고시간이 길어진다.

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해서 증거조사 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집행유예의 설명을 통역할 때 집행유예의 설명은 피고인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재판장도 가능한 한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고 있다. 그래도 피고인이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그러한 취지를 알려 주어야 한다.

미결구금일수의 형의 산입 설명을 통역하는 경우 그 산입의 설명도 피고인에게 알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재판장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통역인도 참여사무관에게 묻는 방법 등으로 그 내용을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⑩ 상소기간 등의 고지

유죄판결의 경우에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상소방법 및 상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법원을 고지한다.

4. 공판단계에서의 문제점

가. 재판절차를 설명한 서면 등의 송부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사건의 경우, 검찰관이 공소를 제기하였을 때, 기소장에 통역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내용 및 사용언어를 기재한 내용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취급방법이다. 그리고 공판법원으로서의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장 등본을 송달할 때에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장의 등본과 변호인 선임에 관한 통지·조회 등의 서면 외에 재판절차를 설명한 서면과 사용을 희망하는 언어, 통역의 필요유무를 조회하는 서면을 함께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문서는 정형적인 문구가 대부분인 관계로 상당수의 외국어로 정형적인 번역문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역인에게 통번역을 의뢰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문제는 소위 말하는 소수언어로 그 언어에 의한 번역문이 아직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나. 사법통역인의 선정

형사절차는 다음 단계로서 피고인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 또는 국선변호인의 선임, 제1회공판기일의 지정, 피고인의 소환 등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공판법원은 그 사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통역인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피고인이 희망하는 언어에 통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사법통역의 의뢰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법통역인의 선정, 즉 누구에게 사법통역의 의뢰를 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사건마다 공판법원의 개별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최근에는 사법통역인이 상당수 등록되어 있고 그 실적 등도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새로운 사건의 사법통역인으로서 적합한 사람을 선임할 수 있게 각 법원별로 운용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소수언어의 경우 그러한 실적

을 가진 사람도 적을 뿐 아니라, 그 능력 내지 적격성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나 연수제도 등도 없고 또한 그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에 있어서 공적인 조치 등은 일절 취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사법통역을 의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법통역인의 능력 내지 적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sup>215)</sup>

실제로 이 단계에서 행해지는 것은 선정된 통역인에게 전화 등으로 사법통역을 의뢰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승낙을 얻은 후, 제1회 공판기일의 일시를 전하고 제1회공판기일에 재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통역인 신문은 제1회공판기일에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sup>216)</sup> 그리고 통상적으로 법원은 사법통역인을 사실상 선정했을 때에는 통역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검찰관과 변호인에게 통지한다.

#### 다. 제1회공판기일전의 통역인의 역할

통역인에 대해서는 공판정에서 행하는 통역의 준비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기소장 사본이 송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찰관도 같은 취지로 통역에게 모두진술요지를 기재한 서면과 검찰관 청구예정인 증거 등 관계카드 사본, 서증의 요지를 기재한 것 등을 송부한다. 변호인도 검찰관과 마찬가지로 피고사건에 대한 변호측의 의견요지와 변호인 청구예정의 증거를 기재한 증거 등 관계카드의 사본 등을 통역인에게 송부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통역인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해 송부하는 문서의 역문의 작성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출한 상신서, 재판관 앞으로의 서신 등의 번역을 의뢰받는 경우도 있다.<sup>217)</sup>

또한 변호인으로부터 그 소송준비를 위해 통역이나 번역의 의뢰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가장 많은 경우는 변호인이 신병구속중의 피고인과 구금시설에서 접견

215) 그러나 매우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통역인의 선정에 있어 검찰관이나 변호인(피고인)의 의견을 듣는 경우는 없으며, 또한 검찰관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장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216) 법원이 제1회공판기일 전에 소송법상의 조치로서 해당 사건의 심리나 재판에 있어 통역을 붙이는 취지의 결정을 하거나 통역인의 선임결정을 하는 예는 거의 없다.

217) 통역인의 보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번역을 한 것도 산정의 근거가 된다.

을 할 때의 통역이다. 그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인 앞으로 보낸 서신 등의 번역이나 피고인의 친족이 적은 탄원서 등 변호인 측 입증을 위한 서증의 번역문 작성을 의뢰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의뢰에 관해서 변호인과 사법통역인과의 관계는 공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적 관계에서 의뢰한 통역인의 경우와 같이 사적인 것으로 해석된다.<sup>218)</sup> 따라서 통역인은 변호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의뢰가 있었을 때에는 이것을 거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의 경우 구치소 등에서 피고인과 접견을 할 때에 달리 통역을 할 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통역인으로서 접견의 입회 등에 대해서 변호인의 의뢰에 응하도록 법원 측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 라. 공판정에 있어서의 통역

제1회공판기일에는 피고인에 대한 인정질문 전에 통역인신문이 행해진다. 통역인으로서 신문을 받는 자는 사법통역인으로서 사실상 선정된 사람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통역인신문 전에 본거에 통역인을 붙이는 취지의 결정이 고지되거나 위와 같이 사실상 선정된 사람에 대해 검찰관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구한 뒤 그 사람을 통역인으로서 선임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는 절차는 행해지지 않는다. 또한 사실상 통역인 신문에 있어서는 통역인은 통역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되고 피고인에게 통하는 언어로의 통역을 명받는 것 이외에 통역의 경험이나 통역능력 등에 관해서 재판관으로부터도 당사자로부터도 신문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공판기일이 몇회에 걸쳐서 지정 또는 예정되어 한사람의 통역인만으로는 모든 기일에 출두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나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이 장시간에 이르는 관계로 통역인에게 육체적으로도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복수의 통역인이 선임되어 교대로 통역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에 대한 통역은 재판관의 소송지휘나 결정의 고지, 소송관계인의 신청이나 의견진술 등 국어로의 발언 내용을 그 때마다 외국어로 통역하고, 또한 피고인이 외국어로 진술할 때마다 국어로 통역하는 식으로 진

218) 松本時夫「通訳の法的性格について」芝原邦爾、西田典之、井上正仁 編『松尾浩也先生古稀祝賀論文集 下巻』有斐閣(1998), 407쪽.

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재판관의 소송지휘나 절차에 관한 검찰관과 변호인과의 사이에 주고받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개개 언어의 축어역이 아니라 재판관이 전체 내용을 정리하거나 또는 전체적인 경과를 요약하여 통역인에게 전하고 이것을 외국어로 통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증거조사의 청구, 상대방의 의견, 증거결정등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검찰관이나 변호인의 서면에 근거한 진술 등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기소장의 사본이나 모두진술의 요지, 논고, 변론요지 등이 미리 통역인에게 송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하여 서면에 적혀진 것을 통역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서증의 조사에 대해서는 외국인 사건 이외의 일반 사건에 있어서도 다수의 서증의 전부를 낭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외국인 사건에 있어서도 낭독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행해진다. 오히려 서증의 조사는 요지의 고지라고 하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증인신문 시에는 검찰관이나 변호인 등이 행하는 개개의 신문에 대해 국어로 그 신문내용을 외국어로 통역하고 이어서 그 신문에 대한 증인의 진술을 개별적으로 국어로 통역하게 된다. 피고인 신문시에도 동일하다. 증인이 국어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이 통역은 피고인에게 증인신문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에 그 의미가 있으나 증인이 외국어로 진술하는 경우 및 피고인 신문의 경우에는 증거자료인 외국어 진술을 국어의 진술로 전환한다고 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통역의 완성도 여부에 따라서는 그 진술의 증거가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증인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외국어와는 별개의 외국어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우선 증인과의 관계에서 신문내용을 증인이 사용하는 외국어로 통역한 후에 동일한 내용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외국어로 통역하고 이어서 증인의 진술을 국어로 통역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통하는 외국어로 통역해야 한다. 통역인이 쌍방의 외국어에 대해 통역능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통역인 한 사람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쌍방의 외국어에 통하지 않는다면 증인이 사용하는 외국어에 대해 통역능력을 가지는 통역인을 따로 선임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외국어와의 관계에서 통역을 명받은 원래의 통역인과 둘이서 그 증인신문의 통역을 하게 된다.

판결의 선고에 있어서는 재판관이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말하는 것을 각 재판관이 말하는 단락별로 통역해 가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또한 항소권

의 고지도 통역을 해야 한다.

이상에서 형사절차상의 수사단계 그리고 재판단계에 있어서의 사법통역의 역할과 통역시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사법통역의 법적 성격과 사법통역인의 공정성, 그리고 통역의 정확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국내외의 판례와 학설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법통역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제2절 사법통역의 법적 성격

외국인 사건에 있어서 통역이 필요적이 되는 근거규정으로서 형소법 제180조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와 법원조직법 제62조 제1항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동법 제2항 「소송관계인이 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다」을 들 수 있다. 법정용어를 국어로 한 것은 소송절차 전체에 걸친 원칙이다. 소송절차는 대한민국 법원에서의 절차이므로 공식용어인 국어가 사용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재판공개 원칙(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에서 보면, 피고인의 권리로서 뿐만 아니라 방청인을 포함한 국민 일반에게 소송절차의 경과를 명확히 하여야 하므로 국어 이외의 표현방법이 법정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통역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통역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는 구체적 사실판단의 보고라고 하는 의미에서 언어에 관한 일종의 감정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sup>219)</sup> 증거자료가 되는 외국어 진술을 통역하는 경우에 감정으로서의 법적 성질이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통역인은 증거방법으로 파악되게 된다. 그러나 통역의 대상은 소송관계자의 소송절차에 관한 증언이나 피고인의 신청 등 증거자료로서의 측면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도 미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통역인은 증거방법이 아니라 소송관계자 상호간의 언어전달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219) 백형구=박일환=김희옥 『주석 형사소송법 (1)』 한국사법행정학회(2009), 732쪽.

이다.<sup>220)</sup>

이와 같이 사법통역은 증거방법의 의미로서의 통역과 통역을 매개함으로써 소송관계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정한 심리를 담보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도모한다고 하는 의미로서의 통역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221)</sup> 이하에서는 사법통역의 법적 성질로서 가지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증거방법으로서의 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신문 또는 질문 시에의 통역은 그 원진술의 증거가치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정확성이 요구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축어역(逐語譯)이 요구되지만, 예를 들어 소수언어인 경우, 원진술자가 태어나고 성장한 국가가 우리나라와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다른 경우에는 그러한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 후에 원진술의 의미내용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국어로 통역해야 할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상당한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통역이 특별한 전문적 지식·경험에 근거하는 구체적 사실 판단의 보고라고 하는 의미에서 언어에 관한 일종의 감정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다.<sup>222)</sup>

또한 위와 관련해서 증인(피고인)이 외국어로 진술한 경우, 증거가 되는 것은 외국어에 의한 원진술, 통역된 결과 또는 일체적인 것으로서 그 쌍방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상 견해가 나누어진다.<sup>223)</sup> 증거가 되는 것은 원진

220) 後藤昭=白鳥祐司編 『新・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日本評論社(2010), 342쪽.

221) 통역은 특별한 전문적 지식·경험에 근거하는 구체적 사실판단의 보고라고 하는 의미에서 언어에 관한 일종의 언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 견해였으나, 근래에는 통역은 감정으로서의 측면이 후퇴하고 절차 전반에 대해서 법원, 검찰관, 변호인과 피고인과의 사이의 의사전달의 매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또한 나아가 피고인의 권리보호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면, 국어에 통하지 않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통역은 그 면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재판절차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시킴으로서 그 권리보호를 도모한다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藤永幸治=中山善房編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2巻』 (2004), 772쪽.

222) 松本時夫, 위의 논문, 416쪽.

술 만으로 통역된 결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도 강하게 주장되고 있는 한편, 원진술 및 통역된 결과의 쌍방이 일체가 되어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견해<sup>224)</sup>가 다수설을 이루고 있다. 쌍방을 일체적인 것으로서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논거로서는 공판정에 있어서의 통역인은 법원의 보조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증거 방법이라는 점, 재판관이나 소송관계인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통역된 결과라고 하는 점, 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어로 기재된 통역의 결과 뿐으로 원진술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들고 있다.<sup>225)</sup> 또한 통역된 결과만이 증거라고 하는 견해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의 내용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증거의 본체는 역시 해당 외국어에 의한 진술을 한 증인(피고인)이 체험하고 지각한 사실의 보고(또는 자백)이다. 그 표현수단도 증인(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어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정자인 법원에 그 진술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원(재판관)이 심증을 형성하는 것은 원진술 내용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아는 것은 통역된 결과를 매개로 해서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외국어에 의한 원진술과 통역된 결과가 일체적인 것일 것을 필요로하는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만약 통역된 결과가 원진술과 다르다고 한다면 그 통역된 결과에 의해 형성된 심증은 틀린 것이 된다. 즉 당사자가 통역의 정확성에 대해서 다투고 통역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의심이 생겼을 때에는 그 통역된 결과를 증거로서 사용하여 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원진술이 증거의 본체가 되기 때문에 원진술을 다시 법정에서 현출할 수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일반적인 감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시 통역을 명하여 정확하게 통역된 결과를 매개로 하여 원진술을 증거로 하여 심증을 형성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외국어에 의한 원진술과 통역된 결과는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증거로서 완전하게 일체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신문 또는 질문시

223) 渡邊忠嗣=堀籠幸男 「刑事裁判手続における涉外関係上の諸問題」 司法研究報告書30輯2号(1981), 32 쪽 이하 참조

224) 藤永幸治=中山善房編, 위의 책, 770쪽.

225) 백형구=박일환=김희옥, 위의 책, 733쪽.

에 있어서의 통역은 언어에 관한 일종의 감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증거방법의 하나로서 그 정확성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방법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통역에 대해서 그 법적 성격으로부터 볼 때 감정이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형소법 제180조 내지 제182조가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전면적인 적용이 긍정될 수 있을 것이다.

## 2.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의 통역

형소법 제180조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가 피고인이나 증인 등으로서 진술을 행하는 경우에는 국어로 통역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동조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을 국어로 통역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을 요구하는 다른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도 그 진술이 국어인 경우에는 국어를 상대방에게 통하는 언어로 통역해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sup>226)</sup> 또한 동조의 해석으로서도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가 형사절차에 관여한 경우, 그 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통역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227)</sup>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에서도 「형소법 175조의 규정은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진술을 요구하여 증인 등을 신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 외에 재판등의 취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도 통역인을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도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공판정에 있어서의 조사시 통역인을 필요로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판결의 선고시에도 동조에 따라 통역인을 붙여 어떠한 판결선고가 있

226) 藤永幸治=中山善房編, 위의 책, 775쪽.

227) 적어도 피고인이 입회권을 가지고 입회하고 있는 절차에 있어서의 진술이라고 한다면, 피고인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진술은 누구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통역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藤永幸治=中山善房編, 위의 책, 777쪽 참조.

있는지를 피고인에게 이해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sup>228)</sup>

이 점에 대해서, 우선 전제로서 피고인이 외국인 즉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자인 경우에도 피고인이 한국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는 현재 어떠한 절차가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아 자신이 피고인으로서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지는지를 이해하고 또한 증거조사의 내용도 파악할 수 있으며 더욱이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등 절차상의 보장이 주어질 것을 요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통역이라고 하는 방법이 그 보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즉 통역은 이와 같이 외국인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절차의 진행상황 등을 분명히 하고 소송주체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법원이나 검찰관, 변호인과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판단, 의사, 사고 등을 전달하는 매개수단으로서 필요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절차적 측면에서의 통역이 필요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통역이라고 하는 매개수단을 취하지 않으면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절차의 진행 등을 이해시킬수 없고, 또한 소송주체로서 자신의 소송행위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229)</sup>

### 3. 소결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통역에는 두 가지 측면의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선 통역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는 구체적 사실판단의 보고라고 하는 의미에서 언어에 관한 일종의 감정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

228) 最判1955.2.15. 形集9卷2号, 282쪽. 조선으로부터 일본으로 이주하여 생활고로 인해 고철상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장물고매사건에 대해 제1심 제2, 3회 공판기일의 취조에 있어서는 통역인을 동반했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을 선언할 때에는 통역인을 동반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법인 공소신청이 이루어져 있어 공소재판소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1심판결선고절차의 위법은 원판결을 파기할 정도의 영향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朝鮮高等法院判 1936.9.17. 法律學說判例全集25卷下刑部, 209쪽; 大決 1930.3.6. 법률신문 3112호 참조

229) 현행법상 형사절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이유에 따른 통역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근거지울 수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결국 통역의 근거규정으로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형소법 180조에서 그 근거를 구하고 있다.

지고 있다. 증거자료가 되는 외국어 진술을 통역하는 경우에 감정으로서의 법적 성질이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통역인은 증거방법으로 파악되게 된다. 그러나 통역의 대상은 소송관계자의 소송절차에 관한 증언이나 피고인의 신청 등 증거자료로서의 측면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도 미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통역인은 증거방법이 아니라 소송관계자 상호간의 언어전달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법통역은 증거방법의 의미로서의 통역과 통역을 매개함으로써 소송관계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정한 심리를 담보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도모한다고 하는 의미로서의 통역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소송관계인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매개자·전달보조자라고 하는 경우에서의 사법통역인에 대해서 이를 법원의 보조자로서 파악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의 통역을 받을 권리로서 파악할 것인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학설의 견해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판례 및 학설은 법원의 보조자로서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30)</sup> 그 결과 예를 들어 피고인이 통역을 요구하였을 때 법원이 원칙적으로 통역을 붙일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례는 형소법 제 180조의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유무는 법원이 해당 인물의 「학력, 경력, 직업,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여 통역을 붙일지 여부의 결정은 오로지 법원의 소송지휘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sup>231)</sup> 또한 일본 판례에서는 수사단계에서

230) 통역인은 그 진술이 증거로 된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인적 증거방법이나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보조자이다. (백형구=박일환=김희욱, 위의 책, 733쪽.)

231) 대법원 2008.1.18. 선고 2007도9327 판결. 또한 일본판례(大阪高決 1952.1.22. 高刑集5卷3号, 301쪽)는 소요 등의 심리에서 일본어 이해능력에 상호 차이가 있었던 15명의 피고인에 대해 재판장이 일본어가 통하는 자는 통역을 동반하지 않고 일본어로 진술할 것을 명했다. 이에 대해 「한글은公所에서 우리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한글을 사용하고 싶다」라며 「조선인에게 한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일본어 진술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게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태도 등을 전체적으로 미루어보아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판장을 기피한다」라고 언급한 사건에서 大阪高裁는 「일본 재판소에서는 설령 외국인이라도 일본어가 가능한 경우에는 일본어를 사용시키며 용어의 자유로운 선택을 불허한다. 「진술자로 하여금 일본어 사용을 시키거나 외국어를 사용하여 통역을 매개로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재판소의 소송지휘권 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녹취된 진술조서에 대해서 피고인질문이나 증인신문을 통해서 통역의 정확성을 음미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의 통역인의 부적격성이나 통역의 부정확성의 문제로부터 바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sup>232)</sup> 또한 수사단계에 있어서 요구되는 통역능력은 일상 사회생활에 있어서 회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와 견해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하여 법률의 전문지식에 대해서도 「법정에서의 통역인과 달리」, 통상 일반적인 상식정도의 지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여 수사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통역능력 정도를 완화하는 것을 인정하는 판례도 보인다.<sup>233)</sup>

그러나 피의자·피고인이 권리의 내용을 이해하고 수사단계를 포함해서 대립당사자인 검찰관이나 수사기관의 주장과 공격내용을 알고 변호인과 방어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피의자·피고인과 수사기관, 사법기관, 변호인과의 사이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보장되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피의자·피고인의 통역을 받을 권리는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와 방어권행사에 있어서 불가결한 전제라고 하는 견해도 유력하다.<sup>234)</sup> 또한 이 점에 대해서는 인권B규약 14조 3항(a) 및 (f)가 무료통역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유럽인권규약 6조 3항(e)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사단계를 포함해서 피의자·피고인에게는 통역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적정절차보장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235)</sup>

232) 東京高判 1992.4.8. 判時1434号, 140쪽, 피고인의 모국어가 페르시아어인데 사법경찰관 조사 및 진술조서 작성을 모두 통역인을 통해 영어로 실시하였으므로 국제인권법상 무효이며, 피고인의 인면조서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조사관과 피의자 간 언어의 소통 없이는 조사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특단의 규정에 기댈 필요도 없이 통역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사리이며 이를 피의자의 모국어로 한정할 까닭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핵심은 조사관과 피의자 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본건에 부쳐 볼 경우 피고인은 통역인을 매개로 하여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인 영어를 통해 조사를 받고 임의로 이에 대해 진술을 했으므로 상기 조사는 애당초 적법한 것이며 이에 따라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까닭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내용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게다가 녹취된 페르시아어 사용하여 진술 조서한 내용과도 부합한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영어에 대한 이해력은 페르시아어에 대한 이해력과 비교하여 큰 손색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다

233) 東京高判 1996.7.16. 高刑集49卷2号, 354쪽.

234) 後藤昭=白鳥祐司編, 위의 책, 343쪽.

235) 水谷規男 「國際人權法と外國人刑事事件」 刑法雜誌33卷4号(1994), 196쪽.

### 제3절 사법통역인의 공정성과 통역의 정확성

#### 1. 형소법 제180조의 의의

제180조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 가. 본조의 취지

법원의 절차에서는 국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62호). 본 조는 국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자가 형사재판절차에 관여할 경우에, 해당 절차 관여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국어로 통역하거나, 또는 국어로 진행되는 절차를 해당 절차관여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통역함으로써 국어를 매개로 하여 의사소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재판공개원칙(헌법 제109조<sup>236)</sup>, 제27조 제3항<sup>237)</sup>,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sup>238)</sup>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 나.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범위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어에 대해서 표준적인 이해력 및 표현력을 결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어에 대해서 표준적인 이해력 및 표현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sup>239)</sup> 역으로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은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언에 의한 의사소통만 할 수 있는

236)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37)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38)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39) 대판 1966.12.27. 66도1535, 집14(3)형 094.

자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한다. 국어에 통하는 자이나 여부는 법원의 합리적 판단에 따른다. 외국인이라도 국어도 통하고 일상생활의 회화에 지장이 없는 한 통역은 필요없고 한국인이라도 국어에 통하지 않는 자에겐 통역이 필요하다. 판례는 피고인 등이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인지의 여부는 법원이 피고인 등의 학력, 경력, 직업,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수사기관에서 한국어를 잘하여 통역인이 필요 없다고 진술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게 통역인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사안에서 그 진술 내용 및 태도, 변호인이 계속 선임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제180조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sup>240)</sup>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는 피고인에 한하지 않고 증인, 감정인, 변호인, 보조인, 대리인 등이 포함된다.<sup>241)</sup>

#### 다. 의사소통 능력

표준적인 이해력 및 표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능력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실무상은 일상회화에의 지장이 있는지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판단기준을 지지하는 학설도 많다.<sup>242)</sup>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상당 정도의 회화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어로 일상회화가 가능한 자라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언어능력에는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러한 자도 포함해서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sup>243)</sup>

실제로 형사재판에서는 복잡하고 엄격한 규칙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이

240) 대법원 2008.1.18. 선고 2007도9327 판결

241) 백형구=박일환=김희옥, 위의 책, 733쪽.

242) 백형구=박일환=김희옥, 위의 책, 732쪽; 後藤昭=白鳥祐司編, 위의 책, 344쪽.

243) 植村立郎 「通訳を巡る若干の問題」 中山善房判事退官記念 『刑事裁判の理論と実務』 成文堂(1998), 116쪽; 田中康朗 「外国人事件における正確な法廷通訳の実践と適正な訴訟運営」 中山善房判事退官記念 『刑事裁判の理論と実務』 成文堂(1998), 172쪽.

러한 진행과정중에는 법률 전문용어나 난해한 조문해석을 주고받는 일이 종종 있다.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단지 그 개요를 알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검찰관이 주장하는 사실의 어느 부분이 어느 증거에 의해서 지지되고 어느 부분에 의심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증거에 의해서 증명되는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라고 하는 법률 적용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의사소통은 일상회화 이상의 고도의 국어 이해능력과 표현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형사재판의 절차를 이해한 후에 적시에 필요한 반론이나 주장, 탄핵을 할 권리, 즉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피고인의 경우는 이러한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국어 이해·표현능력이 필요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일상회화를 국어로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조에서 말하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 라. 모국어 이외의 언어에 의한 통역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통역을 할 경우, 판례(대법원 2008.1.18. 선고 2007도9327 판결)는 피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해서 적절한 통역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다른 언어에 의해 통역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sup>244)</sup> 학설도 모국어 이외의 언어사용이 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244) 東京高判 1994.11.1. 判時1546号, 139쪽, 살인사건에서 필리핀 국적인 피고인은 이로카노어 이외에 다른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데 조사가 타갈로그어 및 영어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원심도 타갈로그어로 실시되었으므로 헌법상 피고인에게 보장된 반대신문권, 변호를 받을 권리,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일반적으로 조사 및 공판에 대해서는 피의자 및 피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한 적절한 통역인이 확보가능 할 경우에만 해당 언어에 대해 통역인을 매개로 하여 조사 및 공판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통역인의 확보가 곤란한 이러한 경우에는 피의자 및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다른 언어를 통해 조사 및 공판 심리를 진행하는 것도 허용한다」며 해당 언어의 사용을 통해 「조사 및 심리에 잘못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또한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권리보장이 불충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도 당연하다」 라면서 또한 피고인들의 타갈로그어가 통역인이 이해할 수 있었던 언어였다는 점, 통역인이 피고인들이 말하는 타갈로그어 진술을 각별한 노력 없이 통역했다는 상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통역된 질문내용을 이해하고 대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판례의 태도를 지지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그리고 판례나 그것을 지지하는 학설이 모국어 원칙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을 인정하는 배경에는 실제상의 문제로서 소수언어의 경우에 통역인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소수언어의 경우에 통역인의 확보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대체언어를 모국어 필적할 정도 유창하게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 또한 일반적으로 모국어 이외의 언어 사용은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피의자·피고인의 이해력과 표현력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하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어권 행사라고 하는 고도의 의사소통이 요구되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역시 원칙적으로 모국어에 의한 통역을 보장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통역인 확보의 곤란에 의한 대체언어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이루어지는 관할을 확대하여 통역인을 탐색하는 등 통역인 확보의 수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할 것이다. 탐색을 위한 조사비용이나 통역인의 교통비 등에 드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것의 이유가 될 수 없다.<sup>245)</sup>

## 2. 통역인의 적격성

### 가. 선임방법

법원의 자료 등에 의하면 현재 통역인은 실무상 공모와 추천의뢰를 통해 선임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공모인 경우 매년 말 한 차례의 공고를 통해 통역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를 모집하고 또한 추천의뢰인의 경우, 통번역대학원과 통번역 전문회사 등에 추천의뢰를 하여 모집한다. 그 중에서 서류전형을 통해 통역인으로서의 자격을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된 자를 법원이 통역인 후보자로서 명부에 등재하고, 개개의 재판에 있어서는 절차의 복잡성이나 통역의 경험·능력을 고려해서 명부 안에서 통역인을 선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사법통역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회화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통역능력 이외에

245) 後藤昭=白鳥祐司編, 위의 책, 346쪽.

특별한 자격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sup>246)</sup> 후보자로서 명부에 등록된 후에도 법원은 연 1회 만나질 정도의 연수를 실시할 뿐 적극적으로 연수나 세미나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통역인 적성의 확보는 통역인이 제출한 서류와 통번역 관련 학교와 업체측의 추천에 의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수사기관에 있어서의 통역인 확보는 더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의 경우 각 지방경찰청이 독자적으로 통역인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지방경찰청 마다 일정 수준에 있는 적절한 통역인을 적시에 필요한 수만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관계로 타청관내의 통역인에게 협력을 구하거나 행정기관 등 타기관에 협력을 구하는 등의조치에 의해서 필요한 통역인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의 경우 이 보다는 상황이 좋다고 할 수 있으나 대동소이하다.

#### 나. 통역능력의 판단방법

이와 같이 현재의 선임방식에서는 특히 소수언어의 경우에 일정수의 통역인 후보자를 확보해두고자 하는 법원측의 사정이 우선시 되어 그 결과 일상회화 정도의 언어능력 밖에 없는 자가 통역인으로서 선임될 가능성이 있다.<sup>247)</sup> 실제 사법통역 관련 실무자들과의 자문에 의하면 통역인의 통역능력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다고 한다. 통역능력의 판단에 대한 우리나라의 판례는 보이지 않지만 일본판례에서는 이에 대한 판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즉 통역인의 객관적인 통역능력만으로 일본형소법 제175조<sup>248)</sup>위반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소송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페르시아어 뿐만 아니라 다리어(아프가니스탄)를 함께 사용하여 통역한 것이 소송 절차의 법령위반으로서 다루어진 사안에 있어서 법원은 통역인에게 중대한 오역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해당 통역인에게 통역능력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없고, 통역인이 「통역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유무는 해당 통역인의 구체적인 상

246) 자격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로서는 김진아=정혜연=이상빈 「전문사법통역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그에 따른 대책」 『통번역학연구』 제12권 2호(2009); 김진아, “사법통역의 실태와 향후 과제”, 통번역학연구 11권 2호(2008); 최철 앞의 논문.

247)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사법통역 관련 경험이 전혀 없는 자가 많았다. 부록 설문조사 참조.

248) 우리나라 형소법 제180조에 상당.

황, 특히 오역의 유무·정도에 더하여 해당 사안의 성질, 내용, 피고인의 방어방침, 심리의 상황, 피고인의 통역언어 이외의 언어능력 등을 종합해서 피고인이 절차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절한 공격방어를 함에 있어서 해당 통역인이 이에 필요한 통역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라고 하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원심 통역인이 중대한 오역을 하였다든 점을 인정하면서도 오역부분이 통역 전체로부터 보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는 점,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다는 점,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 피고인이 일상회화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통역의 위법성을 부정하였다.<sup>249)</sup> 또한 통역인의 능력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통역인의 타이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피고인질문 시에도 거의 일본어만으로 진행된 사안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본어 지식이 상당 정도 있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적절한 통역인의 원조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하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sup>250)</sup>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견해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통역능력은 통역 대상언어와 국어에 관한 지식·경험의 정도를 문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유무는 절차에 관여하기 전의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즉 절차의 구체적 진행상황에 비추어서 나중에 판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게다가 법원의 판단방법에 의하면 능력부족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해당 통역인의 능력부족이 절차의 주요부분이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직접 관련되는 부분에서 현재화되지 않았다면 통역능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능력부족의 부분이 절차의 어느 국면에서 현재화하는지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sup>251)</sup>

#### 다. 필요한 능력의 정도

통역인의 능력은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 밖에 필

249) 東京高判平15・12・2東高時報64卷1-12号, 78쪽.

250) 高松高判 1998.3.3. 高刑函(1998), 167쪽; 東京高判 1996.7.16. 判時1591号, 132쪽; 大阪高判 1991.11.19. 判時1436号, 143쪽; 最判 1959.2.6. 刑集13卷1号, 55쪽.

251) 後藤昭=白鳥祐司編, 위의 책, 347쪽.

요로 하는 능력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통역인의 통역능력이 일상회화정도의 이해·표현능력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현출되는 정보나 증거내용을 피고인에 전달하는 장면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질문을 법원나 증인 등에게 전달하는 장면에서도 불완전한 전달이 이루어져 그 결과 방어상 필요한 정보의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피고인의 발언이 피고인이 의도하는 취지와는 다른 의미로 전달되는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통역언어와 국어에 대해서 일상회화 정도의 이해·표현능력 밖에 없는 통역인과 국어에 대해서 일상회화 정도의 이해·표현능력 밖에 없는 피고인이 협력한다고 하더라도 일상회화 이상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일상회화 정도의 국어가 가능한 경우라도 결국 전체로서의 의사소통의 수준은 일상회화 수준에 머물게 된다.

그러나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이 통역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방어권의 보장으로서 일상회화 이상의 통상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어느 정도 복잡·고도의 의사소통을 전달·표현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통역인에게는 피고인이 방어를 하기에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능력, 즉 통상의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어느 정도 복잡·고도의 의사소통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통역인의 적정성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sup>252)</sup>

### 3. 통역인의 공정성과 통역의 정확성

이하에서는 통역인의 공정성과 통역의 정확성을 둘러싼 형사소송상의 문제를 다룬 일본의 몇몇 판례를 소개하고 이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가. 조사단계에서의 통역인의 공정성과 통역의 정확성

조사단계에서의 통역인의 공정성과 통역의 정확성이 형사소송상 문제와 관련한

252) 吳満 「外国人刑事事件の司法通訳の現状と問題点」 『刑法雑誌』 33卷4号(1994), 163쪽.

최근의 일본판례는 3 가지가 있다.<sup>253)</sup>

① 東京高判 1992年 4月 8日 判例時報 1434号 140頁

253) 이 외의 판례에서는 ①조사 시에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변호인 선임권 등의 고지방법, ②외국인 피의자에 대해 일본어로 등록된 진술조서의 낭독을 구두로 번역하여 들려준 것으로 충분 한가, ③검찰관이 영어통역을 통해 외국인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일본어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피의 자가 명의를 거부함에 따라 별도로 영어로 작성한 것을 준비하여 이에 피의자가 서명한 경우 어떤 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등의 문제가 있었다.

浦和地判 平 2. 10. 12 判例時報 1376·24는 ①에 대해 「본건에서 문제시 된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의 법률제도는커녕 자국의 법률제도에 대한 지식조차 거의 아주 없는, 지적수준이 낮은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묵비권 고지 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피의자가 상기 수준의 형식적인 고지를 받는 것만으로 이에 따라 본인에게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하여도 이것만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묵비권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본건에서 조사관의 묵비권 고지방법은 피의자에 대해 묵비권 행사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는기라는 관점에서는 현저하게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방법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피고인에 관해서는 최소한 불법체류 및 본건의 방화 각각의 사실로 체포할 때 수반되는 변론녹취 단계에서 통역인을 통하여 『자신이 돈을 지불하면 변호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수준의 고지가 이루어진 사실은 부분적으로 이를 인정하여 형식적 의미에서의 변호인 선임권 고지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겠으나 애당초 피고인은 변호인이 자신에게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해 주는 인물이며 어떠한 절차를 통해 선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식이 아주 없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고지하였다고 하여 변호인 선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판사하면서 이러한 권리는 형식적인 것으로는 부족하며 이들 권리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東京高判 昭 51. 11. 24 高刑集 29 .4 .639는 ②에 관하여 「통역이 다분히 기계적, 기술적인 성질을 지닌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들 통역인의 능력 및 통역시의 정확성, 나아가서는 공정성까지 해당 통역인 및 조사관 등을 증인으로써 신문하거나 피의자에 대한 본인질문 방법 등을 실시하여 사후적으로 신문·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번역문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직접 통역의 정확성 등이 사후에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피의자조서로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으며 번역문이 결여된 일본어 진술조서라 하여도 사후에 신문, 검토를 통해 작성 당시의 통역의 정확성등에 의문점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정의 요건을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이에 형소법 322조 1항에서 정하는 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사하면서 구두를 통한 번역으로 족하다고 하였다. 最決 昭和 32. 10. 2 九刑集 11. 10. 2708은 ③에 관하여 양자에게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원판결(「해당 조항 형소법 322조 1항이 진술 녹취서에 진술자의 서명 또는 수인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진술자로 하여금 진술내용의 정확성을 승인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영문조서는 앞서 기술한 대로 해당 증인이 원문인 일본어 문서에 입각하여 번역하여 작성한 서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 있는 조서를 원판시에서처럼 『피고인의 검찰관에 대한 진술조서』로 기재하고 증거로 채용한 이상 원본인 일본 조서와 함께 번역문인 영문조서를 하나로 취급하여 인용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번역문인 영문조서에 피고인 본인의 서명이 있으며 일·영 양측 문서에 해당 증인이 통역에 상이함이 없다고 담보하고 서명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조서의 정확성승인에 대한 유효성은 당연히 일본조서에 미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해당 양측문서를 일괄적으로 위조항에 피고인의 진술녹취서로써 채용하고 단죄의 자료에 이바지한 사실은 실로 적법한 것이며 그 소송절차는 조급도 법령에 위배되는 일 없이…」을 긍정하는 판시를 하였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취업하기 위해 소요되는 소개료에 충당되는 금액을 위하여 대마 밀반입을 계획하고 테헤란 시내에서 「자기 밀매분」 약 241.12g의 대마수지를 입수했으며, 또한 지인 A에게 빌린 1,000달러의 변제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이에 해당하는 분량」 약 446.82g의 대마수지를 함께 반입하였다. 이는 법정의 제외사유가 아니었으며 영리목적으로 총 688.04g를 은닉·휴대하여 일본으로 입국하였다.

변호인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공소하였다. 변호인의 주장 내용은 피고인의 모국어는 페르시아어임에도 사법경찰관의 조사 및 진술조서 작성은 모두 영어 통역인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국제인권법상 이는 무효이며 피고인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東京高裁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일본에서 국내법으로서의 자력집행권을 보여주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4조 3항(a), (f)에는 외국인은 그 형사상의 죄의 결정에 대해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그 죄의 성질 및 이유를 고지할 것』, 『법원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거나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보조를 받을 것』에 대한 권리보장이 주창되고 있으나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는 언어』에 의한 고지 및 통역이며 반대의 견으로 제기된 『모국어』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들 규정은 법원에 의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하는 데 관한 것이며, 당연히 공소제기 이전의 피의자 조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외에도 앞서 제기한 권리를 보장한 국제법상 규약도 원칙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조사관과 피의자 간 언어소통 없이는 조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특단의 규정을 취할 필요는 없더라도 통역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피의자의 모국어로 한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핵심은 조사관과 피의자 간의 의사소통이 충분하게 도모되었는가이다. 이를 본건에 비추어 볼 경우 피고인은 통역인을 통하여 『이해하는 언어』인 영어를 통하여 조사를 받고 임의로 이에 응하여 진술하는 것이므로 상기 조사는 물론 적법하며 이에 따라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더불어 피고인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내용은 극히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게다가 페르시아어 통역으로 녹취된 검찰관에 대한 진술조서의 내용과도 부합한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영어에 대한 이해력은 페르시아어를 통한 내용과

비교하여 크게 손색이 없다고 볼 수 있다.」

② 東京高判 1992年 7月 20日 判例時報 1434号 140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3명이 G 일행 6명과 공모하여 같은 파키스탄인인 피해자(단, 인도인 2명도 포함되어 있다)들을 습격하여 금품을 강탈, 당시 피해자 2명에게 중경상을 입혔으며 또한 불법체류인 것으로도 밝혀졌다. 변호인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사실오인이 있다며 공소하였다. 해당 변호인의 주장내용은 조사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불공정·부적격 통역인을 통해 극히 불완전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조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의는 조서 상에 충분히 표현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같이 작성된 각 조서가 죄증(罪證)에 이바지된 원판결은 「언어적 due process」(헌법 31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피고인 A는 출신주(州) 언어인 편자브어 이외에 모국어인 우르드어 및 영어도 구사할 수 있었으며 일본어는 일상회화 수준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영어, 우르드어 통역이 부여되었다. 변호인은 영어통역인의 적격성 및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부정확성을 비난하였다. 피고인 B, C는 편자브어권에 속하여 우르드어 이해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역인이 인도인이었으며, 힌두어를 섞어가면서 통역했기 때문에 변호인은 언어적 due process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東京高裁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피고인 A와의 관계)영어 통역인으로서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딱히 인정되지 않으며 경찰관의 신분이기 는 하지만 본건의 통역에 있어서는 통역인으로서 성실하고 정확하게 통역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있어서도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 해당 피고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 수준의 일본어를 이해하고 검찰관 조사에서도 검찰관이 말하는 일본어와 통역인이 말하는 영어를 함께 듣고 판단하여 모르는 부분은 질문하는 등 조사관과의 의사소통을 계속하면서 사건에 대한 상세내용을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한 조서를 검찰이 읽고 통역인이 순차통역 하였을 때 해당 피고인이 진술내용과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통역인의 통역상의 부정확성에 있어서는 해당 피고인의 진술의 진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할 만한 특단의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B, C와의 관계) 지방도시에서 소수언어 통역인의 확보는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며, 본건에 대해서도 조사 및 제1심 단계에서 우르두어로 통역이 이루어져 피고인의 출신주 언어인 펀자브어로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우르두어를 이해할 수 있는 한 이러한 조치를 위법·부당시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따라서 각 피고인에 대해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전제사항에 있어 결격사항이 있으며,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상의 방어권 확보가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형사절차의 각 단계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이므로 조사단계의 조사에서 통역의 적합성여부에 대한 문제가 직접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초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원심에서의 본건심리와 같이 공판단계에서 적절한 통역인이 부여되어 피고인 질문 및 증인신문 등을 통해 조사단계에서 녹취된 진술조서 등에 대해 통역의 정확성을 신문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고 이에 입각하여 조서의 임의성에 대해 신용성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조사단계의 통역인의 부적격성 및 통역의 부정확성 문제를 이유로 즉각 원판결의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주장하는 이러한 이의제기는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으며 이 점에서도 해당 논지는 이유가 없다.」

③ 大阪地判 1995年 11月 20日 判例集未登載

필리핀인 피고인이 한 여성을 둘러싸고 다투던 중 연적인 상대방 남성을 식칼로 찢러 기소된 사건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일본어 이해능력의 부족 및 통역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사고이며 실수의 의미인 「찢러서 죽게 만들었다」와 고의의 의미인 「찢러서 죽였다」를 구분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와는 다른 내용의 조서가 작성되었다며 피고인의 살의에 관한 부분에는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大阪地裁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하였다. 「조사단계의 조사에서 식칼로 찢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때 피고인과 통역인 A의 사이에는 타갈로그어 『naisakusaku napatai』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 『naisakusaku napatai』라는 표현에는 「찢러서 죽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와 「찢러서 죽였다」라는 중의적 의미가 있으며 그 차이는 전후 문맥으로 판

단된다는 점·피고인은 상기 조사에서 사고로 잘못하여 「떨러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반대로 『식칼을 빼앗기기 전에 찌르려고 생각하여 찔렀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 본인도 공판정에서 각 진술조서에는 살의를 갖고 찔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었다 사실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였다는 점·또한 본건은 크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고 조사단계의 타갈로그어 통역인의 통역능력에도 특히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 조서에 기재된 살의에 관한 진술부분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일본어 이해능력이 부족하다거나 통역에 부정확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각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

이들 판례에서는 조사단계에서 통역을 통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가 다투어지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논점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 (a) 조사단계에서의 통역인의 공정성(중립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를 통하여 얻어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의 유무.
- (b) 조사단계에서의 통역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통하여 얻어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의 유무.
- (c) 조사단계에서 모국어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를 통하여 얻어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의 유무.

②는 (a)에 관해서는 경찰관이 통역인이었다고 하여도 성실하게 통역이 이루어져 정확하기만 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성실성과 정확성이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 성실성·정확성·공정성은 각각 내용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a)에 있어서는 애초에 조사단계의 통역인에게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②는 조사단계에서의 통역인은 공판에서의 통역인인 사법통역인과는 별개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단계의 통역인은 사법통역인과 달리 선서의무가 없으며 조사관에게는 조사단계에서의 통역인 선임을 공정하게 실시하도록 의무화된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사단계에서의 조사 시 통역인의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은 소

송절차의 법령위반이 되지 않는다.

(b)의 경우와 같이 조사단계에서의 통역의 부정확성에 대해서는 ②는 조사단계의 조사 시 통역의 부정확성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공판에서 적정한 통역인이 부여됨에 따라 조사단계에서의 진술조서에 대해 통역의 정확성을 신문할 기회가 부여되므로 검토할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에도 의문점이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진술조서의 통역의 부정확성은 진술조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증거능력 판단은 일반적·유형적 판단으로 종결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통역의 부정확성은 진술내용이 진술내용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거능력 판단이 일반적·유형적 판단에서 종결되는 한 증거능력을 문제시킬 필요는 없다. 따라서 진술조서의 일반적 신용성이 훼손되었는가를 물을 경우에는 진술조서가 아니라 통역인의 통역능력을 심사의 대상으로 하여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통역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통역인을 통해 작성된 진술조서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c)에 관해서는 ①, ②는 모국어가 아니라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면 족하다고 하였다. ①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 조사일 경우는 조사관과 외국인 피의자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 ①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4조 3항(a)가 규정하고 있는 통역보장은 조사단계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내용의 일반적 신용성은 없다는 이유에 따라 그러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정될 것이다.

#### 나. 공판에서의 통역인의 공정성과 통역의 정확성

공판에서의 통역인의 공정성과 통역의 정확성이 형사소송상의 문제가 된 최근의 일본판례는 두 가지이다.

④ 大阪高判 1991年 11月 19日 判例時報 1436号 143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홍콩거주 중국인 A, B, C 3인이 일본에 와서 일본인 피해자 집에 식칼을 들고 침입,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사망케하여 기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항소된 사안에서 변호인이 원심 법원에서 선임된 통역인은 ①피고인의 언어인 광둥어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점 ②일본어와 광둥어에 관한 어학력이 부족한 것 ③판결문에 대한 이해의 부족 ④수사단계부터 법원까지 계속 통역을 담당한 동일인물이어서 사건에 예단을 가지고 멋대로 그릇 통역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심 통역인이 수사단계부터의 통역인인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인 C(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확정)는 중국어 중에서도 광둥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인 B는 광둥어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주로 북경어를 사용하고 있다. 광둥어와 북경어 양 언어를 모두 잘 하는 통역인을 확보한다는 것은 중국과 비교적 관계가 깊은 神戸(코오베)지역(원심법원 소재지)에서조차도 용이하지 아니한 현실을 직시하지 아니할 수 없다. 수사단계에서의 통역인이 법정 통역인으로 선임되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직접 부당 또는 위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건은 그 통역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 원심에서 중요한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질문을 통역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사후에 검증할 수 없는 것도 문제이다. 판결선고 상황에 관한 변호인의 지적(판결의 주요 판시부분이 통역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을 부정할 수 없고 이로부터 추측하건데 원심공판에 있어서 증언 및 진술에 대한 통역의 부정확성에 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당심에 제출된 검찰사무관 작성의 1990. 1. 17.자 보고서에 의하면 통역인 F가 수사기관의 검찰사무관에게 피고인과 영사관계관의 면접결과를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것이 직접 일·영 영사조약에 위반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통역인 F의 자세를 암시하고 있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선임한 통역인에 관하여는 변호인의 비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그밖에 증거에 관한 여러 이유를 거시하여 파기환송하였다.

⑤ 東京高判 1994年 11月 1日 判例時報 1546号 139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필리핀인이 저지른 동향지인의 살인사건으로 피해자

F로부터 퇴거조치 당하여 출입이 금지 당하자 거만한 태도에 화가 난 피고인 5명이 공모하여 F를 살해를 기획, E가 F의 배후에서 양손으로 깎지를 껴 포박하고 D가 식칼로 흉부를 찌르면서 동시에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구타, F를 살해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A, C를 징역 6년 형, 피고인 B를 징역 5년 형으로 선고하였다(D, E에 대해서는 불명). 변호인은 피고인 B는 이로카노어 이외에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서관은 타갈로그어, 영어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원심법원은 타갈로그어로 공판심리를 진행하여 재판을 실시했고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조사 및 재판을 실시했으므로 헌법상 피고인에게 보장된 반대신문권, 변호 받을 권리,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며 공소절차의 법령위반이 있다며 공소하였다.

東京高裁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피고인의 타갈로그어 능력을 고려해 볼 때 본건에서 피고인은 모두 필리핀 공화국 이로코스 지방 출신이며 통상적으로 이로카노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타갈로그어(엄밀하게는 필리핀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피고인들도 초등학교에서 이를 학습했으며 사회생활에도 널리 사용되어 다양한 장면에서 이를 접할 기회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는 타갈로그어가 사용되는 마닐라에서 3년간 일한 경험도 있다. 그리고 원심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질문은 모두 타갈로그어로 진행되었는데 공판조서속기록에는 질문에 대응하는 답변이 기록되어 있다. 해당 기록의 내용은 앞뒤가 맞고 질문에 대한 답변의 연결도 막힘이 없었다. … 더불어 본건의 사안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비교적 단순한 행동 및 심리가 문제시되는 것으로 기본적인 어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에 딱히 높은 수준의 어휘가 요구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공모의 유무 및 각자의 역할 등의 중요한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이 이루어져 확인절차를 거쳐 질문을 진행했으며, 법원도 그 자리에서 질문을 보충하면서 적절한 대답을 얻으려고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다. 통역인이 피고인의 타갈로그어 진술을 힘들이지 않고 통역하였다는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이 말하는 타갈로그어가 통역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역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애당초 통역이라는 작업은 원진술을 통역인이 기억하여 의미를 파악한 후에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진

술이 그러한 과정에서 다소 변용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확하게 통역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해당 사건에서도 일부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며 오역이 의심되는 부분도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원심속기록을 상세히 검토해 볼 경우 다소 부정확하거나 오역인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 가운데 최소한 중요한 부분이나 미묘한 점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질문방법이나 다른 각도로 질문하여 요지를 확인하거나 올바른 대답을 유도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법정도 보충질문을 하여 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통역인의 통역에 일부 오역이 있다 하여도 이는 본건의 심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들 판결에서의 논점은 다음 3가지이다

- (d) 사법통역인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통역은 위법인가
- (e) 사법통역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통역은 위법인가
- (f) 사법통역이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인 경우 그 통역은 위법인가

④는 (d)에 관하여 조사단계의 통역인이 사법통역인으로 선임되는 사실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만 이를 즉각 부당 또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통역인의 확보문제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찬성할 수는 없다. ④와 같은 사안에서는 한 사람이 모두 진행한 것이 아니라 사법통역인으로 광동어를 구사하는 통역인을 고용하고 북경어 통역인을 조사단계에서 선임하였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법통역인의 요체가 공정성에 있다는 사실은 형사소송법이 사법통역인에게 선서를 의무화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현행 형소법이 조사와 공판을 연속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조사단계의 통역인이 사법통역인으로 선임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법통역인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지한 시점에서 즉시 해임하고 새로운 사법통역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판결을 한 경우에는 사법통역인은 일반적인 신용성이 결여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사법통역은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없

게 될 것이다. 또한 ④의 논의에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도 통역이 정확하면 족하다는 개념이 기저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④의 논의를 분석해 보면 증거능력 문제는 개별적 신용성의 문제로 해소되어 버리는 결과, 증거능력 불요론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⑤는 통역언어가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가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고 (필리핀의 공용어인 타갈로그어는 초등학교에서 학습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 피고인은 타갈로그어가 통용되는 마닐라에서 3년 간 근로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 원심 공판에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원활하게 진행하였다는 사실) 사법통역은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행되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사법통역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법통역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제인권법 위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통역이 위법이다.

그러나 통역은 화자의 발언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스스로가 가지는 타언어의 지식의 범위에서 상당하는 언어를 선택한 후 문장으로서 구성해서 표현한다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발전의 의도에 대한 이해나 해석등에 통역자의 예단이나 주관적 감정이 포함되거나 또는 해석이나 표현의 과정에서 실수가 포함될 위험도 적지 않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과학적 감정과 같은 수준에서의 객관적인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감정이라고 하더라도 감정자의 중립성의 문제로서 수사기관에 소속하는 자가 행하는 감정의 공정성이나 촉탁감정자를 법원의 감정인으로서 사용하는 것에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설사 통역과 과학적 감정이 기능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는 전제로 하더라도 즉시 문제점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사단계의 통역인이 공판의 통역인을 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원칙하에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모국어 원칙의 경우와 같이 다른 통역인의 확보를 우선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역언어가 모국어로 한정되지는 않지만 피의자·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실시되어야 한다. 통역인의 공정성은 조사단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공

판에서는 통역에 대한 위법 문제가 발생한다. 조사, 공판 양측 단계에서도 통역인의 통역능력은 증거능력의 문제와 직결되며 통역의 정확성은 신용성의 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공소이유로서 통역인의 공정성(사법통역인에게 한정) 및 통역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공소절차의 법령위반이 주장되는데 통역의 정확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오인의 주장이 된다.<sup>254)</sup>

## 제4절 소 결

사법통역인의 통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기소장 등본송달 직후에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번역된 내용을 전달하고 공판심리에서 모두절차 및 판결선고를 비롯한 통역을 하여도 그 내용이 정확하게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판결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자유권규약 14조 항 (a) 규정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며 한국어를 이해하는 평균적인 사람이 정당하게 행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제인권법상 해당 피고인에게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게 된다. 또한 공판심에 이러한 사법통역인이 통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진실의 발견 등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유능하고 적절한 통역인 확보가 불가결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 사법통역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의 출발점은 유능하고 적절한 사법통역인의 확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통역제도 관련 근거법률 마련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이 근거법률을 통해 추후 사법통역제도 운영시 요구되는 직업윤리 규범 마련, 인증제 도입, 교육시스템 구축, 인력관리 및 활용 등의 전반적인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54) 미국 텍사스 형사항소법원은 통역인의 부적절한 통역으로 신청인과 변호인, 신청인과 배심원사이의 의사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신청인은 변호인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불충분한 조력으로 침해되었다고 하여 1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Texas v. Jose Moises Guzman 1987.5.8. 텍사스 형사항소법원(No. 69,615))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5장

# 사법통역제도의 개선방안

안성훈



# 사법통역제도의 개선방안

이하에서는 형사절차상의 사법통역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 사법통역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개선방안 모색에 있어서 일찍이 사법통역제도를 도입하여 사법통역을 외국인피의자·피고인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사법통역제도는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은 19세기 말 「인종의 도가니」가 되었다. 1차 이민기에 아일랜드를 비롯하여 유럽 각지에서 이민자가 유입되었으며, 한편 멕시코령의 왕래에 따라 수천 명의 멕시코인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또한 미국 횡단 철도 건설에 따른 아시아 노동자 고용으로 인하여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인구비율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공용으로는 오직 영어만이 사용되었으며 학교나 직장에서도 영어 이외에는 사실상 무시되어 왔다. 형사재판 장면에서도 연방재판소에서의 통역인 임명에 대한 찬반론은 오랜 기간 재판소의 재량에 의존하여 왔다.

이러한 영어유일주의에 대해 60년대 이후 저항운동이 발발하였다. 이러한 운동은 「언어의 권리」(Language Rights)와 「참가의 권리」(Access Rights)라는 시민운동, 소수민족 및 언어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자의 권리주장이라는 취지를 갖고 시작되었다. 이러한 운동에 힘입어 1978년, 사법통역인법(Court Interpreters Act)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성과를 거두었다.

- ① 우선적으로 윤리규정의 모두에서 「인정법정 통역인은 고도의 숙련된 전문가이다. 영어구사능력이 없는 자에게 사법을 운용하고 미국헌법 수정 제4조 및 제6조에서 정한 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되었다. 즉 법조 3자와 대등한 법정의 「전문가」로서 인지되었다.
- ② 다음으로 미국에서는 사법통역에 관한 사무국이 설치되어 통역인 리스트를 작성하고 필요한 재판소에 대한 통역 서비스를 수배하는 등의 업무를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까지 재판관의 재량에 일임했던 통역인의 보수규정 문제도 사무국에서 통일 관리하도록 하였다.
- ③ 이를 위해 사법통역인을 인정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현재 연방에서는 스페인어, 나바호인디언어, 그리고 아이티 크레올어의 인정시험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외에 언어별 인정시험의 정비도 현재 준비 중이다.
- ④ 이에 따라 사법통역의 직업윤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연방법정 통역인자문위원회는 「연방공인통역인을 위한 직업윤리규정(Cod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of The Official Interpreters of The United States)」를 작성하였다. 해당 규정은 아직 연방최고재판소 등에서 정식으로 승인된 규정이 아니지만 사실상 통역인은 해당 규정내용의 윤리를 준수하도록 지도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상과 같은 미국의 사법통역인법 도입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사법통역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제1절 사법통역제도의 입법화

피고인, 피의자, 증인 등으로 법정에서 서게 되는 개개인들은 사법제도가 헌법적 원칙에 따라 자신들의 중요한 권리를 보호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언어장벽이 사법절차를 방해하고 필수적인 소통과 상호 이해를 막을 때, 사법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무너지게 된다.

헌법 제12조는 아무도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 또는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기타 형벌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B규약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a), (f)는 모든 사람은 그 형사상 죄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죄의 성질 및 이유를 통지받고, 법원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거나 말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형사절차에 관한 인권보장규정은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 사람과 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명백하고, 외국인 피의자나 피고인도 형벌권발동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권리의 존재와 내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는 대부분의 인권보호규정이 무의미해지는 것 또한 명백하다. 따라서 통역을 받을 권리는 인권보장규정을 외국인에게 보장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권리로서 헌법상 적정절차조항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직접적인 재판규범이 되므로 위 B규약은 정부를 직접 구속하고 법운용의 기준이 되는 것은 분명하고 외국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형사절차의 어떤 단계에 있어서도 통역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sup>255)</sup>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통역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재판시 규정으로 제180조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사시 규정으로 제221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실무에서는 외국인 피의자·피고인에의 통역제공 여부, 통역을 제공하더라도 어떤 언어로 할 것인지, 또한 통역을 누구에게 시킬지 등은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행하여지고, 법원에서도 재판부에 일정한 경우에 통역을 시킬 수 있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이므로 피의자·피고인의 통역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sup>256)</sup>

255) 松本時夫 「通訳の法的性格について」 芝原邦爾, 西田典之, 井上正仁 編 『松尾浩也先生古稀祝賀論文集 下巻』 有斐閣(1998), 414쪽 이하 참조

256) 김운곤, 위의 논문, 311쪽.

## 1. 사법통역인의 법적지위와 역할

제3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당사자주의에 기초하여 배심원 앞에서 행해지는 변론과정에서 피고인의 적정절차와 관련된 권리 보호를 위해, 미국법원은 형사소송의 진행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참여권을 오래전부터 인정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United States v. Lewis, 1892), 재판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참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언어적 참여권 (linguistic presence)’이라는 개념이 Arizona v Natividad(1974) 판례에 의하여 성립되었다. 형사피고인의 참여권의 보장을 통한 적정절차 원칙의 구현<sup>257)</sup>과 이를 위한 사법통역의 필요성에 대하여 미국법원은 위의 판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정하여 왔으며, 사법통역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관련 법률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정되었다.<sup>258)</sup>

## 2. 사법통역인법(The Court Interpreters Act)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사법통역은 고도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다. 법정에서는 고도로 전문화된 법률용어와 절차 그리고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적인 맥락에 대해 익숙할 것이 요구된다. 사법통역인의 역량은 화자가 사용하는 구어체 표현이나 말하는 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단어의 의미와 그가 설명하는 스타일을 다른 언어로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능력에 의존하게 된다.

사법통역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역인이 (1) 법률용어

---

257) 미국 연방법원은 재판전 절차와 재판절차에서 통역인을 선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적법절차권리가 부정되었다고 하여 항소한 사례에 있어서 부정한 것은 아닌지 형사절차에서 통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적법절차가 부정되었다고 하려면 다음과 같아야 한다. i) 피고인이 들은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 ii) 재판에서 통역의 정확성과 통역이 이루어진 범위에 심각한 의문이 있는 경우, iii) 절차에 관하여 피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되지 아니한 경우, iv) 언어상의 장애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는 확실한 주장이 이루어졌음에도 법원이 증거 재검토나 적절한 사실발견을 하지 아니한 경우이라고 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U.S. v. Biagio Cirrincion and Tom Cirrione 1985.12.11. 연방제7항소법원(Nos 84-2812))

258) 김운곤 앞의 논문, 262쪽.

에서부터 비속어까지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양쪽 언어에 능통해야 하며 (2)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형태의 통역이 모두 가능하여야 하며,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해석해서 말하기위한 잘 훈련된 단기기억력이 필요하며, 특정 상황에서 위의 세 유형 중 어느 유형의 통역이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요한다. (3) 인종적·전문적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동시에 실제 법정에서 이러한 기준들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sup>259)</sup>

사법통역인의 능력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은 미국법원의 판례<sup>260)</sup>상으로 나타난 사법통역인의 언어도관(language conduit)으로서의 역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사법통역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261)</sup>

이러한 전문적 사법통역인의 확보와 유지를 위해서는 언어적 능력의 검증과 함께 전문적인 사법통역인에 대한 윤리적 강령과 의무의 제시와 준수가 중요하며, 이를 제도화하고 검증하는 공식적 체제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미국에서는 1978년 사법통역인법(The Court Interpreters administrative office)을 제정하여 공인된 통역인(certified interpreter) 또는 상당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otherwise qualified interpreter) 등 사법절차에서 통역인의 이용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와 같다.

28 USC § 1827 - Interpreters in courts of the United States

(a) 미국법원의 행정처장은 미국 내 사법절차에서 공인 통역인 혹은 그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정하여야 한다.

(b)

(1) 청력을 상실한 자(언어구사능력이 상실되었는지는 불문하고)와 영어이외에

259) Conference of State Court Administrators(2007), "White Paper on Court Interpretation: Fundamental to Access to Justice", p. 6.

(<http://cosca.ncsc.dni.us/WhitePapers/CourtInterpretation-FundamentalToAccessToJustice.pdf>)

260) Da Silva 판례 (United States v. Da Silva)

261) 이렇게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고른 수준으로 양질의 사법통역을 제공하는데 오히려 방해요소가 되고 있기도 하다.

한 언어만 혹은 주로 한 언어를 사용하는 자를 위하여, 행정처장이 미국 내 사법절차에서, 통역인을 공인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행정처장은 공인 통역인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의 자질을 규정하고 심사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행정처장은 만약 자신이 그 언어에 대해 공인 통역인이 필요하다고 결정한다면 어떠한 언어도 인증할 수 있다. 어떤 한 언어의 공인 통역인 인증에 대한 사법협의회(Judicial Conference)의 요청이 있는 때에, 행정처장은 해당 언어에 대한 통역인을 공인하여야 한다. 순회재판소의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의 요청과 사법협의회(Conference)의 승인이 있는 때에, 행정처장은 해당언어가 요구되는 순회재판소를 위해서 통역인을 공인하여야 한다. 순회재판소의 사법위원회는 순회재판소의 관할 하에 있는 해당지역의 수료를 파악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처장은 통역인을 절대평가에 근거해서 공인하여야 한다. 행정처장은 사법 개혁 및 사법 접근권에 관한 법률(Judicial Improvements and Access to Justice Act)의 제정 후 1년 이내에 본 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 (2) (1)항에 따라 특정 언어에 대한 통역인의 자격 공인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본 법 (d)조에 규정된 것처럼 오직 공인 통역인이 없는 경우에만, 별도의 자격을 갖춘 통역인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법절차에서 정확성에 대한 고도의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처장은 별도의 자격을 갖춘 통역인에 대하여 법원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 (3) 행정처장은 공인통역인과 별도의 자격을 갖춘 통역인을 총망라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 내 사법절차에서의 공인 통역인과 별도의 자격을 갖춘 통역인 사용 및 업무수행에 대해서 그리고 공인통역인을 배출한 언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처장은 타 정부기관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현행 요금을 참고하여,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항목, 미국 내 사법절차에서 공인이든 아니든 통역인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c)

- (1) 미국의 각 지방법원은 법원서기(clerk) 사무실에, 그리고 모든 미국 변호사

는 본인이 본 법 (b)조에 따라 행정처장에 의해 통역인으로 인증을 받은 사람의 목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요청이 있을 경우 사법절차에 투입할 수 있도록 법원서기는 공인 통역인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미국변호사가 정부 측 증인에게 제공하는 통역 업무에 대해 보안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장에 의해 지명된 법원 서기 혹은 다른 법원 직원은 절차상 요구되는 공인 통역인과 별도의 자격을 갖춘 통역인의 서비스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

(d)

- (1) 미국 내 사법절차에서,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당사자 또는 사법절차에서 증언하는 증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당사자들의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혹은 이들이 변호사나 재판관과의 소통에 방해를 받거나 증인이 질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증언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재판장은 행정처장의 도움을 받아 즉시 시간을 낼 수 있는 공인통역인을 채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떤 공인통역인도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자격을 갖춘 통역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A) 영어 이외에 한 가지 언어만 사용하거나 혹은 한 가지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당사자/증인)

(B) 청각장애(음성장애를 동반하는지 여부는 불문하고)가 있는 자

- (2) 당사자의 제안에 의해서, 재판장은 본 법 하에서 사용되는 통역인의 사법절차를 전자방식으로 녹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통역되는 언어가 행정처장이 통역인을 두도록 공인한 언어 중 하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절차가 길고 복잡하더라도, 그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재판관은 다른 모든 것들 중에서도 사법절차에서의 통역인의 자질과 경력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대배심 절차에서는, 피고인의 동의에 근거하여, 재판장은 절차 중 통역인이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녹음을 요구하여야 한다.

(e)

- (1) 통역인이 재판관, 미국변호사,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포함한)당사자 또는 증인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관은 그 통역인을 해임하

고 본 법과 일치하는 다른 통역인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 (2) 미국 내 어떤 사법절차에서건, 재판관이 이 법 (d)조 하의 통역인을 지명하지 않는다면, 통역인의 도움을 요하는 개인은 공인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 서기 또는 행정처장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f)

- (1) 본 법 (d)조 하의 통역에 대한 권리를 가진 증인 이외의 개인은 그러한 통역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한 포기는 당장 시간을 낼 수 있는 공인통역인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공인통역인이 시간을 낼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의 결정에 의해 통역 가능한 통역인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후, 변호사와 상담할 기회를 가진 연후에 그리고 재판관이 그 개인에게 포기의 성격과 효과에 대해 설명한 이후에, 재판관에 의해 승인되고 그러한 당사자에 의해 명시적으로 표명된 것이 기록상 명확할 경우만 효과가 있다.

- (2) 본 조 (1)항의 통역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개인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비공인 통역인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통역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비용은 이 법의 (d)조 하에서 지명된 통역인에 대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g)

- (1) 공인 통역인 혹은 별도의 자격을 갖춘 통역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3)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본 법의 규정과 사법개선 및 소송편리에 관한 법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은 연방 사법부가 그 비용을 충당할 권한이 있으며 미국법원의 행정처장에 의해 지급되어야 한다.

- (2) 이 법 조항의 시행은 이 법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충당되는 기금의 가용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 (3) (4)항에 방향이 제시된 경우가 아닌 한, 정부 측 증인(대배심절차를 포함하여)에 관하여 발생하는 임금, 수수료, 지출, 비용은 법무부에 의해서 할당된 총액으로부터 법무부 장관이 지급하여야 한다.

- (4) (d)조에 따라서 도입된 통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소송이라도 누군가 통

역을 요구하는 경우, 재판장에 의해 지명된 법원의 서기 또는 다른 법원 직원은, 재판관의 요청에 따라, 가능한 경우, 비용 상황 기준에 근거해서 그 사람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법원은 그러한 서비스 제공 비용 상당금액에 대해서는 선불을 요구할 수 있다.

- (5) 만약 미국법원행정처의 장이 인증의 목적으로 절대평가 또는 별도의 자격을 갖춘 통역인 선발 시험을 개발할 필요가 있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장은 그러한 시험에 응시하는 지원자를 위하여 각 시험에 균일한 요금을 규정할 수 있다. 각각의 시험에 대한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처장은 범위나 성격이 유사한 시험에 대해 타 기관이 부과하고 있는 요금을 참조하여야 한다. 법전 31의 법률 3302 (b)에도 불구하고, 행정처장은 계약자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할 수 있는 시험을 개발·관리하는 계약 혹은 협정을 체결하고 그 요금을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본 조 (6)항에도 불구하고, 본 항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징수되었고 계약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모든 요금은 본 법전 법률 1931 하에서 설립된 기금에 기탁하도록 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 본 조 하에서 회수된 모든 돈은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 (h) 재판관은 (b)조 (3) 하에서 행정처장에 의해 규정된 수수료(fee)안에 따라 통역인에 대한 보수와 지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 (i) 본 법 하에서 사용된 “재판관”이라는 용어는 파산 판사, 치안판사, 미국변호사의 보호 아래 수행된 대배심 사건에서의 미국변호사를 포함한 미국지방법원판사를 지칭한다.
- (j) 이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미국 내 사법절차”는 형사이건 민사이건 상관없이, 공판전 절차와 대배심 절차(고소인에 의해 미국의 이름으로 발의된 인신보호영장 신청에 근거한 절차뿐만 아니라), 또는 미국지방법원의 합법적인 권위와 관할권에 따라 수행된 모든 절차를 지칭한다. 본 조에서 사용된 “미국지방법원”은 미국영토 내에서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모든 법원과 본 법전 5장에 의해 설립된 지방법원 관할 내에서 운용되는 모든 법원을 포함한다.

- (k) 재량 또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심리 후 재판관이 통역이 재판진행을 돕는데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동시 또는 순차 통역을 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법에 따라 공인 혹은 별도의 자격을 갖춘 통역인에 의해 제공된 통역은 미국 내 사법절차의 어떤 당사자에 대해서도 동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증인에 대해서는 순차통역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재판관이 특별 통역이 재판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결정한다면, 재판관은 스스로 혹은 당사자의 동의에 근거해서, 본 법전 법 1828에 규정된 특별 통역을 명할 수 있다.
- (l)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 절차이건 아니건 간에, 만약 재판관이 본인 스스로 혹은 당사자 또는 절차상의 다른 참가자의 동의에 근거해서 어떤 한 개인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본 법 혹은 1828호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은 사법절차에서 당사자, 증인 또는 기타 참가자에게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인 혹은 별도의 자격을 갖춘 수화 통역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재판관은, 지출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본 법 (b)(3) 하의 행정처장에 의해 규정된 요금을 본 법에 의해 지명된 수화통역인에 대한 보수와 비용지출로 승인하여야 한다.

28 U.S.C. § 1828 : US Code – Section 1828 : 특별 통역 서비스

- (a) 미국법원의 행정처장은 미국지방법원에서 미국에 의해서 제기된 (관계자에 의해 미국의 이름으로 발부된 인신보호영장 신청을 포함하여)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에서 특별 통역인 규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동 프로그램은 다수당사자 형사소송과 다수당사자 민사소송에서 동시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 (b) (a)조에 따라 도입된 특별 통역인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송에서 청구가 있으면, 행정처장, 재판관의 승인을 얻어, 법전 31의 법률 9701에 따라 정해진 시간당 임금에 따라 유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행정처장은 그것을 요청한 사람에게 서비스제공비용의 선불을 요구할 수 있다.

- (c) 본 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 (a)조 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부수되는 비용은 연방법원이 지출 승인한 총액으로부터 행정처장이 지불한다. 재판관은, 그의 지시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사자 간에 분배 되어야 한다거나 혹은 민사소송인 경우 비용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명령의 결과 징수된 돈은 그러한 서비스를 위해 지출된 금액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 (d) 행정처장에게 사용이 허락된 금액은 본 법 (b)조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조항 하에서 행정처장이 징수한 돈은 그러한 서비스를 위해 지불한 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재판관은, 그의 지시에 따라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가 당사자 간에 분배되어야 한다거나 혹은 소송비용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경우 사법통역인법의 규정에 의해, 미국법원 행정처의 장은 공인된 통역인 또는 그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 등 사법절차에서 통역인의 이용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a)), 법원행정처는 법원통역의 수요가 있는 언어에 대하여 사법통역인자격을 인증할 수 있고 이러한 인증을 위한 자격요건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각 법원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 공인된 사법통역인의 목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당해 사건의 재판관이 소송당사자나 증인 등 재판참여자의 영어구사력이 제한되어 있어 재판관 또는 변호사와의 의사소통이나 소송과정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행정처의 도움을 받아 공인사법통역인을 선임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인사법통역인의 이용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동법 (b)) 사법통역인의 자격인증과 이용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도화 하고 있다.

## 제2절 사법통역인 직업윤리 규범 마련

### 1. 사법통역인의 지위와 윤리

사법통역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을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언어를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전환하는 언어도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법통역인은 기본적으로 소송참가자의 의사소통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언어도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능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완전한 통역기술 못지않게 고도의 전문가적 윤리의 준수가 요구되는바, 미국에서는 연방사법통역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법원의 공적보조인으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sup>262)</sup>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하는 『법정 통역인 편람』에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262) 또한, 사법통역인의 법적지위와 역할에 대한 미국법원의 태도를 일부 판례를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판례로서 인용되는 것이 Da Silva 판례이다. Da Silva 판례 (United States v. Da Silva, 725 F. 2d 828(2nd Cir. 1983))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Da Silva는 브라질 국적 보유자로 불법마약 반입 및 판매목적 마약소지 혐의로 미국 케네디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체포된 피의자는 공항 조사실에서 마약범죄수사국의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피의자는 공인스페인어통역인 자격을 갖고 있는 세관조사보좌관의 스페인어 통역을 통하여 수사관의 질의에 답변을 하였다.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Da Silva는 조사 단계에서 스페인어 통역인의 통역이 부정확하였으며, 통역인을 통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마약범죄수사국 수사관의 증언은 전문증거로서 전문법칙의 위반이 되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1심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 하였다. 전문증거(hearsay evidence)는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하며, 전문법칙(hearsay rule)이란 전문증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로는 반대신문의 결여(lack of cross examination), 신용성의 결여(lack of trustworthiness), 부정확한 전달의 위험(danger of error in transmitting)이 제시되고 있다. 본 사건에서 통역의 부정확성에 대한 피고인 Da Silva의 주장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게 된 주요사실에 대한 통역의 오류는 없었으며, 통역인의 통역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근거가 없고 당해통역인을 통한 조사 당시에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전문법칙 위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항소법원은 기존 판례의 태도로 보아 통역인은 진술을 하는 피고인의 대리인(agent)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통역에 의한 진술도 피고인 자신의 진술로 보아 전문증거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항소법원은 증거법에 관한 견해도 인용하였는데 통역인이 충분한 통역능력이 있고 진술을 왜곡하려는 동기(motive to misrepresent)가 없다면, 그 통역인은 진술을 하는 소송당사자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으며, 대리관계를 부정할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진술은 증거로서 채택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진술의 왜곡에 대한 동기가 없고 통역의 부정확성을 의심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통역인은 언어도관(language conduit)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견해를 인용하였다.

제1회 기일 전 준비시 그리고 사법통역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법원규칙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원의 공적보조인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미국의 “연방법원 공식사법통역인의 직업적 책임규범(Cod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of The Official Interpreters of The United States Courts)”은 사법통역인이 전문가로서 지켜야할 윤리와 행위 규범을 규정하고 있는데<sup>263)</sup>, 이러한 사법통역인의 윤리, 행동강령의 제정과 의무의 준수를 통하여 사법통역인의 전문가로서의 지위가 제고되며, 형사절차에 있어서 사법통역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증거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증거로서 채택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전제를 제공하게 된다.<sup>264)</sup>

## 2. 미국 사법통역인의 직업윤리 규범

“연방법원 공식사법통역인의 직업적 책임규범”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미국 공식 사법통역인의 직업적 책임규범**  
[ “사법통역의 본질: 이론, 규칙 및 현실” 에서 발췌,  
Carolina Academic Press 1991]

공인 사법통역인들은 법집행 및 헌법수정 제 4조 및 6조 비영어 구사 피고의 권리보호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고도로 숙련된 전문인이다. 법원직원의 자격으로 사법통역인들은 정당한 법적 절차 확보를 위한 전문인 윤리강령의 적용을 받는다. 연방사법통역인자문위원회(Federal Court Interpreters Advisory Board)는 모든 연방사법통역인에게 적용되는 윤리강령 및 전문인 책임강령을 도입하였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규범을 채택하였다.

263) 사법통역인의 윤리와 행동강령을 규정한 규범은 연방에서 규정한 규범 이외에도 각 주마다 마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본보고서의 캘리포니아주 및 메사추세츠주의 사법통역인 관련 규범에 대해서는 [부록] 참조

264) 최철 「사법통역의 법적 의의와 제도화에 관한 고찰-미국 판례와 적정절차의 원칙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제12권 2호』 (2009), 265쪽

규범 1. 공인사법통역인은 엄격히 자신이 근무하는 법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동해야 한다.

① 법원의 이익

해당 내용에서는 주로 통역을 실시하는 환경 및 조건정비 측면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통역인의 전문성을 활용한 책무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가령 ①휴식을 취할 것. ②통역업무가 과중하여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가중되지 않도록 정비를 요구할 것. ③법정 내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요구할 것(예를 들어 증언의 소리가 작거나 아래를 보고 하는 발언, 빠르게 말하는 등 법원에 이러한 부분을 주의해 줄 것을 요구할 것). ④법정에서는 통역을 수행하기 가장 좋은 「자리」에 착석할 것.

통역인 본인이 법정에 익숙하지 않아 재판소에 통역인의 요구조건을 표명하기가 쉬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통역인으로서 업무를 원활하고 만족스러운 조건에서 실시하기 위해서는 서기관을 통하여 충분히 상담, 의뢰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정비에 관해서 통역인은 법원(실제로는 담당 서기관)에 적극적으로 상담 및 교섭을 하는 것이 통역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② 준비를 위한 협의

통역인은 자동적으로 무엇이든 번역이 가능한 기계로 오인되기 쉽지만 다루는 사건에서 다루는 쟁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단어의 치환은 가능하겠지만 종합적인 의미내용의 정확한 통역은 불가능하다. 통역인, 법원, 검찰관과 충분히 사전협의를 하지 않으면 재판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도 존재한다.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재판관, 담당검찰관, 변호인 그리고 통역인을 비롯한 4자회담을 사전에 마련하여 재판의 흐름, 통역방법의 사전협의를 가능할 경우 통역인이 통역을 하기 수월해 진다.

③ 복수 통역

미국에서는 피로 등의 문제를 덜기 위하여 2시간을 넘는 재판에서는 복수의 통역인을 임명하여 교대로 통역을 실시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동일언어로 2명의 통역인을 임명한 사례는 드물다. 향후 통역인이 적정한 통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복수의 통역인 선임을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규범 2. 공인사법통역인은 올바른 법정예절 따르고, 절도있게 행동하며 법원간부 및 직원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

### ① 법정의 구성원

해당 조항에서 법정의 구성원이란 재판관·검찰관·변호인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배심원을 포함하여 일컫는 말이다. 법원의 직원이란 정리 및 경비에 해당하는 U.S. MARSHALL(연방보안관) 소속 직원 등을 지칭한다. 해당 조문은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물론 준수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운영되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앞에서 일개 민간인인 통역인이 그 분위기에 위축되어 적정한 통역을 위해 발언해야 할 사항을 무의식적으로 삼가게 되는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법조인의 프로페셔널리즘과 사법통역인의 프로페셔널리즘은 대등하고 평등하다」라는 인식을 의식적으로 자각하면서 통역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법정의 엄숙한 분위기에 대한 존중과 적정통역을 위해 필요한 발언·언동은 모순되는 사항이 아니다.

### ② 통역인의 복장

법정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장도 그 중 하나의 요건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통역인은 여성이 많은 만큼 개인의 취향은 다르겠지만 법정의 분위기에 맞는 복장을 신중하게 갖추어야 한다. 반지나 귀걸이 등 과도한 액세서리나 화려한 복장은 경우에 따라 법정의 존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규범 3. 공인사법통역인은 법원을 욕되게 하는 직업적 행동, 개인적 행동을 피한다.**

### ① 법정의 신용

해당 조항은 막연하여 의미를 알기 어렵지만 사법통역인의 마음가짐으로 통역인도 「사법」을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일원으로서의 자각을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뒤에 게재된 「지위이용금지」(13조)와도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고위층」과 관련된 지위·입장을 고려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위·입장을 이용한 언동을 하려는 자들이 적지 않다. 통역인은

「통역」의 업무 한도에서만 사법에 관련하고 그 이상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

## ② 가족을 위한 통역

일반통역업무를 직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법원에서 사법통역인으로서 임명된 경우 재판 계속 중 또는 공소절차 중에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사설 통역인 선임의뢰를 수락하는 경우가 있다. 구치소에서의 면회는 원칙적으로 회화 내용이 구치소 직원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면회자는 국어로 말하거나 통역인을 동행해야 된다. 또한 가족이 차입을 할 경우에도 말이 통해야 하기 때문에 통역인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법정에서 임명된 사법통역인은 동시에 피고인 가족의 통역업무 의뢰를 수락하거나 피고인 본인 또는 가족으로부터 통역료 및 계약료를 취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정의 신용을 저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 이는 9조의 「직무 외 접촉」 금지업무에도 반하는 사항이다.

**규범 4. 공인사법통역인은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역업무를 수행하면서 얻게 된 법정소송사건에 관한 비밀정보를 발설하지 않는다.**

## ① 수비의무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통역인 선임을 위한 자격시험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비의무 준수의 의무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법정 통역인 편람』에는 「일반적 주의사항」으로써 통역 시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서적 제1장 3의 인용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역인은 재판과정 중에 여러 가지를 알게 되고, 사전에 재판 관계 서류 등을 받아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7쪽).

이는 사법통역 뿐만 아니라 검찰청, 경찰 등 조사단계의 통역업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통역인의 기본윤리이므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 ② 조사협력과 수비의무의 충돌

통역인은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두 당사자의 면회를 중재하고 두 사람의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도구적 존재이다. 물론 회화 중에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며 단순한 잡담수준의 내용도 있을 것이다. 통역인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는 내용이라 하여도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큰 의미를 지니게 될 수 있다.<sup>265)</sup>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재판에서 다루는 내용은 흔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통역인에게는 흥미를 자극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실수로」 제 3자에게 발설해 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통역인의 자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 ③ 수비의무와 프로의식

「수비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통역인에게 당연한 사항이지만 그 전에 사법통역에 관련된 자는 「사법통역인의 역할」을 이해하고 프로로서의 인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통역인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을 중재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언어의 매개체이다. 오가는 말의 내용은 이해하고 있지만 대화 구성원으로서 회화에 참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편지를 허가 없이 읽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내용을 허가 없이 발설해서는 아니 된다.

통역인이 비즈니스 통역을 할 경우에는 의외로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 난해하기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비즈니스의 내용이 외부로 누설

265) 1990년 3월 영국 국적의 홍콩인 3명의 강도치상사건에 대한 神戸地裁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불복 신청으로 공소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사건을 지방재판소에서 담당한 통역인은 조사단계에서 기소 후 통역까지 실시하였으며, 통역인으로서의 수비의무를 부주의하게도 파기해 버렸다. 광둥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피고인과 일본인인 영국영사관 직원이 면회를 할 때 통역인이 동행하였다. 물론 피의자가 말하는 광둥어와 영사관 직원의 일본어를 통역했는데 면회가 끝난 이후 해당 내용을 검찰사무관에게 말하게 되었다. 분명 잡담을 하는 가운데 발설된 것이나 해당 검찰사무관은 그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것이 후일 증거로써 법정에서 제출되었다. 이외에도 1심에서 정확한 통역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포함하여 공소심에서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으로부터 통역인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불복신청이 제기되었다. 또한 大阪高裁에서는 「통역인이 피고인과 영사관 관계자와 실시한 면접의 결과를 조사 측 검찰사무관에게 보고한 사실도 인정된다·통역인의 자세를 암암리에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大阪高判 平 3. 11. 9).

됨으로 인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사법통역은 내용도 삼류소설이나 가십 잡지에서 접하는 내용이고 이해관계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회화 또는 문답 내용을 누설할 경우의 중대함을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통역인 임명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다. 사법통역인의 언어능력 검증제도도 없으며, 어학연구자부터 대학원생, 일반 주부, 유학생에 이르기까지 사법통역 의뢰가 들어온다. 그러나 통역의뢰를 받은 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언어능력, 습득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사람을 심판하는 중요한 장면에 관여하기 때문에 언어의 변환기능 역할을 도맡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는 특히 심리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피고인의 심리, 판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규범 5. 공인사법통역인은 관련 연방법 및 주법에 따른 비밀유지를 위한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통역인은 법원 및 소송당사자에게 소송과 자신의 연관성 또는 소송당사자 및 기타 소송과 깊이 관련된 자와의 관계에 대해 밝혀야 한다.**

① 사건과의 관계

통역인이 사건자체의 피해자이거나 범행에도 일정 정도 관련이 있는 경우는 실제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경우 통역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다음으로 통역인이 피고인의 친족 및 지인이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법원의 관점에서는 외국인의 경우 피고인과 통역인이 혈족관계인 경우라도 이를 모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통역인의 자진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련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리적으로 옹호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언어의 뉘앙스와 번역 내용도 자연히 변하게 되고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된다.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을 조력할 목적으로 통역인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항은 법원에 자진신고를 한 후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다.

## ② 피의자의 조사통역

사법통역인이 기소 전에 조사단계의 통역 및 검찰청에서의 조사를 통역한 경우는 이를 재판소에 자진 신고하여 판단을 구해야 한다. 조사단계의 통역에서는 조사기관의 조사이익을 위하여 통역을 하게 된다. 「조서작성」도 「낭독」도 해당 통역인을 통하여 실시하게 되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통역인이 아니라 조사기관 측의 직원으로 오인 받게 된다. 때문에 통역인은 이러한 사실을 재판소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숙지한 상태에서 사법통역인으로 임명한 경우 통역인의 책무를 충실하게 준수하며 통역하면 된다. 통역인으로서 경찰조사에서 자백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할 경우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내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언어를 충실하게 통역하는 프로 본연의 입장으로 돌아와 통역이 왜곡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통역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통역인의 입장을 오해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소지는 통역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절차의 적정성·공정성의 문제, 법률가의 책임문제이다. 「통역」에 관한 모든 사항이 통역인의 책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③ 변호사의 접견통역

기소 이전에 변호사와 동행한 통역인이 기소 이후 법원통역도 의뢰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사전에 그러한 사정을 법원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사법통역인으로서 접견에 동행하여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통역업무에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며 통역업무만을 생각한다면 큰 지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통역인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변호사와 함께 온 통역인이 유일하게 자신과 말이 통한 자이며 자신이 감추고 있던 생각을 변호사에게 전해 주는 자이다. 변호인이 「조사 시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묵비권을 알려주거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 사실을 말하라」라는 등 변호인과 피고인의 극비 회화에 관여하여 통역을 하는 것이다. 또한 무죄를 다투는 사안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본국송환을 희망한다는 사전교섭을 변호사와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전협의

를 통역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있어서 통역인은 자신의 편에서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십상이다.

피고인이 통역인과 같은 국적이라면 더욱 안심하고 통역인을 신뢰하게 된다. 통역인도 너무나 많은 사정을 파악하게 되어 피고인을 과도하게 동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통역인이 법정에서는 재판관 및 검찰관을 위해 통역을 한다면 피고인은 혼란스럽게 된다.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통역인이 법정에서 돌연 태도를 바꾸었다고 생각하여 당황하는 피고인도 있다.

통역인이 이러한 사항을 자진신고 하였음에도 법원이 굳이 사법통역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통역인은 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립적이고 엄정한 통역에 집중하면 된다.

**규범 6. 공인사법통역인은 본 강령의 준수 방해 또는 타인의 본 강령 위반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 통보할 것을 약속한다.**

① 이름의 개시에 대하여

첫 공판 시 통역인은 충실하게 통역할 것을 선서하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통역인 이름, 주소, 직업을 질문 받는다(인정질문). 대수롭지 않게 대답한 한 통역인은 후일 당시 방청석에 있었던 피고인의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사건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폭력단 관계자일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는 각 재판소도 통역인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하여 「여기에 기재된 사항이 맞는가」 등의 형식으로 재판관이 말하도록 하여 통역인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있다. 실제로 지방재판소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익숙하지 않은 재판관이 무의식중에 「통역인인 ○○○씨 맞는가요. 그럼 선서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이름을 발설한 사례도 있었다. 사전에 재판관·서기관에게 법정에서는 통역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도록 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

② 신변의 안전

통역인은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내막을 잘 알게 되는 입장에 선다. 마약사건 및 조직적 밀항사건 등의 통역을 담당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사정뿐만 아

나라 기타 관계자에 관한 사정도 알게 된다. 사법통역인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심스럽거나 불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법원에 상담해야 한다.

**규범 7. 공인사법통역인은 법적 절차를 숙지하고 절도 있게 행동한다.**

① 절도 있는 행동

「절차의 의의를 숙지한다」는 것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절차의 역할·의미·효과, 재판전체의 의미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조문의 핵심인 「절도 있게」(unobtrusively)에 대하여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참견하지 않는, 주재넘지 않는, 신중하고 조심성이 많은, 겸손하고, 삼가는」이라는 대역에 가깝다.

② 「조연」역할에 철저할 것

「절도 있게 행동」하는 것이란 통역인의 법정 내 태도·동작·복장 등이 유달리 눈에 띄거나 통역의 음성·태도·내용·방법 등이 과도하여 통역인의 존재가 부각되는 상황을 말한다. 통역인은 법정에서는 조연적인 존재이며, 통역도 두드러지지 않도록 하여 통역이 없는 사건과 동일한 절차흐름을 최대한 유사하게 조성해야 한다. 통역인은 자신의 역할을 법정의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규범 8. 공인사법통역인은 개인적 편견, 편파적인 인상을 주지 않고 정확히 충실히 통역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① 입장의 중립성

사법통역인은 변호인을 위한 존재도 아니며 피고인을 위한 존재도 아닐뿐더러 검찰, 법원을 포함한 4자에 대해 통역을 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한 당사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재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토록 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임명된 자이기 때문에 중립과 공정을 준수해야 한다.

통역인은 절차를 시작할 때 법정에서 성실하게 통역할 것을 선서한다. 현재 법

원은 선서 이후에 통역인에게 「성실하게 통역할 것을 맹세하고 통역인으로 선발되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지시를 한다. 피고인 입장에서 이것은 선서절차의 일부에 해당할 뿐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실제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하겠지만 통역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선서야말로 자신이 법원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법통역인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명시하는 중대한 의식이다.

그러나 법원이나 변호인도 의외로 핵심을 간과하고 있다. 현재 통역인의 역할에 대해 피고인이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재판관은 많지 않다. 통역인이 피고인과 변호인, 재판관 사이에서 혼자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사례가 다음에서 언급하는 변호인 접견통역이다.

## ② 변호인 접견통역

현행 운용상으로는 재판의 통역인으로 예정된 자, 이미 사법통역인으로 임명된 이후에 법원은 국선변호인과 동행하여 피고인 접견에서 통역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통역인의 보수는 법원이 경비로써 지불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에 따라서는 통역인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다. 원래 변호인 접견은 사법통역인과는 다른 자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운용개선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변호인 접견 통역인과 사법통역인이 동일인이어도 상관없다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재판절차의 적정성·공정성의 문제이다. 통역인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하는 가는 법률가의 책무이다. 통역의 적정성 문제가 아닌 것이다. 다만 조금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일 피고인이 통역인의 입장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어도 통역인이 피고인에게 임의적으로 「본인은 통역인에 지나지 않는다. 변호인의 편도 법정의 편도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은 삼가는 편이 좋다. 피고인이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역을 하는 데 지장을 준다면 그러한 사정을 관계자에게 설명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통역을 법원이 인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변호인을 위한」 통역인이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를 대신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통역인의 책무와 법률가의 법적절차에 대한 적정·공정성에 관한 책무를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이 통역인 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하겠다.

### ③ 개인감정의 억제

법정에서 오가는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내용인 경우가 많다. 통역을 하면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피고인을 동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통역인에게 분노를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적인 감정을 재판도중은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얼굴이나 태도로 내비쳐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규범 9. 공인사법통역인은 증인, 검사, 피고 및 그 가족, 배심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피해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사법통역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는 동안에는 피고인의 가족과 피고인의 면회를 통역하는 등의 행위는 삼가야 한다. 기타 사건관계자와 업무 외적으로 만나는 행위도 반드시 삼가야 한다.

**규범 10. 공인사법통역인은 어떠한 당사자나 개인에게 조언을 하지 말아야 하며 법정에서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

### ① 피고인에 대한 조언금지

피고인은 우리나라의 재판에 대한 지식이 없으며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판 중에 통역인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경우가 있다. 「나도 말하고 싶은 게 있다」거나 「다음 공판은 언제인가」 등의 내용이다. 또한 집행유예 설명 이후에는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직접 통역인에게 물어오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경험 있는 통역인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로 자신이 판단하여 질문에 대답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통역 전문가로서 관여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 통역인은 언어매개에 있어서의 전문가이다. 사법통역인은 재판관, 변호인, 검찰관과 통역인과의 사이에 대화만을 통역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쌍방의 언어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극

단적으로 당사자가 말하는 내용이 잘못되었다 하여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업무이다. 결코 법률지식을 개인의 견해로써 피고인에게 전해서는 안 된다. 또한 통역 이외의 사항을 의뢰받은 경우에도 분명하게 거절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에게 그러한 질문내용을 통역해 주어 변호인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재판관에게 중재를 부탁하여야 한다.

어느 정도 법정에서 통역경험을 하게 되면 통역인이 담당사건과 형량과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역인이 접견 시 신인 변호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어드바이스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또한 통역인이 자신의 프로로서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법정 내에서 피고인에게 사적인 조언을 하거나 변호인에게 지시하거나 가족에게 재판의 전망을 해설해서는 안 된다. 재판의 통역을 하고 있으면 때로는 공판 종료 후 법정 밖에서 가족이나 관계자가 접촉을 요구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서기관과 상담하여 다른 출구로 퇴정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② 접견 시 주의사항

종종 오랜 경험으로 획득한 법률지식을 이용하여 접견 시 피고인의 질문을 변호인에게 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대답하는 통역인도 있다. 가령 「재판 시기는 언제쯤일 것인가」, 「언제 돌아갈 수 있는가」 등의 질문에 대해 「오버스테이지기 때문에 2주 내에 재판이 끝나고 초범이니까 집행유예가 붙어 강제 송환될 것이다」라고 통역인이 임의로 시나리오를 생각하여 전개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곧 돌아갈 수 있으니 걱정 말라」라고 임의로 통역인을 위로한 경우도 있다. 통역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언어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규범 11.** 공인사법통역인은 당사자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자신의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정확히 명시해야 하며 자신이 책임이 아닌 임무 또는 자신의 능력을 현저히 저해하는 상황의 임무는 거절해야 한다. 통역인은 화자가 한 말의 수준, 모호한 표현, 뉘앙스 등을 가감 없이 전해야 한다. 자신의 한계를 인지

했을 경우 통역 상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하고 모호한 표현이나 익숙하지 않은 어휘에 대해서는 설명을 요청하는 전문가적 자세를 보여야 하며 업무 수행에 있어 어려운 점은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통역인은 자신의 업무수행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법정에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 ① 통역인 사퇴의무

법정방청을 하다 보면 종종 어학능력이 수준미달인 통역인이 통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법통역인 인증제도가 검증제도가 없는 것이 주된 요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현재 법조 3자는 통역인에 대하여 극히 저자세이다. 왜냐하면 외국어를 검증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오히려 통역인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앞으로 사법통역이 제도화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통역인으로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통역인 본인이 자신의 어학능력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복잡하고 민감한 다툼이 있는 사건일 경우 절차가 진행 중일지라도 「사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② 「감정」의 통역

일반적으로 통역을 하는 자는 일정한 어조로 통역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I didn't know it was that serious!” 라고 말했을 경우 일반적인 경우 「그렇게 심각한 일인 줄은 본인도 몰랐습니다」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화자는 그렇게 정중하게 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 보다 통명스러운 어조로 「그렇게 심각한 일인 줄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통역인도 당연히 법정에서 설 경우 긴장하여 자신이 재판관과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가장 잘 다듬어진 말로 표현하려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응답하는 것은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어떠한 어조로 말했는가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본어와 같이 정중어 및 겸양어가 존재하는 언어는 문제가 없으나 영어와 같이 표현이 모두 같은 경우는 말의 수준을 가능한 한 피고인의 것에 충실하게 맞추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 ③ 조리가 맞지 않는 문답

또한 검찰 측의 피고인 질문(반대질문) 시 종종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이 당사자의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부인사건의 피고인들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동문서답을 한다던가 말이 길어져서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다른 각도에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묻는 내용과 다릅니다」라고 피고인에게 충고하는 통역인도 있으나 문답의 앞뒤가 맞지 않아도 그대로 통역하는 것이 통역인의 업무이다.

피고인이 느긋하게 설명, 변명 등을 하면서, 물어온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을 경우 통역인은 좌절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통역인의 질문방법이 나쁘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당사자에게 심어주지는 않을까, 또한 통역을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재판관으로부터 의심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여 통역인 자신이 말을 정리하거나 피고인의 의도를 추측하여 통역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도리어 피고인에게 지시하거나 하여 직접 답변이 되는 부분만을 통역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피해야 할 사항이다.

### ④ 단어의 뉘앙스

어떠한 언어도 상황에 따른 중의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culture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문화」라는 번역이 떠오를 것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배양」이나 「양식」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된다. tissue culture란 「조직배양」이며 「티슈문화」가 아니다. 또한 영단어의 cell도 마찬가지이다. 생물을 말할 경우에는 「세포」를 뜻하며 형무소나 구치소에서 사용할 때는 「독방」이라는 의미가 있다. 또한 dry cell은 「건전지」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법정에서 통역자는 사전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주의해야 실수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애매한 경우에는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라고 다시 물어보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후일 발생할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 ⑤ 정정하는 용기

통역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 통역한 내용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재판관에게 「좀 전의 통역을 정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

## ⑥ 비판을 수용하고 인정할 의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실수를 지적받거나 능력을 점검받는 것을 꺼리게 된다. 그러나 사법통역을 할 경우에는 통역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통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통역을 실시한다는 인식을 상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잘못을 지적받은 경우는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지적이라면 정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⑦ 적절한 통역환경의 유지

적절한 업무(통역)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통역시간이다. 자신의 집중력이 약해졌다는 사실은 통역인이 가장 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우 재판관에게 자신의 한계를 사전에 전달하여 1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휴식을 취할 것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심리중단을 요구해야하는 어색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서기관을 통하여 재판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범 12.** 공인사법통역인은 자신의 공식 통역임무 수행에 대한 승인된 보수를 초과하는 답례품, 선물, 보상,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통역인은 이해충돌 심지어 외견상 이해충돌도 피해야 한다.

사법통역인에게는 담당하는 재판이 끝난 단계에서 법원으로부터 통역료가 지불된다. 물론 그 이외에 피고인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것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규범 13.** 공인사법통역인은 법정에 도움이 되도록 다른 사법통역인과 지식 및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공식 임무를 수행하면서 습득한 지식, 법원기록, 법원시설, 법원출입의 특권 등

을 자신/타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통역인 간 연수 및 트레이닝 세미나 등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통역기술의 개선에 공헌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를 개인적 이익에 이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같은 언어의 통역인 사이에서도 필연적으로 「수준차이」가 발생한다. 상호 간 전문가로서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겸허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험담만을 하며 서로 끌어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규범14. 미국법원의 공인사법통역인은 자발적으로 본 강령을 받아들이고 준수할 것에 동의하고  
의적 위반 시 법원이 제재조치를 부과함을 이해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사법통역인 관련 근거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통역인에게 직업윤리규정을 의무화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사법통역제도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사법통역인의 윤리와 행동강령을 규정한 규범은 연방에서 규정한 규범 이외에도 각 주마다 마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sup>266)</sup>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를 살펴보면 법원 규칙에서 사법통역인 관련 규칙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법통역인의 공정성과 정확성, 그리고 수비의무, 직업윤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이 규칙을 바탕으로 상세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사법통역인들의 교육 자료와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sup>267)</sup>

266) 부록 참조

267)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참조

### 제3절 사법통역인 인증제도 마련

#### 1. 문제상황

##### 가. 법정 통역인제도 도입의 필요성

형사소송에 있어서 사법통역인의 역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외국인 피고인이 법정에서 사용되는 표준언어, 즉 국어를 구사하는 다른 소송당사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소송진행과정을 이해하고 법이 부여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적정절차의 일반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반조항 외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피고인, 피의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외국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최근 한국사회에서의 국내체류 외국인의 비중 확대로 형사절차에서의 사법통역인의 필요와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통역인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법통역관련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법정에서의 통역을 전문으로 하거나 기타 사법관련 기관에 고용된 사법통역인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268)</sup>

따라서 사법통역인의 통역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언어능력의 검증과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법적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나. 국내 사법통역의 현황과 문제점

###### 1) 전문 사법통역인력 부재와 수급의 불균형

최근 외국인인 범죄사건의 증가로 인해 사법통역인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268) 주준희 『미국법정 블루스』 이지북스(2004), 9쪽.

을 위한 충실한 통역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필요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사법통역제도의 실정이다.

예를 들면, 현재 사법통역인들은 대부분이 수도권, 즉 서울과 서울근교에 거주하고 있어 서울권역에서는 사법통역인을 확보하는 것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지방법원들은 통역인 확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sup>269)</sup> 또한 법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각급 법원의 민원안내센터에 통역 인력이 배치된 곳은 전국 고법, 지법, 지원 30여 곳 중 7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역 인력이 있는 7곳의 법원 중에도 전문통역 인력이 확보된 곳은 두 곳에 불과하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sup>270)</sup> 또한 통역인력 배치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여 전문 통역요원이 한 명도 없어 사법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지방법원도 있다고 한다.<sup>271)</sup>

전문사법통역인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는 상황은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 중 “직업통역인 대신 의뢰인의 친구, 친척 혹은 해당 외국어를 아는 검찰·검찰, 법원 직원이 사법통역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각각 21.95%와 70.73%이고 무응답이 7.34%였다.<sup>272)</sup> 사법통역인을 선정하여 임시 고용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기는 하지만, 전체 사법통역 중 22% 즉 약 4분의 1의 통역이 사법통역인이 아닌 해당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경찰, 검찰, 직원 혹은 의뢰인의 친구, 친척이 사법통역을 대신 한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정성과 정확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통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sup>273)</sup> 특히 키르키스탄, 우즈베

269) 김진아, 앞의 논문, 23쪽.

270) <http://economy.hankooki.com/lpage/news/200711/e2007110516265270300.htm>

271) 창원지방법원을 한 예로 든다면 2008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64건의 외국인이 재판을 받은 형사사건 중 중국인 재판(47건), 우즈베키스탄(6건), 베트남(5건), 필리핀(2건), 몽골(2건), 키르키스탄(2건)으로 중국인 재판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위에서 열거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주로 창원인근 대도시 부산지역의 대학교에 요청하여 사법통역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위 국가들의 전문통역인 확보가 매우 필요한 상태라고 하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통번역대학원과 대법원이 체결한 연구용역과제 『국내 사법통역 실태조사 및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개선 방향 모색』

272) 법조인/수사인 대상 설문지 18문항(대법원 용역과제 수행을 위한 설문지 총 55개 문항 중 제18문항)

273) 앞의 주 211 참조

키스탄 등 소수언어인 경우에는 통역인과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친구이거나,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한다.<sup>274)</sup> 제3장에서 살펴본듯이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사법통역인의 윤리강령의 공통된 내용으로 「재판과정 중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재판당사자, 변호사 등과의 사적 교류는 물론이고 이들에게 별도의 선물, 사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사법통역인은 피고, 원고에게 법적 충고를 하거나 이들과 사건에 대해 별도의 대화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sup>275)</sup>, 이러한 식의 통역은 사법통역의 공정성과 중립성 유지를 매우 불투명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금지하고 있다.

## 2) 체계적인 사법통역인 인증시스템 부재

법원의 재판예규 제1040호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sup>276)</sup> 제6조에 보면 각급 법원은 매년 1월 말까지 각 관할지역의 사정에 따라 통역·번역인을 지정할 필요가 많으리라고 예상되는 1개 또는 수 개의 외국어에 관해 2인 이상의 통역·번역인을 미리 선정하여 대상자 명단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7조는 각급 법원은 통역·번역인을 선정할 때 대상자의 통역경력,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내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법통역인의 선임에 있어서 단지 통역경력,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통역인의 선임은 각 기관의 재량(서류심사, 추천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sup>277)</sup> 이러한 상황은 검찰, 경찰의 수사기간에 있어서도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통역인 고용과정과 관련하여 법조인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①사법통역인 선정에 있어 기관내

274) 김진야=정혜연=이상빈, 앞의 논문, 133쪽

275) 우리나라에서도 불충분하기는 하지만 주의사항으로서 이러한 점에 주의할 것을 교육하고 있다. 「형사사법통역인교육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 55쪽.

276) 이 예규의 목적은 예규 총칙 제1조에서 명시하듯이 통역, 번역 등의 절차 및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형사피고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277)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형사항소과에서 사법통역인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이고 각 법원에 따라 운영·관리상황은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부기준 유무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내부기준이 있다와 없다가 각각 44%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②기관내부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험을 통한 방식이 아닌 통번역 기관의 추천서와 통번역인이 제출한 이력서 등을 통해 내부에서 통번역인을 결정한다는 비율이 55%를 넘었고, 나머지는 무응답이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대부분의 사법통역인은 선발은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선발기준 없이 추천서와 이력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sup>278)</sup> 이와 같이 사법통역인으로서의 능력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선임되는 사법통역인은 사법통역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부정확한 통역을 할 위험성이 높고, 이는 곧바로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의 문제와 직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 3) 사법통역인의 전문성 결여

현재 사법통역사로 등록되어 있거나 일하고 있는 사법통역인 대부분은 사법통역인에게 요구되는 법적 지식이나 직업윤리 등에 관한 교육경험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sup>279)</sup> 이와 같이 사법통역인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상태로 수사 및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조사한 설문내용 결과를 참조하자면 사법통역인들에게 사법통역의 가장 어려운 점을 주어진 항목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해 법률지식을 갖추지 못한 것을 최대의 어려움으로 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법률에 관한 전문 용어, 사건에 대한 사전지식과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라고 답하였다.<sup>280)</sup>

278) 현재 해당기관(고법, 지법, 지원)에서 사법통역인을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 우선 해당기관에서 통·번역인을 필요로 할 때에 통번역을 교육하는 교육기관 등에 사법통역인 모집공고를 내거나, 홈페이지 등에 모집공고를 내어 이력서와 통역경력을 보고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279) 현재 사법통역을 담당하는 통역인들은 크게 4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하여 통번역 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와 통번역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동남아시아어 등 특수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줄 아는 대학생이고, 세 번째 부류는 평소 사법통역에 관심이 많아 외국어를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을 구사할 줄 아는 사람들,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한국어를 잘 구사할 줄 아는 외국인들이다. 이들 중 첫 번째 부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통번역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경험이 없다. 김진아=정혜연=이상빈, 앞의 논문, 135쪽.

280) 사법통번역인용 설문지 제19항 사법통역의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진아=정혜연=이상빈, 앞의 논문, 135쪽.

본 연구진이 수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사법통역시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용어들이 어렵다’, ‘적절한 법률용어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법정용어에 대해 공부할 교육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법정통역을 실습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등 법률교육의 기회 부족을 문제점<sup>281)</sup>으로 지적하였다.<sup>282)</sup> 또한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재판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설문에 응한 법조인의 약 36%가 통역인의 부적절한 통역을 1순위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약 31%), 문화상의 차이(19%) 순이었다.<sup>283)</sup>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사법통역인들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전문 사법통역인에 대한 모든 제도가 미비되어 있고 심지어 문제에 대한 인식조차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사법통역인 인증제도의 도입과 운영·관리와 관련한 방안 마련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 2. 외국의 사법통역인 교육 및 인증제도 - 미국을 중심으로

### 가. 미국의 법정 통역인 인증제도

#### 1) 법정 통역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

미국 "White Paper on Court Interpretation: Fundamental to Access to Justice"에 의하면 사법통역은 고도로 전문화되고 매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고도로 전문화된 법률용어와 절차 그리고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

281) 통역할 내용에 대한 배경지식의 유무가 통역의 질을 좌우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단순히 외국어만 구사할 줄 아는 사람과 외국어뿐 아니라, 통역할 분야의 내용을 잘 아는 전문가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전자보다는 후자의 통역의 질이 더 높을 것이다.

282) 부록 설문조사 참조.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법정통역인, 검찰청에 등록되어 있는 법정통역인, 경찰청에 등록되어 있는 법정통역인, 그 외 법정통역 유경험자(국내외 포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283) 김진아=정혜연=이상빈, 앞의 논문, 135쪽.

화적인 맥락에 대해 익숙할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법통역인의 역량은 화자가 사용하는 구어체 표현이나 말하는 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단어의 의미와 그가 설명하는 스타일을 다른 언어로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에 의존하게 된다고 하면서 사법통역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통역인은 ①법률 용어에서부터 비속어까지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양쪽 언어에 능통해야 하며 ②세 가지 형태의 통역 즉, 동시통역, 순차통역, 시각통역이 모두 가능하여야 하며,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해석해서 말할 수 있는 잘 훈련된 단기기억력이 필요하다. 또 특정 상황에서 위의 세 유형 중 어느 유형의 통역이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요한다. ③통역인은 인종적·전문적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동시에 실제 법정에서 이러한 기준들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sup>284)</sup>

## 2) 사법통역인 시험

사법통역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것처럼 경력과 성실성 등과 같은 모호한 기준을 가진 선발 기준방식을 벗어나 객관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선발방식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나 호주 등과 같이 사법통역인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제도와 더불어 시험에 통과한 통역인들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법통역인 인증제도 도입여부에 대해 사법통역인과 법조인/수사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법통역인과 법조인/수사인의 응답이 [표9]에서처럼 ‘그렇다’가 각각 56%와 44%로, ‘보통이다’가 각각 18%와 11%, ‘보통이다’가 각각 18%와 11%, ‘그렇지 않다’가 각각 25%와 22%로 나왔다.<sup>285)</sup> 본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법통역인 인증제도의 필요유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대답한 경우가 전체 67명 중 32명으로 약 48%의 다수 의견을 차지하였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18명으로 약 27%에 그쳤다.<sup>286)</sup>

284) "White Paper on Court Interpretation: Fundamental to Access to Justice", p. 6.

285) 김진아=정혜연=이상빈, 앞의 논문, 139쪽.

표 10 사법통번역사 시험인증제 도입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사법통번역인	56%	18.18%	25.46%
법조인/수사인	44%	11.11%	22.22%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법통역인과 법조인/수사인 모두가 높은 비율로 사법통번역사의 시험인증제 도입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은 1978년 법정통역사법(Court Interpreter Acts, 28, U.S.C. 1827)을 제정한 이후 법정통역사 인증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은 사법통역인 인증을 두 가지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연방차원의 인증제도, 다른 하나는 주가 운영하는 제도로 50개 주별로 각기 다른 제도가 존재한다. 현재 연방에서 자격을 인증 받을 수 있는 언어로는 스페인어가 유일하다. 미국은 주마다 자격증을 제도화하는 언어가 각기 다른데 이는 해당 주의 사용 언어 인구분포에 따라 달라진다.<sup>287)</sup>

표 11 미국의 연방 및 주의 사법통역인 자격시험 인증제도 비교

인증기관	언어	합격점수
연방공인통역인 시험	스페인어	80%
미국사법통역인협회 (40개 주)	아랍어, 아랍-이집트 방언, 광둥어, 보스니아/크로아티아어/세르비아어, 불어, 아이티 크레올어, 몽족어, Ilocano(필리핀어의 일종), 한구어, 라오스어, 북경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소말리아어, 스페인어, 터키어, 베트남어,	70%
캘리포니아	위의 목록 + 미주 동부 원주민어, 미주 서부 원주민어, 일본어, 타갈로그어	80%

\* Bromberg, J. and Jesionowski, I. Trends in court interpreter training, <http://site.interpretereducationonline.com/wp-content/uploads/2010/08/Trends-in-court-interpreter-training.pdf> (2010, p. 36)

286) 부록 참조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법정통역인, 검찰청에 등록되어 있는 법정통역인, 경찰청에 등록되어 있는 법정통역인, 그 외 법정통역 유경험자(국내외 포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287) 미켈슨 교수 녹취록 2 참조

자격을 갖춘 사법통역인을 확보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사법통역인으로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유창한가를 파악하는 것인데,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표10]은 연방시험, 미국통역사협회가 주관하는 시험, 캘리포니아주의 시험 과목을 각각 비교한 표이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연방 인증통역인 시험(스페인어통역)은 80점 이상 되어야 합격할 수 있다.<sup>288)</sup> 또한 미국사법통역인 협회(the Consortium for State Court Interpreter Certification)는 오래전부터 회원인 주(州)들이 통역인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을 개발해왔는데, 동 협회는 구두시험에서 실제로 법정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유형의 통역방식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있다. 동 협회는 13개 국어(스페인어, 광둥어(Cantonese), 크레올 영어(Haitian Creole), Hmong, 한국어, Laotian, 러시아어, 베트남어, 아랍어, 북경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와 소말리아어)에 대해서 18가지 평가수단을 만들었다. 미국 사법통역인 협회가 주관하는 시험의 경우, 시험과목은 한국어를 포함하여 아랍어, 북경어, 광둥어,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어, 불어, 아이티 크레올어, 라오스어, 소말리아어, 러시아어, 폴란드어, 터키어, 베트남어 등이며 합격점은 70점이다.<sup>289)</sup> 오래된 데이터기는 하지만 2002년의 경우를 예로 살펴보면 연방사법통역인 시험 합격률은 22%를 기록했다. 언어별로 합격률에 있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뉴저지 지역 사법통역인 동시통역 시험의 경우 2%~29%를 기록하고 있다.<sup>290)</sup> 현재의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미켈슨 교수와의 자문에 의하면 현재에도 시험합격률은 이전과 큰 변화가 없다고 한다. 현재 동 협회의 회원은 40개 주이며, 이들 회원 주들은 협회가 제공하는 시험에 대한 자료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sup>291)</sup>

288) Bromberg and Jesionowski, *ibid*, p. 36.

289) Bromberg, J. and Jesionowski, I. Trends in court interpreter training. <http://site.interpretereducationonline.com/wp-content/uploads/2010/08/Trends-in-court-interpreter-training.pdf> (2010, p. 36)

290) Bromberg and Jesionowski, *ibid*, p. 36.

291) 최근에 또 다른 통역사 단체인 전국사법통역인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Judiciary Interpreters and Translators)가 회원들을 위한 구두시험을 만들었으며, 미국법원통역인자격시험운영위원회(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 Interpreter Certification Examination) 역시 구두 및 문서시험으로 구성된 시험제도를 가지고 있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사법통역인협회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자체적인 시험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캘리포니아 주는 1979년 통역인 자격시험을 최초로 도입한 주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주정부 인사국(Corporate Personnel Services)에서 매년 두 번에 걸쳐 사법통역인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캘리포니아 주 사법통역인 시험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 통역인에 지원하는 경우 한국어 100문제와 영어 100문제로 구성된 서면 시험을 각각 70%이상으로 통과해야 한다. 한국어는 동의어 20문제, 반의어 20문제, 문법 20문제, 독해 20문제, 해석 20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 시험은 동의어 20문제, 반의어 20문제, 문법 20문제, 독해 20문제, 그리고 “통역인 윤리”에 대한 문제가 각각 15문제씩 출제된다. 단어는 SAT수준이고, 문법은 TOEFL수준이며, 독해는 SAT와 GRE의 중간쯤 된다고 한다.

서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이어서 구두시험을 치르게 된다. 구두시험은 순차통역(Consecutive Interpretation), 한영 문서통역(Korean into English Sight Translation), 영한 문서통역(English into Korean Sight Translation), 그리고 동시통역(Simultaneous interpretation)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차통역은 법정에서 하는 상황을 재현하는 것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것을 끝까지 들은 후 통역하는 것이다. 10분 정도 계속 된다. 어느 정도 법률 용어를 배우고 연습해야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노트 테이킹을 잘하고, 끝나자마자 매끄럽게 통역하여야 하며, 말을 지우거나 반복하지 않고, “어, 음”같은 추임새를 넣지 않고, 정확하게 통역인답게 통역하는지를 평가한다.

한영 문서번역은 한국말로 된 한 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1분 동안 읽고 4분 동안 통역하는 것이다. 주로 “사기란 무엇인가?”처럼, 법적으로 정의를 한다든지, 검사에게 어떤 피고에 대한 전과내용을 문의하는 편지라든지 하는 것들이 출제된다. 법적 용어 및 표현을 잘 알아야 통과할 수 있다.

영한 문서 번역은 주로 경찰조서, 기소장 같은 한 페이지 분량의 영문을 1분 동안 읽고 4분 동안 통역하는 것이다. 영한 문서 번역 시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속도다.

맨 마지막 관문은 동시통역이다. 3분 동안 주로 판사가 소답(訴答)변경에 의한 의견서나 결정문을 1분에 150단어 정도로 빨리 읽는 것을 동시통역해야 한다. 시

협관 한사람과 독대하여 녹음테이프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통역하면 이것이 테이프에 녹음된다. 녹음된 결과물을 두 명의 시험관이 듣고 채점하게 된다. 5점이면 최고이고, 4점이면 패스, 3점이면 떨어지게 된다.<sup>292)</sup>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제외한 시험의 합격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sup>293)</sup> 제한인원은 없으면 시험만 통과하면 선발된다.<sup>294)</sup>

미국의 경우 연방 시험이 훨씬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방자격획득자는 대부분의 주에서 주 사법통역을 허가하고 있으나, 주마다 각기 다른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추후 교육여부, 배경조사, 주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참가 요구 등이 그것이다.<sup>295)</sup>

위에서 미국의 인증시험제도를 살펴보았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인증시험을 도입할 경우 어떻게 시험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약 65%의 사법통역사들이 인증시험 형태에 대해서는 실기 혹은 필기 한 가지 형태보다는 실기와 필기를 함께 보는 것을 택하였다. 법조인들의 설문 결과는 필기와 실기를 함께 선호한 비율이 약 56% 무응답이 44.44%였다(표 11참조).<sup>296)</sup>

표 12 인증시험형태 조사에 대한 설문결과

	필기	실기	필기/실기	기타 혹은 무응답
사법통번역인	7.41%	5.56%	64.81%	1.85%
법조인/수사인	0%	0%	55.56%	44.44%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에서의 인증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나뉘게 되며 필기시험은 해당 외국어에 대한 독해, 어휘, 문법을 보고, 구술시험은 순차통

292) 주준희, 『미국법정블루스』 이지북스(2004), 171-173쪽.

293) 5, 444명의 응시생중 1,310명만이 협회의 기준을 통과하였다. 그중에서 1,197명이 스페인어이고 60명이 러시아어, 24명이 크레올 영어(Haitian Creole), 6명이 북경어와 포르투갈어, 5명이 베트남어, 4명이 몽족어(Hmong-베트남의 소수민족 어), 세 명이 아랍어와 한국어, 두 명이 프랑스어였다. "White Paper on Court Interpretation: Fundamental to Access to Justice", pp. 7-8 참조

294) 녹취록 1 참조

295) 녹취록 2 참조

296) 김진아=정혜연=이상빈, 앞의 논문, 140쪽.

역, 동시통역, 증인 심문 등 주로 언어능력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언어능력뿐 아니라 법률용어 및 절차, 모의재판(mock trial)과 순차통역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향후 인증 시험을 도입하여 실시할 경우 이들 국가의 제도를 참조하여 우리 현실에 알맞게 시험형태와 과목 등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297)</sup>

### 3) 사법통역인 시험 주관 기관의 문제

미국의 경우 사법통역인 시험 초창기에는 전문통역인의 참여 없이 스페인어과 교수와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시험을 주관하고 감독하였다. 그 결과 그 당시 시험은 검증의 질이 현저하게 낮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최초로 통역인 시험을 만들었던 애리조나 대학의 경우, 시험과 더불어 자격증 프로그램을 함께 주관했었다. 그러자 그곳으로 학생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연방 법원이 불공정성을 이유로 입찰을 통해 별도의 시험전문 인증기관에 시험 관리를 위탁하게 되었다. 이후 시험은 시험전문 인증기관에서 주관하고 애리조나 대학은 통역사 교육 프로그램만 운영하게 되었다. 해당 입찰기관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인증기관 입찰자가 등장하게 된다. 이때 입찰 대상자는 물론 전문성이 입증된 기관이어야 한다. 현재는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라는 주법원의 국가 센터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sup>298)</sup> 이러한 미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법통역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켈슨 교수는 만약 인증시험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전문시험인증 기관이 주축이 되어 시험을 운영할 것을 추천하였다. 그는 행정부 등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전문시험인증기관이 주축이 되고 법조계, 학계, 통역인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주도하게 된다면 통역사 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려고 할 것이고, 통역인 협회나 통번역대학원 등에 맡길 경우에는 공급과잉으로 임금저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격자 수를 제한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미

297) 앞의 논문, 140쪽.

298) 녹취록 2 참조

국의 경험과 전문가의 제언을 고려할 때, 통역사 인증시험은 시험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험인증기관이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sup>299)</sup>

#### 4) 사법통역인의 의무

미국의 각 주는 능력을 갖춘 사법통역인을 선발하는 것 못지않게 사법통역인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법통역인의 직업윤리와 그 역할』<sup>300)</su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사법통역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통역하여야 하며 통역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유지하고 법적 조언을 삼가야 하며 소송당사자 혹은 법조인에 대하여 직업적 무관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확성 - 사법통역인은 자신이 가진 고도의 기술과 판단력을 풀어서 말하거나 생략하거나 편집하는 일 없이 정확하게 통역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공정성 - 사법통역인은 말은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판사와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를 밝혀야 한다. 통역인의 객관성을 해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이해갈등에 해당한다. 만약 통역인이 증인 혹은 소송당사자의 지인이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 혹은 통역인이 소송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 통역인은 편향성, 편견, 또는 불공정하게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기밀 - 사법통역인은 권리로서 보장된 변호사와 고객사이의 대화내용을 폭로하여서는 안 된다. 사법통역인은 절차 진행 중 사건의 본안에 대한 언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299) 녹취록 2 참조

300) 『Professional Ethics and the Role of the Court Interpreter 3d Edition』 캘리포니아주 법원 내부자료

법적 조언 - 사법통역인은 당사자 혹은 증인에게 법적조언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추천할 수 없다.

직업적 관계 - 사법통역인은 법원 공무원, 당사자, 증인, 그리고 변호사들과 직업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법정 통역인은 직업적 무관심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사법통역인 제도 운용 자금 확보

어떠한 제도든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해당분야의 임금수준이 낮다면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가진 통역인을 확보한다고 한들 그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의 경우 사법통역인들 보수는 지난 20년 동안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해왔다. 이는 각 주마다 이민자가 늘어 통역 수요가 증가하면서 임금수준도 함께 상승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원에 지정된 예산을 통역부분으로 돌려 통역예산을 확보하기도 한다. 사법통역 백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금확보와 관련된 권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 자금관련 권고사항 〉

8. 주 법원은 사법통역인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비용과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지불할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 입법기관과 협력·교육하여야 한다.
9. 주 법원은 사법통역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10. 주 법원과 국립 주 법원 센터(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는 주 사법통역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5년간 연간 1천 5백만 달러를 승인하도록 2007년 2월 Kohi 상원의원이 소개한 S 702 계획 즉 “법정 통역인

인가 프로그램 법”과 같은 사법통역인 계획을 지원을 위한 연방정부 등의 자금을 입수하려는 노력을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

11. 모든 주 및 외국 사법기구와 국제파트너십을 맺는 전략을 포함하여, 협회가 미래에도 존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기적인 자금지원과 거버넌스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법원행정처 회의(the Conference of State Court Administrators)의 대표자들은 국립 주 법원 센터(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와 협회의 대표들과 교류하여야 한다.<sup>301)</sup>

#### 6) 사법통역인 인력 활용

미국의 사법통역인은 크게 고정 통역인과 프리랜서 통역인으로 나뉜다. 사법통역인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주마다 각각 다른데 연방수준에서는 스페인어 부문만 연방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일정 일수를 주를 위해 주법원에서 근무할 경우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에 대해서도 주공무원으로 인정해주는 유연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sup>302)</sup> LA 카운티의 경우, 만약 한 명의 파트타임 공무원이 필요하다면 경력이 오래된 통역사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sup>303)</sup>

캘리포니아 중앙지법의 경우 사법통역인 관리 규정에 따르면 사법통역인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다.

- ① 통역 직원: 이들은 공무원이며 정규직이고 급료를 받는 재판연구관(clerk)의 피고용인인, 그리고 법관회의의 권위를 따르는 무기한 법원에 봉사하는 연방에서 자격을 인증한 스페인어 통역인들이다.
- ② 자격인증을 받은 계약직 통역인: 이들은 필요할 때마다 법원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로 연방차원에서 자격을 인증한 스페인어, 나바호어(Navajo), 크레올(Haitian Creole) 통역인들이다. 그들은 일급계약에 근거해서 일하며, 미연방

301) "White Paper on Court Interpretation: Fundamental to Access to Justice", p. 24

302) 녹취록 2 참조

303) 녹취록 1 참조

법원행정처가 중심이 되어 관리하는 기금으로부터 급료를 지급 받는다. 미국변호사협회, 교정국, CJA<sup>304)</sup>에 의해 지명된 자문회의 또는 기타 기관과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급료는 번역사와 존경받는 기구 혹은 개인에 의해 직접 처리되어진다.

- ③ 기타 자격을 갖춘 계약직 통역인 : 이들은 연방 자격인증 프로그램이 없는 언어의 통역인들이다. 그들은 일급수여노동계약으로 일하며 위에서 언급한 중점적으로 관리되는 기금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다. 미국변호사협회, 교정국, CJA에 의해 지명된 자문회의 또는 기타 기관과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급료는 번역사와 관련 기구 혹은 개인에 의해 직접 처리되어진다.<sup>305)</sup>

LA 카운티의 경우, 인원이 필요할 경우 풀타임으로 고용하는데 풀타임 고정직 종사자는 4명, 파트타임 고정직 종사자는 2명이다. 나머지 인원은 퍼디엠(per diem: 일급수여노동)으로 일하는데 다른 일도 겸업하는 경우가 20명 정도 있다. 즉 LA 카운티의 경우 풀타임으로 LA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일할 수도 있고 공무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프리랜서 업무와 겸업할 수도 있다. LA 카운티의 경우 노조가 존재하여 수년에 한 차례씩 급여협상을 통해 급여가 산정되고 있다. 공무원인 통역인의 경우 연봉제이나 급여산정방식이 여타 공무원과는 다르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공무원이 하루에 받는 급여를 계산하여 하프데이와 풀데일로 나누어 급여를 공무원과 유사하게 산정하고 있다.<sup>306)</sup>

## 7) 사법통역인의 보수

사법통역인의 보수에 대해 캘리포니아 중앙지법 사법통역인 관리 규정을 살펴보면, 통역 서비스 요금은 미국 법원행정처의 장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리고 인상되지 않는 한 효력이 그대로 지속된다. 사법통역인의 보수는 1일 8시간을 기준으

304) The Center for Justice & Accountability (<http://www.cja.org>)

305) Court Interpreter Management Plan,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p.6

306) 녹취록 1참조

로 하여 산정된다. 4시간 이하는 서비스에 따라 반일근무(half-day) 보수를 지급 받으며, 4시간을 초과한 하루 8시간 이하 서비스에 대해서는 종일 비용이 지급된다. 초과/시간당 수당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주중 8사건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오후 시간만 일하는 경우, 종일 수당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실제로 일한 시간에 더하여 정식으로 인가 받은 4시간을 초과하는 출장에 한해서만 초과/시간당 수당의 적용을 받는다. 만약 통역인이 소정의 양식을 갖춘 청구서와 영수증을 제출한다면, 출장비용 이외에 출장 시간과 초과 통역서비스 시간에 대한 보수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법원은 청구서 제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sup>307)</sup>

#### 8) 사법통역인 세부관리 규정 명문화

미국의 경우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사법통역인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매우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캘리포니아 사법통역인 관리 규정을 살펴보면 사법통역인의 유형, 정직원 통역인의 휴가 및 병가, 외부고용, 계약직 통역인의 경우 계약조건, 통역 요금 지급 기준, 보수지급절차, 업무분배,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계약 종료시점, 업무 기준, 복장규정, 재임용규정, 통행증 발급, 통역인을 위한 시설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sup>308)</sup>

#### 9) 통역인 명단의 인터넷 공개 및 타 기관에 대한 추천

본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사법통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법통역인의 지위나 보수 및 처우와 관련해서 개선되기 바라는 점을 적어달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통역인들이 보수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지만 몇몇 통역인들은 경력증명에 관하여 불만을 표명하였다. ‘증명서나 신분증을 발급해 달라.’, ‘통역인으로 활동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통역인으로서 다른 기업, 또는 기관에서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 증명서 발급을

307) Court Interpreter Management Plan, pp. 8-9.

308) Court Interpreter Management Plan, pp. 6-17.

통해 사법통역인으로서 일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란다.’와 같이 자격이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서를 발급하거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력증명서 발급제도 등이 도입되었으면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sup>309)</sup>

이와 관련해서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법 사법통역인 관리 규정을 살펴보면 사법통역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통역서비스 부서가 이러한 종류의 증명서 및 추천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사법통역인 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법통역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어 전국 어디에서나 전자장비 혹은 전화 등의 수단을 통해서 실력 있는 통역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sup>310)</sup>

“통역 서비스 부서는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통역인 중 이를 필요로 하는 법률 사무소, 정부 기관 및 통역을 필요로 하는 사인(私人)과 사적 기관에게 통역인을 공급한다. 법원의 지역 통역인 명부는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화통역 기능은 법원의 실질적인 언어 통역인 풀을 타 연방 관할권에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sup>311)</sup>

### 11) 재교육 및 검증 시스템 구축

인간의 언어는 역동적이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때문에 통역을 담당하는 통역인은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거나 자격검증을 받을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통역인을 위한 연수교육프로그램은 각 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1년에 하루, 그것도 반나절의 강의나 강연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이에 비해 미국의 13개 주에서는 통역인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선발시험과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사법통역인을 포함한 모든 전문가들은 2년에 3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통역사 재교육 이수는 법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개인이 따로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다.<sup>312)</sup> 또한 미국의 13개 주에서는 통역인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선발시험과

309) 부록 사법통역인 설문조사 참고

310) Court Interpreter Management Plan, p. 17

311) Court Interpreter Management Plan, p. 17

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오레곤 주의 경우 자격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전문적 언어 통역 10학점 포함 25학점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텔러웨이 주의 경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3년에 걸쳐 윤리부터 법정예절까지 12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sup>313)</sup>

또한 이러한 정기적인 제도적 검증도 중요하겠지만 사법통역인들의 경우 대중적인 변화이건 법조계, 법원직원, 범죄자 등 특수집단에 의한 것이건, 언어용례의 최신 변화를 따라가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통역기술 그 자체도 지속적인 연마를 요하는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속적인 교육은 통역인의 직업 활동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각 법원별로 사후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앞서 비교법적 고찰에서 본 홍콩과 같이 법원별 연수 프로그램 외에도 대학을 포함한 다른 연수 기관과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홍콩의 경우, 지식관리 워크숍, 사법통역인을 위한 직업영어, 사법통역인의 전문성에 관한 세미나, 북경사법대학 직업북경어 강좌, 북경어와 상하이어 간담회, 관리기술과 스트레스 관리법 워크숍 등 사후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sup>314)</sup>

미국의 경우 사법통역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은 통역인들이 조직한 단체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의 경우 지역단위, 주단위, 국가단위로 통역인 협회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협회는 연례회의, 정기회의,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모임은 전문용어, 사전제작 및 배포, 교육 목적의 견학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등을 이용한 원격 교육 역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White Paper on Court Interpretation: Fundamental to Access to Justice"의 사법통역인 프로그램 관련 권고 사항 13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12) 녹취록 1 참조

313) "White Paper on Court Interpretation: Fundamental to Access to Justice", p. 11.

314) LC Paper No. CB(2)1592/03-04(01), *ibid.* 홍콩의 경우 파트타임 통역인들도 새로 임용되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법원조직과 절차, 근무원칙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홍콩 법원조직, 통역인과 증인 선서문, 죄명과 변론서 샘플, 선고유형, 자주 사용하는 법률용어, 노동 재판소 용어집, 그리고 통역인 기본편람 1부를 교부 받는다. 비교법적 연구 홍콩 부분 참조

## 〈사법통역인 프로그램 관련 권고 사항 13〉

13. 국립 주 법원 센터(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또는 협회는 법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 혹은 고등교육기관과 협력하는 파트너십 둘 중 하나를 통해, 특히 스페인어 이외 언어의 통역인 실력향상훈련을 위한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장려하여야 한다.<sup>315)</sup>

## 3. 제언

사법통역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변환시키는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 지식,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통역인 자격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없어 통역인의 수준이 균질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법통역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자격인증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국가시험 혹은 이와 유사한 실질적인 시험이 시행 된다면 사법통역의 질도 향상 될 것이며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한 통역료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사법통역인 자격인증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난제들을 풀어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증시험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미국의 경우 연방과 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지만 연방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는 다르게 사법통역인 시험은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시험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정 대학이나 기관에 위탁을 주지 말고 각계의 사법통역분야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시험문제를 공동 출제하게 함으로써 인증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국가기관의 하나가 주축이 되어 통역실무에 종사하는 사법통역인, 법학교수 및 법전문가, 외국어 전공교수들이 공동 참여하는 형식을 갖추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또한, 시험은 매년 실시해서 인력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사법통역인을 전체적으로 통괄할 수 있는

315) "White Paper on Court Interpretation: Fundamental to Access to Justice", p.24

기관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기관을 새로 만든다는 것을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미국의 경우처럼 한 기관이 맡아서 법원행정처가 시험을 주관하고 운영하여 전국단위의 시험을 통해 통역인을 선발한 후 통역인 명부를 만들어 각 기관에 배포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를 공개하여 통역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쉽게 자격을 갖춘 통역인 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인증된 사법통역인을 경찰, 검찰, 공히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홈페이지 상에 통역사 풀을 게시할 때에는 지역별, 전문 영역별로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통역사를 분류,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수사단계, 재판단계, 더 나아가서는 형 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특화된 사법통역인의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 제4절 소 결

다문화, 다언어, 다인종 사회국가들은 그 필요성을 일찍부터 깨닫고 사법통역인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체류 외국인의 수와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 예외가 아니다.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서로 생활하고 부딪치다보니 갈등도 생기고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다. 이에 따라 이제 사법통역인에 대한 수요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정된 사법통역인의 확보는 현재로서는 요원하기만 하다.

이에 따라 최근 통역인의 선정 및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sup>316)</sup>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통역인은 몇 %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통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축어적으로 치환할 뿐이거나 혹은 말만 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통역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관계자들 사이에서의 「어떻게든 통역만 되면 상관없다, 일상회화만 가능하면 그것만으로 족하다<sup>317)</sup>」 라는 분위기 속에서 통역을 하는 경우도 있다.

316) 최근 특수강도와 폭행, 강도상해 등의 전력이 있는 자가 통역인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가 되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6/2012101600977.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6/2012101600977.html)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사법통역제도 관련 근거법률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sup>318)</sup>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사법통역의 특성상 요구되는 전문적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법률용어의 이해와 사법통역인의 역할과 윤리에 대한 훈련이 요구되는 사법통역인으로서의 전문성은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sup>319)</sup>

효과적인 사법통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법통역인으로서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언어 능력과 함께 소송절차에 조력하는 공적 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과 소양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법통역인의 통역능력과 전문가적 자질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에 관한 법률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재판부, 검사, 피고인, 증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사법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사법정의의 실현과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법통역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통역인이 사법통역 전문가로서 고도의 언어적 능력을 갖추고 사법통역인으로서의 윤리, 행동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능력을 갖춘 사법통역인을 인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의 사법통역인 법과 실무에서 사용하는 규칙 및 윤리행동강령 등은 우리나라의 사법통역제도의 입법화에 있어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최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발효되어 법이 규정하는 국민참여 재판에 대해서는 배심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형사소송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과 국내체류외국인의 증가로 인하여 형사절차에서의 사법통역인의 필요와

317) 水野·논문참조(注83) 155頁

318)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에서의 통역을 전문으로 하거나 기타 사법관련 기관에 고용된 사법통역인이 전문한 실정이며, 현재 국내 법정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법통역 서비스는 해당 관청에서 국내 통번역인 양성 교육기관에 통역인 명단을 공문 요청하여 통번역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통역인 명단을 확보한 후, 사법통역 필요시 확보된 명단을 토대로 통역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사법통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의뢰인 측인 해당 관청에서 제시하는 통역료가 현실적인 통역료와는 괴리가 있어, 법률용어와 재판절차 등 사법통역의 경협이 있는 우수한 통역인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통번역 대학원 재학생들을 고용하여 사법통역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김진아 「사법통역의 실태와 향후 과제」 『통번역학연구』 제11권 2호(2008), 27쪽 참조

319) 200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중 “법원에 통역인이 없어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2007년 10월 1일 국회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을 위한 사법서비스가 열악하고, 사법통역인으로 지정한 통역인원도 전문인력이 아니고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상황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원 직원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news/200711/e2007110516265270300.htm>)

역할의 중요성이 한층 더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법통역인의 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 그리고 통역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언어능력의 검증시스템 마련은 한국 사법제도에서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I. 국내 문헌

### (1) 단행본

- 김한식=주진국=정정림 『외국인을 위한 수사·공판서류 번역 및 통역 실태 조사 연구』 대검찰청, 2008.
- 곽중철 윤희. 『법률통번역 입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1988.
- 백형구=박일환=김희옥 『주석 형사소송법 (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 오영근 『형법총론』 2002.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제2판』 2010.
- 이재상 『형법총론 (第6新版)』 박영사, 2010.
- 장규원, 『독일 행형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사, 2001.
- 주준희, 『미국 법정 블루스』 이지북스, 2004.
- 사법연수원 『국제형사법』 사법연수원출판부, 2011.
- 법원행정처 『법정통역인 편람』 2012.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사법통역인교육자료』 2006.

## (2) 논문

- 고귀영 「국내체류 외국인의 범죄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고영민 「대화통역의 이론적 특징과 대화통역인 양성방안」 세종대 박사학위논문, 2004.
- 김운곤 「외국인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 『법학논집』, 2001.
- 김정애 「일본의 사법 통번역 교육 :오사카대학 사법 통번역 교육에 대한 고찰」 『통번역학연구』 제13권 2호, 2010.
- 김진아 「사법통역의 실태와 향후 과제」 『통번역학연구』 11권 2호, 2008.
- 김진아=정혜연=이상빈 「전문사법통역인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그에 따른 대책」 『통번역학연구』 제12권 2호, 2009.
- 김진아=정혜연=이상빈 「국내 사법통역 실태조사 및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개선 방향 모색」 서울: 법원행정처.
- 이균용 「동경지방법원의 외국인형사사건처리 매뉴얼-우리나라의외국인형사사건의 합리적 처리방안의 모색」 『법조』 48권 3호, 1999.
- 이지은 「사법인들과 통역인들의 사법통역 규범에 관한 인식 연구」 『번역학연구』 제12권 제3호, 2011.
- 조희철 「일본 사법통역의 현황과 과제」 『통번역학연구』 제13권 1호, 2009.
- 최철 「사법통역의 법적 의의와 제도화에 관한 고찰-미국 판례와 적정절차의 원칙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제12권 2호』, 2009.
- 허일태 「형사실체법 정비를 위한 근본적 고찰」 『형사정책』 제18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6.

## (3) 판례

대판 1966.12.27. 66도1535, 집14(3)형 094.

대법원 2008.1.18. 선고 2007도9327 판결

#### (4) 통계자료

경찰청 『경찰백서』 2012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0  
 법무부 『법무연감』 2012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2

#### (5) 기타 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통역인 교육자료』 2006.  
 정구현 “한인 사법통역인, 민사 편중 형사재판 기피”, 중앙일보, 2006.8.4.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 대학원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에 의뢰한 설문조사  
 「한국사법통역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2007.  
 “난민신청 4년 지나 ‘불허’통지…알고 보니 엉터리 통역 때문”경향신문, 2011.6.15.  
 “한국어 서툰 통역 거친 합의서 ‘무효’ ”, 뉴시스, 2012.4.16.  
 난민인권센터 포스팅 2012.5.7, “통역, 그 언어의 벽을 넘어”  
<http://news.donga.com/3/all/20120416/45547928/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6/2012101600977.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6/2012101600977.html)

## II. 국외문헌

### 1. 일본

#### (1) 단행본

大谷實 『刑事政策講義 新版』 弘文堂, 2009.  
 木村龜二 『刑法の基本概念』 有斐閣, 1957.  
 正木亮 『刑事政策汎論』 有斐閣, 1940.  
 宮澤浩一 『演習刑事政策』 青林書院新社, 1972.  
 森下忠 『刑事政策大綱(新版)』 成文堂, 1993.

- 藤本哲也『刑事政策概論(全訂第6版)』青林書院, 2010.
- 藤本英雄『刑事政策』日本評論社, 1968.
- 渡辺修=水野真木子=長尾ひろみ『司法通訳—Q&Aで学ぶ通訳現場』松柏社, 2004.
- 渡辺修=水野真木子=中村幸子『実践 司法通訳 [裁判員裁判編] シナリオで学ぶ法廷通訳』現代人文社, 2010.
- 松本弘=梶谷百合子『法廷通訳—司法に関する通訳の展望』国際通訳, 2003.
- 橋内武=堀田秀吾『法と言語—法言語学へのいざない』くろしお出版, 2012.
- ムロヤマサフミ『韓国語(司法通訳)ハンドブック』明日香出版社, 2008.

## (2) 논문

- 入江猛「捜査官が通訳人を同行せずに外国人の居宅に対して捜査差押手続を行ったことにつき, 違法はないとされた事例」研修601号, 1998.
- 植村立郎「通訳を巡る若干の問題」中山善房判事退官記念『刑事裁判の理論と実務』成文堂, 1998.
- 江橋崇「裁判を受ける権利と通訳を求める権利—コモンロー諸国における捜査通訳、法廷通訳」『法学志林』1990.
- 呉満「外国人刑事事件の司法通訳の現状と問題点」『刑法雑誌』33巻4号, 1994.
- 角山照彦「法廷通訳の問題点と教育プログラム」『修道法学』1995.
- 後藤昭=白鳥祐司編『新・コンメンタール刑事訴訟法』日本評論社, 2010.
- 酒巻匡『アメリカにおける法廷通訳の現状』ジュリスト(No. 1043), 1994.
- 田中康代「〈判例研究〉法廷通訳の正確性等が争われた事例」『The journal of law & politics』1998.
- 田中康朗「外国人事件における正確な法廷通訳の実践と適正な訴訟運営」中山善房判事退官記念『刑事裁判の理論と実務』成文堂, 1998.
- 田中恵葉「外国人事件と刑事司法: 通訳を受ける権利と司法通訳人に関する一考察」『北大法学研究科ジュニア・リサーチ・ジャーナル』2006.
- 水野真木子「歴史の中の外国人関連事件と通訳」『The journal of Senri Kinran University』2005.

- 水野かほる 「適正な通訳が保障されるために : 司法通訳人に対するグループ・インタビューから」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omparative culture』 2(2), 2004.
- 水野真木子 「法廷通訳人の介在による発言の変化と裁判員の心証への影響 : Filler, backtracking, rephrasingを中心に」 『Treatises and studies by the Faculty of Kinjo Gakuin College』 2011.
- 水野真木子・中村幸子 「要通訳裁判員裁判における法廷通訳人の疲労とストレスについて」 『金城学院大学論集 社会科学編』 7(1), 2010.
- 水谷規男 「国際人権法と外国人刑事事件」 刑法雑誌33巻4号(1994)
- 長尾ひろみ 「タイ人女性による殺人事件 : 法廷通訳人の実態(特集)異文化とジェンダー」 『Women's studies forum』 19巻, 2005.
- 明木茂夫 「法廷通訳における二人合議制について : その翻訳論的考察」 『Cultural science』 13(1), 2001.
- 灘光洋子 「〈研究論文〉法廷通訳人が直面する問題点 : 文化的差異をどう捉えるか」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ies』 13, 2001.
- 小林裕子 「司法通訳人の任務の諸相 : 司法通訳人の適格性を担保するために」 『明海大学外国語学部論集』 24, 2012.
- 長尾ひろみ 「司法通訳の難しさ--人権を守るために言葉の障壁をどう越えるか(特集 レトリックの力-世界を捉え、生気を吹き込み、説得する)」 『言語』 38(3), 2009.
- 長尾ひろみ 「基調講演 司法通訳の現状と課題 (京都産業大学法学部開設40周年記念シンポジウム記録 京産大法学部の挑戦-専門職プログラムは何をめざすか)-(司法外国語プログラムは何をめざすか)」 『産大法学』 41(4), 2008.
- 松本時夫 「通訳の法的性格について」 芝原邦爾, 西田典之, 井上正仁 編 『松尾浩也先生古稀祝賀論文集 下巻』 有斐閣, 1998.
- 毛利雅子 「司法通訳人の役割-法廷通訳における言語等価性との関連において」 『日本大学大学院総合社会情報研究科紀要』 (8), 2008.
- 毛利雅子 「司法通訳における言語等価性維持の可能性-起訴状英語訳の試み」 日本大学大学院総合社会情報研究科紀要(7), 2007.
- 吉田理加=毛利雅子=津田守他 「活動報告」 日本通訳学会 コミュニティ通訳分科会ミニシ

- ンポジウム:司法通訳・翻訳の正確性について」『通訳研究』(7), 2007.
- 王平「司法通訳の現状と課題」『愛知産業大学短期大学紀要』(17), 2004.
- 吉田理加・毛利雅子・津田守他「日本通訳学会; コミュニティ通訳分科会第7回大会シンポジウム記録: 司法通訳にとっての等価性とは-正確な通訳の可能性と限界」『通訳研究』(7), 2007.
- 西松鈴美「司法通訳翻訳人訓練の方法論-大阪外国語大学大学院での実践」『通訳研究』(3), 2003.
- 長尾ひろみ=境分万純「インタビュー・ロー・ジャーナル 聖和大学助教授、日本司法通訳人協会会長 長尾ひろみ氏 司法通訳人の公的制度を目指す立法の実現をめざす」『法学セミナ』45(10), 2000.
- 長尾ひろみ「ある冤罪(可能性)刑事事件に見る司法通訳人の役割」『聖和大学論集人文学系』(28), 2000.
- 水野真木子「高度専門分野の通訳について(2) 精神鑑定の鑑定証人尋問」『Journal of Japan Judicial Interpreters' Association』(13), 1999.
- 長尾ひろみ「法廷通訳人の倫理規定(7)アメリカとの比較」『Journal of Japan Judicial Interpreters' Association』(11), 1998.
- 水野真木子「日本における外国人の人権と言葉の壁-刑事事件における司法通訳問題を中心とした一考察(含 合衆国法廷の公認通訳人の職責規約(多文化主義と人権)」『立命館大学人文科学研究紀要』(64), 1996.
- 水野真木子「司法通訳資格認定制度の可能性について」『ジュリスト』(1078), 1995.
- 中村幸子「裁判員裁判制度における外国人刑事事件と通訳-法廷通訳に期待される役割と現実」『人間文化』(26), 2011.
- 吉田理加「法廷談話実践と法廷通訳-語用とメタ語用の織り成すテキスト」『社会言語科学』13(2), 2011.
- 柳田正豪「日本における法廷通訳人(1)の現状に関する考察-模擬裁判を通して」『沖縄キリスト教短期大学紀要』(39), 2011.
- 糸魚川美樹「法廷通訳に求められる正確性のかたられかた(情報弱者のかかえる諸問題の発見とメディアの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のための基礎研究)」『社会言語学』2011.

- 毛利雅子「日本人証人尋問における法廷通訳-その課題と対応策」『日本英語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会紀要』19(1), 2010.
- 毛利雅子「法廷通訳と言語等価性-被告人質問の検証」『日本大学大学院総合社会情報研究科紀要』(10), 2010.
- 糸魚川美樹「法廷通訳に求められる正確性のかたられかた」『社会言語学』(10), 2010.
- 吉田理加「法廷通訳における異文化の壁(特集 裁判ことばの言語学-実用の学としての法言語学の射程)」『言語』38(9), 2009.
- 金光旭「KEY WORD 法廷通訳」『法学教室』(342), 2009.
- 津田守「裁判員裁判導入と法廷通訳翻訳の在り方-法廷通訳人の視座からの考察と提言(特集 裁判員裁判の実施に向けて-準備状況の現段階と残された課題)」『法律時報』81(1), 2009.
- 毛利雅子「司法通訳人の役割-法廷通訳における言語等価性との関連において」『日本大学大学院総合社会情報研究科紀要』(8), 2008.
- 福永清貴「民事訴訟手続における法廷通訳人の中立性-通訳人の行為規範定立に向けて」『愛知学院大学論叢 法学研究』48(3), 2007.
- 吉田理加「法廷相互行為を通訳する-法廷通訳人の役割再考」『通訳研究』(7), 2007.
- 大山貞雄「実践報告 裁判及び弁護活動からみた法廷通訳(日本通訳学会コミュニティー通訳分科会第8回例会特別講演)」『通訳研究』(6), 2006.
- 長尾ひろみ「法廷通訳人のプロフェッショナルリズム--職業倫理」『リ-ガル・エイド研究』(11), 2005.
- 池田和彦「外国人と裁判-法廷通訳の目をとおして(特集 外国人と法)」『月報 司法書士』(385), 2004.
- 川田剛「アングル法廷通訳」『国際税務』21(9), 2001.
- 長尾ひろみ「日本の法廷通訳の難しさ」『聖和大学論集 人文学系』(26), 1998.
- 菅正治「傍聴席から見た法廷通訳人」『Journal of Japan Judicial Interpreters' Association』(11), 1998.
- 木村雄二「松山"道後事件"を考える--外国人支援NGOから見た法廷通訳人問題」『Journal of Japan Judicial Interpreters' Association』(11), 1998.
- 藤永幸治=中山善房編『大コンメンタール刑事訴訟法2巻』2004

長尾ひろみ 「法廷通訳人から見た外国人事件の現状と課題」 『自由と正義』 48(10), 1997.

長尾ひろみ 「刑事裁判における法廷通訳」 『聖和大学論集 人文学系』 (24), 1996.

渡邊忠嗣＝堀籠幸男 「刑事裁判手続における涉外関係上の諸問題」 司法研究報告書30輯2号, 1981.

### (3) 판례

浦和地裁 1990.10.12. 判例時報1376号.

浦和地裁 1990. 10. 12. 707号, 782号.

大阪高判 1991.11.19. 判時1436号.

大阪高判 1991. 11. 19. 判例時報 1436号.

大阪高決 1952. 1. 22. 高刑集5卷3号.

大阪高判 1991. 11. 9.

大阪地裁 1983.1. 28. 5460号, 5952号.

大阪地判 1995. 11. 20. 判例集未登載

最判 1959. 2. 6. 刑集13卷1号.

最判 1955. 2. 15. 刑集9卷2号.

最高裁 1957. 10. 29. 1195号.

高松高判 1998. 3. 3. 高刑速

大判 1966. 12. 27. 66도1535, 집14(3)형 094.

朝鮮高等法院判 1936. 9. 17. 法律学說判例全集25卷下刑訴.

東京高判 1996. 7. 16. 高刑集49卷2号.

東京高判 1992. 4. 8. 判時1434号.

東京高判 1992. 4. 8. 判例時報1434号.

東京高裁 1992. 4. 7. 942号.

東京高判 1996. 7. 16. 判時1591号.

東京高判 1994. 11. 1. 判時1546号.

東京高判 2003. 12. 2東高時報54卷1-12号.

東京高判 1991. 5. 23. 外国人犯罪裁判例集  
 東京高判 1994. 11. 1. 判例時報 1546号.  
 東京高判 1992. 4. 8. 判例時報 1434号.

## 라. 통계자료

『犯罪白書(平成23年度)』法務総合研究所, 2011.  
 『警察白書』警察庁, 2001.

## 2. 미국

### (1) 단행본

Antonin Scalia, A Matter of Interpretation: Federal Courts and the Law,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Charles Alan Wright, Victor James Gold, 『Federal Practice and Procedure - Federal Rules of Evidence』, Chapter 7. Witnesses, Rule 604. Interpreters, 1990.

Commonwealth Attorney General' s Department, Access to Interpreters in the Australian Legal System, .Canberra: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1991.

Dunnigan, T. and Downing, B. T. Legal interpreting on trial: A case study. M. Morris (ed.), Translation and the Law,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1995.

Elena M. de Jongh, "Court Interpreting: Linguistic Presence v. Linguistic Absence".

The Florida Bar Journal, July/August, 2008 Volume 82, No. 7.

Gaiba, F., The Origins of Simultaneous Interpretation: The Nuremberg trial, Ottawa, University of Ottawa Press, 1998.

Golzanlez Roseann, Victoria and Holly Mikkelson, Fundamentals of Court

- Interpretation, Theory, Policy and Practice, Durham North Carolina, Carolina Academic Press, 1991.
- Hale, S., Interpreter Policies, Practices, and Protocols in Australian Courts and Tribunals: National Survey, Melbourne: The Australian Institute of Judicial Administration Inc., 2011.
- Hewitt, W., Court interpretation: Model guides for policy and practice in the state courts, Williamsburg, VA: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1995.
- Jacobs, F. and White, 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xford: Clarendon Press, 1996.
- Kathy Laster and Veronica Taylor, "The Compromised "Conduit": Conflicting Perceptions Of Legal Interpreters" , 『Multiculturalism and the Law』 , 1995.
- Mathers, C. M., Sign Language Interpreters in Court: Using Best Practices, Bloomington: Authorhouse, 2007.
- Mikkelson H., Introduction to Court Interpreting, Manchester, U.K. St. Jerome, 2000.
- Mikkelson H., The Court Interpreter as Guarantor of Defendant Rights, European Congress on Court Interpreting and Legal Translation, Austria, Nov. 1998, published by FIT, 1999.
- Morris M, et. Al. (eds), Translation and the Law, American Translators Association Scholarly Monograph Series VIII,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995.
- SWM Broeks v Netherlands, Communication No 172/1984. Laster, K. and Taylor, V., Interpreters and the Legal System. Leichhardt: The Federation Press, 1994.

## (2) 논문

- Charles M. Grabau\*, Llewellyn Joseph Gibbons\*\*, Protecting the Rights of Linguistic Minorities: Challenges to Court Interpretation.
- Choi Chul, “A Study on 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for Court Interpreters and its Legal Implication” , 통번역학연구 제14권 2호, 2011.
- Driesen, C., The interpreter’s job: a blow-by-blow account. In Picken, C. (ed.), ITI Conference 2. Interpreters Mean Business. London: Aslib London, 1988.
- Erik Hertog, “Legal interpreting : recommendations for best practices” , 통번역학연구 제12권 2호, 2009.
- Gonzalez R. D., Vasquez, V. and Mikkelson, H. Fundamentals of court interpretations: Theory, policy and practice. Durham: Carolina Academic Press, 1991.
- Helen E. Reagan, “Considering in Litigating a Civil Case With Non-English Speaking Clients” , 65 Am. Jur. Trials 1, 1997.
- Hale, S., The Discourse of Court Interpreting,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2004. Hale, S., Court interpreting: The need to raise the bar: Court interpreters as specialized experts. In M. Coulthard and A. Johnson(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Forensic Linguistics, London/New York: Routledge, 2010.
- Hale, S. and Stern, L., Interpreter quality and working conditions: comparing Australian and international courts of justice, Judicial Officers’ Bulletin, Vol. 23 No. 9, 2011.
- Helmerich, C., Court interpreting: The U.S. v EU a brief comparison of our realities. H. Keijzer-Lambooy and W. J. Gsille (eds.), Aequilibrium: Instruments for lifting language barriers in intercultural legal settings, ITV Hogeschool, 2005.

- Hertog, E. and van Gucht, J., Status Questionis: Questionnaire on the provision of legal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in the EU, Antwerp/Oxford/Portland: Intersentia, 2008.
- Holly Mikkelson, "Court Interpreting at a Crossroads", Originally presented at the 1999 Annual Conference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Judiciary Interpreters and Translators(NAJIT), May, 1999.
- Holly Mikkelson, "Towards a Redefinition of the Role of the Court Interpreter", Originally published in *Interpreting*, Vol. 3(1) 1998.
- Holly Mikkelson, The Court Interpreter as Guarantor of Defendant Rights Originally presented at the First European Congress on Court Interpreting and Legal Translation, Graz, Austria, November 1998, published by FIT, 1999.
- Holly Mikkelson, Verbatim Interpretation: an Oxymoron, Originally submitted but not accepted for publication in 1999.
- Jacobsen, B., Pragmatic meaning in court interpreting: An empirical study of additions in consecutively interpreted question-answer dialogues. Aarhus School of Business, Department of English, 미출판 박사학위 논문, 2003.
- Keijzer-Lambooy, H. and Gasille, W. J., Introduction. From Aequitas to Aequalitas to Aequilibrium: Lifting language barriers in intercultural legal proceedings (AGIS project JAI/2003/AGIS/048). H. Keijzer-Lambooy and W. J. Gsille (eds.), *Aequilibrium. Instruments for Lifting Language Barriers in Intercultural Legal Settings*, 2004.
- Lee, Jieun, A Case Study of an Untrained Interpreter's Court Interpreting, 번역학연구 제11권 제1호, 2010.
- Michael B. Shulman, "No Hablo Inglés: Court Interpretation as a Major Obstacle to Fairness for Non-English Speaking Defendants", 46 VAND. L. REV. 175, 178(1993); BILL PIATT, ¿ONLY ENGLISH? 28, 1990.
- Mikkelson, H. and Mintz, H., Orientation workshops for interpreters of all

- languages: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ideal world and reality. Carr, S., Roberts, R., Dufour, A., and Steyn, D. (eds.), *The Critical Link: Interpreters in the community*, Amsterdam: John Benjamins, 1997.
- Official English: Federal Limits on Efforts to Curtail Bilingual Service in the States, 100 HARV. L. REV. 1345, 1987.
- Supreme Court of Queensland. *Equal treatment benchbook*, 2005.
- Queensland Government, *Multicultural Queensland: Making a world of difference policy (incorporating language services policy)*, 2004.
- Williamson B. C. Chang & Manuel U. "Araujo, Interpreters for the Defense: Due Process for the Non-English-Speaking Defendant", 63 CALIF. L. REV. 801, 1975.

### (3) 판례

#### 미국

- Arizona v. Natividad, 111 Ariz. 191, 194, 526 P.2d 730, 733 (1974).
- Choi v. State, 497 S.E.2d 563 (Ga. 1998).
- Denton v. State, 945 S.W.2d 793(Tenn. Crim. Appl. 1996).
- People v. Best, 580 N.Y.S.2d 55 (1992).
- People v Carreon, 198 Cak, Rptr. 843, 854-55 (Ct. App. 1984).
- People v Braley, 870 P.2d 410 (Colo. App. 1993).
- People v. Chavez, 124 Cal. App. 3d 215, 177 Cal Rptr. 306 (Cal. App. Dist.1, 1981).
- People v. Mata Aguilar, 35 Cal. 3d 785, 787, 793 n.10, 677 P.2d 1198(Cal. 1984).
- People v. Rioz 161 Cal. App. 3d 910.
- People v. Braley, 879 P.2d 410 (Colo. 1993).
- State v. Burris, 643, P.2d 8. 14 (Ariz. App. 1988).

- State v. Mendoza, 891 P.2d 939 (Ariz. App. Div. 1 1995).
- State v. Puente-Gomez, 827 P.2d 715 (Idaho App. 1992).
- Texas v. Jose Moises Guzman 1987.5.8. 텍사스 형사항소법원(No. 69,615).
- United States v. Armijo, 5 F.3d 1229, 1235 (9thCir.1993).
- United States v. Cirrincion, 780 F.2d 620, 633,634(7thCir.1985).
- United States v. Da Silva, 725 F. 2d 828(2nd Cir. 1983).
- United States v. Dempsey 830 F.2d 1088(10thCir.1987).
- United States v. Perez 651 F.2d 268 (5thCir,1981).
- United States v. Tapia631 F2d 1207.
- United States v. Taren-Palma, 997 F2d 525, 532 (9thCir.1993).
- United States exrel. Negron v. New York, 434 F. 2d 386.
- United s v. Lewis, 142 U.S. 370 (1892).
- United States v. Lopez 937 F. 2d 716.
- United States v. Koskerides, 877 F. 2d 1129.
- United States v. Manoel Rodrigues Da Silva, 725 F.2d 828.
- U.S. v. Biagio Cirrincion and Tom Cirrinione 1985.12.11. 연방제7항소법원(Nos 84-2812).

## 호주

- Assafiri and Cimopoulos 1993: 3; Singh v Minister for Immigration Ethnic Affairs 1987 15 FCR 4.
- Brar v Canada (Solicitor General) 1990 43 ALR 44.
- Dairy Farmers Co-operative Milk Co. Ltd, V Acquilina 1963 109 CLR 458 at 464; Filios v Morland 1963 S.R. (NSW) 331.
- Filios v. Morland 1963 SR (NSW) 331 at 334 per ElseMitchelle J.
- Filios v. Morland 1963 SR (NSW) 331.
- Filios v. Morland 1963 63 SR (NSW) 331 at 332.
- Galea v Galea, The Hon Justice P W Young and M W Young, Legal Language 64 ALJ 1990 761 at 775.
- Gradidge v Grace Bros Pty Ltd 1988 93 FLR 414.

- Gradidge v Grace Bros Pty Ltd 1988 93 FLR 414 at 423-116.
- Krstic v. Australian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1988 16 ALD 751, 754 per Woodward J.
- People v. Aranda, 186 Cal. App.3d 230, 236, Cal. Rptr. 498, 501, 2d Dist. 1986.
- Raymond Keith Johnson 1986 25 A Crim R 433 at 435 per Shepherdson J.
- R v. Johnson 1986 25 ACR 433.
- R v. Lee Kun 1916 1 KB at 341.
- R v Reale 1973, Weber and Minister for Manpower and Immigration 1976 69 DLR (3d) 473.
- State v. Mitjans, 408 N.W.2d 831, 832, Minn. 1987.
- State v. Her, 510 N.W.2d 222, 223, Minn. 1994.
- Tejeda-Mata v Immigration and Naturalisation Service 626 F 2d 721 1980.
- United States v Polanco-gomez 841 F 2d 235, 1988.

#### (4) 자료

-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Courts, Recommended Guidelines for the Use of Deaf Intermediary Interpreters, March 2011.
- Bisgaard, O. and Martinsen, B.R., Tolkebestand i retssager. Ugeskrift for Retsvæsen (the Danish weekly law reports), no. 45, 11 November 2000.
- Bromberg, J. and Jesionowski, I. Trends in court interpreter training, June 2010.
- California Courts, Trial Court Interpreters Program Expenditure Report for Fiscal Year 2010-2011, February 2012.
- Conference of State Court Administrators, White Paper On Court Interpretation: Fundamental To Access To Justice, Adopted November 2007.
- Consolidation Act(Lovbekendtgørelse), No. 181, 25 March 1988, as amended by Act (Lov) No. 936, 27 December 1991.
- Government Code, Title 2, Subtitle D, Chapter 57, Administered by the Texas

- Department of Licensing and Regulation, 2011.
-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2010 Language Need and Interpreter Use Study: Report to the Legislature, August 2010.
-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California's Assessment of the Consortium for Language Access in the Courts' Exams, April 2010.
-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Study of California's Court Interpreter Certification and Registration Testing, November 2007.
-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Fiscal Year 2009-2010 Trial Court Interpreters Program Expenditure Report, December 2010.
- Kundgörelse (Proclamation) I, No. 11 of 12 January 1994.
- LC Paper No. CB(2)1592/03-04(01) Panel on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Legal Services Performance of Court Interpreters April 2003.
- Lee, J., Interpreting inexplicit language during courtroom examination, Applied Linguistics, Vol. 30 No. 1, 2009.
- Martinsen, B. and Rasmussen, K. W., Court interpreting in a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Europe April 2002.
-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Study of Court Interpreter Services in Civil Cases in California, September 2008.
- Stern, L., What can domestic courts learn from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about good practice in interpreting? From the Australian War Crimes Prosecutions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I Review, Vol. 2, 2012.
- William E. Hewitt, Paula Hannaford, Catherine Gill, Melissa Cantrell, Court Interpreting Services In State And Federal Courts: Reasons And Options For Inter-Court Coordination, Final Report October 30, 1998.

##### (5) 기타 자료

- Arizona Minority Judges Caucus, Interpreter Issues Committee, State Of Arizona, Access To The Courts Interpreter Need And Practice Study and Recommendations 2001-2002.

- Court Interpreter Management Plan,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 Court Interpreter Services, U.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Orientation for Contract Court Interpreters, Initial Appearance, Before a United States Magistrate Judge.
- Consortium For State Court Interpreter Certification, Agreements for Consortium Organization and Operation - Amended February 12, 2005.
- Dietrich v R (1993) 109 ALR 385, per Mason CJ and McHugh J. Laster, K. and Taylor, V., *ibid*.
- Equal Access To The Courts For Linguistic Minorities - Final Report of the New Jersey Supreme Court Task Force.
-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Court Interpretation In Protection Order Hearings.
- 『Professional Ethics and the Role of the Court Interpreter 3d Edition』 캘리포니아주 법원 내부자료.
- The Migration Act 1958 (Cth) s 132(7), the Defence Force Discipline Act 1982 (Cth) s 101H(6), Social Security Act 1991 (Cth) s 1265(6) 등.
- The Crimes (Family Violence) Act 1987, Crimes (Custody and Investigation) Act 1988,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89, Magistrates Court Act 1989.
- Turner, B., Lai, M., and Huang, N., Error deduction and descriptors - A comparison of two methods of translation test assessment, **Translation & Interpreting**, Vol. 2 No. 1.
- Young 1990: 761, Laster and Taylor 1994: 77 재인용).
- Federal Court Interpreters Act, 28 U. S. C. § 1827(1988)
- 28 USC § 1828 - Special interpretation services.
- <http://www.cacd.uscourts.gov>
- <http://conventions.coe.int/treaty/en/treaties/html/005.htm>
- <http://economy.hankooki.com/lpage/news/200711/e2007110516265270300.htm>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0-746\\_en.htm?locale=en](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0-746_en.htm?locale=en)

[http://www.ncsconline.org/D\\_Research/publications.html](http://www.ncsconline.org/D_Research/publications.html)  
<http://pure.au.dk/portal/files/32327758/0001559.pdf>  
<http://site.interpretereducationonline.com/wp-content/uploads/2010/08/Trends-in-court-interpreter-training.pdf>  
<http://www.acebo.com/papers/VERBATIM.HTM>  
<http://www.acebo.com/papers/ROLINTRP.HTM>  
<http://www.acebo.com/papers/CROSSR.HTM>  
[http://www.azcourts.gov/Portals/74/Interpreter/2001\\_Committee\\_Report.pdf](http://www.azcourts.gov/Portals/74/Interpreter/2001_Committee_Report.pdf)  
[http://www.courts.qld.gov.au/The\\_Equal\\_Treatment\\_Bench\\_Book/S-ETBB.pdf](http://www.courts.qld.gov.au/The_Equal_Treatment_Bench_Book/S-ETBB.pdf)  
[http://www.crc.nsw.gov.au/\\_data/assets/pdf\\_file/0018/10575/Schedule\\_of\\_fees\\_12.pdf](http://www.crc.nsw.gov.au/_data/assets/pdf_file/0018/10575/Schedule_of_fees_12.pdf)  
[http://www.crc.nsw.gov.au/services/language\\_services](http://www.crc.nsw.gov.au/services/language_services)  
[http://www.immi.gov.au/living-in-australia/help-with-english/help\\_with\\_translating/service-charges.htm](http://www.immi.gov.au/living-in-australia/help-with-english/help_with_translating/service-charges.htm)  
<http://www.judiciary.state.nj.us/interpreters/inttfex.htm>  
<http://www.legislation.gov.hk/eng/home.htm>  
<http://www.legalintrans.info>  
<http://www.license.state.tx.us/court/lcilaw090111.pdf>  
<http://www.license.state.tx.us/court/lcirules.htm>  
[http://www.multicultural.qld.gov.au/media/maq\\_making\\_world\\_difference\\_policy.pdf](http://www.multicultural.qld.gov.au/media/maq_making_world_difference_policy.pdf)  
<http://www.naati.com.au>  
<http://www.naati.com.au/booklets.html>  
<http://www.nesl.edu/userfiles/file/lawreview/vol30-2-GRABAU.HTM>  
<http://www.legalaidreform.org/news/item/398-eu-wide-right-to-information-at-arrest-is-now-law>  
<http://www.legalaidreform.org/news/item/451-legislation-watch-new-directive-on-the-rights-of-victims-of-crime-adopted-by-the-european-parliament>  
[http://www.ncsconline.org/D\\_Research/CourtInterp.html](http://www.ncsconline.org/D_Research/CourtInterp.html)

##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Judiciary Interpreting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N, SUNG-HOON · Lee, Ji-eun

### **1. Aims of Research**

In recent years, Korea has seen increasing number of migrant workers and migrant brides. One may safely argue that Korea is no longer an ethnically homogeneous society and it is turning into a multicultural, multiethnic, and multilingual society. It is therefore quite natural that foreign residents in Korea may come into contact with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courts, and more and more foreigners may be involved in crimes including illegal stay, driving without license, fraud, arson, robbery, assault, bogus marriage, and illegal employment, and some of them eventually face trials. The trials of Somali pirates in 2011 and 2012 also indicate that Korean courts may handle crimes occurring in open sea areas. With the rise of crimes and trials involving foreigners, there is an obvious need for interpreting services for non-Korean speaking criminal suspects and defendants and non-Korean speaking witnesses and for officers of courts. Procedural law-related issues need to be considered

when foreigners are involved in criminal cases, but interpreting is also a matter of significance because provision of judiciary interpreting, in particular, interpreting during court procedures, can guarantee the very basic rights of defendants, namely their rights to say what they have to say and to have access to trial procedure.

Due process, which recognises that a person's dignity and values, as well as criminal suspects' and defendants' human rights should be guaranteed and protected by the state in the criminal procedure, is fundamental to all stages of criminal litigation. If interpreting services are not provided to foreigners who lack understanding of the language used in the criminal procedure or the quality of interpreting services is less than adequate, their basic human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re infringed upon and they cannot defend themselves on an equal footing, all of which hampers the course of criminal justice. Therefore, for foreigners who do not understand Korean or have limited Korean ability, effective interpreting services should be provided throughout the criminal procedure, and the legal groundwork for the provision of interpreting should be in place. As things stand now, however, the judiciary interpreting system and interpreting services in Korea are far from satisfactory, and relevant legal systems need to be revamped and brought up to date.

Previous research has largely 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legal interpreter training and accreditation. The scope of the current research is not limited to court interpreting and covers the whole criminal procedure. This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ways for foreign criminal defendants to fully exercise their legal rights to defend themselves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legal institutions such as courts, defence lawyers and other participants in the proceedings, and it seeks to suggest practical policie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legal interpreting service system.

## **2. Scope of Research and Methodology**

This study seeks to investigate problems in the current system of judiciary interpreting provided during the judicial process, with a focus on criminal procedure, and offer ways to address them.

Following an Introduction, Chapter 2 discusses the backgrounds to this research by examining the statistics of crimes involving foreigners and the increase in demand for legal interpreting and the significance and rationale for the judiciary interpreting system. Chapter 3 deals with legal interpreting systems of other coun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Chapter 4 examines the role of legal interpreting in criminal procedure ranging from investigation to trials, and discusses problems that might arise from the interpreting process. Finally, Chapter 5 sums up the discussion in the preceding chapters and examines methods to improve the current legal interpreting system.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review of literature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legal interpreting and draws on the comparative legal aspects of legal interpreting, and is also based on interviews and surveys of interpreters, researchers and legal professionals home and abroad. By taking advantage of such diverse research methods, it seeks to thoroughly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legal interpreting services and identify problems with a view to providing more effective and reasonable recommendations.

## **3. Increasing Crimes Involving Foreign Nationals and Growing Demand for Legal Interpreting**

With the increase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the number of crimes involving foreigners has also risen. Since police and prosecution offices as well as courts often handle cases involving foreigners, they need to be

prepared to cope with such cases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foreigners accused of criminal acts accordingly. This is necessary if Korea is to establish a legal system fitting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case of investigation and trials where suspects or defendants are non-Korean speaking foreigners, the language barriers may cause difficulties for legal professional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work. Given that effective communication is a precondition for crime investigation and trials, and that legal interpreting is not only necessary for effective communication but also important in criminal procedures, the demand for legal interpreting is bound to increase even further in the future.

#### 4. Significance of the Judiciary Interpreting System

##### A. Definition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f judiciary interpreting, but it refers to interpreting required in all legal procedures, criminal and civil. In this study, the term judiciary interpreting is used interchangeably with legal interpreting, and it mainly refers to interpreting related to criminal cases. Judiciary interpreting is therefore defined as interpreting services that aim to eliminate communication difficulties which may arise from differences of languages used by defendants and by representatives of legal institutions such as courts, police and prosecution, cells and detention facilities, and probation offices.

A literature review reveals that various terms such as judiciary interpreting, court interpreting, and legal interpreting are in use. The term 'court interpreting' is used most frequently, perhaps because interpreting during courtroom trials has drawn the most attention. However, court interpreting is just one area of legal interpreting, and the scope of judiciary interpreting is not confined to courtrooms. The Korean term, *sabeoptongyeok* is considered to be most

appropriate in that it covers a wide range of interpreting from police investigation to trials and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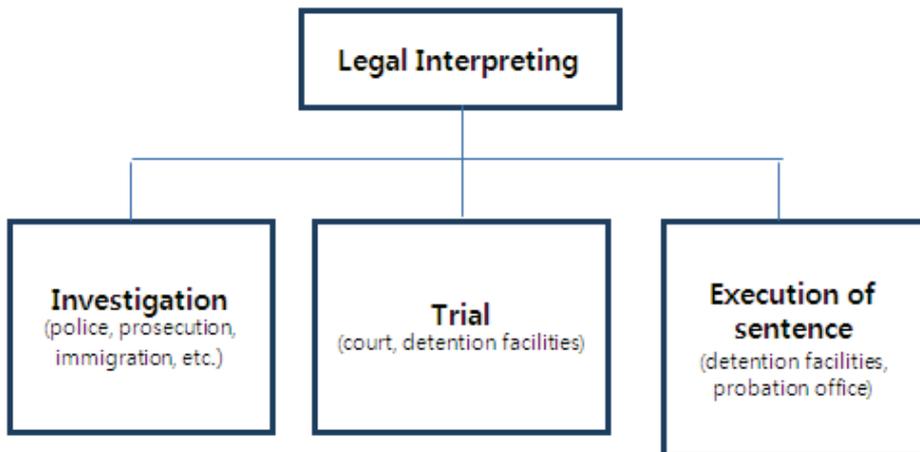


Figure 1. Scope of Legal Interpreting and Applications

#### B. Objective of legal interpreting

The basic objective of legal interpreting is to enable defendants in the criminal procedure to communicate effectively with representatives of the judiciary institutions, defence lawyers, and other participants in the proceedings so that they can express themselves and exercise their legal rights to defend themselves, and to ensure that their rights stipulat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are protected.

The guiding principle of criminal litigation is due process of law, which means that in the course of criminal procedure, one's dignity and values as well as basic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Under this principle, defendants, as the agent of litigation, can exercise their rights to defend themselves. Article 12 of the Korean Constitution protects the rights of criminal defendants, based on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Korea also stipulates that defendants have the right to speak for themselves (Article 26 Paragraph 8).

In line with the same principle of due process, defendants should not be disadvantaged against state prosecutors in preparing for their case and defend themselves. To that end, each country has its own criminal procedure laws which recognize defendants' right to counsel and their entitlement to state defenders if they cannot afford their own legal representation. Therefore, in an adversarial system, if interpreting is not provided for foreigners of limited Korean language ability in order to enable them to communicate effectively with trial judges, prosecutors and attorneys and to follow witnesses' testimony, their ability to defend themselves is severely undermined and they are at a great disadvantage in preparing their case. In that sense, one may argue that foreign defendants' right to an interpreter is equally important as their right to counsel.

## 5. Laws Governing Legal Interpreting Systems Abroa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14.3 (a) and (f), everyone charged with a criminal offense shall have the right to be informed promptly and in detail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charge against him/her in a language which he/she understands, and to have the free assistance of an interpreter if he/she cannot understand or speak the language used in court. If one stands trial not being able to understand facts related to criminal charges and their legal rights, it is nothing short of a griev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Interpreting provided in the criminal procedure may influence the nature of charges because a different nuance may make a difference in meaning, and thus it requires utmost accuracy.

The U.S, which has a long history of immigration, introduced a judiciary interpreting system long ago. It developed a legal interpreting system partly

because it is a nation of immigrants but also partly because it is based on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which is characterized by an adversarial system, oral arguments, and the jury system. In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it is regarded essential for the testimony of defendants and witnesses to be accurately conveyed to non-legal professionals such as jurors through interpreters. In the U.S. the right to an interpreter has been recognized as a defendant's right, and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Court Interpreter Act have been enacted. Some states in the U.S. have state court interpreter accreditation programs which regulate court interpreter licenses and demands highly professional ethical standards from judiciary interpreters.

Australia, another multicultural nation, has a legal framework for legal interpreting. States like South Australia and Victoria have written laws on criminal defendants' right to an interpreter, while other states allow courts to exercise discretion to determine the provision of interpreters under common law. The 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NAATI), which is an independent entity funded by the Australian federal governments and state governments, administers the accreditation system for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in Australia. Australia has made efforts to improve court interpreting practices to the standards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European Union members provide legal interpreting based on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With the view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egal translation and legal interpreting within the European Union, projects such as Grotius and AGIS have been instituted. Even so, European countries have yet to establish consistent and uniform legal interpreter systems across different jurisdictions, so that in some jurisdictions interpreters may be accredited on the basis of interviews and resume checks, whereas in others they may be accredited only through formal accreditation examinations. Denmark, for example, has two classes of interpreters -qualified interpreters

who have completed a Master's course in interpreting and who have passed an interpreter test, and non-qualified interpreters who have not done Masters level training but are allowed to work as interpreters. Formal ethical standards apply to both classes.

In the case of Hong Kong, the criminal defendants' right to an interpreter is legally stipulated. It is noteworthy that Hong Kong courts recognise the need for Chinese dialect interpreters as well as foreign language interpreters. Court interpreters in Hong Kong are selected based on the civil servant act and their professional duties are specified in the law.

A survey of legal interpreting systems in foreign countries therefore indicates that many countries recognize interpreting service as defendants' right or at least try to recognize it as defendant's right. Many countries hav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employment and engagement of legal interpreters, and they maintain a rigorous accreditation system for legal interpreters in order to ensure professionalism, ethical practice and impartiality in legal interpreting

## **6. Legal Interpreting Issues in Criminal Matters**

### **A. Issues in investigation**

Foreigners who are charged with criminal offences often do not understand Korean well, while prosecutors and police officers often do not know the languages spoken by the accused. That is why an interpreter's presence is crucial during criminal investigation, court proceedings and the execution of sentence. Foreigners generally come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and different social customs and legal systems, so they may not be properly aware of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trial system of Korea, and so it is not easy for them to grasp the exact meaning of their statement and testimony through interpreters. As such, it is necessary to help foreign nationals charged

with criminal offenses understand the criminal procedure in Korea so that they are not limited in preparing their case and defending themselves.

#### B. Issues in Trial

Although interpreting may be provided throughout the trial, if it is not accurate, defendants may not be able to understand the sentence they face, even though they have received a translated copy of the bill of indictment. In such cases, Article 14 (a) of the ICCPR becomes meaningless for the foreigners and their rights guarante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are undermined. In the cases where inadequate interpreting is provided in courtroom trials, it also hinders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That is why the engagement of competent interpreters is needed in order to defend the rights of foreign suspects and defendants.

#### C. The Legal Nature of Judiciary Interpreting

As well as a means of protecting defendants' rights, judiciary interpreting can be viewed as a method of evidence and as a means to ensure a fair trial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litigants. Legal precedents and theories appear to approach the role of interpreter as an assistant of the court in fact-finding. In Korea, when defendants ask for interpreting, it is deemed entirely up to the court to determine whether or not defendants can communicate in the Korean language according to Section 180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sidering such factors as their educational backgrounds, careers, jobs, and so on, and decide on the matter of provision of interpreting. Japanese precedents indicate that in the cases where the accuracy of interpreting provided for the interview records during the preceding investigation stage has been assessed through questioning of defendants and/or the examination of witnesses, the inadequacy of interpreting and incompetence of interpreters does not threaten the due process in the criminal procedure. As for interpreters' competence required for criminal investigation,

Japanese courts have shown strong tolerance by stating that the interpreter's ability to understand everyday conversation and conveying one's opinions and ideas to others is sufficient for investigation of foreigners, and general knowledge is rather than legal knowledge is sufficient in the pre-trial investigation stage.

However, in order for criminal suspects and defendants to understand their legal rights and understand the opposing party's case and arguments and come up with proper defence, there should be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defendants and police, prosecution, legal institutions and defence attorneys, and the right to an interpreter is an essential precondition to one's right to trial (the Korean Constitution Section 27 Paragraph 1) and to defend oneself. Given that ICCPR Article 14.3(a) and (f) specify free assistance of interpreters, and that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rticle 6.3(e) has a similar provision, it would be reasonable to assert that defendants also have the right to an interpreter during the investigation phase, and that this right stems from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 D. Fairness and Accuracy in Interpreting

It is important that adequate interpreting service should be provided for foreigners, whose ability to understand and speak Korean is limited, from criminal investigation to prosecution and trials so that they can defend themselves. It is vital to the due process of law. The adequacy of interpreting is in turn closely linked to fairness and accuracy in interpreting.

### 7. Recommendations for Legal Interpreting System

Multicultural, multilingual, and multiethnic countries have offered legal interpreter training programs for many years now. Although Korean demographics are becoming multicultural with more and more foreigners

staying in Korea, and although and the increasing demand for legal interpreting is clear, Korea has yet to adopt either a system for the deployment of competent and qualified interpreters in legal settings, or a system for the accreditation of legal interpreters. Some people voice concerns that there are only a handful of competent interpreters available for legal interpreting services while others say many people still lack understanding of what interpreting is and what it takes. In the absence of laws that govern legal interpreting in Korea, there are few interpreters equipped with the level of language skills, knowledge of legal terminology and professional ethics which are expected of legal interpreters.

For effective legal interpreting, interpreters should possess professional communication ability to interpret appropriately in various legal settings, and awareness of professional ethics as an expert who assists in the legal procedure. The competence and professionalism of interpreters are directly related to legal issues such as admissibility in the criminal procedure. In short, legal interpreting is essential to efficient proceedings and for judicial justice and human rights for foreign suspects and defendants. In order to provide quality legal interpreting service of such legal nature, interpreters should be trained and have highly advanced level of language ability as experts in legal interpreting, and they should abide by ethical standards and professional codes of conduct. Accreditation for legal interpreters who possess such professional qualities needs to be introduced, and Korea can learn from the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which have laws concerning court interpreters and codes of ethics for legal interpreters.

Korea introduced a jury system in criminal trials through the passing of a law on people's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Such legislations and other revisions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s, coupled with the increasing population of foreigners from non-Korean speaking backgrounds, highlight the need and the importance of legal interpreting in criminal procedure. This study discusses the

urgent need to establish through legislation the means of raising the ethical awareness of legal interpreters, and the means of holding them accountable for the provision of adequate legal interpreting service. The institution of a system to screen the competence of interpreters in order to ensure complete and accurate interpreting during criminal court proceeding is central to this.

## 〈부 록〉 설문지

### 1. 설문대상과 조사방법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사법통역인, 검찰청에 등록되어 있는 사법통역인, 경찰청에 등록되어 있는 사법통역인, 그 외 사법통역 유경험자(국내외 포함) 128명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회신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67건 이었다.

이하에서는 설문조사자료 중 선별된 문항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사법통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 24번 질문 : 사법통역 시 애로사항

조사에 참가한 통역사들은 사법통역 시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낀 기관으로 검찰을 꼽았다. 이 문항 객관식 답변을 채택하지 않은 수가 상당했지만 답변을 한 사람 중에서는 75.0%가 검찰을 지목했다. 재판이나 변호인 접견을 택한 경우는 답을 한 사람 중 12.5%에 그쳤다. 이를 통해서 검찰에서 사법통역을 하는 경우에 통역사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하는 애로사항의 내용을 적어달라고 한 문항에 대해 답한 내용이다.

사법통역 시 애로 사항을 적어달라는 질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사전준비 없이 통역에 임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것이었다. 통역이 필요한 날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통역에 임하게 되는 경우 어려움

이 많다고 대답했다. 통역사들은 통상 1~2주 전에 스케줄이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1시간에서 30분 사이에 요청에 응해야 하며 때로는 새벽에 연락이 오기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답했다. 또, 갑자기 장문의 판결문을 낭독해야 하거나 사전 정보가 전혀 없어서 모르는 단어가 튀어나와 그 단어를 알아내기 위해 묻고 답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관련 문제로 꼽았다. 한 통역사는 답변에서 ‘사건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경우 질문자나 답변자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것은 법원 기타 사법기관 직원들의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태도였다. ‘피의자 다루는 느낌이어서 불쾌하다’, ‘판사가 너무 불친절합니다. 고압적인 자세는 통역인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한테나 고압적인 자세하라고 하세요.’, ‘담당경찰공무원의 욕설’, ‘경찰청에 갔을 땐 좀 불편한 점이 많다. 통역인에 대한 예의가 부족한 거 같다.’ 등의 지적이 많았다.

‘재판통역-재판시간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많이 기다립니다.’, ‘변호인 접견 통역 시 대기 시간이 길다’, ‘이전 재판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재판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음.’ 등 대기시간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통역 보수에 대한 불만도 상당수 보였다. 통역료 지급이 원활하지 않다, 통역비가 법원마다 달라 혼란스럽다, 검찰통역은 통역비 지급이 매우 오래 걸리고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다, 경찰통역은 통역비가 너무 적다는 등의 불만이 있었다.

그밖에 ‘전문용어들이 어렵다’, 적절한 법률용어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법정용어에 대해 공부할 교육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법정통역을 실습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등 교육기회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경우도 있었다.

‘시간이 늘 부족한 가운데 통역한다.’, 재판기일을 잡을 때 재판장이 변호사와 검사의 일정만 고려하고 통역인의 일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도 있었다.

29번 질문 : 사법통역인의 지위나 보수 및 처우와 관련해서 개선되기 바라는 점

사법통역인의 지위나 보수 및 처우와 관련하여 개선되기 바라는 점을 간단히

적어달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보수가 너무 적다.’, ‘통역비용이 여러 해째 제자리다.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의 인상이 필요하다.’, ‘보수가 낮은데 일을 주는 빈도수도 적다.’ 등 보수 인상에 대한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수와 관련된 견해로 ‘통역인이 출석을 했는데, 증인이나 피고소인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을 때에도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형사 통역 및 민사 통역(이혼 등)에 대한 일 회당, 시간 당, 정확한 기준이 미리 공지가 되고 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은 형사재판이지만 집행되는 통역료가 갈 때마다 다르더라고요.’와 같이 통역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대기시간이 비용처리가 되고 있지 않다, 여비를 지급하라, 보수를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해달라는 요청도 몇 건 있었다.

자격기준이나 신분에 대한 견해도 많았다. ‘외국처럼 우리도 사법통역인이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아르바이트처럼 사건이 있을 때마다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상주하여 통번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다.’, ‘사법통역에 전념할 수 있는 지위와 보수를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법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계약된 통역사가 재판내용에 대한 학습 및 비밀유지의 책임을 지고 지속적으로 전담할 필요가 있다.’, ‘번역사를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해라.’는 등 통역을 전담할 수 있는 직책을 도입하자는 견해가 많았다.

‘증명서나 신분증을 발급해달라.’, ‘통역인으로 활동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통역인으로서 다른 기업, 또는 기관에서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 증명서 발급을 통해 사법통역인으로서 일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란다.’와 같이 자격이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발급하거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력증명서 발급제도 등이 도입되었으면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해당기관에서 일정수준의 교육이수와 공식적으로 인증된 자격증제도를 갖추어 공인된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연락이 가는 사람이 정해져있는 등 일을 몰아주는 경향이 있어 통역 기회가 골고루 분배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과 통역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불만도 상당수 있었다.

그밖에도 판사 및 법원행정 직원 등 법원직원의 태도가 매우 고압적이어서 불쾌하다, 통역의뢰 시 거주지와 가까웠으면 한다, 선발전 철저한 검증을 원한다, 사전설명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한다, 확보된 인원이 해당 업무를 이행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달라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30번 질문 : 사건 당사자나 사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무리한 부탁을 받은 경험

통역인으로서 사건 당사자나 사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무리한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부당한 요구나 무리한 부탁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 중에는 통역비 지급과 관련된 대답이 가장 많았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변호인 접견을 수차례 갔는데 재판이 끝난 후 변호인 접견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황당했다.’거나 통역비가 제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한 경우가 있었다.

부당한 요구나 무리한 부탁을 받은 경우 중에는 사건청탁과 관련된 것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사건과 관련된 청탁에는 당사자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전화를 한 경우, 당사자가 통역사에게 당사자의 가족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부탁해달라는 부탁을 한 경우,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재판결과에 대해 묻는 전화를 몇 차례 받은 경우 등이었다.

그리고 경찰관이 통역사에게 피의자에게 말해서 죄를 인정하고 사건을 빨리 끝내자고 하자고 제안한 경우, 통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판사가 피고가 불필요하게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한 경우, ‘법정에서 판사에게 “본인이 전문통역인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통역을 의뢰했을 때는 자격이 있다는 의미인데 피고인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하다니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와 같이 통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관계자들이 통역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 ‘이전에 통화한 적이 없는데 팩스로 공소장이 왔고, 해당 날짜에 통역을 하기로 본인과 통화를 했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와 같이 통역사와 기과 간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등이 답변으로 제시되었다.

26번 질문 : 사법통역사 자격증제도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 이유

법정통역사 자격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답을 고르고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 문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대답한 경우가 전체 67명 중 32명으로 47.8%의 다수 의견을 차지했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18명으로 26.9%를 차지했다.

자격증 제도에 찬성하는 의견에는 ‘검증된 사람’이 필요하다, ‘사법통역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체계적인 교육과 일정 기간 동안의 실습 등을 통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만이 사법통역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법통역의 정확성과 질적 제고를 위해 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다.’, ‘법률이라는 내용적 특성상 오류나 실수가 용납될 수 없고, 전문분야로서 통역의 난이도도 가장 높아 부담도 크다.’, ‘사실 통역일을 하는 사람 중에는 그저 해외거주 혹은 유학경험만으로 하는 사람도 많은데, 통역은 외국어만 잘 한다고, 혹은 어떤 분야의 전문지식만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전문적인 통역기술과 통역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격증 발급을 통해 사법통역의 체계가 잡히고, 통역사도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고 통역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사법통역사 업무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법정통역사 자격인증제도 도입에 반대를 표명한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공정하게 심사해서 자격증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 하거나 ‘언어능력을 인증하는 발상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견해, ‘인증제가 유능함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통역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자격증이나 학력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통역 대학원의 전문 교육을 이수한 통역사라면 사법통역에 필요한 추가적인 지식과 교육만 이행되면 그 자격과 실력을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격증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문 통역사가 관련 사법 지식을 추가적으로 습득한 점을 증명하는 수수료 정도로 충분할 것 같음.’, ‘한국은 항상 무슨 자격증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법통역사만 해가지고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격증제도 만들어서 돈 받고 또 사설교육기관 난립하는 거 별로 보고 싶지 않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격증 제도보다, 해당 기관에서 우선 인원을 선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 과정 이수 후 사법 통역인으로서 자격을 주기 위한 평가를 통하여 최종 사법 인력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자격증을 위한 한 번의 제한적인 시험으로는 충분한 역량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봄).’이라는 견해 등이 있었다.

23번 질문 : 통역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고 업무협조와 잘 이루어지는지 여부

통역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고 업무협조와 잘 이루어지는가를 물었다.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거의 전체의 반 정도인 46.3%를 차지했다. 매우 그렇지 않다가 그 뒤를 이어 16.4%를 차지하여 통역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는 등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가지는 비율이 62.7%로 많았다. 자료제공과 업무협조가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10.4%,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4.5%로 긍정적인 대답보다 부정적인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통역사들이 통역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제공과 같은 사전업무협력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사법통역교육 문제〉

14번 질문 : 사법통역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사법통역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4.5%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문항에 대해 답변한 답변자가 적어 본 문항에 답을 한 답변자 전체를 100으로 놓고 비율을 보면 25.4%가 이렇게 대답한 것이 된다. 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경우 단기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경우 4.5%(본 문항에 답을 한 답변자 중에는 25.4%)와 정규학위 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경우도 전체 4.5%(본 문항에 답을 한 답변자 중에서는 25.4%)였다. 질문만으로 전문 통번역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15번 질문 : 출입하는 사법기관에서 통역인 교육 혹은 연수를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

출입하는 사법기관에서 통역인 교육 혹은 연수를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주관식으로 답한 대부분은 법무연수원에 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

16번 질문 : 출입하는 사법기관에서 통역인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경우 교육 내용과 시간/기간이 통역활동 하기에 충분했는지에 대한 질문

사법통역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 내용과 시간/기간이 통역활동을 하기에 충분했는지를 묻는 물음에 부족했다가 25.4%, 적절했다가 7.5%의 답변을 얻었다. 기타 의견이 거의 49.3%로 거의 반을 차지했다. 기타로 답한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 의견란에 의견을 기입한 것은 4건에 불과했다.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통번역대학원 출신이 아닐 경우 부족할 것 같다.”, “통번역대학원 졸업생이거나 장기간 사법통역에 종사한 통역인에게는 충분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처음으로 사법통역을 하는 외국인 능통자 혹은 원어민에게는 더 긴 기간의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사법통역교육이 그다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8번 질문 : 사법통역교육을 받기 원한다면 어떤 형태의 교육을 원하는가라는 질문

사법통역교육을 받기 원한다면 어떤 형태의 교육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문항에 답을 한 답변자 가운데 81.8%가 통역교육기관과 사법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체계적 교육을 받기를 원했다. 대학이나 대학원의 정규통역교육과정이나 위탁교육을 원하는 경우는 본 문항에 대답한 자의 9.7%에 그쳤다.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통역사 중 대부분은 통역교육기관과 사법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체계적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2번 질문 : 제공받은 편람이나 참고자료가 업무에 유용한지 여부

사법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재나 참고자료가 업무에 유용했냐고 묻는 질문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전체 67명 중 20명으로 29.9%, 도움이 되는 편이라는 전체 67명 중 41명으로 61.2%로 자료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1.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전체 67명 중 5명으로 7.5%에 그쳤다. 사법기관에서 배포하는 자료가 통역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녹취록 1]

\* 이하의 자료는 미국 몬트레이 국제통번역대학원과 캘리포니아주 법원 등에서 녹취한 자료 정리한 것이다.

안성훈 :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몇 명 정도가 통역을 하고 있는가

김영순<sup>320)</sup> : 스페인어 통역인이 가장 많고 120~130개 국가가 통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수치는 사전에 파악하고 있지 않다. 대략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120개 국가가 넘으며 종사자 또한 1,000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안성훈 : 매년 몇 명 정도 선발을 하는가.

김영순 : 제한인원은 없으며 테스트만 패스하면 선발이 된다. 형사 사법통역 분야에서 종사하려면 공무원이 되어야 하며 처음에는 민사부터 시작한다.

안성훈 :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 선발인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김영순 : 스페인어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으나 한국인들은 유자격자가 60여 명 정도 된다. 1년에 한두 명 정도가 선발되는 셈이다.

안성훈 : 그렇다면 T.O에 상관없이 자격만 된다면 선발되는 것인가.

김영순 : 그렇다. 자격이 인정되면 프리랜서로서 통역회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활동한다. LA COUNTY에서 인원이 필요한 경우 풀타임으로 고용을 하는데 풀타임 고정직 종사자는 4명 파트타임 고정직 종사자는 2명이다. 나머지 인원은 퍼디엠(perdiem: 일급수여 노동)으로 일이 있을 때 일하고 다른 일도 겸업하는 사람이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안성훈 : 기관에 소속된 종사자들과 프리랜서의 차이는 무엇인가.

김영순 : 예를 들어 본인의 경우 풀타임으로 LA COUNTY에서 고등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며, 프리랜서들의 경우는 변호사 등을 거쳐 민사만 다루게 된다. 또한 공무원으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프리랜서 업무와 겸업하는 경우가 있다.

안성훈 : 그렇다면 자격을 획득한 이후에 또다시 공무원 등으로 선발이 되는 방식인가.

---

320) 미주 한인사법통역인협회 전화장

- 김영순 : 그렇다. 만약에 LA COUNTY에서 1명의 파트타임 공무원이 필요할 경우 경력이 높은 순위를 우선적으로 하여 선발한다.
- 안성훈 : 급여는 공무원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가.
- 김영순 : 민사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즉각 그 자리에서 만약 하루 500\$를 받겠다고 제안할 경우 그 자리에서 협상하여 계약을 한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다른 공무원들도 노조에 따라 각기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급여 산정방식은 별개이다. 각각 노조가 존재하므로 수년에 한 차례 급여협상을 통해 급여가 산정된다.
- 안성훈 : 그렇다면 급여는 시간제로 산정되는가. 건수로 산정되는가. 한편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가.
- 김영순 :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봉제이다. 다른 공무원과 같으나 급여 산정방식만 다를 뿐이다. 서기 노조와 속기사 노조가 각각 존재하는 형태이다. 파트타임도 마찬가지로 노조에서 관리한다.
- 안성훈 : 한국에서 사법통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예산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다면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급여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시간제로 산정하는가 건별로 산정하는가.
- 김영순 : 프리랜서의 경우는 공무원이 하루에 받는 급여를 계산하여 하프데이와 풀데이로 나누어 급여를 공무원과 유사하게 산정한다.
- 안성훈 : 현재 통역인수의 수요공급 상황은 어떠한가. 과잉공급 또는 공급 부족 현상은 없는가.
- 김영순 : 한국어 통역의 경우에는 약간 과잉공급 상태이다. 미국의 경제악화와 캘리포니아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법조계 또한 위축되는 상황이다(판사는 아니지만 소위 판사역할을 하는 인원들도 삭감되는 상황이다. 얼마 전에는 법원 직원 500명이 해고되었다).
- 안성훈 : 그렇다면 설령 자격증을 취득하여도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변호사들과 동일하게 능력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
- 김영순 : 그렇다. 학교를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능력이 부족하면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다.
- 안성훈 : 한국은 현재 사법통역 부문에서 재원마련이 시급한데, 동시통역 분야에

서 유능한 인재들은 수입이 적기 때문에 이쪽 계열을 회피하고 대학원생이 주로 활동한다. 미국에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김영순 : Judicial Council(주 법무부) 산하에 통역인 관련 예산을 책정하여 이에 따라 시행한다. 이러한 공무원 제도 또한 미국에서 도입한지는 10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모두 프리랜서로 아무리 경력이 높아도 이득이 되지 않았다. 이후 주 법이 개정된 이후로 경력자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

안성훈 : 그렇다면 초임은 어떻게 되는가.

김영순 : 캘리포니아에서는 초임과 경력자의 월급은 같다. 왜냐 하면 초기에 법을 제정할 때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도 경력자에 대한 임금의 이익이 없으며, 초기에 2%인상 이후에 8년 간 임금인상이 없는 상태이다. 연봉은 약 74,000수준이다. 공무원으로써의 혜택은 휴가와 보험적용(가족 당 월 1,000불 수준), 월 1회 병가도 받게 된다.

안성훈 : 통역은 민사와 형사가 다른데 각각의 성격마다 임금은 어떻게 다른가.

김영순 : 형사는 공무원이 담당하므로 정해져 있으나, 민사는 변호사 또는 에이전시 등과 가격협상을 하게 된다.

안성훈 : 민사담당 또는 형사담당 통역자가 따로 있는가.

김영순 : 기본적으로 형사를 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민사를 하므로 형사가 전문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형사는 정형화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통역이 수월한 반면 민사와 같은 경우는 테마의 범위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어렵다.

안성훈 : 다른 비즈니스 동시통역과 비교하여 어떠한가. 한국의 경우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 등 출신의 유능한 동시통역자는 급여수준이 높은 비즈니스 통역을 선호하는데 미국은 어떠한가. 또한 동시통역의 현황은 어떠한가.

김영순 : 본인은 형사통역만 담당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른다. 미국은 법원통역이 수월하고는 말할 수 있다. 출석만 하면 일정이 연기되어도 급여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동시통역 부문은 일일이 동시에 통역하고 순차통역은 인터뷰 또는 증인신문 시 실시한다. 히어링 디바이스는 자

유 재량으로 착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인당 1통역인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3명이 한 법정에 설 경우 통역은 3명이 필요하다. 때문에 통역인이 1인일 경우 피고인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야 1인이 다수를 통역할 수 있다. 모든 통역인은 국비로 선임하므로 피고인 3명이 통역인 3명을 요구하면 3명의 통역인을 선임해 주어야 하나 통역인이 한 사람인 경우 3명이 피고인이 3명의 통역인을 요구할 경우 항소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통역인 3명이 모일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게 된다.

안성훈 : 한국에서는 판사의 자유재량으로 통역인 부여 여부를 판단하는데, 미국에서는 피고인이 영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판사가 통역인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가.

김영순 : 그렇지 않다. 재판관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이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의무적으로 선임해 주어야 한다.

안성훈 : 사법통역은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김영순 : 원칙적으로 유자격자만 사법통역을 행할 수 있는데 민사의 경우는 편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형사와 같은 경우는 철저히 이를 차단하고 있다.

안성훈 : 배심원 재판과 같은 경우는 어떠한가. 절차는 동일한가.

김영순 : 그렇다.

안성훈 : 한국에서 사법통역 분야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경찰청 질문). 과거 프랑스로 입양된 피해자가 한국 방문 당시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통역인을 부여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지인을 통역인으로 임명하고 싶다고 하여 같은 프랑스로 입양된 한국인(한국인이 완벽하지는 않음)을 통역인으로 정하였으나, 나중에 통역이 잘못되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경우는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김영순 : 우선적으로 재판의 경우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인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를 통역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안성훈 : 현재 재판단계에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수사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찰

등이 조사 시 통역이 필요할 경우는 어떠한가.

김영순 : 경찰은 경찰이 별도로 통역을 고용해야 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도 자격증 보유자를 통역자로 고용해야 하는데 나중에 재판에서 다루어질 때 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 중에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수사를 할 경우는 반드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 따로 통역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안성훈 : 통역인을 따로 경찰에서 고용하려면 리스트가 있어야 것인데 리스트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가.

김영순 : 리스트는 통역인 자격을 획득하면 Judicial Council(사법위원회)에 명단이 등록된다. 통역인 에이전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성훈 : 그렇다면 검찰과 경찰 모두 통역 유자격자를 고용하려면 법사위원회 홈페이지 등만을 이용하는가.

김영순 : 그렇다.

안성훈 : 그렇다면 법사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인 것 같은데 법원소속이 아닌 것이 맞는가.

김영순 : 그렇다. 법사위원회는 행정부에 소속된다.

안성훈 : 통역인 자격 취득 후 연수과정은 있는가.

김영순 : 연수라기보다 통역인을 포함하여 모든 자격증을 지닌 전문가들은 2년에 3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이수는 법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개인이 따로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다.

안성훈 : 한국에서 이러한 제도의 입법을 제안한다면 관리하는 주최 측이 어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한국에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와 이화여자 대학교의 통번역과가 있는데 시험을 관리하는 데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영순 : 미국은 위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시행기관을 새로이 설립하여 시행위원을 마련하고 문제제출 등 모든 절차를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는 방식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성훈 : 한국 또한 외국인이 120만 명 정도 거주하여 단일민족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로 이행해 가기 때문에 통역에 대한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아직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

김영순 : 때문에 특별 소속부처를 설치하여 사법통역에 관한 특수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안성훈 : 한국에도 동시통번역 대학원이 존재하나 사법통역은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 및 윤리의식이 요구되므로 특이한 분야이다. 때문에 수비의무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

김영순 : 한국은 수비의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나 미국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안성훈 : 통역내용은 녹취가 되는가.

김영순 : 통역인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받는다. 통역내용은 속기사의 기록에만 의하고 종종 배심원 재판에서 2개 국어 구사자인 배심원이 통역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도 통역인이 이의 내용을 거부할 경우 통역인의 통역내용은 인정된다. 또한 비록 잘못되었다 하여도 판사가 통역인의 통역만을 들을 것을 명한다.

안성훈 : 그만큼 자격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보아도 되는가.

김영순 : 그렇다 아주 큰 실수를 할 경우 통역인이 실수로 정정하는 일이 있기는 하여도 전적으로 신뢰를 받는다.

[녹취록 2]

\* 이하의 자료는 진주교도소, 치료감호소, 국립정신병원 등에서 녹취했던 자료를 본문과 관련 있는 카테고리별로 새롭게 정리한 것입니다.

미켈슨<sup>321)</sup> : 미국에서는 두 개의 제도가 있다. 하나는 연방 또 하나는 주제도로 50개 주별로 각기 다른 제도가 존재한다. 연방 제도에서 현재 자격증 제도 대상언어는 스페인어가 유일하다. 때문에 주마다 자격증을 제도화하는 언어가 각기 다른데 이는 해당 주의 인구분포에 따라 달라진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12개 언어로 시험이 실시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사법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만약 시험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언어라 하여도 다른 수단을 통해 검증이 되어야 캘리포니아에서 법정 통역이 가능하다. 또한 각 주의 법원마다 직업윤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통역 인들은 직업윤리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안성훈 : 다른 수단으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미켈슨 : 공인 시험이 없는 경우 필기시험이 있는데 영어능력 수준을 테스트하고 법원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테스트를 같이 실시하는데 해당 테스트에 합격하면 2일 간 오리엔테이션 또는 워크숍 등을 통해 직업윤리를 학습함으로써 검증을 받게 된다. 시험을 패스하지 못할 경우 그 언어가 정말 중요할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과 워크숍을 먼저 실시한 이후 시험을 치르게 된다.

안성훈 : 해당 시험은 자격증 시험과 달리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마련하는가.

미켈슨 : 공인 언어 테스트의 경우 양측 언어로 시험이 진행되는데 비공인 시험의 경우 영어부문 시험만 치르게 된다. 때문에 한국어 등의 시험은 치르지 않고 영어와 재판관련 지식을 확인하며, 영어 테스트의 내용은 비공인과 공인시험이 동일하다.

---

321) Holly Mikkelsen, 미국 몬트레이 국제통번역대학원 교수

- 안성훈 :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비공인언어를 수험자가 구사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검증하는 방식이 되는 것인가.
- 미켈슨 : 그렇다. 안타깝게도 확실히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현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다.
- 안성훈 : 본인은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의 사법통역 제도도입절차를 확인하였다. 1979년에 자격증시험이 최초로 캘리포니아에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험과는 별개로 1983년에 몬트레이 인스티튜트에서 사법통역인 자격증 프로그램을 최초로 실시하였다고 한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인가.
- 미켈슨 : 1979년에 채택된 것은 주 시험이었고 본 학교에서는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한 것이다. 현재 해당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시에는 수료증만 발급이 되었는데 현재는 스페인어과에서 석사학위를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수료증 대신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 안성훈 : 그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 계기가 자격증 시험으로 인한 것인가.
- 미켈슨 : 그 전에 프로그램이 없었을 당시에는 학생들은 통번역 대학원 석사학위만 가지고 졸업을 하는데, 사법통역은 굉장히 특정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학교 졸업생 가운데에서도 탈락한 학생이 발생하게 되어 더욱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적으로 해당 분야 종사자도 소수였으므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다.
- 안성훈 : 제도를 도입할 경우 예산마련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한국에서 우수한 사법통역인을 양성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임금수준이 낮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임금이 충분히 지급이 된다고 들었다. 미국은 자원마련을 어떻게 하는가.
- 미켈슨 : 미국도 사정은 유사하였다. 때문에 기존에 법정 통역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었던 이유도 높지 않은 급여수준 때문에 굳이 석사학위를 취득할 정도까지 인센티브가 보장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수요가 증가하고 동시통역 시장의 공급과잉상태가 발생하여 사법통역 시장으로 눈을 돌

리게 되었다. 또한 20년 전과 비교하여 임금수준도 상당히 상승하게 되었다.

안성훈 : 임금수준이 매우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상승했는가.

미켈슨 : 1979년 법률 채택 이후, 80년대에는 임금수준이 상당히 상승했으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낮아졌다. 그러나 각 주마다 이민자가 늘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 차원에서의 임금수준이 많이 상승하였다.

안성훈 : 통역인에게 주어지는 예산은 정부에서 정하므로 매년 정해지는데 어떻게 사법통역 부문에서 임금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게 되었는가. 다른 어떤 곳의 후원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해당 분야가 각광을 받게 되어 예산확충이 된 것인가.

미켈슨 : 예산이 확충된 부분도 있고, 법원 내에서 지정된 예산을 통역부문으로 조금 더 돌려 예산을 더 받았다. 특히 최근 민간 부문에서는 회사 내에서 통역인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통역인 요금률은 법정 요금률이 아닌 시장 요금률로 책정된다. 가령 영·일 통역의 경우 회사에서 상주하여 통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통역인들에게는 시장 요금률이 책정된다.

안성훈 : 자격시험이 굉장히 어려워 사법통역 종사자가 소수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체는 어떠한가.

미켈슨 : 변호사 시험만큼 특별히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변호사 시험의 경우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 시험을 위한 특화교육을 받는데 비해 사법통역은 그러한 과정이 없기 때문에 독학을 하거나 일반적인 통번역 과정을 수료하여 시험을 치르게 되므로 체감 상 어렵게 느낄 수 있다.

안성훈 :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가. 시험이 어려워 수요가 많아도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혹은 한 통역자가 많은 통역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미켈슨 : 자격증이 없는 통역인의 경우에도 판사의 재량으로 검증을 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살인사건 등 중범죄 사안의 경우에는 자격증 소지자가 확보 될 때까지 법정을 연기한다. 경미한 경우는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한 것으로 본다.

안성훈 : 그렇다면 경미한 사건은 자격증이 없어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 범죄의 경우 자격증이 있는 자를 고용하는 두 가지 체제를 운용하고 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미켈슨 : 그렇다. 그러니까 출두 날짜 고지 등 단순한 경우는 전문 통역인이 필요 없지만 나머지 경우는 전문통역인이 필요한데 그것을 판사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된다. 때문에 통역인 협회에서는 판사와 로스쿨에 통역인 선발 양식, 교육자료, 필요서류 등을 패키지 형식으로 알리고 있다. 판사 등은 2개 국어를 구사할 수만 있다면 통역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안성훈 : 본인은 한국의 형사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법정뿐만 아니라 검찰, 교정도 포괄적으로 연구를 한다. 통역이 경찰에서의 수사단계에서부터 필요하고 미국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선발자들은 이러한 범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통역을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법원에서 허가만을 받은 자들이 경찰 등에서 통역하는 것이 용인되고 있는가.

미켈슨 : 그렇지 않다. 법적으로는 재판 과정에서만 통역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단계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경찰 소속의 2개 국어 구사자가 통역을 담당한다. 그러나 검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쪽에도 통역인이 필요한 근거를 교육하고 있다. 한편 검찰 측의 검사는 법원에서 통역인과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 통역인을 선호하므로 증인신문 등 과정에서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통역인을 대동한다.

안성훈 : 그렇다면 자격증을 지닌 통역인들은 시장에 공개되어 있는 것인가 법원에 소속되어 따로 고용절차를 밟는 것인가.

미켈슨 : 통역인은 고정 통역인과 프리랜서 통역인으로 나뉜다. 주마다 각각 다른데 연방수준에서는 스페인어 부문만 연방 공무원으로 근무한다. 다른 언어는 대부분 프리랜서이고,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일정 일수 이상을 주를 위해 주 법원에서 근무할 경우 다른 언어에 대해서도 주 공무원

으로 간주된다.

안성훈 : 그렇다면 통역료 산정방식이 궁금하다. 시간당으로 산정하는가. 건당으로 산정하는가. 공무원인 경우는 월급제로 산정하는가.

미켈슨 : 현재 법원에서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상세내역은 파악할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는 일당으로 급여를 산정한다. 건수에는 상관없다.

안성훈 : 일당으로만 산정한다면 하루에 10건을 맡게 될 경우에도 받는 임금은 같은가.

미켈슨 :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일당 임금은 하프데이와 풀데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수요가 많은 스페인어 같은 경우 재판을 하루로 맡게 된다. 그러나 통역인이 15분만 통역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하프데일로 임금을 지급하며 풀데이 기준인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풀데이 임금을 지급한다. 근무의 부담은 그날그날 준비된 재판에 따라 달라지는 셈이다. 공무원 또한 일급으로 산정이 되나 다른 점은 복리후생의 측면이다.

안성훈 : 복리후생은 일반공무원과 같은 수준인가.

미켈슨 : 앞서 말한 것을 먼저 보충하고 답변하자면 대부분의 절차가 매우 짧기 때문에 10분 간격으로 케이스가 변경되고 한 명의 통역인이 계속 담당하게 되는데 케이스가 길어질 경우 두 명의 통역인을 운용하여 번갈아가면서 통역을 실시한다. 복리후생의 경우는 직접 종사하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캘리포니아는 각 노조의 협상내용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복리후생 내용이 다르며 통역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안성훈 : 통역방식은 순차통역인이 동시통역인이.

미켈슨 : 동시통역이다. 동시통역 시 법정에서 헤드셋을 제공하고 없는 경우는 통역인이 개별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증언 시에만 기록을 위해 순차로 진행된다.

안성훈 : 본인은 일본에서 형사법을 전공하고 일본에서 사법통역인으로서 근무도 해 보았는데 미국과 달리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미켈슨 : 일본도 지금 도입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도의

도입과정은 전반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성훈 : 이러한 제도는 입법이 되어야 예산이 마련이 되는데 입법이 되지 않고 있고 법원도 예산을 이쪽으로 마련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해당 제도가 도입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켈슨 : 미국도 처음에는 동일한 상황이었다.

안성훈 : 현재 한국도 외국인 거주자가 120만 명 이상이 되고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할 적절한 시기가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켈슨 : 일본에서도 10~20년 전에 유사한 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법을 개편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은 검증된 통역인을 유치하는 것이다.

안성훈 : 미국에서는 외국인이라면 무조건 통역인을 부여해주는가. 미국 거주 경험이 길어 영어 구사도 능숙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미켈슨 :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판사가 적합여부를 판단하는데, 형사법에 연루가 되는 경우는 반드시 통역을 부여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안성훈 : 본인이 판단할 때 범죄자들은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해당 언어를 잘 구사하더라도 모르는 척 하는 경우가 많아 통역인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켈슨 : 본인은 피고가 무언가를 은닉하려고 한다면 통역인은 피고가 하는 말을 그대로 통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역인이 은닉의도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외국인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영어를 구사하지만 법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일상 언어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사법통역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안성훈 : 본인이 의도한 바는 재판에서 피고에게 묻는 질문을 이해하면서도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통역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인데, 질문의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 그러한 의미에서 특히 통역인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미켈슨 : 그렇다. 통역인의 유무를 막론하고 많은 피고들이 그러한 사유를 대면  
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경우 잘잘못은 통역인에게  
지우는 경우가 있다. 통역인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책임회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의무적으로 통역인을 부여하는 데 본인도  
동의한다. 한편 미국은 법정용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외국  
어를 구사하지 못하여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안성훈 : 본인이 방문하게 된 계기는 미켈슨 교수가 2000년 출간한 Introduction  
of the court interpretation이라는 서적이 한국에서도 사법통역분야에서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통번역 대학원 쪽 교수에게 자문 추천을  
받아 오게 되었다.

미켈슨 : 본인의 책에 대해 높이 평가되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한다. 다음 달 사  
법통역의 기본 제2판이 공동 집필로 출간되는데 주소를 알려준다면 참  
고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사본을 보내도록 하겠다.

안성훈 : 한국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참조하거나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내용을 열람하거나 커리큘  
럼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미켈슨 : 지금 이 자리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의 복사본은 없고 시간  
이 있다면 도서관 같이 동행하여 소개해 줄 수 있는 책 몇 권이 있다.  
그리고 한국의 이지은 교수가 프로그램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안성훈 : 이지은 교수가 해당 연구를 같이 연구하고 있다.

미켈슨 : 매우 잘된 일이다. 그녀는 본인이 편집하고 있는 책의 일부를 집필하  
였다.

안성훈 : 인정시험제도에 관한 질문인데 그러한 내용도 열람할 수 있는가.

미켈슨 : 샘플테스트는 구매가 가능하며, 웹사이트에서는 몇몇 문제는 무료로 예  
시를 확인할 수 있다. 샘플테스트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검증시험과  
난이도가 같다. 테스트 자체를 통째로 구입하거나 웹사이트를 확인하  
면 될 것이다.

안성훈 : 본인이 사법통역 종사자였던 사람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시험이 8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돌아가면서 제출되기 때문에 한국의 운전면허 시험과 같이 유형을 모두 암기하여 합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미켈슨 : 안타깝게도 그러한 경우도 존재하며,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안성훈 :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혹시 마련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미켈슨 : 필기를 그런 방식으로 통과하여도 구술시험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으며, 2~3년마다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고 있다.

안성훈 : 사법통역은 배심재판에서도 전체적인 과정에서 동일하게 실시되는가.

미켈슨 : 배심재판에서는 모든 과정에서 법정 통역인이 동시통역을 하게 된다. 심지어 배심원 가운데에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배심원을 위한 통역인이 부여된다. 청각장애자의 경우에도 수화 통역인이 부여된다. 배심원을 위한 통역인은 두 개 주에서 스페인어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배심원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안성훈 : 혹시 교육프로그램을 촬영한 영상이 있는가.

미켈슨 : 비디오는 없다. 사법통역 강의를 2시부터 하는데 필요하다면 참관하여도 상관없다. 강의 내용은 스페인어-영어 특화수업은 아니고 모든 언어를 위한 일반적인 사법통역 입문 수업이며, 실습하는 시간도 가질 것이다. 스페인어-영어를 교육 수업에 관한 웹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것은 열람할 수 있다.

안성훈 : 해당 내용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가.

미켈슨 : 비밀번호만 있으면 확인할 수 있다. 비밀번호는 제공할 것이다.

안성훈 : 청강을 하고 싶은데 말이 통하지 않아 정보를 많이 획득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미리 인터뷰를 잡은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

미켈슨 : 중국의 청강생들도 많은데 그들도 경험을 위해 듣고 있다.

안성훈 : 두 가지 더 묻고 싶은데,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은 추후 교육은 어떠한가. 실시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미켈슨 : 추후 교육은 의무적으로 존재한다. 2년마다 일정 교육에 참가해야 한다.

안성훈 : 교육 실시기관은 어디인가.

미켈슨 : 교육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의 행정처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는 의무화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2년 단위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안성훈 :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해당 제도를 시험적으로 도입할 때 주최하는 주체(심사인의 자격)는 사법통역 현장경험자, 학자, 법원 가운데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동으로 담당해야 하는가.

미켈슨 : 본인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시험을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최초에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시험을 주관할 당시에도 전문통역인은 없었으며, 스페인어과 교수,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시험을 주관하고 감독을 했었다. 때문에 당시에는 검증의 질이 상당히 낮았다. 때문에 전문통역인과 학계, 법조인들이 공동으로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성훈 : 그렇다면 서로의 이익을 주장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중심 조직은 어느 부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미켈슨 : 한국에서 이러한 기관의 존재여부는 모르겠으나, 전문시험 인증기관이 주축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본다. 해당 시험 인증기관이 주최를 하고 법조계, 학계, 통역인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안성훈 : 행정부의 공무원시험 등을 주최하는 곳에서 해야 된다는 말인가.

미켈슨 : 그렇다. 전문시험기관이 담당해야 한다. 왜냐 하면 앞서 안 박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원의 경우는 통역인을 많이 양성하려고 할 것이고, 통역인 같은 경우는 공급과잉이 되어 임금저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격자를 제한하려고 할 것이다. 프로그램 자체의 신빙성을 위해서라도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험인증기관이 주관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안성훈 : 한국에는 현재 이화여자 대학교와 한국외국어 대학교의 통번역 대학원이 가장 유력한 통번역 양성기관으로서 존재한다. 사법통역 자격인증 제도가 도입될 경우 상당히 큰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들은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가.

미켈슨 : 미국에서도 최초로 애리조나 대학이 시험을 만들고 자격증 프로그램을 주관하여 학생들이 그곳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연방법원이 불공정성을 이유로 입찰과정을 통해 시험전문 인증기관에 위탁하게 되었다. 이후 시험은 해당 기관에서 주관하고 애리조나의 프로그램은 교육만 하게 되었다.

안성훈 : 그렇다면 해당 인증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몰릴 것 같은데 어떠한가.

미켈슨 : 해당 입찰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만료가 되어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 새로운 인증기관 입찰자가 등장하게 된다. 물론 입찰 대상자는 전문성이 입증된 기관이어야 한다. 현재는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라는 주 법원의 국가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해당 센터의 홈페이지도 열람이 가능하다.

안성훈 : 연방에서 자격을 획득한 자와 주에서 자격을 획득한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연방자격 획득자는 주통역도 가능한 것인가.

미켈슨 : 정당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연방시험이 훨씬 어렵다. 때문에 연방시험을 통과하는 관문이 좁은 편이다. 연방 자격 획득자는 대부분의 주에서 주의 사법통역을 허가하고 있으나, 주마다 각기 요구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 추후 교육여부, 배경조사, 주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참가 요구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연방 자격 인정자는 주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안성훈 : 수사단계의 통역과 재판단계의 통역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한 명의 통역인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계속하여 통역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미국은 어떠한가, 미켈슨 교수의 생각은 어떠한가.

미켈슨 : 현재 법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직업윤리 강령에서는 통역자가 수사단계에서 통역을 할 경우 재판에서 이를 공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검사와 판사는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같은 통역인이 담당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

안성훈 : 직업윤리강령은 주마다 공통으로 정한 것인가, 연방의 윤리강령인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가.

미켈슨 : 하나의 직업윤리강령을 대부분의 주가 채택을 하고 있으며, 연방의 윤리강령도 있으나, 이 또한 주의 윤리강령과 크게 차이가 없다. 윤리강령은 차후 홈페이지를 알려주도록 하겠다. 또한 본인의 출판사에서 통역기관을 양성하는 스페인어로 된 매뉴얼이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한 출간물도 있는데 이를 보내주도록 하겠다.

## [미국 각주의 사법통역인 관련 규범 및 매뉴얼]

### Professional Ethics and the Role of the Court Interpreter 3d Edition

#### 법정통역사의 직업윤리와 그 역할 - 제3개정판 -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984.4: “통역사의 직업적 행위”, 통역절차를 위해 캘리포니아 사법위원회에 의해서 채택된 사법행정에 관한 캘리포니아 기준, 연방법원 통역사가 준수해야할 직업적 책임에 관한 기준, 그리고 휴위트(Hewitt)의 법정통역: 미국 법정에서의 정책 및 실천에 대한 모델 규범, R-167, (Williamsburg, Virginia: State Justice Institute, 1995)은 아래에서 논의될 윤리와 책임 논의의 근간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규정된 지침은 법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판사가 법정에서 무엇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자라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판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어느 법정에서건 성문화되지 않은 많은 규범들 존재한다, 그러므로 통역사로서 여러분은 그러한 규범을 배우고 따를 의무를 가지고 있다.

#### 정확성

법정통역사는 자신이 가진 고도의 기술과 판단력을 풀어서 말하거나 생략하거나 편집하는 일 없이 정확하게 통역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법정절차를 시작할 때마다, 통역사는 해당 절차에서 “올바르게 그리고 진실하게 통역할” 것을 맹세하거나 혹은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발언으로 선서하여야 한다. 법정통역사는 두 가지 의무를 가진다:

1. 비영어사용자인 증인이나 피고인이 다른 언어로 말한 것이 영어로 작성되는 공식절차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할 (의무),
2. 비영어사용 참가자가 영어를 사용하는 참가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법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

판사나 배심원은 증인의 신뢰성과 증언의 상대적 비중을 결정하기 위해서 증언 번역문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어 문투, 구문, 그리고 문법이 허락하는 한 직역하는 형태에 가깝도록 하여, 원 메시지 속에 포함된 단 하나의 정보도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비영어사용자인 증인이 단순화하거나 설명을 덧붙이거나 생략함 없이 주어진 질문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

#### 추가

윤색 여러분이 통역을 할 때 일관성이 없는 발언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메시지를 다듬어서는 안 된다. 통역사로서의 여러분의 역할은 원래 언어(소스 언어/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번역을 해야 하는 언어)로 그들이 했던 것 보다 번역의 대상이 된 언어(타겟 언어/여러분이 다른 언어로 바꿔 번역해야하는 언어)로 바꿨을 때 사람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들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화자의 스타일을 유지하는 동시에 정확한 단어 선택과 전달에 유념하여야 한다. 예컨대 “네(yes)” 라고 하는 대신 “어(uh-huh)” 라고 하는 경우처럼, 증인이 법정상황에 부적절한 답변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 답변을 보다 상황에 적절한 언어로 바꿔서는 안 된다. 만약 단순히 “배심원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경우, 여러분은 “배심원에게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와 같이 공손한 형태로 바뀌도 안 된다. 원래 답변에 그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증인의 답변을 시작할 때 “글쎄(well)” 와 같이 여백을 메우는 단어를 추가하는 것 또는 원래 언어로 된 메시지에 그러한 구문이 들어있지 않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등의 문구를 추가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없다.

설명 “행간의 의미” 를 인지하게 된 경우 또는 증인의 답변에서 함축적인 의미를 인지한 경우 통역사는 언어적 정보를 추가하고 싶은 욕망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그러나, 번역의 대상이 된 언어로 통역사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는 원래 언어에서 얻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네” 라고 한 것을 “네, 제가 그랬어요.” 와 같이 번역할 때, 통역사는 원 답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추가하고 있는 것이다.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건 혹은 지나치다 싶게 꼼꼼한 설명을 덧붙이기 위해서건 아니면 부주의로 그랬건 증인이 사용한 한 단어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을 제공하는 것 역시 부적절한 행위다. 예컨대, 만약 증인이 선글라스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스페인어 단어 gafas(안경)라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 이 단어를 “안경 또는 선글라스” 로 번역하지 마라. 만약 여러분이 두 가지 번역을 제시한다면 실제로는 확신에 차서 답변했던 경우에도 여러분은 증인이 말하고 있는 게 확실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여러분의 처분 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증인신문 중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를 명확하게 짓은 변호사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일반적으로, 통역사는 법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때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증언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통역사의 역할에서 벗어나 전문가의 입장에 서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여겨진다.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여러분은 통역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즉, 다른 전문가들처럼, 여러분은 자신의 전문적인 영역이 아닌 사안에 대해 언질을 주거나 혹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언어적 지식 때문에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만약 증인이 시골지역 남미인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그러듯이, 다리 전체를 의미하기 위해 pie(발)라는 스페인어 단어를 사용한 경우, 여러분은 자신의 역할에서 벗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재판장님, 통역사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인구 중 일부에서 ‘발’ 이라는 단어를 다리 전체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싶습니다.”

만약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러분이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만약 질문에 사용된 단어가 부가적인 설명 없이는 타인이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단어로서 답변에 필수적인 경우라면, 개입이 허락된다. 그러나 만약 변호사가 추가 질문을 통해서 상황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도 안 된다.

무게, 높이 그리고 거리 계산 통역사들이 일반적인 겪게 되는 언어문제는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의 치수, 무게, 그리고 기타 유사한 기술적인 표준을 미터법 단위로 변환하는 것이다. 만약 증인이 개인의 키 그리고/또는 무게,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여행한 거리, 또는 한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의 거리를 묘사하기 위해서 미터법을 사용한다면, 통역사는 측정단위인 미터법은 그대로 두고 단지 숫자만을 영어로 바꿔야 한다.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통역사는 미터법 단위 환산에 관여하거나 또는 외국 화폐 단위를 미국화폐 단위로 변환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화폐 단위 혹은 측정 단위가 사건에 필수적인 경우, 변호사가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할지, 혹은 스스로 계산을 한 후 법원이 그것을 승인할지 혹은 거부할지를 결정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법원의 지시에 따를 것인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진다. 증인이 사용한 측정단위를 원래대로 유지하는 관행은 위원회가 어떠한 용도로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는가에 상관없이 기록 상 증언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 생략

편집 증언의 어떤 부분이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증언의 어떤 부분이 통역되지 않아도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통역사의 권한 범위내의 것이 아니다. 통역사는 절차 진행 중에, 법원, 증인, 혹은 변호사에 의해 이야기된 모든 것, 출석한 법정에서 이야기 된 모든 것을 통역할 의무가 있음을 맹세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에는 원래 언어에서 언급된 대로 질문과 답변을 정확하게 통역하는 것을 포함된다.

제3자 언급 통역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보다는 “그에게 ...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인지 물어보세요.”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서 말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여러분은 이러한 문구를 편집해서는 안 된다. 만약 누군가 반복적으로 제3자를 언급한다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 판사가 그 사람에게 정정 지시를 내리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단어 반복 반복과 쓸데없는 말은 증인의 증언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여러분은 명쾌함이나 편리함을 위해서 어떤 단어도 덧붙이거나 빼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만약 증인이 원래 언어로 “나, 나, 나는 못 봤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나는 못 봤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영어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원래 언어에서 사용된 특정한 단어의 반복이 영어로는 반복되는 단어로 통역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예컨대 만약 증인이 원래 언어로 “그 여자는 울고 또 울었다.”라고 말했다면, 단순히 “그 여자는 울었다.”라고 번역해서 반복되는 단어를 생략하지 마라. 보다 더 정확한 영어 번역은 “그 여자는 계속 울었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증인이 “그 남자가 말하고 또 말했다.”라고 말한다면, 보다 더 정확한 영어 번역은 그 표현이 사용된 맥락에 따라서 “그 남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또는 “그 남자는 전광처럼 빠르게 이야기했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래 언어의 반복을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로 통역하는 것은 의미를 변형하는 것이나 생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단어반복을 통해서 표현하고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영어 사용자가 사용하는 관용적인 형태를 따르는 것뿐이다.

쓸데없는 말 역시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로 번역될 때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예컨대, 변호사가 “당신은 항상 그를 감시(watch)하고 관찰(observe)했습니까?”라고 물었을 경우, 여러분은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로 번역할 때 쓸데없어 보이는 단어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말실수 많은 화자, 변호사, 그리고 증인들은 말실수를 하고 나서 자신의 발언을 수정하곤 한다. 이것은 증인의 증언을 통역하는데 특히 중요하다, 이와 같이

스스로 정정하는 모든 내용은 판사와 배심원이 증인이 증언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있나 또는 증인이 단어 선택에 얼마나 정확을 기하고 있나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번역 대상이 되는 언어로 모두 번역되어야 한다. 아무리 그것이 의도적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화자가 한 실수 중 어떤 것도 수정해서는 안 된다.

말하는 중에 사이를 두는 말 많은 사람들이 연설에 대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도 연설을 요하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즉 흥적으로 말하려는 사람은 생각할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거나 혹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할지 확신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침묵을 피하기 위해서 여백을 메우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now)”와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한다. 증인들은 “글쎄요(well)”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같은 혹은 기타 유사한 표현으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법정절차에 참여하는 통역사로서, 여러분은 화자가 사용한 이런 말을 모두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로 통역할 의무가 있다; 그것을 통역하는 것은 증인의 증언을 통역하는 경우 특히 중요하다. 이것은 배심원들이 증인에 대한 신뢰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 의미 변환

단어의 뜻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통역사 사이에서는 상식이다. 문화적 환경 역시 때로 단어를 예상치 못한 의미로 전도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만약, “이슈(issue)”라는 단어를 유언장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유언장을 만든 사람이 낳은 아이들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잡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슈”라는 단어를 발견한다면 이것은 당해 잡지의 판을 의미한다. 대규모 언어 공동체 내의 특정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의 뜻을 가진 단어를 빌려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때가 있다. 그러한 새로운 뜻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보다 넓게 확산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멕시코의 특정 지역 출신의 스페인어 사용자에게는 trueno(천청벽력)라는 단어를 사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 몇몇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cartera라는 단어는 접는 식 지갑(wallet)을 의미하는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는 그 단어가 오프리는 지갑(purse)을 의미한다는 것 역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일은 통역사에게는 악몽이 될 수 있으므로 부주의하게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로 통역되어서는 안 된다.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단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해 보라고 충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위와 같은 실수를 할 경우,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법원에 허락을 요청해라.

### 언어 변형

여러분은 원래 언어의 메시지를 번역 대상 언어로 번역할 때 이해력을 높이거나 공격적으로 들리는 것을 피하려고 보다 수준 높은 단어로 혹은 보다 쉬운 단어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만약 변호사가 “당신은 대상이 그 다음에 하는 행위를 관찰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번역 대상 언어로 “당신은 그가 다음에 뭘 하는지 봤어요?”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질문을 증인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해서도, 그러한 질문을 증인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만약 증인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증인이 이해를 못했다고 말해야 한다. 증인을 위해서 대신 말해주는 것은 통역사가 할 일이 아니다.

배심원 앞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역하는 경우, 배심원은 단어 선택, 말씨, 어조 등을 바탕으로, 증인의 교양과 지능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끌어내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인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배심원들이 번역 대상 언어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다.

관용적인 표현 관용구는 그 의미가 단지 그것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총합이 아닌 구문이다. 영어 관용구의 예로는 “환영합니다(you're welcome)”,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to run the gamut)” 그리고 “그럴수록 더 좋다(so much the better)” 등이 있다. 여러분은 똑같이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번역하려고 항상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이 새로운 표현을 배우고 익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책들이 있을 것이다.

속담 속담은 대중화된 경구 혹은 상식에 근거한 진리를 표현한 실용적인 사상이다. 통역사들이 이러한 대중화된 경구가 가미된 판사의 혹은 변호사의 발언을 통역할 때, 그 속담을 통해 의도하고자 한 메시지를 전해야하는 중압감에 젖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속담을 문자 그대로 통역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에서 동일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속담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풍부한 속담을 가지고 있다; 시간을 내서 그것들을 조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비유적인 표현 은유는 “그는 자신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혹은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붙잡혔다.” 와 같이 다른 상황을 통해서 하나의 상황을 극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고, 여러분은 항상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에서 동일한 은유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즉, 문자 그대로 번역하지 마라. 통역의 중요한 초점은 개개의 단어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뉘앙스(단어 선택) 뉘앙스는 법정 증언에서 매우 중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단어 선택을 미묘하게 변화시키면 사건에 대한 증인의 회상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질문의 핵심단어가 변화될 때(“그들이 부딪혔을/산산이 부서질/충돌할/짱 부딪칠/접촉했을 때, 그 차들이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었습니까?”), “산산이 부서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질문을 받는 주체는 속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부서진 유리를 회상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원래 언어의 정확한 의미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의 단어 선택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욕설(외설) 만약 증인이 상스러운 언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사건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말을 하는 경우, 여러분은 불쾌감을 주는 용어를 편집해서는 안 된다; 즉, 원래의 의미를 유지하도록 여러분이 들은 것을 정확하게 통역해라, 배심원들은 그 혹은 그녀가 증언하는 태도를 기초로 해서 증인의 정직함과 신뢰성에 대

해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을 기억해라, 배심원들이 원래 언어를 모른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외설은 특히 번역하기가 어렵다; 단어대 단어 번역은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에서는 무의미 할 수 있다. 원래 언어의 청자들의 반응했던 것과 똑같이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를 듣는 청자들이 동일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여러분은 원 메시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에서 가장 가까운 의미를 찾아야 한다.

### 단편적인 진술

법정 증언은 마치 각본을 따르는 것처럼 항상 논리적으로 진행될 수는 없다. 이전에 이미 그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인들은 자주 불명확하게 이야기 한다(즉 “아시다시피, 저는... 거기에 갔었는데...거기에... 그제 있었습니다.” 와 같이). 적절한 대명사, 전치사, 동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호하고 애매한 진술은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진술을 명료하게 하기 위한 어떠한 정보도 가미함 없이 단편적인 진술을 원래와 가깝게 번역해야 한다.

터무니없는 증언 완전히 흥분해 있는 사람, 정신병을 가진 사람,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 이해할 수 없게 말하는 사람의 증언을 통역하는 것은 특히 어렵다, 통역사는 그것이 아무리 비논리적이고 적절치 못하다고 하더라도 증인이 말한 것을 정확하게 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데, 증인이 모호하고 불완전한 문장으로 말하면 때로 그렇게 하는 게 매우 어려워진다; 그럴 경우, 여러분이 그 내용을 통역하기 전에 증인과 이야기를 나눠서 증인의 진술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법정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증인이 언급한 것을 편집하거나, 생략하거나 혹은 덧붙여서는 안 된다.

무응답 증언 법정통역사로서 여러분은 증인이 행한 무응답을 다른 응답과 마찬가지로 통역할 책임을 진다. 법정에 대한 걱정한 제안이나 요구는 변호사가 하

도록 내버려두어라.

### 목소리 톤과 감정에 담겨진 의미

증인 또는 변호사의 감정 사실심문은 증인에 의해서 표현되는 분노, 공포, 부끄러움, 또는 흥분 등 감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뿐 아니라 얼굴표정, 자세, 목소리 톤, 및 기타 명시적인 것으로 표출한다. 비언어적인 표현 수단은 문화와 언어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따라서 사람들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들은 메시지에 담긴 감정적인 내용을 오해할 수 있다. 법정통역사는 단지 자동기계처럼 단어들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로 자연스럽게 감정을 전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공격적인 변호사가 겁을 주기 위해서 증인을 압박할 때, 여러분도 똑같이 강압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증인이 소심하게 답변을 할 때, 여러분은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로 통역 시 소심함이 전반적으로 묻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은 증인에 의해 표현된 감정을 약간 조율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여러분이 증인이 한 것과 똑 같이 울음을 터뜨린다거나 혹은 비명을 지른다면, 사법절차를 웃음거리로 만들게 될 것이다. 증인이 감정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경우(원래 언어에서도 번역 대상 언어에서도 이러한 감정 표출이 명시적인 경우)라면, 판사와 배심원들은 증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고 그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 즉, 증인을 흉내 낼 필요는 없다.

통역사의 감정 여러분 자신은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러분이 표현해야하는 반응은 여러분이 통역하고 있는 증인의 감정이어야 한다. 범죄 장면을 찍은 사진을 증인에게 보여줄 때, 증인이 의도하지 않게 우스운 말을 한 경우, 증인이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경우와 같은 때, 때로 그렇게 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통역하고 있는 당사자의 반응을 반영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배심원들이 통역사의 신뢰도가 아니라 증인의 신뢰도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 비언어적 의사소통

증인이 사용하는 제스처 흥분해서 혹은 표현력이 부족해서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혹은 이러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문화적으로 언어의 한 수단이기 때문에, 증인은 종종 편의를 목적으로 손동작이나 제스처를 사용한다. “아무개가 손으로 말하고 있다” 혹은 “나는 손을 묶어놓으면 말을 못하겠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비언어적인 메시지는 통역사들 특히, 이러한 의사소통 수단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화권 출신인 사람을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 만약 여러분이 증인이 한 제스처를 재생한다면, 그 증언을 곡해하게 할 위험이 있다(예컨대, 몸의 약간 다른 부분을 가리키게 되거나 번역 대상이 되는 언어의 문화권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 제스처가 되어버리는 것). 만약 증인이 증언 중에 제스처를 사용하는 경우,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단순히 증인의 말을 통역해라(예, “그는 여기를 때렸다.”). 판사와 배심원들 스스로 증인을 관찰할 수 있다.

주의 : 여러분은 증인 사용한 제스처에 대해 “증인은 그의 왼쪽 어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해서 증인이 가리킨 몸의 일부에 대해 기록이 남도록 해서는 안 된다. 공판기록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증인이 행한 어떠한 동작에 대해 묘사하는 일은 변호사에게 맡겨라.

통역사의 제스처 여러분은 증인이 답변을 하지 않을 때 좌절해서 눈을 굴린다거나 증인이 질문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답한 경우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뜻으로 어깨를 으쓱해 보이는 것과 같은 증인의 증언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어떠한 제스처 혹은 손동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증인의 육지거리를 통역하면서 (증인이 증언 중에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는 것은 부적할 것이다. 여러분은 통역사의 역할이 마치 언어장벽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가능한 한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절차가 진행되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은 법정에서 가능하면 여러분의 존재가 주의를 끌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증인의 증언을 평가하고 재판에서의 증인의 태도와 행동에 근거

해서 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은 통역사가 아닌 배심원들의 의무이다.

### 모호성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단어의 뜻은 맥락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때로 청자가 충분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단어의 의미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영어 대명사 “you”는 단수도 복수도 될 수 있어서 화자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더 나아가 몇몇 단어들은 영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되기 위해서는 부가정보를 요한다. 예컨대, 영어 단어 “cousin”은 남성 혹은 여성을 모두 지칭할 수 있지만 많은 언어에서 친족관계에 관한 용어는 이처럼 남녀를 포괄하는 경우보다는 남성만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통역사로서 여러분은 메시지를 통역하기 전에 모호한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한다. 영어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모호한 부분은 명확하게 바꾸고 필요한 경우 보다 많은 정보를 요구해라.

모호한 부분에 대한 대화 또는 설명 그러나 모호성이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가 허락하는 한 모호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컨대, 사고 장소나 증인의 신체 일부에 대한 언급 없이 “Where did the car hit you?(차가 어디에서 당신을 쳤습니까?/차가 당신 어디를 쳤습니까? 양자로 번역될 수 있음 -역자 주)”라는 질문을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로 통역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편, 변호사는 자주 “Did you have anything to drink?(차 안에 뭐 마실 거라도 가지고 있었습니까?/차 안에서 뭐 마신 적 있습니까? 양자로 해석 가능 -역자 주)”라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모호한 질문을 할 것이다. 그런데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로는 통역사가 “차 안에서 무얼 마셨습니까?” 혹은 “차 안에 마실 게 있었습니까?” 중 하나로만 이야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로 모호함을 그대로 유지하지 힘들지만 맥락상 의도하는 의미가 명료하게 통역될 수 있는 경우, 여러분은 통역에서 이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특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일부

러 모호하게 말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경우, 여러분은 먼저 의문을 풀지 않고서는 그것을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로 통역할 수 없다고 법정에 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의 질문을 바로잡아 주는 것은 통역사가 할 일이 아니다. 만약 질문이 모호하거나 명료하지 않은 경우, 그 언어가 영어이건 다른 언어이건 증인의 답변 또한 모호해지기 쉽다. 그러한 문제는 언어와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질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 변호인의 의무이다; 즉, 만약에 이의 제기가 없다면, 계속해서 질문을 통역해라.

### 이중 부정

경험이 풍부한 통역사는 이중 부정이 포함된 질문이 증인으로부터 모호한 답변을 유도해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예컨대, 만약 변호사가 “당신이 ... 씨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라고 묻는다면, 부정의 대답은 “아니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혹은 “아니요, 저는 ... 씨가 누군지 모릅니다.” 가 될 것이다. 그러한 질문은 모호한 답변을 유도하게 된다고 변호사에게 말하거나 원래의 질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요소들을 덧붙여서 질문을 명료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역할이 아니다. 여러분은 원래 언어에서 질문한 그대로를 증인이 사용하는 언어로 통역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인의 답변을 최대한 단순하게 통역하여야 한다. 상대방 변호인은 질문의 형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법원은 변호인에게 그 질문을 바꿔 말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중부정이 양쪽을 다 무효로 해서 부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번역되어도 무방한 경우가 있다. 종종 통역사를 괴롭게 하는 “두 사람이 동일한 사건을 목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배심원 지침 속 문구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구는 “두 사람이 ... 하는 것은 일반적이다.”처럼 긍정문으로 통역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변형을 할 때는 극단적으로 신중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이러한 변형은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가 동일한 부정형 접두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혹은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에서 그 단어에 부정접두사를 붙이게 되면 문장 구조나 자연스런 흐름을 해치게 되는 경

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 질문/답변의 소리 내어 읽기, 반복

법정통역사인 여러분은 법정 내에서 유일하게 2중 언어 사용가능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팀을 이루어 통역하는 것이 선호되는 이유이다.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책임을 지는 공식 통역사이기에 다른 사람들은 대체 무슨 말이 오가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의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하는 신뢰관계가 존재한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대화를 하려고 한다는 의문이나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영어 이외의 언어로 말을 걸어야 할 때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법정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소리 내어 읽기 만약 증인의 증언 통역 중에, 여러분이 변호사가 한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갑자기 질문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잊었다거나, 질문할 때 사용된 말투나 정확한 단어를 잊은 경우, 여러분은 그 질문을 다시 읽어 달라거나 다시 한 번 더 말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허락을 요청해야 한다. 통역 중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판사에게 말을 걸어, 문제를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을 얻는 게 적합한 관례다. (즉, “존경하는 재판장님, 통역사는 증인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증인더러 큰 소리로 이야기하라고 지시해주실 수 있습니까?” 혹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통역사가 질문에 관한 기록을 다시 읽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반복 법정에서 오간 이야기를 모두 통역해야 한다는 요구는 통역사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한다. 때로 여러분은 사용되는 용어를 모를 수도 있고 또는 뭐라고 말했는지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리이러한 의미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거나, 스스로를 속이려 한다거나, 문제되는 용어를 은근슬쩍 얼버무리거나 혹은 메시지에서 불명확한 부분은 생략한다거나 해서 안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항상 재판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못 들었거나 잊어버려서 증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을 추측하거나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증인이 말한 모든 것을 통역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의문이 있는 경우, 증인이 답변을 반복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통역사는 증인에게 답변을 반복하도록 지시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오류

**변호사의 오류** 변호사가 사안의 진행을 걱정하거나 다음 질문을 생각하느라 증인에게 다른 증인의 이름으로 질문을 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이 변호하는 고객의 이름을 바꿔 부르기도 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특히, 사건과 관련된 낱자가 여러 개 있을 때 변호사가 질문을 하면서 잘못된 낱자를 언급하는 것도 흔한 일이다. 여러분은 절대로 올바른 이름 혹은 낱자로 번역해서도, 변호사에게 오류에 대해 주의를 환기 시켜서도 안 된다. 여러분의 의무는 변호사가 말한 이름과 낱자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이다. 오류는 언젠가 발견될 것이고, 만약 발견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절차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혼란을 야기한 것은 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될 것이다.

**제2 통역사의 오류** 여러분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증인을 위해 통역사를 따로 둔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동료가 중요한 실수를 하는 걸 들었다면(예컨대, 증인이 “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여러분은 가능한 한 빨리 직접적으로 제2 통역사에게 이러한 오류를 환기시켜서 절차에 차질을 빚지 않으면서 그 혹은 그녀가 오류를 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 통역사가 저지른 오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재치와 수완을 발휘해라. 동료가 실수를 정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여러분이 그에 대해 법정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이런 일은 배심원이 없는 곳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통역사 자신의 오류 수정** 어느 순간에건 여러분이 통역 중에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알아차리자마자 기록을 정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만약 이어지는 증언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잘못 통역되었다는 조짐이 보인다면, 그것을 알아차리자마자 곧바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야 한다 : “존경하는 재판장님, 통역사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증인이 종전의 증언에서 말한 ‘천둥’ 이라는 단어는 ‘총성’ 으로 번역되었어야 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 익숙하지 않은 단어에 대한 설명

익숙하지 않은 단어에 대해 추측하지 마라. 여러분은 항상 사전을 지참하여야 하며, 모르는 단어 혹은 문구가 평범한 단어라면 여러분은 그 단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례상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이 통역사가 잘 모르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볼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자 합니다”와 같이 말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사전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뜻을 택하지는 마라. 사전이 무척 편리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 만약 나열되어 있는 단어들이 적절해보이지 않는다면, 증인 혹은 문제가 된 단어를 사용한 사람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요청해라. 만약 제2통역사가 출석한 상황이라면, 그는 당신만큼 큰 부담을 지고 있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더 빨리 더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므로, 여러분은 동료와 상의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하고 싶어질 수도 있다. 제2통역사는 그 또는 그녀의 배경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그 용어에 익숙할지도 모른다. 여러분이 조용하고 프로답게 행동하는 한, 여러분의 통역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신용과 신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통역사가 증언대에 선 증인과 따로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행동은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당사자들의 의심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 항상 법원에 알려져 증인과의 대화를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해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판사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이 애매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통역사는 절차를 더 진행하기에 앞서 명확하게 해야겠습니다.” 비슷하게, 여러분은 그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서는 안 된다; 즉, 항상 판사의 허락 하에 해라.

## 문화와 관련 있는 용어

용어의 뜻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와 뗄 수 없는 관계인 경우,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에서 그 의미를 전달할 단어를 찾기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어떤 “문화와 관련 있는 용어”는 통역사를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같은 물건이나 사건도 다른 문화권에서는 다른 함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식사의 명칭, 친족을 지칭하는 용어, 측량 단위, 주소의 형식은 그러한 현상의 예들이다.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에 주어진 것과 동일선상에서 대입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굳이 번역하려하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기 보다는 원래 언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만약 모든 사람이 그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변호사는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증인으로부터 설명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많은 경우, 그러한 단어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만약 여러분이 사용한 외국어 단어 혹은 문구가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면, 법원 속기사가 그 단어의 스펠링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나중에 법원 속기사에게 그 단어를 적어 주어야 한다. 이는 비영어 이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 증인에 의한 사용된 영어의 반복

여러분은 서면기록을 위해서 증언을 통역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 속기사는 증인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러므로 만약 증인이 영어로 대답한다거나 혹은 모든 사람이 통역 없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름을 언급한 경우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기록을 위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

## 증인으로부터의 질문

종종 통역사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증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통역사에게 질문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변호사: 자, 그날 당신은 거기에 있었습니까?

증인: 내가 집에 있었냐고 그가 묻고 있는 건가요?

증인의 질문에 스스로 답하지 마라; 단지 그 질문을 영어로 통역해라.

### 통역사의 진술에 대한 확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통역사 자격으로 기록에 남게 되는 진술을 하게 되는 때 혹은 역할을 바꿀 때에는, 여러분이 지금 통역사로서 발언하고 있다는 것과 더 이상 증인의 증언을 통역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잠시 말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식적인 법정절차에서는, 서면 문서상 통역사가 증인의 말을 번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격 범위 내에서 발언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통역사들이 자기 자신을 제3자로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법원외부의 덜 공식적인 상황에서는(예컨대, 공술서에서), 통역사는 단지 잠깐 쉬었다가 목소리 톤을 살짝 바꿔서 1인칭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저는 증인이 통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의: 추가질문을 통해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이고 따라서 통역사는 그 역할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여러분이 통역사로서 끼어들어서 설명해야하는 유일한 상황은 소통이 단절되거나 문화적 오해 때문에 그릇된 추측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질문과 답변에서 명백한 때이다. 그러한 경우, 여러분은 오해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되게 된다. 짧게 말하면, 절차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져라.

### 통역에 대한 문제제기

아마도 통역사로서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고충 중의 하나는 이중 언어 사용자인 당사자가 통역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 것이다. 통역은 까다로운 업무이며 따라서 오류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정 안에 통역사가 통역 대상 언어와 원래 언어를 모두 아는 유일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자주 있다, 그래서 통역을 해야 하는 엄청난 압박을 받지 않는 사람이 실수를 잡아내는 게 더 쉬울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지 증인과 사전에 입을 맞춘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또는 익숙한 단어를 들은 누군가가 질문을 통역사보다 자기가 더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문제제기를 한다면, 전문적인 방식으로 대답하라; 즉, 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지 마라. 만약 실제로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 정정안에 동의한다면, 여러분은 기록을 수정하여야 한다. 만약 제안된 수정안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여러분은 원안을 고수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추론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수세에 몰리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판사가 최종결정권을 가지며 여러분은 그에 따라야 한다. 여러분이 올바르게 통역한 경우라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행동하고, 여러분이 틀린 경우라 할지라도 기꺼이 틀린 부분을 수정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장차 이의제기에 덜 노출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언어라는 것이 아주 미묘하고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흑백이 분명한 대답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의제기는 법정통역사가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사실, 자신이 대리하지 않는 당사자의 증언(혹은 그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변호사 역할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통역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일은 법정에서 늘상 있는 일이다.

### 증인에 대한 의무

사건 피고인이 아닌 증인을 위해서 통역해야 하는 경우, 여러분은 증인을 위해서 모든 이의제기와 절차 진행 중 행하여진 모든 다른 진술을 동시통역할 동일한 의무를 지게 된다. 통역사의 존재는 변호사, 법원 그리고 배심원의 이익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비영어사용자인 증인을 영어사용자인 증인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법원이 여러분에게 증인에게 이의제기 내용을 통역하지 않도록 지시할 때가 있다. 그런 경우, 여러분은 재판정에서는 판사가 결정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그에 따라야 한다.

## 공정성

법정통역사는 맡은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판사와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를 밝혀야 한다. 통역사의 객관성을 해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이해갈등에 해당한다. 만약 통역사가 증인 혹은 소송 당사자의 지인이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 혹은 통역사가 소송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 통역사는 편향성, 편견, 또는 불공정하게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언급은 자명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외관”이라는 용어를 강조할 가치는 있을 것이다. 비록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편견이나 불공정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편견에 차있으며 불공정하다고 인식한다면, 통역사로서의 역할은 양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건의 어느 한 편 혹은 다른 편에 더 우호적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은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 이해갈등

실제 갈등 통역사가 소송결과에 개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소송당사자 중 하나와 친구 혹은 친척일 때, 또는 그 혹은 그녀가 사건이 법정으로 오기 전부터 당사자 중 한쪽의 파트너이었거나 혹은 지인이었기 때문에 소송결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보는 경우, 이해갈등이 존재한다.

잠재적인 갈등 구두이건 사진이건 제시된 증거가 여러분의 비위를 상하게 하거나 혹은 그것이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감정적 반응을 제어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이다. 만약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즉시 법정에 알려야 한다. “통역사의 객관성을 침해하거나 혹은 직업적인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이해갈등에 해당한다.” (로스앤젤레스 대법원 통역사 매뉴얼, 1981, p. 7)

여러분이 잠재적 배심원 혹은 이미 재판정에 착석해 있는 배심원과 알고 지내는 사이거나 혹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경우 역시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위의 조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그 업무를 수락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러한 사건을 담당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직업적 평판을 해치게 될 것이고 직업 전체에 대해 나쁜 인상을 주게 될 것이다. 업무를 수락한 후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즉시 법정에 알려야 한다;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을 해임할 것인지는 판사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 소송 당사자

여러분이 피고인을 위해 통역하다보면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옆 자리에 앉아있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둘 사이에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한 증인의 증언을 통역하는 경우에도 비슷할 것이다. 여러분이 피고인이나 증인과 어떠한 호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사람의 증언을 통역하기 때문에, 만약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증언을 윤색하고 있을지도 모르다거나 편향된 방향으로 통역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면 배심원 혹은 다른 당사자들이 여러분을 덜 신뢰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이 증언대에 서는 증인 혹은 피고인과 재판 시작전후와 휴식시간에 사적인 대화를 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 (통역사가) 사전에 연루된 사건

만약 여러분이 사건 당사자 일방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여러분은 곧 바로 상대방 당사자를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고소인 양당사자를 모두 통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것은 통역사와 고객 간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다(예컨대, 통역사가 강간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양쪽을 위해서 일한다고 상상해보라).

## 선물 및 팁

여러분이 통역했던 누군가로부터도 절대 어떤 종류의 선물이나 팁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러한 선물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일에 대한 대가를 법원이나 통역 에이전시로부터 받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에게 선물을 받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정중하게 설명해라. 그렇다고 이것이 일방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은 민사소송에서 사례금을 못 받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 통역사의 중립성

통역사로서 여러분은 비영어 사용자를 위한 변호인도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여러분이 통역해주고 있는 당사자의 언어 혹은 품행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증인이 문법에 어긋나거나 저속한 말을 사용한다거나 혹은 부적절해 보이는 의상을 착용한다거나 하더라도, 여러분은 다른 증인에게 행하는 것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증언을 통역해야 한다. 예컨대, 여러분은 증언이 부적절하다거나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는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눈을 희번덕거리거나 냉소적인 목소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이 다수인 소송에서 전자 통역장비를 사용하는 둘 혹은 그 이상의 통역사들이 존재하는 경우, 절차상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통역사들을 서로 떨어져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통역사의 중립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판사는 모든 당사자와 잠재적 배심원에게 재판 중에 누구를 위해 통역을 제공하는가에 상관없이 통역사는 어느 편에도 속해있지 않다는 것과 피고인 혹은 원고 측 어느 쪽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여야만 한다.

개인적인 의견 일상적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통역사는 다양한 변호사와 판사들과 교류하거나 그들이 맞고 있는 사건이나 판결 혹은 결정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들을 기회를 가지게 된다. 변호사의 능력 혹은 판사의 공정성이나 공정성 부족에 대해서 통역사가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는 매우 어렵다. 피고인의 유무죄 혹은 증인의 신뢰성에 대해서 통역사가 의견을 가지지 않는 것 역시 매우 어렵다.

여러분은 그러한 의견들을 차단하고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의견을 대중, 피고인, 피고인의 가족구성원, 혹은 법정의 구성원에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명시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사건 담당 변호사가 방금 증언이 끝난 증인의 신뢰성에 대해 또는 사건 일반에 대해, 심지어는 증인석에 선 피고인의 증언성과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접근할 수도 있다. 변호사는 심지어 자신의 변론에 대한 업무능력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변호사는 증언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싶거나 배심원의 반응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싶어서, 또는/그리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어서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직업적 무관심과 공정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여러분은 공손하게 의견 피력을 거부해라. 여러분은 “그런 결정은 배심원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배심원이 그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와 같이 말함으로써 혹은 기타 다른 우회적인 수단을 대담으로 택해서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요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제공하는 경우:**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법정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통역을 담당했던 사건에 관련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서는 안 된다.

배심원단의 구성원 때때로 배심원 중 한 명이 여러분에게 접근하여 여러분의 일에 대하여 묻거나 혹은 증인이 여러분이 일을 잘 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또는 여러분이 매일 함께 일하게 되는 법정 혹은 법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친해질 수도 있으므로, 쉬는 시간에 그들과 잡담을 나누고 싶은 유혹이 생길수도 있다.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화였다고 할지라도 편향되어 있다고 인식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대화에 끼지 말고 예의바르게 그 자리를 뜨는 것이다. 재판이 끝난 후에, 혹은 법정 밖에서, (여러분이 통역하고 있는 사건에서 배심원으로 일하지 않는 한) 그들과 어떠한 종류의 관계를 수립하건 그건 여러분의 자유다.

배심원이 평결을 마친 후, 변호사가 결정 이유 혹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 싶어서 배심원에게 말을 걸 수 있다.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겠지만, 여러분은 이런 대화에 끼어서는 안 된다. 어찌되었건, 여러분은 당해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재판결과의 이유에 대해 어떠한 관심을 보여서도 안 된다. 판사는 이러한 질문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 기밀

법정통역사는 권리로서 보장된 변호사와 고객사이의 대화내용을 폭로하여서는 안 된다. 법정통역사는 절차 진행 중 사건의 본안에 대한 언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자명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이 장에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 변호사-고객 간 특권

변호사와 고객 간에 논의된 내용은 비밀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법체계에서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온 원칙이다. 만약 여러분이 변호사-고객 간의 대화를 통역하게 되는 경우, 여러분도 똑같이 기밀준수 규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대화내용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행하여지는 경우이다. 그런 경우 여러분은 이 문제를 법정에 알려야 한다.

더하여, 만약 여러분이 (증인을 인터뷰하는 등) 피고인 측 혹은 검찰 측 소송준비에 참여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통역한 대화의 성격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만약 여러분이 변호-고객 간의 회합을 통역한 경우, 여러분은 피고인에 대항하기 위한 증인이 될 수 없다.

#### 검사-증인

비록 법적으로는 변호사-고객 간 특권이 검사와 증인 간의 대화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공공신뢰의 문제이므로, 통역사는 그러한 대화의 내용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여러분은 법정에서 비밀유지의무에 대하여 알려라. 이러한 대화에 대한 질문에 답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여러분은 그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심문의 촬영

여러분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라. 카메라 촬영을 하게 되는 심문에서, 여러분은 증인 혹은 법원을 위해 통역해달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심문의 공식적 녹화는 대중에게 공개되는 기록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러한 절차의 은밀한 성격을 존중하고 그러한 심문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것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직업윤리에 구속된다.

### 대배심절차

대배심의 기소절차는 기소장이 제출될 때조차도 비밀스러운 성격을 가지므로, 오직 판사와 검사만이 사건을 다루게 되어 다른 모든 사람은 법정에서 나가야 하고 대배심은 방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 통역사는 때로 대배심 앞에서 증언하도록 요청받은 증인을 위해 통역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다시 한 번, 이러한 절차의 비밀스러운 성격을 기억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이러한 심문절차에서 청취하게 된 질문 혹은 증언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말해서는 안 된다.

### 증거자료

통역사는 공개된 법정에서 제시되어 배심원단이 증거로 채택하기 훨씬 이전에 증거자료를 보거나 들을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지며 통역사가 일부 관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중에는 상반신 인증사진처럼 간단한 것에서부터 구금중인 용의자의 출석 중 혹은 경찰과 인터뷰 중 증인이 한 자백 혹은 비밀리에 녹화 혹은 녹음된 오디오나 비디오테이프처럼 복잡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은 이러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행동은 여러분을 위기에 처하게 하며 적정절차에 위협을 가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게 된다.

많은 국가에서 문서번역작업 혹은 오디오나 비디오의 전사 작업 같은 경우 보안을 위해서 신뢰할 만한 통역사에게 맡긴다.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는 법원이 직접 요청하거나 사건 담당변호사가 요청한다.

여러분은 정확성, 목소리 톤, 기술적인 용어 등등 여러분이 법정에서 통역할 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관심과 직업적 주의를 다하여 신뢰할 수 있게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의 업무능력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번역본 혹은 원고와 번역본을 제때 제출하는 것과 번역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테이프 전사와 번역은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과 장비를 요한다, 그러므로 통역사 자격을 갖추고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상의 장비를 갖추지 않는 한 그러한 업무를 수락하여서는 안 된다.

문서의 번역 통역사로서 여러분은 문서의 번역을 책임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서는 종종 일정한 시점에 법정에서 사용되게 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은밀하게 접하게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담당하게 된 업무의 기밀적인 성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해서는 안 된다.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의 전사와 번역 법집행기관에 의해 녹음된 테이프의 전사와 번역작업은 힘들고, 지루하며,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 정밀한 작업이다. 통역사들은 종종 전사할 자료가 얼마나 까다로운 것인지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일을 맡게 된다. 여러분은 위탁 받기 전에 항상 오디오테이프를 듣거나 혹은 비디오테이프를 보아야 한다. 녹음의 질이나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맡게 될 업무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비디오테이프는 오디오테이프 전사에 걸리는 시간의 두 배가 소요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휴대용 송신기에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전혀 관계없는 대화 혹은 소리가 잡히기도 한다. 오디오테이프용 전사 장비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비디오테

이프용 전문장비는 없다. 여러분은 외국어 단어가 몇 개 이상 포함된 녹음테이프에 대해서는 절대로 통시통역을 맡아서는 안 된다. 이는 불공평하기도 하지만, 정확성을 보증하기 어려워지는 심각한 리스크를 가지게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증거자료가 기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테이프의 내용을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 뉴스 미디어와 대중

통역사는 사건의 성격 혹은 관련 인물들 때문에 세간의 이목을 집중 시키게 되는 사건을 배정받을 때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사건은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중매체는 쉽게 얻기 어려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통역사와 인터뷰를 하려고 애쓸 것이다. 여러분은 인터뷰에 동의해서도 대중매체에 소송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한 내용이 편집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처음에 말한 것과 공개된 내용이 상이하게 다르게 편집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언질이 논란의 기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여러분이 언급할 내용을 통역 테크닉으로 제한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고,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일은 소송이 종료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언론의 요구를 피하는 또 다른 방법은 전문적인 통역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소송중인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동료를 소개하는 것이다. 평결이후라 할지라도 만약 사건에 대한 항소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침묵을 지킬 의무가 있다.

(친권 박탈이나 소년 범죄 소송 혹은 청소년 문제와 같이 특별히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한 비공개 재판을 제외하고) 법원 절차는 보통 대중에게 공개된다. 일반에게 공개된 재판의 경우, 소송 전에 여러분에게 사건에 관해서 물어보기 위해 누군가 접근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일반인과 대화하게 될 경우 그 대화의 내용은 법정의 잔무 혹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 관한 것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는 일은 예의바르게 그러나 단호하게 피해야 한다.

## 법적 조언하기

법정통역사는 당사자 혹은 증인에게 법적조언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추천할 수 없다.

통역사 역할의 범위에는 법적 조언을 하는 것 혹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기능은 변호사, 법률가 보조원, 그리고 판사의 권한에 속하는 것들이나 결코 통역사의 권한에는 속하지 않는 것들이며 통역사의 단 하나의 책무는 의사소통의 매개자로서 봉사하는 것이다.

### 피고인들의 질문

그러므로 법정통역사가 변호사의 역할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휴식시간 중, 혹은 심지어는 법정에서도 종종 통역사에게 절차에 대해 질문을 한다. 법원서기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물론 여러분은 단지 그 질문을 영어로 번역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질문을 받는 경우 미묘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법을 적용하는 것과 언어학적 용어로 단어를 정의하는 것 혹은 비전문가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 사이에는 경계가 존재한다, 예컨대 만약 피고인이 주지침입죄로 기소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한다면, 그러한 복잡한 법률적 개념정의는 통역사의 전문적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고 따라서 변호사에게 넘겨야 한다. 반면 만약 비영어사용자가 여러분에게 보호관찰 사무소가 어디인지를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다(만약 여러분이 답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피고인의 질문에 일체의 법률적 조언을 포함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그러나 만약 조금이라도 의문이 드는 경우, 여러분은 피고인에게 그의 변호사 또는 판사에게 물어보도록 조언해야 한다.

## 증인의 질문

통역사를 통해서 변호인과 대답을 나누었던 경우, 증인은 증인의 결과에 대해서 통역사에게 질문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다, 혹은 갑자기 마지못해 증언을 했다고 느껴서 증언을 거부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통역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통역사의 권한 밖이다. 그러한 질문 혹은 증인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조언하여야 한다, 즉 증인은 변호사에게 이러한 질문에 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피고인의 가족 구성원에 의한 질문

소송절차 진행 중, 많은 경우 피고인의 가족 구성원들이 법정에서 출석하게 되므로 통역사에게 죄, 결과, 혹은 다른 가능한 선택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어 할 수 있다. 여러분은 그러한 질문을 항상 변호인에게 전가하여야 하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변호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나, 그들에게 다음 출석일자와 혹시 장소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장소를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마라(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 위임

피고인에게 대리할 변호인이 없는 경우, 여러분은 변호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혹은 어떤 변호사가 좋은지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표명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어떤 한 변호사 혹은 여러 명의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소개해주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누가 소개를 요청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민사 사건의 경우는 지역 카운티 혹은 시 변호사 알선 서비스를, 형사사건의 경우는 관선변호인 사무실을 알려줘야 한다.

## 직업적 관계

법정통역사는 법원 공무원, 당사자, 증인, 그리고 변호사들과 직업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법정 통역사는 직업적 무관심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법원 공무원으로서의 통역사

통역사가 법정에서 출석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이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어사용자들이 법정에서 오가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객”은 모두 다 법정의 주인공들이다: 피고인, 피고 측 변호인, 검찰, 판사, 법원 서기 기타 사법공무원, 그리고 증언을 하는 모든 증인. 여러분이 누구를 위하여 통역을 하건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은 법원의 공무원이며 중립적 절차 참가자이다. 여러분이 피고인을 위해 통역하고 있다 해도 여러분은 피고인 측 “팀원”이 아니며, 여러분이 검찰 측을 위해 통역하고 있다 해도 검찰 측의 “팀원”이 아니다.

### 참견하지 않기

통역사로서, 항상 여러분은 통역절차의 일차적 목표가 의사소통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혹은 여러분의 능력에 대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연극적인 행동을 하거나 증인이 표현하는 감정을 과장함으로써 증인보다 여러분에게 시선이 집중되도록 해서 안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여러분은 개인적 감정 표현, 주관적 개입 혹은 사교상의 대화를 피해야 한다. 여러분이 통역해주는 사람과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직업상 거리를 두는 방법 중 하나는 사람들을 그들의 성으로 부르는 것이다(미스터 존스, 미즈 스미스).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에 격식을 차리는 표현형태가 있다면(예컨대 스페인어로 usted / 영어의 you에 해당하는 표현이나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겸양표현이며 격식을 차리는 표현으로 쓰인다 - 역자주), 증인 혹은 피

고인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여러분은 항상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통역사가 이렇게 격식을 차리는 태도를 유지할 때는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의 문화적 규범을 잘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아이에게 격식을 차린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어린이가 증인이라면 스페인어로는 격식을 차리지 않는 대명사로 부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변호사가 질문을 하는 동안 증인을 이름으로 부르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격식을 차리지 않고 증인을 대하는 경우, 여러분은 그것을 보다 더 격식을 차린 표현이나 공손한 표현으로 만들기 위해서 통역 시 질문에 변경을 가해서는 안 된다.

### 통역사의 피로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지게 된 캘리포니아 행정 기준에 관한 법 18.1은 절차에서 통역하기 전에 통역사에게 아래와 같은 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러분이 절차 진행 중에 피로감을 느낀다면 지체 없이 법정에 알려야 한다.” 뉴욕 남부, 미국 지방 법원 통역사 코디네이터인 Nancy Festinger는 아래와 같이 우리의 역할을 웅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약물 억제 운동에 대한 변호사의 법적 논쟁에서 병 뛰어서 마약 중독자의 어눌한 설명으로,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증인의 답변으로, 보호관찰 보고서의 사회심리학적 전문용어로, 법령의 작은 글씨로, 복잡하게 얽힌 배심원에 대한 판사의 적시(指示)로, 이 모든 것을 제한된 시간 안에 한 공간에서 오가는 정신적인 체조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명백한 넌센스와 교묘하게 숨겨진(혹은 그렇게 심하게 숨겨진 것은 아닌) 괴롭힘, 절절한 호소, 정당한 분노, 엄격한 경고, 하찮은 일로 트집을 잡는 질문들, 풍자적인 발언, 가시뚱뚱한 답변, 눈물에 젖은 자백을 반복한다,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침착함과 공정성 그리고 언어학적인 정확함을 유지한 채, 지칠 줄 모르는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짜증을 내거나 불신을 드러내서도 안 된다.

우리의 직업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소모적인 힘겨운 일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작업 환경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다. 진정한 프로라면 최상의 업무수행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쟁취하고 노력할 것이다. 통역이 고도의 정밀함을 요하는

일이므로,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판사들이 법원 속기사에게 쉴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절차를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정확한 기록은 속기사가 작성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때로 기록을 보존하는 다른 중요한 방법이 통역사가 잘 쉬어서 정신이 맑은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곤 한다.

통역사로서, 여러분은 피로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느낄 때마다 휴식을 요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팀 통역 통역전문가들은 2시간이상 계속되는 법정절차의 동시통역과 순차통역에는 둘 혹은 그 이상의 통역사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여러분이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절차의 복잡성과 강도에 따라 그리고 원래 언어의 자료를 미리 준비한 뒤 읽는 것인지 즉흥적으로 통역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역사는 20-30분마다 교체되어야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므로 절차 중에 역할을 서로 교대하는 것이 좋다.

의견 재판과 증거청문절차 중에 특히 이 말이 들어맞는다. 팀 통역은 통역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한 가지 잠재적인 원인인 피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휴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1 통역사가 증인석에서 통역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제2의 언어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튀어나오게 될 모든 단어와 문구를 다 알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판 중 제2통역사가 참고자료 조사를 맡고 전자 장비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최첨단 테크놀로지” 참조).

적어도 두 명 이상의 통역사가 있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형사소송에서 절차진행 중 피고인을 위해서 동시통역을 할 경우 한 통역사가 단독으로 통역을 수행하게 되면 혼자서 이중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미국에서 피고인들은 적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며, 거기에는 반대편이 제시하는 모든 증거와 증인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즉 통역사가 심문 혹은 재판에서 단독으로 일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절차 통역사와 변호 통역사의 이중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절차진행 중이

라도 요청이 있으면 즉시 절차 통역에서 고객을 위해서 발언하는 변호사를 돕는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래서 피고인은 자신의 변호사와 상담할 동안 재판절차에서 진행되고 있는 증언을 청취할 수가 없다. 이것을 자신의 변호사와 이야기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뒤에서 절차진행 상황을 다 들을 수 있어서 자신의 재판 전체에 “참석” 할 수 있게 되는 영어 사용 피고인과 대조해 보라. 팀으로 일하는 것은 제2 통역사가 피고인석에서 변호사-고객 간에 논의를 도와주는 동안, 통역사가 피고인을 위하여 절차진행상황 통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

### 가청도(可聽度)

법정통역사를 위한 적정한 업무 조건 중 일부는 법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너무 빨리 이야기해서 따라잡기가 어렵거나 너무 조용하게 이야기해서 들리지 않는다거나 한다면, 혹은 법원 밖에서 나는 커다란 소음과 같은 방해요소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를 법정에 알려야 한다. 예컨대, 만약 변호사가 배심원들에게 발언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정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 당사자에 대한 설명

1999년 1월 1일 효력을 발휘한 사법행정에 관한 캘리포니아 기준 18.1조(a)는 통역되고 있는 절차 동안 법정 혹은 법정이 지명한 자는 참가자들에게 통역사와 변호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절차상 따라야 할 것들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정은 엄청난 긴장감과 시간 압박 속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18.1조의 내용에 익숙해질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증인이 이야기하는 특징을 익힐 기회를 가질지 그리고 그 혹은 그녀에게 절차상 따라야 할 것들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여러분은 항상 사전 면접에 변호사가 참석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여러분은 정중하게 변호인이 직접 증인에게 설명할 것인지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시간과 환경이 사전 면접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만약 증인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공손하게 법원의 허락을 요청해라.

## 사무

통역사가 해야 하는 사무에 관해서, Dueñas González, Vázquez 그리고 Mikkelsen은 “일반적으로, 법정 통역사는 오직 통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능들만 수행해야한다” 고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사무 혹은 기타 관계없는 잡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분주한 법정에서, 특히 죄상의 인정여부절차 혹은 한꺼번에 많은 사건들이 진행되는 교통법원과 같은 경우 절차 중, 때때로 통역사에게 비영어사용자들에게 서류를 배포해달라거나, 그들이 서류를 작성하는 걸 도와주라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무실로 가라고 지시하는 걸 도와주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법정 통역의 원리: 이론, 정책 그리고 실제, 1991, p.502)

그러한 업무는 법률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더 적합하다.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에 관여하는데 따르는 위험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일에 대해서 법원 관리부서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Dueñas González외 다른 사람들은 더 나아가 “엄밀한 의미의 통역사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문제...: (1) 통역사는 궁극적으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을 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러한 활동은 그들이 합법적 의무를 최상으로 수행하는데 혼란을 초래한다. (2)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통역사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통역사의 직무에 대해서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만든다; 법정 절차에서 그들이 많은 피고인들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항변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질문을 받는 등 통역사들은 종종 변호사로 오해를 받는다. (3) 통역사가 경계를 정하지 않고 이러한 사이비 역할을 수락하기 시작하는 것은 작은 문제일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그러한 문제를 영속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법정 통역의 원리: 이론, 정책 그리고 실제, 1991, p.502)

## 통역하지 말라는 지시

수십 년 동안 법정에서 일한 통역사들은 틀림없이 배심원지침을 통역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변호사나 증인의 증언을 통역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피고인과 일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경험을 아직 하지 못했다면, 언젠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영어를 할 줄 모르는 피고인을 위하여 항상 통역해야만 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적정절차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동시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자격증 재발급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변호사나 피고인이 여러분에게 통역하지 말도록 요구 하거나 혹은 지시한다면, 그 변호사에게 판사더러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라는 명령을 하도록 법정에 요청하겠다고 해라.

## 문서

변호사가 증인석에 앉아있는 비영어사용자인 증인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경우,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읽거나 혹은 그에 대해 기술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로 증인에게 읽어주라는 지시가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증언하는 동안 증인이 갑자기 문서를 꺼내 여러분에게 내민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변호사에게 주거나 혹은 증인석 카운터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본인이 문서를 기술할 것인가 혹은 필요한 경우 법원의 승인 하에, 여러분에게 읽도록 해서 기록으로 남길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변호사에게 달려있다,

## 문화적 그리고/혹은 언어적 전문지식

전문가의 자질 중 하나는 자신의 경험을 벗어나는 질문이 주어졌을 때 인정하는 능력이다. 법정통역사로서 여러분의 역할은 인류학자도, 언어학자도, 심리학자도 아니다, 따라서 여러분을 비영어사용자인 피고인이나 증인의 문화에 대한 전문가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청해서 정보를 제공해서도 증언에서

언급된 문화적 관습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증언대 앞으로 불려가서도 안 된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분야의 권위자와 상담해야 한다.

비록 여러분이 언어 전문가이고 언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전문경험이 여러분을 자신의 지식 범위 밖의 분야에 대해 증언하게 만드는 불편한 위치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전문가 증언에서, 비영어사용자가 외국어로 경찰관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여부는 통역사의 능력과 경험치를 명백히 벗어나는 것이다. 이는 매우 복잡한 전문화된 테스트 도구가 요구되어지는 일이고, 개개인의 테스트 결과를 근거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도 특별한 훈련과 지식이 필요한 일이다. 예컨대, 심리학자가 이런 종류의 증언에 보다 적합할 것이다.

### 평생 교육과 직업적 의무

법정통역사는, 평생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통역기술과 법정에서 사용되는 절차에 대한 지식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법정통역사는 통역 직역의 업무수행 기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판 혹은 다른 법적 절차 중에 어떤 내용이 튀어나올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사건에 발사체 설계 기술 테스트, 부검, 그리고 혈액형에 대해서 증언하는 해당분야 전문가인 증인들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다양한 국가 출신의 주요 증인들은 비속어를 사용하여 증언하기도 하고, 변호사는 변론에서 셰익스피어를 인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언어의 모든 분야에서 탄탄한 기초를 쌓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술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 사건에 정통하기

통역에 정확을 기하려면, 사건과 관련된 사실에 정통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은 경찰보고서와 예심 속기록 등 문서를 통독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다. 법정 활동의 매일 매일의 현실(빽빽한 소송사건 일람표, 예측할 수 없는 배치 등등)은 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분은 법원직원에게 여러분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강조해야 한다. 기술적인 용어들을 미리 숙지하고 애매모한 용어들의 명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여러분은 재판 시작 전에 보고서나 사건 기록과 같은 문서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해야 한다(중요한 재판의 경우, 기술적인 면에서 적절한 참고사항을 얻을 수 있도록 며칠 전에 미리).

### 증인 사전 면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절차 개시 전에 고객과 이야기할 기회를 가진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증인의 이야기하는 버릇에 익숙해지고, 그들이 특이한 방언을 구사하는지, 특이한 종교, 혹은 기술적인 용어들이 증언 중에 튀어나오게 될 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진행 중인 절차에 관해서 개인 변호사를 동반하지 않은 채 밖에서 토론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또한 여러분이 증인에게 통역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를 설명할 그리고 몇 가지 기본적인 규칙(예컨대, 번역된 질문은 오직 듣기만 할 것, 긴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통역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중간에 자주 멈출 것)을 설정할 기회가 될 것이다. 더하여, 증인에게 여러분이 그 혹은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을 편집 혹은 문장을 “깔끔하게 다듬는 일” 없이 통역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증인은 통역사 아닌, 변호사가 던지는 질문에 답해야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기술적 용어

사용 빈도수가 낮은 고도로 기술적인 단어들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필요할 경우 전문용어사전을 지참해야 한다(재판의 모두진술이 여러분에게 어떤 주제가 튀어나올지 말해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적절한 참고 자료를 법정으로 가져올 수 있다). 여러분은 사용하게 될 가능성 있는 용어를 미리 알고 있도록 그러한 자료들을 재검토하면서 여가시간(예컨대 절차 중간 중간의 휴식시간)을 보내야 한다.

### 배심원에 대한 지침하달

배심원 지침하달에는 엄청난 양의 고어, 고풍스런 어법, 기술적인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고도로 기술적이고 복잡한 법적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어서 배심원 지침하달은 법정 절차 중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다. 더 나아가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을 통역하는 것 보다 준비서면을 읽은 누군가를 위해서 통역하는 것은 더 어렵다, 왜냐하면 물론 몇 번 쉬기는 하지만, 속도가 빠르고, 억양이 자연스럽게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리 미리 준비하라는 충고를 하고 싶다. 재판종료 바로 직전에, 판사와 변호사가 배심원 지침하달에 동의할 것이다. 그 시점에서 여러분은 그것을 읽고 모르는 용어가 있나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의 목록을 요구할 수 있다. 배심원 하달 지침은 모든 법원 도서관에서 볼 수 있다.

### 부적격

몹시 기술적인 전문용어 혹은 애매모호한 속어가 사용되는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선박용어 혹은 해양 용어가 자주 튀어나오는 사건의 증언을 통역해 줄 것을 요청 받을 수도 있다. 만약 여러분이 준비할 시간이나 조사할 시간을 따로 가지지 않고는 통역할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필요한 시간과 자료를 요구하라. 이와 유사하게 만약 여러분이 통역을 담당하기로 한 증인이 여러분이 능통하게 구사하기 어려운 방언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실을 법정에 통고해야 한다. 부적격 포기 문제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즉 여러분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언어적 전문경험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자주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도록 법정통역사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언어의 모든 면에 대해서 완전히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자격인증서와 자격증 여러분은 일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격증 혹은 자격인증서를 잘못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이 이력서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들

이 자신이 수행했던 일을 모호하고 근사한 단어로 묘사하는 일은 거의 없다. 보통 이러한 일은 간단한 전화 한통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증명할 수 없는 자격인증서 혹은 자격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다. 법조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일단 여러분이 법정에서 되면 무대 옆에서 대사를 읽어주는 대로 따라하는 연기를 할 수도 애드 립을 할 수도 없다. 사람들은 알아 챌 것이 뻔하고 여러분의 평판과 직업 전체에 대한 평판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느끼기에 여러분의 언어적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정확하게 통역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여러분 스스로 부적격하다고 하거나 업무를 맞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추천할 만한 일이다.

통역사가 미국 행정 청문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원에 자격을 인증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혹은 시험 기관이 아닌 통역사 협회 혹은 사법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다.

### 최첨단 기술 용어

인류는 지난 20세기 마지막 20년 동안 엄청난 기술혁명을 경험해왔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고 있다. 그들이 전통을 고수하려고 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긴 하지만, 법원은 그들의 구식 시스템과의 결별을 시도하고 있으며 최첨단 기술 용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전국적으로 많은 법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직업 활동에 최첨단 기술 용어를 사용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기에, 통역사들은 전통적으로 기술에 익숙해지는데 뒷걸음을 쳐왔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있고 기술적 발전은 서서히 모든 사람의 일상 속으로 그리고 일터로 스며들어오고 있다. 통번역직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실시간 리포팅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법원이 있으며; 폐쇄회로 TV를 통해 공소절차가 열리고; 원격회의는 짧게 통역이 필요한 절차를 위한 또 다른 수단이 되고 있고; 컴퓨터와 송신기 같은 장비를 법정에서 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증인신문이 위성을 통해

서 열리기도 한다. 최첨단 기술에 익숙해지는 것,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파악하는 것, 여러분의 생활을 보다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무선 전파 장비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분해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른다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적당한 사람에게 알려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익숙하지 않은 장비를 설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수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장비 중 일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라. 여러분은 항상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테스트해야한다. 만약 절차 중에 수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장애물을 제거할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혹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즉시 법원에 알려야 한다.

적외선 송출장치 오늘날 법정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일반적 첨단장비는 무선 적외선 송출장치일 것이다; 이 장비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피고인이 있는 경우 사용된다. 개개인이 원하는 만큼 볼륨을 조절할 수 있도록 볼륨조절장치가 달린 무선 헤드폰을 공급 받는다. 통역사는 마이크를 손으로 잡거나 옷깃에 편으로 고정하고 낮은 목소리로 동시통역을 한다. 만약 마이크 선이 마음대로 움직여도 될 만큼 충분히 길다면 이러한 장치는 통역사에게 법정 어디엔가 앉아있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추가적으로 투입된 통역사는 피고인 근처에 앉아서 변호사가 자신의 고객과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통역한다. 팀을 이뤄 20-30분 간격으로 서로 바뀌가며 마이크로 통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외선 송수신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보다 정확한 통역을 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이는 통역사의 피로로 인한 오류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는 이점의 하나는 통역사의 가청도에 있다.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가청도가 향상되며 완벽하고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있는 통역사의 능력이 방해받지 않게 된다. 이것은 또한 여러 명의 통역사가 한꺼번에 이야기할 때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감소시킨다.

다른 유형의 송수신 장비 요즘은 통역사들이 보다 복잡한 장비인 소형송수신기를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 이러한 장비는 전자제품 상가에서 혹은 주문을 통해서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장비의 단점은 배터리가 닳을 수 있으므로 여러분이 항상 새것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것 혹은 선이 너무 짧아서 콘센트가 있는 곳까지 쉽게 갈 수 없다거나 하는 것이다. 게다가 헤드폰은 보통 무선이 아니라서, 쉽게 움직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선으로 송수신기에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도구는 그러나 피고인의 귀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매 번 애쓰는 대신 여러분이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해준다. 몇몇 판사나 집달관이 보안상의 이유로 온 법정에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걸 꺼려해서 전자 장비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 통역사가 송수신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여러분은 보안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 만약 법원 공무원으로부터 송수신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를 받은 경우, 여러분 그 사용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법정의 컴퓨터** 법원직원으로서 여러분은 법정의 어느 구석이든 접근할 수 있다. 그곳에 놓여있는 장비(즉,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등)는 법정 인력들이 배타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여러분은 업무의 일환이 아닌 일로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법정이 개정한 동안 여러분의 휴대용 컴퓨터를 법정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키보드 소리는 짜증을 유발할 수 있고 법원의 다른 공무원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여러분은 법정이 개정 중일 때는 여러분이 맡은 사건의 차례가 올 때까지 개정 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컴퓨터, 워드프로세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번역기** 법정통역사는 종종 문서를 번역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많은 통역사들이 기관, 사인, 개인회사를 위해 번역해서 부수입을 얻고 있다. 이것이 통역사로 하여금 컴퓨터 기술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컴퓨터는, 그 잠재력을 잘 활용만 한다면, 번역일을 하는 통역사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즉 전체 문

서를 처음부터 다시 칠 필요 없이 쉽게 수정이 가능하게 한다.

워드프로세싱 프로그램은 통역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산출의 양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 기관이나 개인 회사들은 통번역용으로 특정 소프트웨어를 선호할 수 있다. 여러분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사는데 투자하기 전에, 어떤 컴퓨터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복제되는지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지 체크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여러분이 출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서의 서식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컴퓨터를 다루는데 미숙하다면,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최대한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컴퓨터를 배우는 것은 절대로 시간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라. 지역 학교에서 혹은 개인 과외로 수업을 듣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마라.

많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계적 번역을 목적으로 설계되고 있다. 만약 여러분이 장기 번역 프로젝트에 관여하게 된다면, 이러한 프로그램 중 일부와 그리고 그 기능, 적용 가능성, 이점, 그리고 불리한 점 등에 익숙해지고자 할 것이다.

전사장비 만약 여러분이 테이프 전사와 번역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게 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면, 아마 발로 조절하는 페달이 달린 전사기계를 마련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것은 타이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을 자유롭게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손을 키보드 위에서 떨어뜨리지 않고도 멈추고, 다시 감고, 앞으로 빨리 돌릴 수 있도록 해준다. 다양한 가격대의 여러 브랜드가 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좋은 음질을 가지고 있으며 저음, 고음, 속도 조절이 가능한 것을 찾아야 한다.

### 동료들과의 관계

여러분의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역시 직업적 의무 중 일부이다. 여러분은 같은 분야에 일하는 다른 법정통역사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그들과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두 가지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다: 통역사 협회 차원에서 그리고 같은 법정에서 일하게 되는 통역사들과의 일상적인 활

동 중에. 여러분이 동업자인 통역사를 라이벌이 아니라 동료로 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이 그들의 행동이나 일을 인정할 수 없더라도 여러분은 그들을 헐뜯어서는 안 된다, 그런 짓은 여러분을 비전문가처럼 보이게 할 뿐이다 그리고 법정통역사라는 직업의 일반적 이미지를 하락시킬 것이다.

### 전문 조직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배우는 좋은 공론의 장으로 전문 협회가 있다. 동료들의 협회에 가입해서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활동의 중요한 요소이다. 전문 조직은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1. 상호 원조와 연대: 통역사들이 서로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협회에 의해 작성된 윤리규범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하는 통역사들에게 부차적인 방향 제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 커뮤니티 교육: 전체로서의 조직은 통역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통역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업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문화적 오해, 무엇이 통역사의 적합한 역할인지를 정하는 것, 그리고 통역사에게 적합한 업무환경을 확보하는 것과 같이, 통역사가 법정에서 개인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법조계 워크샵이나 세미나에서 다루도록 할 수 있다. 보다 나은 사운드 시스템이나 휴게실과 같이 통역사가 업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시설을 요구하기 위해, 지역조직 대표가 법정 관리자에게 접근할 수도 있다.

3. 정보의 유포: 전문조직의 뉴스레터나 저널은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새로 나온 사전과 기타 출판물, 연구, 자격인증 시험일자 등 정보를 제공하여 통역사들이 해당 분야의 최신 정보에 뒤처지지 않도록 해준다. 또한 협회는 윤리적 문제, 방송에 대한 불만 토론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전문용어 사전을 출판할 수도 있다.

**업무 교대:** 지역조직의 회의는 비공식적 직업정보교환기구로 기능할 수 있으며, 그곳에서 프리랜서 통역사들은 스케줄 때문에 맡을 수 없는 업무를 교환할 수 있다. 이러한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신참 통역사들에게 보다 경험이 많은 동료들을 만나고 자기개발에 대한 관심을 증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만약 많은 통역사들이 새로운 통역사의 성실성과 헌신적인 자세에 감명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과도한 업무 중 일부를 넘겨줄 수도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 지역 단위, 주 단위, 국가 단위에서, 통역사 협회는 회원에 대한 평생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최고의 포럼이다. 연례회의에서, 특별 세미나에서, 혹은 정규회의에서 해당 분야전문가인 발표자들은 통역사들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모임은 전문용어, 사전 혹은 전문용어사전의 교환 및 교육 목적의 견학을 계획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 평생교육

인간의 언어는 역동적이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에 의한 것이건 그들이 통역하게 될 특수 집단(법조계, 법원직원, 이민공동체, 깡패들 등등)에 의한 것이건, 법정 통역사들이 언어용례의 최신 변화를 따라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통역기술 그 자체는 지속적인 연마를 요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평생교육은 통역사의 직업 활동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공식적인 학교교육 이외에도, 견학은 통역사들에게 많은 주제에 대하여 일차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견학은 지역 통역사 협회와 같은 집단에 의해서 혹은 개인에 의해서 준비되어질 수 있다. 예컨대, 많은 경우 경찰은 동승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이 일과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알 수 있도록 시민이 경찰관과 순찰에 동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게다가, 만약 여러분이 신참 통역사라면, 언어와 법정절차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자주 법정에 들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여러분은 통역사로 일하게 될 때 법정에서 사용하게 될 문서(예컨대 포기각서)들을 얻어서 가볍게 번역해봐야 한다. 대부분의 절차가 공개되기 때문에 소송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통역이 수반된 절차만 참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무엇보다 여러분이 법정에서 사용되는 영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통역해주게 될 비영어사용자의 작업환경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직업적 환경에 대한 증언은 어떤 종류의 법정 절차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직업과 관련된 질문에 익숙하지 못하면 그러한 증언을 통역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적으로 직업 사이트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부 고용주들이 일터를 기꺼이 공개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공개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 해서 코스를 정해서 하는 투어를 선호하는 편이다. 고용주들이 영어를 못하는 피고용인들을 데리고 있다면 특히 협조적일 것이고, 통역사가 직업 환경에 보다 익숙해진다면 그들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노동 관련 심리, 해고에 따른 탄원 심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명해줄 것이다. 만약 견학이 불가능하다면, 통역사에게 전문용어와 절차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도록 지역 통역사 협회가 이러한 회사 중 하나를 초청할 것이다.

통역사가 새로운 개념과 전문용어를 배우는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는 방법은,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언어로 가능한 한 광범위한 독서를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잡지나 신문 같은 정기간행물은 실제 사용되는 언어의 용례에 대한 신뢰할만한 자료이다. 아무 주제에 대해서나 많이 읽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여러분은 변론 중에 변호사가 무슨 말을 할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능하면 범죄, 법원의 체계, 혹은 법집행에 대한 기사를 찾아봐라.

최신 언어 사용례에 대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자료는 대화가 많이 포함된 소설이다; 텔레비전의 연속극도 이런 면에서는 매우 가치 있다. 사실 여러분이 사용할 수 없는 활자 자료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가시간 동안 열심히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법정에 있어보면 논쟁 사이사이에 쉬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은 만약 그럴 장소가 있거나 법정 내에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데 대해 아무런 반대가 없다면, 시간이 나는 동안 읽을 것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한다.



연구총서 12-AA-05

**형사사법절차상 사법통역의  
개선방안 연구**

발행 / 2012년 12월

발행인 / 김일수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02)575-5282/5283

등록 / 1990. 3. 20. 제21-143호

인쇄 / 인터미디어 성림디앤피  
(02)2263-5931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정가 10,000원

ISBN 978-89-7366-948-6 93360